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2023. 9.

농림축산식품부

Contents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1 장

| | |
|-----------------------|---|
| 조류인플루엔자란? | 1 |
| 1. 정의 | 2 |
| 2. 병인체 | 2 |
| 3. 임상증상 및 부검소견 | 4 |
| 4.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 | 5 |
| 5. 진단 | 6 |
| ※ 용어 정의 | 7 |

제 2 장

| | |
|---|----|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사항 | 14 |
| 1. 위기 경보 단계(주의) 및 주요 방역 조치사항 | 14 |
| 2. 가금농장 예찰·검사 및 의심축 신고 강화 | 15 |
| 3.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및 위험주의보 운영 | 24 |
| 4.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 출입제한 | 27 |
| 5.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32 |
| 6. 특별방역대책기간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 35 |
| 7.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 38 |
| 8. 대규모 가금농장 등 통제초소 설치·운영 | 43 |
| 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제한 | 36 |
| 10. 소규모 가금농장 수매·도태 | 50 |
| 11. 전통시장에서 산 가금(초생추·중추, 오리, 산란성계, 육계) 유통 제한 | 53 |
| 12. 일제 입식 및 출하 운영 | 56 |



제 3 장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조치사항 60

| | |
|---------------------------|----|
| 1. 위기 경보 단계(심각) 및 주요 조치사항 | 61 |
| 2. H5·H7형 항원 확인 시 조치 | 63 |
| 3. 고병원성 확진 시 조치 | 68 |
| 4. 검출지점에 대한 조치 | 73 |
| 5. 방역지역 설정·운영 | 75 |

제 4 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표준행동요령 78

| | |
|------------------------------|-----|
| 1. 위기 경보 단계(심각) 및 주요 조치사항 | 79 |
| 2. 의심축 신고 및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사항 | 82 |
| 3. 의심축을 발견한 축산 관련 종사자의 조치 | 88 |
|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 91 |
| 5. 발생확인 시 긴급 방역 조치사항 | 98 |
| 6. 역학조사 요령 | 108 |
| 7. 발생농장 등 방역지역 방역요령 | 114 |
| 8. 이동제한 요령 | 119 |
|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 143 |
| 10. 발생농장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 147 |
| 11.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용요령 | 155 |
| 12. 축사 외 장소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 | 161 |
| 13. 이동제한 해제 요령 | 168 |
| 14. 발생농장 등의 재입식 요령 | 171 |
| 1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조치 | 1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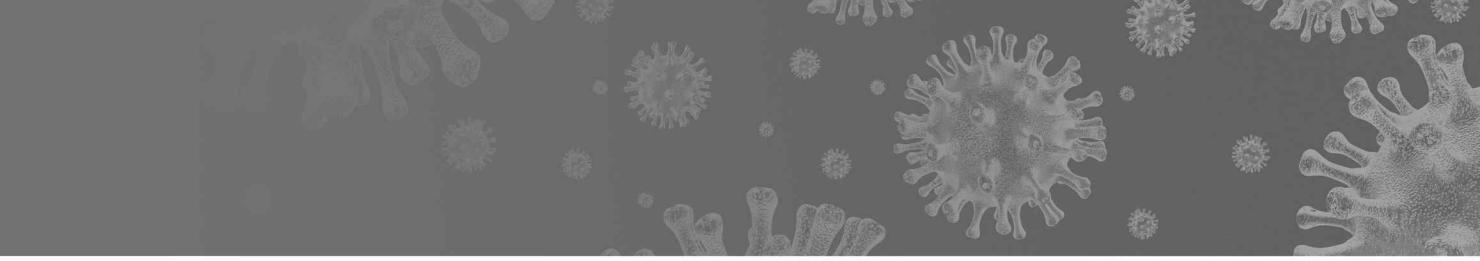
Contents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별표

| | |
|---------------------------------------|-----|
| 1. 초기검진 시 긴급방역용 용구 | 181 |
| 2.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 182 |
| 3.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농장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요령 | 183 |
| 4. AI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시료 채취요령 | 189 |
| 5. 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요령 | 193 |
| 6.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 200 |
| 7. 출입금지 표지판 | 203 |
| 8. 긴급방역용 용구 | 204 |
| 9.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 205 |
| 10. 조류인플루엔자 전화예찰 요령 | 210 |
| 11. 살처분 및 사체 처리요령 | 211 |
| 12. 축사 청소·소독 프로그램 | 264 |
| 13.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등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등) | 266 |
| 14.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공고) | 274 |
| 15. 소독제별 특성 및 사용요령 | 278 |
| 16. 오리농장 분뇨 처리요령 | 280 |
| 17.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요령 | 283 |
| 18.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요령 | 285 |
| 19.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 293 |
| 20.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요령 | 296 |
| 21.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300 |
| 22. 도축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시 폐쇄조치 해제절차 | 301 |
| 23. 가금농장 알 상차장소 방역관리 요령 | 303 |



별지

| | |
|--|-----|
| 1.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 306 |
| 2. 현지조사표 | 307 |
| 3. 시료채취 내역서 | 308 |
| 3의1. 시료채취 내역서(야생조류) | 309 |
| 4.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전 청소·소독 등 점검표 | 310 |
| 5.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 | 311 |
| 6.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임상검사표(축사별) | 312 |
| 7.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 313 |
| 8. 가축거래기록대장(가금공급농가 및 판매소) | 315 |
| 8의2. 가축거래기록대장(가금 거래상인) | 316 |
| 8의3. 식용란거래기록대장(식용란수집판매업자) | 317 |
| 9. 소독필증 | 318 |
| 9의1. 가금 생축 운송차량 소독 확인증 | 319 |
| 10.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 | 320 |
| 11. 역학조사서 서식 | 321 |
| 12.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기록부 | 351 |
| 12의1호. 가금농장 통제초소 출입기록부 | 352 |
| 13.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 354 |
| 14.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살처분·사체처리 참여자 등) | 355 |
| 15.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체크리스트 | 356 |

고시

| | |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359 |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1 장

조류인플루엔자란?

1. 정의
 2. 병인체
 3. 임상증상 및 부검소견
 4.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
 5. 진단
- ※ 용어 정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1 장

조류인플루엔자란?

1

정의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구분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 시 WOAH에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가 방역상 주요 가축전염병 중 하나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아형(subtype)이 매우 많고 변이가 쉽게 일어나며, 자연 생태계의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에게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가축전염병 중 하나이다.

2

병인체

2.1. 바이러스의 특성 및 항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혈청형은 크게 3종(A, B, C형)으로 분류되며, 그 중 B형과 C형은 사람에게 감염되고, A형 바이러스는 사람을 비롯하여 닭·칠면조·야생오리·돼지·말·밍크·물개 등 다양한 종류의 척추동물에 감염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V)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분류되며, negative sense RNA 바이러스로서 서로 다른 8개의 RNA 분절(segment)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혈구응집소(hemagglutinin, HA)와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NA)의 표면항원 유전자와 M, NP, PB2 등 6개의 내부 유전자(internal gene)로 구성되어 있다.

AI 바이러스는 다양한 아형(subtype)이 있는데 바이러스 표면에 존재하는 혈구 응집소의 특성에 따라 H1부터 H16까지 16종이 있으며, 뉴라미니다제라는 효소가 나타내는 표면 단백질의 특성에 따라 N1부터 N9까지 9종의 아형으로 구분된다. 바이러스의 병원성은 주로 HA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

2.2. 바이러스의 변이와 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감염 후 체내 복제과정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간의 유전자 재편성 (genetic reassortment)으로 인하여 항원성의 대변이(antigenic shift)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항원성 소변이(antigenic drift), 점변이(point mutation) 등에 의해서도 소규모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를 일으키는 AI 바이러스는 모두 H5 또는 H7형이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H5나 H7형의 AI 바이러스는 대부분 비병원성 또는 저병원성 바이러스이다. 그러나 극히 드물지만 때로는 야생조류에서 가금류로 중간의 전파(interspecies transmission)가 나 이루어져 숙주가 변할 경우나 또는 야생조류의 바이러스가 오리나 거위 등을 거쳐 닭이나 칠면조의 가금류로 전파되어 왔을 될 경우 유전자의 급격한 변이가 일어나 H5 또는 H7형 AI 바이러스 중 일부가 고병원성의 특성을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 특히 청둥오리나 가창오리와 같은 물새류에는 아무런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며, 집오리나 거위에 감염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바이러스의 전파방법

닭이나 칠면조 등 가금류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달할 수 있다. 닭에서의 잡복기는 수 시간에서 3일 정도이며, 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서는 무리 수준에서 잡복기를 14일로 정하고 있다. 계군의 크기나 최초 전염경로,

사양관리, 환경 등에 따라 잠복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체별로 보았을 때 대체로 수 시간에서 수일 이내의 짧은 잠복기를 가진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된 닭의 분변 1그램에는 십만 내지 백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이러한 분변에 오염된 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며, 가까운 거리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에 의하여도 전파될 수 있다. 계사 내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사료, 기침 시의 비말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며, 바로 인접한 농가 간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 중의 부유물이 바람에 의해 이동됨으로써 전파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장거리 전파는 주로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또한 중국, 동남아 등 고병원성 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서 유입될 수도 있으며,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3 임상증상 및 부검소견

3.1. 임상증상

닭에서의 주요 임상증상은 사료 섭취량이 줄면서 침울하거나 졸다가 급격한 폐사로 이어지는데, 죽기 직전에 벼슬이나 다리에 청색증(cyanosis)이 나타나고, 안면 종창(swelling)과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며,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도 관찰될 수 있다. 심급성(percute)으로 폐사할 경우 전혀 병변이 없는 경우도 있다. 산란계에서는 산란 저하가 나타나기 전에 폐사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

산란중인 종오리에서는 먼저 사료 섭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약간의 호흡기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사료 섭취량 감소가 나타난 1~2일 후부터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그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육용오리의 경우도 사료 섭취량이 갑자기 감소되고 동시에 폐사율이 증가하면 의심해야 한다. 특히 오리에서는 바이러스에 따라 임상증상과 병원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면밀한 임상관찰이 필요하다.

3.2. 부검소견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닭에서는 통상적으로 안검의 충·출혈, 기관 내 발적 소견, 점액 또는 카탈성 삼출물의 저류, 폐의 충·출혈, 심장의 점상출혈 및 선상의 백색 괴사 소견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선위 점막의 경미한 출혈 소견, 신장 종대 및 요산염 침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장의 심한 유약과 작은 괴사반점, 그리고 췌장의 흰색 괴사가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달리 국내의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닭에서는 골격근의 반상출혈 소견이 종종 관찰되기도 한다. 산란 중인 닭에서는 심한 난포의 파열과 충·출혈이 항상 동반된다.

산란 중인 종오리에서도 닭과 같이 난포의 파열, 위축, 충·출혈 소견이 특징적으로 관찰되며, 난포파열에 따른 난황의 복강내 저류로 복막염이 동반되기도 한다. 육용 오리에서는 간장의 종대과 유약, 폐의 충·출혈, 비장의 종대와 흰색 괴사반점, 췌장의 다발성 괴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4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가능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 사례는 '97년 홍콩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03년의 네덜란드, '04년 베트남과 태국 등 이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현재 인체 감염 사례 대부분은 감염된 닭이나 오리와 매우 빈번히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깃털이나 먼지, 분뇨 등 오염물에 혼재된 바이러스를, 호흡기를 통해 흡입 함으로써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의 사람 간 전파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감염으로 인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조기에 근절되지 않고 토착화 되거나 또는 야생조류와 가금류간에 순환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새로운 변이형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인체감염 위험성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5 진단

조류인플루엔자 진단법으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항원검출 방법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후 동물체내에 생성되는 항체를 검출하는 혈청학적 진단방법이 있다.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항원검출 방법으로는 역전사증합효소연쇄반응(RT-PCR,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기법을 이용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법과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포함한 염기서열 분석법이 폭넓게 활용되며 종란접종을 통한 바이러스 증식법도 바이러스 유무 판별, 혈청아형 및 병원성을 판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분리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시험 기준에 따라 분리한 바이러스를 6주령의 닭에 접종하여 정맥내 병원성지수가 1.2 이상 또는, 4~8주령의 닭에 접종하여 폐사율이 75% 이상일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한다. 또한, H5 및 H7 바이러스의 경우, 혈구응집소(HA)의 병원성 관련 단백질 유전자 분석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확인된 경우 고병원성으로 분류한다.

혈청학적 진단방법으로는 한천-겔 침강반응(AGP)과 혈구응집억제반응(HI)이 사용되고 있으며, 경쟁적 효소면역항체검사법(cELISA)를 이용한 진단방법이 있다. cELISA와 AGP 검사를 한천-겔 침강반응을 통하여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공통 항체를 검출할 수 있으며, 각 혈구응집소(H1~H16)을 항원으로 하여 혈청형에 대한 특이적인 혈구응집억제 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특정 혈청형에 대한 항체존재 유무를 검사한다.



용어 정의

- ▶ 조류인플루엔자(AI) :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닭·오리 등 조류의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고병원성 및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안면, 벼슬, 다리의 부종, 출혈반 또는 청색증이 나타나고, 급작스러운 폐사율 증가와 함께 호흡기증상, 신경증상, 산란율 저하 등 증상이 다양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지정하고 있으며 WOAH 의무 보고 질병이다.
- ▶ 감수성동물 :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돼지·개·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
- ▶ 적용대상 동물 : 닭·칠면조·메추리·오리(생물의 분류체계에 따라 오리과에 해당되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돼지·개·고양이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다만, 가축방역관이 감수성동물 중 임상증상 등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의 경우 적용대상동물에 포함시킬 수 있음
-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 동물질병 방역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1924년 28개 국의 참여로 Th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WOAH)를 창설한 이래 2003년 5월에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OIE라는 공식약칭을 사용하다가 2022년 5월부터 공식약칭을 WOAH로 변경하였다. 2022년 5월 현재 182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 ▶ 발생농장 : 조류인플루엔자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축사)이 있는 농장
- ▶ 발생지 : 발생농장이 소재한 마을로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리 단위 보다 작은 부락단위 개념으로 쥐 등 야생동물의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가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한다.
- ▶ 권역 : 평상시 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지역화한 것을

말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

- ▶ 관리지역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라 한다)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구 관계기관 및 검역본부 현지 파견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 보호지역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00m를 초과하여 3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군·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도 소속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필요한 경우 검역 본부장은 방역지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예찰지역 : 보호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군·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시·도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구 관계기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예찰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방역상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방역지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방역지역 :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발생권역을 말한다.
-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 신고 : 축주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유선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 ▶ 의사환축 검사 :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본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병성감정 검사 :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고병원성 AI 이외의 다른 가축질병에 감염된 여부까지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 ▶ 예방적살처분 검사 :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지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어, 고병원성 AI의 추가확산 또는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판단에 따라 농가의 가금류를 미리 살처분할 때 고병원성 AI가 감염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역학관련 검사 : 고병원성 AI 발생농가 또는 고병원성 AI 오염시설과 사람, 차량 등에 의해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고병원성 AI 오염여부에 대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 상시예찰 검사 : 정부 가축방역관이 가축 방역프로그램(상시예찰검사)에 따라 가금류 등에 대해 고병원성 AI가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유입경계상황 : 중국·대만·홍콩·일본·북한 등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상황
- ▶ 의심축 신고상황 : 축주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유선 등을 통하여 신고된 상황을 말한다.
- ▶ 의사환축 발생상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 즉 의사 환축이 발견되었을 때를 말한다. 의사환축에 대한 즉각적인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발생확인상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동물의 확진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 국가방역역량을 총집결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반드시 초기에 차단하도록 힘써야 한다.

- ▶ 발생확산상황 : 인근지역 및 전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국가 및 전 국민이 합심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근절에 힘써야 한다.
- ▶ 의심축 : 축주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어 신고한 가축으로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본부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 ▶ 의사환축 :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본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으로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인 가축을 말한다.
- ▶ 환축 :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한다.
- ▶ 잠복기 : 특정 병원체가 동물에 침입한 후 그 질병의 최초 임상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 ▶ 살처분 : 국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질병의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서 이는 감염동물 및 동일군 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 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다른 동물군의 동물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살처분된 동물의 사체 혹은 생산물을 통한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체 등은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 ▶ 소독 : 전염병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을 뜻하며, 소독은 동물, 배설물 또는 동물유래 생산물 등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병원체에 오염될 수 있는 동물, 사람, 시설, 운반차량 및 기타 대상물에 대해 실시한다.
- ▶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의사 환축이 발생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또는 발생 시·도(역학적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인접 시·도 등을 포함한다) 또는 계열화사업자 단위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이동중지(48시간 이내 - 필요 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 ▶ 위험도평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이동제한 중인 가축·알·분뇨 등의 이동 또는 축산시설의 운영을 위해 축산업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요인, 역학적 특성 및 정밀검사 등을 감안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 ▶ 운송 :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축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가축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 ▶ 가축운송자 등 : 가축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동물운송자 및 가축 거래상인을 말한다.
- ▶ 방역강화관리대상 : 살아있는 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 및 상기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장(임시 사육하는 계류장 포함)과 식용란 수집판매 업자를 말한다.
- ▶ 이동제한 : 전염병의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되었거나 역학적으로 관련되어진 시설·물건·차량·사람 등에 정해진 기간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 ▶ 역학조사 : 전염병의 원인과 전파와 관련된 요인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를 말한다.
- ▶ 거점소독시설 : 시설출입차량이 방역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 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는 시설로, 시·군·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설치·운영 하는 시설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정받은 민간시설을 말한다.
- ▶ 긴급 백신접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 또는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의 가금류 가축에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 ▶ 백신주 : 백신제조용 바이러스로, 실험동물에 접종실험을 거쳐서 질병에 방어할 수



있는지 능력평가를 마친 바이러스를 말한다.

- ▶ 항원뱅크 :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로, 백신주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냉동 비축해 놓은 상태를 말한다.
- ▶ 계통군(Clade) : 바이러스 계통 분기를 구별하기 위해 정한 분류기준을 말한다.
- ▶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 가금 도축장 소속이거나 계약 관계인 시설출입차량이 생축을 상차한 가금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해당 도축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사전에 소독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별도로 지정받은 가금 도축장을 말한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2장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사항

-
1. 위기 경보 단계(주의) 및 주요 방역 조치사항
 2. 가금농장 예찰·검사 및 의심축 신고 강화
 3.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및 위험주의보 운영
 4.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 출입제한
 5.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6. 특별방역대책기간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7.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8. 대규모 가금농장 등 통제초소 설치·운영
 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제한
 10. 소규모 가금농장 수매·도태
 11. 전통시장에서 산 가금(초생추·중추, 오리, 산란성계, 육계) 유통 제한
 12. 일제 입식 및 출하 운영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2 장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사항

1 위기 경보 단계(주의) 및 주요 방역 조치사항



I. 기본원칙

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은 해외에서 도래하는 겨울철새로 인해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10월~2월, 필요시 연장)로 정부와 지자체, 방역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등은 경각심을 갖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는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심각’, 총 3단계로 운영되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되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되고,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상황실 운영 및 가금농장과 야생조류 예찰 강화, 축산차량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발생 등 상황 발생 시 위기단계는 조정될 수 있음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 1.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 단계로 조정하고 ‘주의’ 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 및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 전파
 - 1.2. 아래 내용이 포함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수립·시행 및 지도·홍보
 - 1.2.1. 야생조류 예찰·검사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1.2.2. 가금농장 예찰·검사 강화 및 방역 지도·점검
 - 1.2.3. 축산 관계 시설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 1.2.4.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1.2.5. 사람과 차량 등 매개체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 1.2.6. 가금농장 입식 및 출하 관리 강화
 - 1.2.7. 방역 취약대상 관리
 - 1.2.8.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 1.2.9. 방역수칙 등 지도·홍보 강화
 - 1.2.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시 대응방안
 - 1.3.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 이행상황 점검

- 1.4. 비상 상황 대비 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1.5. 관계기관 및 지자체별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2.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 2.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방역조치 시행
 - 2.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예찰·검사 및 방역 지도·점검 등 조치 시행
 - 2.3.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른 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사항 이행
 - 2.4. 비상 상황 대비 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2.5. 비상 상황 대비 기동방역기구 인력 편성·관리
3. 지자체(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시·군·구)
 - 3.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방역조치 시행
 - 3.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예찰·검사 및 방역 지도·점검 등 조치 시행
 - 3.3.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사항 이행
 - 3.4. 비상 상황 대비 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3.5. 비상 상황 대비 초동대응팀 및 현장 기동조치팀 사전 편성, 방역 인력 (동원 가능한 인력 포함) 및 물자 등 자원 실태 파악·관리
 - 3.6. 발생 대비 거점소독시설 설치 장소 사전 지정(시·군 단위 3개소 이상) 및 지정 도축장 운영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 3.7. 관할 지역 내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등록된 시설출입차량, 가금 계열화 사업자, 가금류 유통 전통시장 등 방역조치 대상 현황 파악
 - 3.8.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가금 계열화사업자, 가금류 유통 전통시장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방역수칙 및 인체감염 예방수칙 교육·홍보
 - 3.9. 발생 대비 살처분에 동원되는 차량·장비·물품 및 인원 등 조달 계획을 사전 수립하고, 밀집사육단지 등 대규모 발생 대비 살처분 계획은 별도로 수립
 - 3.9.1. 살처분 예비 인력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백신 사전 접종, 인체감염 예방 및 방역수칙 등 사전 교육 실시
 - 3.9.2. 살처분 예비 인력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축협, 계열화사업자, 처리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인력 동원은 살처분 농장의 사육규모별로 정함(필요시 군부대 협조 요청)

3.10. 가금농장별 전담관 지정·운영

3.10.1 전담관은 가금농장에게 방역수칙 및 긴급방역조치 등을 직접 전달·지도하는 역할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급적 1개 농장별 1명의 전담관 운영

3.10.2 원활한 전담관 운영을 위해 각 지자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 전담관을 지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방역수칙과 전담관의 임무·역할 등 교육 실시

3.11. 관할지역 내 축산관계자가 모이는 행사 개최 시 방역조치 지원

3.12.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가축거래상인 계류장 및 가금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 일제 휴업·소독의 날은 평시 월 1회(4번째 수요일*),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월 2회 (2·4번째 수요일), 발생 시는 매주 수요일로 한다.

* 일제 휴업·소독의 날이 3·5일장 등 장날과 겹쳐 휴업·소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관리·감독 하에 익일 운영 가능

3.13. 시·군·구 단위 가상방역훈련(CPX) 실시(연 1회 이상)를 통해 발생 대비 초동대응 계획, 인력·장비 등 동원 계획 및 살처분 준비 상황 등 사전 점검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4.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방역조치 시행

4.2.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예찰·검사 및 시료채취, 방역 지도·점검 등 조치 시행

4.2.1 가금농장에서 시료 채취 거부 시에는 관할 지자체에 알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및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4.3.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이행

4.4. 비상 상황 대비 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4.5. 비상 상황 대비 초동대응팀 사전 편성, 방역 인력 및 물자 등 자원 실태 파악·관리

4.6. 가금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 강화(월 1회 이상)

4.6.1. 전화 예찰 미응답 시에는 3일 연속으로 전화 예찰을 실시하되 지속적으로 미응답할 경우 관련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

4.6.2. 해외여행 축산농장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입국일 기준 7일, 14일, 21일째 주기적 전화예찰 실시

4.7. 가상방역훈련(CPX) 실시(연 1회 이상)를 통해 발생 대비 초동대응 계획, 인력·장비 등 동원 계획 등 사전 점검

- 4.8. 철새도래지 등 야생조류 예찰·검사 강화를 위한 시료채취
- 4.9. 가금농장 정보 현행화 지속 추진

5. 농협

- 5.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소독 지원 등 방역조치 이행 협조
- 5.2.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특별방역대책기간 조치사항 이행
- 5.3.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방역 인력 및 물자 등 자원 실태 파악·관리
- 5.4. 초동대응용 방역 장비 및 용품 비축
 - 5.4.1. 전국 권역에 생석회, 소독제, 방역복 등 비축

* 방역용품 비축기지는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에서 필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축산컨설팅부는 지역본부 요청에 따라 적정량의 방역용품을 재비축
- 5.5.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통해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주변 도로, 취약 대상 등 소독 지원
- 5.6. 농협 계통 조직 및 조직원,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방역 지도·교육
- 5.7. 농협 전체 계통 조직(본부, 지역본부, 농·축협, 관련 사업장 등)에 차단방역 현수막 게시 등 방역 홍보 협조
 - 5.7.1. 설, 추석 등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도록 지도하고 방역수칙 준수 홍보

6. 생산자단체

- 6.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 및 긴급행동지침 등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지도·홍보
- 6.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모임 자체 홍보
- 6.3. 단체별 회원 농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홍보
 - 6.3.1. 한국토종닭협회는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종사자 및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일제 휴업·소독의 날 준수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가금농장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

1.1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1.1.1 부득이 농장에 출입하는 경우 철저히 소독 후 출입

1.1.2 논·밭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농장 외부 보관, 부득이 농장 진입 시 세척·소독

1.2 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야산 등 출입금지

1.3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1.4 농장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매일 확인

1.4.1 농장 울타리, 차량 진입 차단시설, 야생조수류 차단망, 신발소독조 등 상태 확인

1.4.2 겨울철 소독시설이 얼지 않도록 보온 관리

1.5 축사 진입 전 손 소독과 신발(장화) 갈아신기 준수

1.6 다른 농장과 사육 기자재·도구·장비 등 공용 사용 금지

1.7 사육 가금에 대한 임상 관찰을 매일 실시하고 이상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1.8 야생동물 유인 차단을 위해 사료빈과 퇴비장 청결 관리

1.9 축사 내외부와 전실은 매일 청소·소독, 소독시설이 없는 출입구는 사용 금지

1.10 구서·구충 활동

2.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제한, 가금 방사사육 금지, 농장 진입로 등 생석회 도포,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소독필증 확인) 등 조치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구비하고, 법 제17조의 6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연중)

3.1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리하는 등 보완 조치 이행

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의2에 따라 가금 입식 전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자체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관할 시·군·구에 입식 사전 신고(연중)

5.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한 가축방역관(방역사)의 시료채취에 적극 협조(연중)
 - 5.1 가금농장에서 시료채취 거부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 및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육하는 가금에 대한 폐사 및 산란 현황을 관할 시·군·구에 매 분기 5일까지 제출(연중)
 - 6.1 축사별로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축사별로 당일 산란율이 최근 7일 간의 평균 산란율보다 3% 이상 저하되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고
 - * 별지 제10호 서식의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 참조
7.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농장 종사자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 실시
8. 가금 농장 간 모임 및 방문 차제

2

가금농장 예찰·검사 및 의심축 신고 강화

I. 기본원칙

1. 가금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사육하는 가금을 매일 살펴보고, 폐사율 증가 또는 산란율 감소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 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의심축 신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가금농장에서 예찰을 꼼꼼히 실시하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홍보하여야 한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 1.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적용할 가금농장 등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계획을 마련·시행
 - 1.1.1. 예찰·검사 계획에는 종오리, 육용오리, 종계, 산란계, 메추리, 특수가금(오골계·청계·기러기·거위 등) 등 취약 가금 축종에 대한 정기검사 계획을 포함
 - 1.1.2.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 주변의 소하천·저수지·농경지, 농장 진입로, 농장, 차량, 장비·물품, 축산 관련 시설 등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 1.2. 가금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도 자체적으로 지도·홍보하도록 조치

2. 농림축산검역본부

- 2.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기획 예찰·검사 실시
 - * 기획 예찰·검사는 농식품부의 지시 또는 검역본부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
- 2.2. 가금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임상증상과 신고 방법 등을 지도·홍보
- 2.3. 시·도 가축방역기관(검사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능력 등에 대한 정도 관리

3. 지자체(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시·군·구)
 - 3.1.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강화된 예찰·검사 계획을 이행
 - 3.2. 가금농장에서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을 꼼꼼히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예찰 및 신고요령 등을 홍보
 - 3.3. 가금농장에서 폐사 및 산란 현황 기록 및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홍보하고, 관련 보고 실적 및 이상 시 보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4.1.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시료 채취업무 이행
 - 4.1.1. 시료 채취 요원이 농장 진입 시 소독 및 방역복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 4.2. 가금농장에서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을 꼼꼼히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예찰 및 신고요령 등을 홍보
5. 수의사회
 - 5.1. 소속 수의사가 가금농장 예찰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확인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홍보
6. 생산자단체
 - 6.1. 단체별 회원 농장,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 가금에 대한 예찰을 꼼꼼히 실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가금농장 종사자는 사육하는 가금을 매일 살펴보고, 폐사율 증가 또는 산란율 감소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 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
2. 수의사, 계열화사업자 소속 농장 관리자 등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을 확인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제4장. 2.의심축을 발견한 축산 관련 종사자의 조치)에 따라 농장 내 대기 및 소독 등 방역조치에 따르도록 지도·홍보

3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및 위험주의보 운영

I. 기본원칙

- 농식품부(검역본부)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협력하여 철새 도래 현황, 예찰·검사 결과 등 정보를 관계기관 및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하여 방역활동에 활용하도록 조치한다.
- 검역본부는 철새 정보 알림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에 철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방역 활동에 활용하도록 조치한다.
 - 국내 특정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다수 검출 또는 야생조류 서식 밀도 증가 등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 각 지자체는 철새 관련 정보를 농가에 상시 제공하여 철새가 다수 도래한 지역,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지역 등 주변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여야 한다.

II.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 운영

- 검역본부는 철새 도래 단계(4단계)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고 단계별 방역수칙을 관계기관, 지자체, 관련 단체 등에 지도·홍보한다.



| 단계 | 발령 기준 및 알림 내용 | |
|-------|---------------|--|
| 철새 도래 | 발령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새 국내 도래 시작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모니터링 및 동시센서스) 및 농어촌공사(저수지 예찰) 등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 겨울철새(오리·기러기·고니류)의 국내 도래 확인 시 전국 발령 |
| | 알림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 철새가 국내에 도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금농가 등에서는 가축과 철새 접촉 차단, 농가 출입 시 사람·차량·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철새 밀집 | 발령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래지별 겨울철새 밀집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모니터링 및 동시센서스) 및 농어촌공사(저수지 예찰) 등 조사 결과, 오리·기러기·고니류가 5천 수 이상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확인 시 |
| | 알림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철새도래지에 야생조류가 밀집 서식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가금농가 등에서는 철새 접촉 차단 및 농가 내외부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철새 주의 | 발령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거나, 철새도래 또는 철새밀집 단계 발령 이후 야생조류에서 H5·H7형 AI 항원 검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래 철새 복상 후 철새관심 단계 발령 시까지 |
| | 알림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O지역 야생조류(OO)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습니다.(OO지역 야생조류(OO)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철새 도래지 접근을 삼가 하시고, 농가 주변 소독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철새 관심 | 발령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래 철새가 대부분 복상한 때부터 다른 경보단계 발령 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농가 등에 정보 제공 |
| | 알림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 철새 대부분이 복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농가 소독 및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II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 발령

1. 검역본부는 특정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다수 검출 또는 야생조류 서식 밀도 증가 등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2. 위험주의보가 발령되면 각 지자체 및 가금 관련 단체 등은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가금 계열화사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출입통제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위험주의보 발령 시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방역수칙(예시)

▣ 가금농장

| | |
|-------|--|
| 농장 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외부에서 용무),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 농기계·차량은 세척·소독 후 농장 출입,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낚시·산책 등)와 소하천, 야산 방문 금지 |
| 농장 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설비, 울타리,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겨살포기,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 마당,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소독, 쥐·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
| 축사 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 출입시 방역복·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장화 갈아신기 준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설사, 기침, 졸음,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

▣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 | |
|-------|--|
| 농장 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철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금 수송용기(어리장), 식용란 운반 용기(난좌, 파레트, 합판) 등 소독 철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시설 내·외부를 매일 세척·소독하여 오염원 제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쥐·새 등) 차단용 그물망 설치 |
| 농장 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드시 GPS 단말기 장착, 임의로 전원 끄는 행위 금지, 고장시 즉시 수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 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입구에서 3단계 소독 실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진입 금지(우회로 이용) |

*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분뇨비료업체,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4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 출입제한

I. 기본원칙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인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은 제한된다.
-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및 시설출입차량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철새도래지의 통제구간에 출입하여서는 안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1.1 출입제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정

1.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및 시설 출입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를 지정한다.

1.2 출입제한 대상 지정

1.2.1 사람

가.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에 출입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은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을 의미한다.

다. 축산 관계 시설(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의 종사자

1.2.2 시설출입차량

가.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1.3 세부 출입 통제구간 지정

1.3.1 출입제한 대상 철새도래지(1.1) 주변의 통행로 및 도로 중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거나 겨울철새 서식이 많은 지점으로부터 반경 3km 내 해당하는 통행로 및 도로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1.4 출입 통제구간의 홍보

1.4.1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정보를 가금농장 및 생산자단체, 축산 관계 시설,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에 홍보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2.1 출입 통제구간의 전산 좌표 설정

2.1.1 검역본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해진 출입 통제구간에 대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으로 GPS 좌표를 설정하고, 해당되는 시설출입차량이 출입 통제구간에 진입 시 시설출입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우회 안내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2 출입 통제구간의 홍보

2.2.1 검역본부는 KAHIS에 등록된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출입 통제 시기와 내용,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문자 발송을 통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2.3 시설출입차량 출입 통제상황 점검

2.3.1 검역본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출입이 통제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해당되는 시설출입차량의 출입 여부를 KAHIS를 통해 지속 확인하고, 출입이 의심되는 차량의 정보(차량번호, 출입일시, 등록지, 차량의 종류, 소속 등)를 시설출입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지속 송부한다.

3. 지자체

3.1. 시·도

3.1.1 세부 출입 통제구간 지정·보고

가. 시·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시·군·구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관내 철새도래지 및 철새도래지 반경 3km 내 통행로 및 도로 가운데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세부 구간을 정하도록 조치한다.

- 나. 시·도는 매년 9월 1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관내 철새도래지 주변 통행로 및 도로에 대한 정보(지도 정보를 포함한다.)를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한다.

3.1.2 출입 통제구간의 홍보

- 가. 시·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정보를 관내 가금농장 및 생산자단체, 축산 관계 시설,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에 홍보한다.
- 나. 시·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시·군·구로 하여금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철새도래지 주변 통행로 및 도로에 안내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과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3.1.3 행정명령 이행상황 점검

- 가. 시·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시·군·구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도록 조치하고, 조치사항을 점검한다.

3.2. 시군구

3.2.1 세부 출입 통제구간 지정·보고

- 가. 시·군·구는 매년 8월 31일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관내 철새도래지 및 철새도래지 반경 3km 내 통행로 및 도로 가운데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세부 구간을 지정하고 시·도에 보고한다.

* 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거나 겨울철새 서식이 많은 지점으로부터 반경 3km 내 해당하는 통행로 및 도로 중 주변 지역의 가금농장 분포 등 지리적 여건과 방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지정

3.2.2 행정명령

- 가. 시·군·구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령 및 명령의 목적과 지역, 대상자 및 대상 차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고, 「기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발부한다.

* 행정명령 세부 내용은 별표 13를 참조

3.2.3 출입 통제구간의 홍보

- 가. 시·군·구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정보를 관내 가금농장 및 생산자단체, 축산 관계 시설,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에 홍보한다.
- 나. 시·군·구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철새도래지 주변 통행로 및 도로에 안내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3.2.4 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

- 가. 시·군·구는 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기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입통제 명령을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검역본부에서 KAHIS를 통해 확인한 출입통제구간 진입 차량 명단 확인, 자체 자체 점검 결과 출입통제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차량 또는 사람

4. 생산자단체

4.1 출입 통제구간의 홍보

- 4.1.1. 생산자단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철새도래지에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통제 된다는 내용과 해당 통제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위반 시 벌칙 등 정보를 소속 가금농장 및 가금 계열화사업자*,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등에 홍보한다.

*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에 출입금지

- 1.1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 및 가금농장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통행로, 소하천과 저수지 등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1.2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등은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철새도래지별 출입 통제구간을 확인하고, 해당 통제구간에 출입을 금지한다.
- 1.3 시설출입차량 운전자는 운전 중 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철새도래지 우회 안내 방송이 들리거나, 출입통제 안내판 등을 확인한 경우 해당 구간을 우회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 상세 통제구간 정보를 모를 경우, 관할 시·군·구 방역부서에 문의하여 우회 통행

5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I. 기본원칙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인 야생조류로부터 가금농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로부터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은 방사사육(방목)을 금지해야 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사사육 금지 조치가 의무 시행된다.
2. 가금농장의 종사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사육하는 가금을 그물망 등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해서는 안되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방사사육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2.1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1.1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지시

- 1.1.1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하도록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관련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 1.1.2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에는 각 지자체(시·도)에서 상기 행정조치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전환하여 시행 하도록 조치한다.

1.2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지도·홍보

- 1.2.1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2.1 가금농장 방사사육 준수실태 지도·점검

2.1.1 검역본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2.1.2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에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가금농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아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한다.

3. 지자체

3.1. 시·도

3.1.1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지시

가. 시·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관내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하도록 행정조치한다.

나. 시·도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관내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의 목적과 지역, 대상자 및 대상 차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여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발부한다.

* 행정명령 세부 내용은 별표 13를 참조

3.1.2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지도·홍보

가. 시·도는 관내 가금농장 및 생산자단체, 축산 관계 시설,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3.1.3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준수실태 점검

가. 시·도는 시·도 자체 또는 시험소, 시·군·구 등으로 하여금 관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3.1.4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

가.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도는 위법사항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명령을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특정 시설 또는 장비(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를 갖춘 농장의 경우 방사사육(방목)을 할 수 있으나,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시설·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3.2. 시군구

3.2.1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지도·홍보

가. 시·군·구는 관내 가금농장 및 생산자단체, 축산 관계 시설,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3.2.1 관내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준수실태 점검

가. 시·군·구는 관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3.1.4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

가. 시·군·구는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별칙 부과 조치와 별도로, 해당 농장에 대하여 방사사육을 즉시 금지하도록 지도한다.

4. 생산자단체

4.1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지도·홍보

4.1.1. 생산자단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행정명령 내용 및 위반 시 별칙 등 정보를 소속 가금농장 및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에 홍보한다.

*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1.1 가금농장 종사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사육하는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지 않는다.

1.2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조치가 의무 시행되므로 사육하는 가금을 축사 외에서 사육하거나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 놓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특별방역대책기간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I. 기본원칙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에서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2.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 2.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2.4 오리농장은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공용 사용 금지
 - 2.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2.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2.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물 등으로 출입 금지
 - 2.8 가금농장 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알 운반차량 등)의 진입 금지
 - 2.9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진입을 허용하고, 소독 등 관리

※ 가금농장에서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1.1 가금농장 생석회 도포 등 강화된 방역기준 공고

1.1.1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라목과 제5호에 따라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가금농장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강화된 방역기준”을 공고한다.

* 공고 세부 내용은 별표 14을 참조

1.2 가금농장 생석회 도포 등 강화된 방역기준 지도·홍보

1.2.1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2.1 가금농장 생석회 도포 등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실태 지도·점검

2.1.1 검역본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에서 강화된 방역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2.1.2 검역본부는 가금농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가금농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정구 받아 해당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한다.

3. 지자체

3.1. 시·도

3.1.1 관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기준 지도·홍보

가. 시·도는 관내 가금농장 및 생산자단체, 축산 관계 시설,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강화된 방역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지도·홍보한다.

3.1.2 관내 가금농장 생석회 도포 등 강화된 방역기준 점검

가. 시·도는 시·도 자체 또는 시험소, 시·군·구 등으로 하여금 관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3.2. 시군구

3.2.1 관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기준 지도·홍보

가. 시·군·구는 관내 가금농장 및 생산자단체, 축산 관계 시설,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강화된 방역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지도·홍보한다.

3.2.2 관내 가금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도포 등 소독요령 점검

가. 시·군·구는 관내 가금농장 강화된 방역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3.2.3 가금농장 생석회 도포 등 강화된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

가. 시·군·구는 강화된 방역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강화된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4. 생산자단체

4.1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기준 지도·홍보

4.1.1. 생산자단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 농장에서 강화된 방역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을 지도·홍보한다.

*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특별방역대책기간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1.1 가금농장 종사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아래의 강화된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1.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1.1.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1.1.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1.1.4 오리농장은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공용 사용 금지

1.1.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1.1.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1.1.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물 등으로 출입 금지

1.1.8 가금농장 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차량(알 운반차량 등)의 진입 금지

1.1.9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진입을 허용하고, 소독 등 관리

※ 가금농장에서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7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I. 기본원칙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매개체인 축산차량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 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축산차량은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 또는 소독확인증* (이하 “소독필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지정받은 도축장에 방문하는 생축 운반차량의 경우 : 소독확인증
2. 가금농장의 종사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3. 전국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기축방역기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축산차량이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한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 1.1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

1.1.1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은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도록 조치

* 행정명령 세부 내용은 별표 13를 참조

1.1.2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라목과 제5호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은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는 보관하도록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강화된 방역기준”을 공고한다.

* 공고 세부 내용은 별표 14를 참조

1.2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지도·홍보

1.2.1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차량은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가금농장은 방문 차량에 대하여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는 보관토록 지도·홍보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2.1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지도·홍보

2.1.1 검역본부는 KAHIS에 등록된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 소독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용,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문자 발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2.2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태 점검

2.2.1 검역본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과 축산차량이 거점소독시설 소독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가.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점검 시 출입기록부 또는 소독실시기록부와 대조, CCTV 확인, 보관 중인 소독필증 확인 등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필요 시 KAHIS를 통해 해당 축산차량의 이동동선을 확인하여 점검한다.

2.2.2 위반 농장 또는 축산차량에 대한 조치

가. 검역본부는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등 점검 결과, 행정명령 또는 공고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차량으로부터 확인서를 정구받아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한다.

* KAHIS를 통해 확인된 거점소독시설 미소독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차량번호, 등록지, 차량의 종류, 이동동선, 방문한 농장 또는 시설, 위반의심 일시·시간 등)를 시설출입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송부한다.

3. 지자체

3.1. 시·도

3.1.1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조치

가. 시·도는 시·군·구로 하여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하도록 조치한다.

3.1.2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지도·홍보

가. 시·도는 관내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축산 관계 시설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 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은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을 것
- 가금농장은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는 보관할 것

*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의 경우 소독확인증을 확인하고 보관할 것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시·도는 관내 거점소독시설의 운영현황(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축산차량의 운전자 등이 KAH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통해 현행화한다.

3.1.3 행정명령 및 공고 이행상황 지도·점검

가. 시·도는 시·도 자체 또는 시험소, 시·군·구 등으로 하여금 관내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 소독 관련 명령과 공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 시·도는 지도·점검 시 균무자 복무상태, 균무요령 숙지 상태,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 차량·대인 소독 시 적절성, 소독약품에 따른 희석배율 준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시·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거점소독시설 내 차량 진출입로 및 대인 소독 시설 등에 대한 세척·소독과 시설·장비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시·도는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등 점검 결과, 행정명령 또는 공고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차량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아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1.4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필요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현황(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KAHIS에 즉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3.2. 시군구

3.2.1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가. 시·군·구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거점소독시설 설치 장소를 미리 선정 및 설치를 준비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차질없이 운영하여야 한다.

* 거점소독시설 설치장소 등은 시·군·구가 시·도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군 및 10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발생 시군 등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군의 경우 3개소 이상, 이외 시군에는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시·군·구는 관내 거점소독시설의 운영현황(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등)을 축산차량의 운전자 등이 KAH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즉시 현행화 한다.

3.2.2 행정명령 및 공고

가. 시·군·구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관련 행정명령 발령 및 명령의 목적과 지역, 대상자 및 대상 차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발부한다.

나. 시·군·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제4호 라목과 제5호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은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는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금농장을 방문하는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확인요령” 공고 내용을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3.2.3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지도·홍보

가. 시·군·구는 관내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축산 관계 시설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아래 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은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을 것
- 가금농장은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는 보관할 것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2.4 위반 농장 또는 축산차량에 대한 조치

가.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군·구는 위법사항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명령을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축산차량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지 않고 가금농장 또는 가금 관련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한 사례 등

나. 시·군·구는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관련 공고를 위반한 자*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공고를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가금농장에서 농장에 출입한 축산차량에 대해 소독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소독필증을 미보관한 사례 등

4. 생산자단체

4.1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지도·홍보

4.1.1. 생산자단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 관련 아래 내용을 소속 가금농장 및 가금 계열화사업자,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등에 홍보한다.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은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을 것
- 가금농장은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는 보관할 것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소독

1.1 축산차량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 및 가금농장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는 농장 및 시설을 방문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8

대규모 가금농장 등 통제초소 설치·운영

I. 기본원칙

1. 가금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장과 밀집사육단지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잦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산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원종계·원종오리, 순계 등 산업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가금 축종 또는 동절기 대비 방역점검 결과 미흡 농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3. 가금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의 역할은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및 기록, 출입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등이며, 가금농장 및 지자체 등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초소 근무자에 대해 방역요령을 교육하고 이행 상황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1.1 대규모 가금농장 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방역지침 시달

1.1.1 농장 통제초소 설치·운영 대상 가금농장 : 20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및 종계 농장, 가금 밀집사육단지, 원종계, 원종오리, 토종닭 순계 농장, 그 밖에 방역상 필요한 농장 등

* 다만, 시·군·구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도와 협의를 거쳐 설치·운영 대상을 조정할 수 있음

1.1.2 농장 통제초소 운영 시기 : 특별방역대책기간(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1.1.3 농장 통제초소 운영 주체 : 가금농장 또는 지자체(시·군·구)

1.1.4 농장 통제초소의 역할 : 사람과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및 기록, 출입자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기타 방역조치에 필요한 사항 등

* 세부사항은 별표 17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요령에 따라 조치

1.1.5 이외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 조치

- 가. 대규모 가금농장 및 가금 밀집사육단지, 원종계·원종오리, 순계 등 농장은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주변(반경 3km) 가금농장과 사람·차량·장비 등을 공용 사용하지 말 것을 지도·홍보
- 나. 대규모 가금농장은 방역관리책임자를 통해 농장의 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육 가금의 폐사율·산란율 변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유무를 면밀하게 예찰
- 다.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 강화(지자체 지원)
- 라. 주변(반경 3km) 소규모 가금농장 적극 수매·도태(지자체 지원)

2. 농림축산검역본부

2.1 대규모 가금농장 및 밀집사육단지 방역실태 지도·점검

- 2.1.1 검역본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대규모 가금농장 및 밀집사육단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 가. 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가금농장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아 해당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한다.
- 나. 통제초소 운영 및 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지도 내역 등을 통보한다.

3. 지자체

3.1. 시·도

- 3.1.1 대규모 가금농장 및 밀집사육단지에 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방역지침 이행
 - 가. 시·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관내 대규모 가금농장, 밀집 사육단지, 원종계·원종오리, 순계 등 사육 농장에서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치한다.
 - 나. 시·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상기 농장 또는 밀집사육단지 등의 교차오염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조치(1.1.5)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대규모 가금농장은 방역관리책임자를 통해 농장의 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육 가금의 폐사율·산란율 변화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유무를 면밀하게 예찰
 -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 강화(지자체 지원)
 - 주변(반경 3km) 소규모 가금농장 적극 수매·도태(지자체 지원)

3.1.2 대규모 가금농장 등 방역실태 지도·점검

가. 시·도는 시·도 자체 또는 시험소, 시·군·구 등으로 하여금 관내 대규모 가금농장, 밀집사육단지, 원종계·원종오리, 순계 등 사육 농장, 방역점검 미흡농장에서 통제초소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3.2. 시군구

3.2.1 대규모 가금농장 및 밀집사육단지에 통제초소 설치·운영 등 방역지침 이행

가. 시·군·구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방역지침에 따라 관내 대규모 가금농장, 밀집사육단지, 원종계·원종오리, 순계 등 사육 농장, 방역점검 미흡농장에서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치한다.

* 통제초소의 운영 주체는 농장 또는 지자체(시군구)이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시·도)에서 일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나. 시·군·구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상기 농장 또는 밀집사육단지 등의 교차오염 차단을 위한 방역강화조치(1.1.5)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2.2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자에 대한 근무요령 교육

가. 시·군·구는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자가 근무요령을 숙지하고 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 세부사항은 별표 17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요령에 따라 조치

▣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 요령

1. 방역복 착용 후 초소에서 모든 출입 차량과 출입자를 빠짐없이 통제하고 기록
* 농장 내 출입이 허용된 사람·차량 이외에는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진입 가능불가 차량 등은 시군구에 확인)
2. 차량 소독필증(날짜·출발지·목적지 확인) 확인 및 소독필증이 없는 차량은 진입을 통제
3. 출입차·출입차량(바퀴 등 차량 하부 및 내부 필히 소독)에 대한 소독 실시
* 소독제 유효기간과 희석배율을 수시 확인하여 필히 준수해야 함

3.2.3 대규모 가금농장 등 방역실태 지도·점검

가. 시·군·구는 관내 대규모 가금농장, 밀집사육단지, 원종계·원종오리, 순계 등 사육 농장, 방역점검 미흡농장에서 통제초소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강화된 방역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9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제한

I. 기본원칙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매개체인 사람과 축산차량, 축산 관련 기자재 등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금농장에 출입이 제한된다.
- 가금농장 종사자 및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은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명령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 1.1 가금농장 등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령 조치
 - 1.1.1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별표 13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령하도록 지시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요약 |

| 행정명령 | 종오리 | 육용오리 | 종계 | 산란계 | 육계 | 토종닭 | 메추리 | 기타 |
|---|-----|------|----|-----|----|-----|-----|----|
|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 ○ | ○ | ○ | ○ | ○ | ○ | ○ | ○ |
|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 | - | - | ○ | - | - | - | - |
|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 | - | - | ○ | - | - | ○ | - |
|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 | ○ | ○ | ○ | ○ | ○ | ○ | ○ | ○ |
|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 ○ | - | ○ | - | - | - | - | - |
|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 | ○ | ○ | ○ | ○ | ○ | ○ | ○ | ○ |
|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 제한 | ○ | ○ | ○ | ○ | ○ | ○ | ○ | ○ |
|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 | ○ | ○ | ○ | ○ | ○ | ○ | ○ |

1.2 가금농장 등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지도·홍보

1.2.1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2.1 가금농장 등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지도·홍보

2.1.1 검역본부는 KAHIS에 등록된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행정명령 내용,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문자발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2.2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실태 점검

2.2.1 검역본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이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가.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점검 시 출입기록부 또는 소독실시기록부와 대조, CCTV 확인, 보관 중인 소독필증 확인 등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필요 시 KAHIS를 통해 해당 축산차량의 이동동선을 확인하여 점검한다.

2.2.2 위반 농장 또는 축산차량 등에 대한 조치

가. 검역본부는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등 점검 결과, 행정명령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차량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아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한다.

* KAHIS를 통해 확인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정보(차량번호, 등록지, 차량의 종류, 이동동선, 방문한 농장 또는 시설, 위반의심 일시·시간 등)를 시설출입차량 등록기관할 지자체에 송부한다.

3. 지자체

3.1. 시·도

3.1.1 가금농장 등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령 조치

가. 시·도는 시·군·구로 하여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아래 행정명령을 발령하도록 지시하고 발령 여부를 점검

3.1.2 가금농장 등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지도·홍보

가. 시·도는 관내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축산 관계 시설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행정명령 내용,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지도·홍보한다.

3.1.3 행정명령 이행상황 지도·점검

- 가. 시·도는 시·도 자체 또는 시험소, 시·군·구 등으로 하여금 관내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한다.
- 나. 시·도는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등 점검 결과, 행정명령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차량 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아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2. 시군구

3.2.1 행정명령 및 공고

- 가. 시·군·구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가금농장 등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령 및 명령의 목적과 지역, 대상자 및 대상 차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발부한다.

3.2.2 가금농장 등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지도·홍보

- 가. 시·군·구는 관내 가금농장 및 축산차량, 축산 관계 시설 생산자단체,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출입통제 행정명령 내용,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지도·홍보한다.

3.2.3 가금농장에 외부인 진입 시 신고 접수 및 방역수칙 지도

- 가. 시·군·구는 행정명령에 따라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이 진입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신고접수 대장을 작성하고, 농장 진입 전 소독, 방역복 및 덧신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3.2.4 위반 농장 또는 축산차량 등에 대한 조치

- 가. 가금농장 등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군·구는 위법사항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명령을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생산자단체

4.1 가금농장 등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지도·홍보

4.1.1. 생산자단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출입통제 행정명령 내용을 소속 가금농장 및 가금 계열화사업자,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등에 홍보한다.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금농장 등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철저

1.1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외부인과 외부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2 가금농장은 농장별 출입통제 행정명령 내용을 숙지하고 농장 내 출입이 불가한 사람과 차량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명령 예외조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 방역복 착용, 손과 신발 소독, 방역수칙 서약서 (별표 21) 제출 등 명령별로 정하고 있는 방역조건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10 소규모 가금농장 수매·도태

I. 기본원칙

1. 소규모 가금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2021.10.13. 시행)에 따라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특별 방역대책기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 등은 수매·도태할 것을 권고한다.
* 소규모 가금농장 : 사육시설 50m² 이하 가금농장
2. 특히, 가금 밀집사육단지, 대규모 가금농장, 종축장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피해가 큰 농장의 경우, 주변 소규모 가금농장과 차량·장비 및 기자재 등을 공용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주변 소규모 가금농장은 사육을 자제하고 수매·도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3. 지자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자체 소규모 농장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시기 수매·도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매·도태한 농장에 대해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재입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1.1 소규모 가금농장 수매·도태 권고

1.1.1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매·도태를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2.1 소규모 가금농장 지도·점검

2.1.1 검역본부는 소규모 가금농장 지도·점검을 통해 방역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 내역 등을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2.2 소규모 가금농장 실태 조사 및 수매·도태 권고

2.2.1 검역본부는 KAHIS를 통해 가금 밀집사육단지, 대규모 가금농장, 종축장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피해가 큰 농장 주변의 소규모 가금농장의 사육실태를 파악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며,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수매·도태하도록 권고한다.

3. 지자체

3.1. 시·도 및 시군구

3.1.1 소규모 가금농장 실태 조사 및 수매·도태

- 가. 각 지자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 관내 소규모 가금농장 사육실태를 조사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방역시설이 취약한 농장 및 가금 밀집사육단지, 대규모 가금농장, 종축장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피해가 큰 농장 주변의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 나. 각 지자체는 관내 가금 밀집사육단지, 대규모 가금농장, 종축장 등에서 소규모 가금농장과 축산차량(사료, 분뇨, 알 운반 등) 및 축산 기자재를 공용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한다.
- 다. 각 시·도는 시군구별 소규모 가금농장 수매·도태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수매·도태를 적극 추진하도록 조치한다.
- 라. 각 시군구는 법적 의무 방역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사육을 금지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사육제한 명령 조치한다.

4. 생산자단체

4.1 소규모 가금농장 수매·도태 독려

- 4.1.1. 생산자단체는 가금 밀집사육단지, 대규모 가금농장, 종축장 등에서 소규모 가금농장과 축산차량(사료, 분뇨, 알 운반 등) 및 축산 기자재를 공용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홍보한다.
- 4.1.2. 생산자단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소규모 가금농장에서 사육을 자제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수매·도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도·홍보한다.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소규모 가금농장 방역시설 구비

1.1 사육시설 50m² 이하의 소규모 가금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며 해당 방역/소독시설이 훼손되지 않고 정상 작동하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2.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소규모 가금농장은 가금 사육을 자제

1.1 특별방역대책기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소규모 가금농장은 가급적 가금 사육을 자제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수매·도태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

1.2 수매·도태한 소규모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가금을 다시 사육하지 않아야 한다.

11

전통시장에서 산 가금(초생추·중추, 오리, 산란성계, 육계) 유통 제한

I. 기본원칙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의 가금 유통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 시장에서 아래의 살아있는 가금은 유통이 금지된다.
 -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 가금농장의 종사자 및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종사자 등은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상설시장 또는 3·5일장 등)에서 유통금지 대상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산 가금 유통제한 지시
 -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관련 행정명령을 발령하도록 지시한다.
- *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

1.2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산 가금 유통제한 조치 지도·홍보

-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산 가금 유통제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산 가금 유통제한 조치 지도·홍보
 - 검역본부는 KAHIS에 등록된 가금농장 종사자 및 가축거래상인 등을 대상으로 산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내용,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문자 발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2.2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산 가금 유통제한 조치 준수실태 지도·점검

2.2.1 검역본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전통시장에서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2.1.2 검역본부는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대상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아 해당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재차 해당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지자체

3.1. 시·도

3.1.1 관내 전통시장 내 산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발령 조치

가. 시·도는 시·군·구로 하여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아래 행정명령을 발령하도록 지시하고 발령 여부를 점검한다.

3.1.2 관내 전통시장 내 산 가금 유통제한 지도·홍보

가. 시·도는 관내 가금농장 및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내용,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지도·홍보한다.

3.1.3 행정명령 이행상황 지도·점검

가. 시·도는 시·도 자체 또는 시험소, 시·군·구 등으로 하여금 관내 전통시장 등에서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나. 시·도는 점검 결과, 행정명령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아 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2. 시군구

3.2.1 행정명령 및 공고

가. 시·군·구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금지를 위한 행정명령 발령 및 명령의 목적과 지역, 대상자 및 대상 차량, 적용기간 등을 공고하고, 「가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제한 대상자에게 명령서를 발부한다.

* 행정명령 세부 내용은 별표 13를 참조

나. 시·군·구는 전통시장 내 성계를 유통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자체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 살아있는 가금을 유통·판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래 방역수칙을 지도한다.

-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금을 유통·판매할 것
- 가금 유통·판매 전후마다 해당 시설·장소를 소독할 것
- 가금 유통·판매 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할 것

3.2.2 관내 전통시장 내 산 가금 유통제한 지도·홍보 및 점검

가. 시·군·구는 관내 가금농장 및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내용,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지도·홍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3.2.3 위반 농장·시설 및 가축거래상인 등에 대한 조치

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시·군·구는 위법사항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명령을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생산자단체

4.1 관내 전통시장 내 산 가금 유통제한 지도·홍보

4.1.1. 생산자단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가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명령 내용을 토종닭 등 가금농장 및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종사자 등에 홍보한다.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산 가금 유통제한 준수 철저

1.1 가금농장 및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종사자 등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1.2 전통시장 등에서 성계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하여 판매 장소를 지정하고, 유통·판매 전후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유통·판매 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12 일제 입식 및 출하 운영

I. 기본원칙

1.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따라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기에는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 토종닭, 산란계 웅추 병아리 등 품종 특성상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시·군·구)의 지도·감독 하에 적용 제외
2. 일제 입식 및 출하는 가금농장에 가금을 일제히 입식·출하함으로써 농장 내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하고, 입식 전 청소·세척·소독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발생시기에는 그 기간이 축소 조정된다.
 - 2.1 일제 입식 및 출하기간은 농장 단위로 입식과 출하를 각각 7일 이내로 하되,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육계는 5일, 육용오리는 3일로 한다.
* 출하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 현지실사 후 출하 기간 조정 검토
 - 2.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에 육용오리는 농장 단위 1일 내 출하하되, 부득이하게 1일 내 출하가 어려운 경우 아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3일 이내에 축사 동별로 출하를 하여야 한다.
3.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육계 및 육용오리를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에 출하 전 신고(상차반 진입 신고 포함)
 - 관할 지자체 공무원 감독 하에 출하
 - 출하 작업은 출입구와 가까운 사육동부터 실시
 - 상차반 및 도구 등이 당일 출하하지 않는 축사에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시설 설치
 - 상차반 등 출하 작업을 마친 후 관할 지자체에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4. 축사별 소유주가 다르나 농장의 출입구 등에서 차량 및 대인 소독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동일 울타리 내에서 하나의 농가처럼 운영하는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도 일제 입식 및 출하 적용

| 육계 및 육용오리 일제 입식·출하기간 조정 |

| 축종 | 평시 |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
|-----------------------------|----|----------|--|
| 육계 | 7일 | 5일 | 5일 |
| 육용오리 | 7일 | 3일 | 1일 * 1일내 출하가 어려운 경우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하여 3일 이내 동별 출하 |
|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발생 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 | | |

* 육계 중 백세미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점검 및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평시 준용

II. 기관별 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1.1 육계 및 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입식 및 출하 제도 운영

1.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조정 운영 알림

* 동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필요시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조정 운영

2. 농림축산검역본부

2.1 일제 입식 및 출하 제도 조정 내용 지도·홍보 및 점검

2.1.1 검역본부는 KAHIS에 등록된 가금농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발생 시 일제 입식 및 출하 제도 변경사항,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지도·홍보한다.

2.1.2 검역본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11월~2월)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한다.

가.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대상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받아 해당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재차 해당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지자체

3.1. 시·도

3.1.1 일제 입식 및 출하 제도 조정 내용 지도·홍보 및 점검

- 가. 시·도는 관내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입식 및 출하 제도 조정 내용,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지도·홍보한다.
- 특히,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장에서 가금 출하 시 남아있는 가금이 없게 자체 확인하도록 지도·홍보한다.
- 나. 시·도는 시·도 자체 또는 시험소, 시·군·구 등으로 하여금 관내 육계 및 육용 오리 농장에서 일제 입식 및 출하 조정내용 및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11월~2월)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 다. 시·도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 받아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2. 시군구

3.2.1 일제 입식 및 출하 제도 조정 내용 지도·홍보 및 점검

- 가. 시·군·구는 관내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입식 및 출하 제도 조정 내용, 위반 시 벌칙 등 사항을 지도·홍보한다.
- 나. 시·군·구는 관내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에서 일제 입식 및 출하 조정내용 및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11월~2월)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한다.
- 다. 시·군·구는 관내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에서 가금을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출하 전 신고, 동별 출하, 상차반 방역관리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한다.

3.2.2 위반 농장에 대한 조치

- 가.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군·구는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농장 및 해당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생산자단체

4.1 일제 입식·출하 제도 조정 및 변경 내용 지도·홍보

- 4.1.1. 생산자단체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입식·출하 제도 조정 및 변경 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 4.1.2. 생산자단체는 특히 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장에서 가금 출하 시 남아있는 가금이 없게 자체 확인하도록 지도·홍보한다.
- * 잔여 가금이 있는 경우 모두 수거하여 도축장에서 처리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에서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 준수 철저
 - 1.1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일제 입식 및 출하, 출하 후 입식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1.1.1 특히, 출하 후 농장(축사)을 자체 점검하여 남아있는 가금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2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는 평시와 달리, 일제 입식 및 출하기간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인지하고, 조정된 기간 내 가금을 출하하여야 한다.
 - 1.3 가금 출하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지자체 공무원 감독 하에 출하, 출입구와 가까운 사육동부터 출하, 당일 출하가 어려운 경우 사육 중인 축사에 차단시설 설치, 상차 작업 후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상차반 및 출하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철저
 - 2.1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계약 농장의 사육 가금을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가금 농장에 출입하는 상차반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1.1 방역교육에는 상차반 운송 차량의 농장 내 출입금지, 상차도구를 농장에 반입·반출 전 각각 소독, 상차인원 농장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 및 방역복 착용 등 방역수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계약 농장에서 사육 가금을 도축장으로 출하 시, 농장 내 남아있는 가금(중량 미달 가금 포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3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축사별 소유주가 다르나, 농장의 출입구 등에서 차량 또는 대인 소독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동일 울타리 내에서 하나의 농가처럼 운영하는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에 대해 일제 입식·출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조치사항

-
1. 위기 경보 단계(심각) 및 주요 조치사항
 2. H5·H7형 항원 확인 시 조치
 3. 고병원성 확진 시 조치
 4. 검출지점에 대한 조치
 5. 방역지역 설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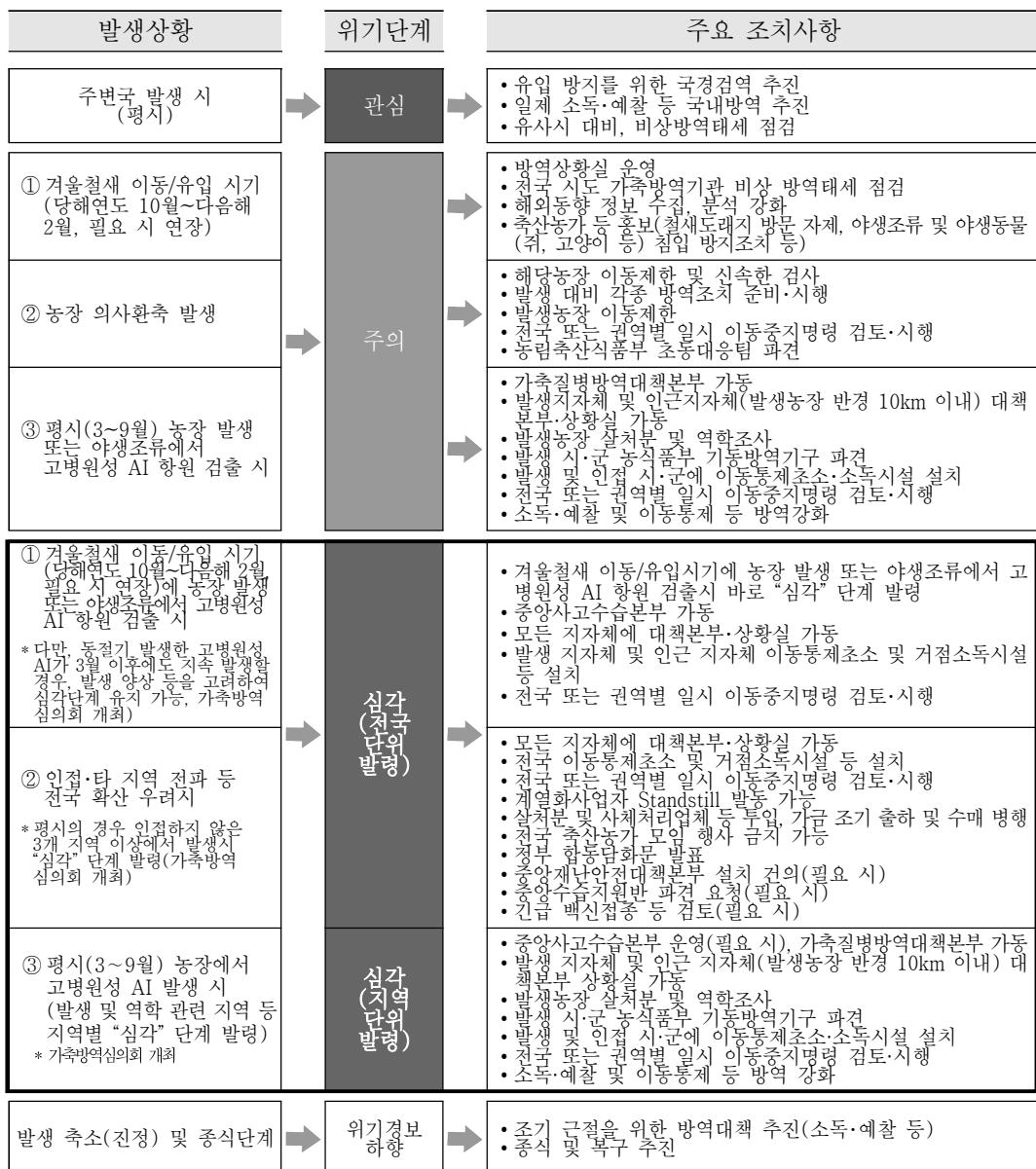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3 장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조치사항

1 위기 경보 단계(심각) 및 주요 조치사항



I.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시 주요 방역조치

1. 해외에서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여부 조기 감시를 위해 야생조류에 대한 강화된 예찰·검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 야생조류 예찰·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일 가능성 있는 H5·H7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 가금농장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당 검출지점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통제와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루어진다.
3.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조정*되고,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상황실 운영 등 가금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 심각 단계는 유관기관과 협의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
4.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부터 고병원성 확진 시까지 세부 조치는 동 긴급행동지침 제3장 2.~5. 조치에 따른다.
5.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부터 고병원성 확진 시까지 검출상황 및 정밀검사 결과 등을 관계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 신속히 알리고, 가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6. 지자체는 관내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등을 대상으로 검출 상황 및 정밀검사 결과 등을 신속히 알리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더불어 현장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한다.
7.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경우, 가금농장 내 유입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농장의 방역시설과 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8. 가금 생산자단체 및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농장 및 축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출 상황 및 정밀검사 결과 등을 신속히 알리고, 농장의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정비 및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2 H5·H7형 항원 확인 시 조치

I. 기본원칙

1. H5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H5 또는 H7형 항원 확인 시부터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적 방역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야생조류 유래 시료(분변·포획·폐사체)에 대한 검사에서 H5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는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1차 검사기관(검역본부, 환경부, 시·도 가축방역기관, 민간병성감정기관 등)
 - 1.1 민간병성감정기관의 조치사항
 - 1.1.1 환경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야생조류 분변 검사 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rRT-PCR) 결과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즉시 2차 검사기관(검역본부 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추가 검사를 의뢰한다.
 - 1.1.2 민간병성감정기관은 시료채취일, 시료채취 장소(세부주소 및 위경도 좌표 포함), 시료채취 건수(점수) 및 양성 건수(점수) 등이 기재된 검사 의뢰서를 활용하여 추가 검사를 의뢰하며,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및 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방역감시과)에도 해당 자료를 송부한다.
 - 1.2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의 조치사항
 - * 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시·도 가축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
 - ** 환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원)
 - 1.2.1 야생조류 분변, 폐사체 및 포획 개체에 대한 검사(rRT-PCR) 결과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시료채취일, 시료채취 장소 시료채취 건수 및 양성 건수

등의 정보가 기재된 검사 성적서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및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즉시 송부한다.

1.2.2 H5/H7형 AI 항원 검출 공문을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검역본부(방역감시과) 및 전국 시·도 동물방역부서, 방역본부 등에 송부한다.

1.2.3 종란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종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종란접종기록 내역서를 작성하며, 추가 검사 결과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및 검역본부(방역감시과)와 신속하게 공유한다.

2. 2차 검사기관(검역본부, 환경부)

2.1 검역본부의 조치사항

2.1.1 민간병성감정기관으로부터 추가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 가. 시료가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검사(rRT-PCR) 및 종란접종을 실시한다.
- 나. 검사 결과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결과를 공유하고,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전국 시·도 동물방역부서, 방역본부 등에 공문으로 알린다.
- 다. 종란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종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종란접종기록 내역서를 작성하며, 추가 검사 결과를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와 신속하게 공유한다.

2.1.2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부터 추가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 가. 시료가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종란접종을 실시한다.
- 나. 종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종란접종기록내역서를 작성하며, 추가 검사 결과를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내부 메일 또는 SNS를 통해 신속하게 공유한다.

2.2 환경부의 조치사항

2.2.1 민간병성감정기관으로부터 추가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 가. 시료가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검사(rRT-PCR) 및 종란접종을 실시한다.
- 나. 검사 결과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결과를 공유하고,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전국 시·도 동물방역부서, 방역본부 등에 공문으로 알린다.
- 다. 종란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종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종란접종기록 내역서를 작성하며, 추가 검사 결과를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신속하게 공유 한다.

- 2.2.2 검사기관 자체 검사(분변·포획·폐사체)에서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 가. 검사 결과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결과를 공유하고,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전국 시·도 동물방역부서, 방역본부 등에 공문으로 알린다.
 - 나. 신속히 종란접종을 실시한 후 종란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종란접종기록 내역서를 작성하며, 추가 검사 결과를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신속하게 공유 한다.

3. 농식품부

3.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등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공문)

- 3.1.1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간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하도록 조치한다.
- 3.1.2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정보 현행화, 이동제한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필요시 그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한다.
- 3.1.3 항원 검출지(시료채취 장소 및 해당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등 사람·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다.

3.2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3.2.1 가금농장 축주·종사자 등 축산관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하여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되어 추가 검사 중임을 알린다.
- 3.2.2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지역, 검출일자 등 내용을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에 알려 가금농장 등에서 방역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지자체

4.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등에 따른 조치

- 4.1.1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간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 4.1.2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정보 현행화, 이동제한 및 소독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농식품부에 일일 단위로 보고한다.

* 최초 1회는 방역지역 내 전업 규모 가금농가 목록(농가명, 축주명, 연락처, 세부축종, 품종, 두수, 운영상태 등 포함)을 송부

4.1.3 항원 검출지(시료채취 장소 및 해당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사람·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 가. 항원 검출 확인 즉시 항원검출지에 대한 사람·차량 이동을 제한하도록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도본부)에 초동방역팀 투입을 요청한다.
- 나. 해당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항원 검출지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 시행을 준비하며, 해당 사항은 시·군·구 환경부서에서 주관한다(필요시 방역부서에서 지원).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1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 전화 예찰 강화

5.1.1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하여는 매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여 사육가금의 이상 유무(폐사, 사료섭취량 저하, 산란율 감소 등)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농가가 소재하는 지자체와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전화 예찰 결과를 보고한다.

5.1.2 전화 예찰과 더불어 가금 농장 대상 방역 관리 강화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5.2 가금농장 예찰·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협조

5.2.1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지자체에서 시료 채취 등 업무 협조를 요청 시 가용한 인원·장비를 총동원하여 적극 협조한다.

6. 생산자단체

6.1 야생조류 AI 항원(H5·H7) 검출 내용 및 방역수칙 지도·홍보

6.1.1. 생산자단체는 회원 농장 및 가금 계열화사업자, 축산 관계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에서 AI 항원 검출 관련 정보를 알려 자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한다.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상황 및 방역조치 등 방역 관련 정보 파악

1.1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등은 언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방역 관계기관 홈페이지, 생산자단체 연락망 등을 활용해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등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인근 지역에서 AI 항원 검출 시 자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2. 가금농장 자체 차단방역 강화 조치

2.1 철새도래지에 농장 종사자 등 출입금지 조치

2.2.1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장으로의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종사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2 가금농장 관리자 등은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낚시 또는 산책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2.2 인근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AI 사전 예방을 위해 농장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자체 점검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2.2.1 특히, 농장 관계자의 허가없이 농장에 외부인 또는 외부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농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이 출입차량 등을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2.2.2 축사 내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도록 축사 등에 설치된 차단망(그물망)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장 진입로에 소독용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한다.

2.2.3 축사 내 AI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전실을 세척·소독하고, 농장 종사자가 축사 내 진입 시 축사 전용 장화(신발) 착용 및 손·신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고병원성 확진 시 조치

I. 기본원칙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조정*되고,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책본부·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가금농장 발생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이루어진다.
* 심각 단계는 유관기관과 협의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는 경우, 기존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된 방역대 내 조치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 간 유지되며, 해당 검출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에 대하여도 ‘특별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는 철새도래지에 대하여는 사람·차량 출입통제,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며, 해당 지역 내 소재하는 가금농장에 대하여는 예찰·검사 및 점검을 강화한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 2차 검사기관(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원)
 -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결과 알림(공문)
 -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결과를 공유하고, 농식품부, 검역본부 및 전국 시·도 동물방역부서, 방역본부 등에 공문으로 알린다.
 - 해당 검사 결과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도 즉시 입력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 방역감시과 조치사항
 -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철새도래지와 인근의 철새도래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 KAHIS 상에서 해당 철새도래지의 전체 수역을 설정하고, 해당 수역의 양안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km 이내의 지역(라인방역대) 내 가금농장 정보를 추출한다.
 - *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철새도래지를 권역화하여 사전 대상 농장 추출

나. 추출된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등 목록을 시·도, 축종별로 구분하고 농식품부,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 및 가축질병방역센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송부 한다.

2.1.2 특별관리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는 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세부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가.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가축질병방역센터는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의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운영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및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 점검결과, 방역 미흡농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한다.

2.1.3 전국 축산차량 소유주·운전자 대상 특별관리지역에 소재하는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에 출입을 금지하도록 홍보한다.

2.2 가축질병방역 센터의 조치사항

2.2.1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가축질병방역센터는 해당 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의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운영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및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보고한다.

2.2.2 점검 실적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KAHIS에도 등록한다.

3. 농식품부

3.1 가축질병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3.1.1 농식품부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는 즉시,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의 및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

3.1.1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하여금 가축질병 위기단계 ‘심각’에 따른 대응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상황점검 회의를 거쳐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3.2 검출지역(방역대) 및 특별관리지역 내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조치(공문 시행)

3.2.1 H5/H7형 항원 검출 시부터 설정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방역대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는 지속 유지한다.

3.2.2 방역대 내 및 특별관리지역 내에 소재하는 가금 사육농가는 방역본부에서 즉시 전화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사육 가금에 대해 신속히 예찰·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검사실적(시료채취 상황, 검사 결과 등)은 시·도로부터 매일 취합

3.2.3 방역대 및 특별관리지역 내에 소재하는 가금농가에 대하여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지도·홍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한다.

*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시 차량 및 대인 소독,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축사 내 전용 장화(신발) 착용 등

3.2.4 방역대 및 특별관리지역 내에 소재하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검역본부 중앙기동반이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2.5 해당 지역 내 소규모 농장은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하고, 방사 사육을 금지하며, 지자체에서 수매·도태를 적극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3.3 특별관리지역(항원 검출지 및 해당 철새도래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통제 강화(공문 시행)

3.3.1 항원 검출지로 통하는 통행로 등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시·군·구)에서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띠·안내판·현수막 등으로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

3.3.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가금 관련 축산차량에 대해 진입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

3.4 보도자료 배포 등 방역 지도·홍보

3.4.1 가금농장 축주·종사자 등 축산관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관련 보도자료를 즉시 배포한다.

3.4.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지역, 검출일자 등 내용을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에 알려 가금농장 등에서 방역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4. 지자체

4.1 특별관리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 차단방역 강화

4.1.1 H5/H7형 항원 검출 시부터 설정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는 지속 유지한다.

4.1.2 방역대 내 및 특별관리지역 내에 소재하는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신속히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시료는 방역본부, 시·군 방역관(공수의 포함) 등 가용인력 총동원

4.1.3 방역대 및 특별관리지역 내에 소재하는 가금농가에 대하여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지도·홍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한다.

*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시 차량 및 대인 소독, 울타리 및 그물망 정비·보수, 축사 내 전용 장화(신발) 착용 등

4.1.4 해당 지역 내 소규모 농장은 가금 구입·판매를 금지하고, 소규모 가금농장은 수매·도태를 적극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4.2 특별관리지역(항원 검출지 및 해당 철새도래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람·차량 출입통제 강화

4.2.1 항원 검출지로 통하는 통행로 등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에서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띠·안내판·현수막 등으로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 사실을 표시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별부

4.2.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구간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가금 관련 축산차량에 대해 진입을 금지하도록 명령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별부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1 특별관리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 전화 예찰 강화

5.1.1 특별관리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하여는 3일 간격으로 전화 예찰을 실시하여 사육가금의 이상 유무(폐사, 사료섭취량 저하, 산란율 감소 등)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농가가 소재하는 지자체와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검역본부(방역감시과)에 전화 예찰 결과를 보고한다.

5.1.2 전화 예찰과 더불어 가금 농장 대상 방역 관리 강화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5.2 가금농장 예찰·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협조

5.2.1 특별관리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검사를 위해 지자체에서 시료 채취 등 방역업무 협조를 요청 시 가용한 인원·장비를 총동원하여 적극 협조한다.

6. 생산자단체

6.1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내용 및 방역수칙 지도·홍보

6.1.1. 생산자단체는 회원 농장 및 가금 계열화사업자, 축산 관계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관련 정보를 알려 자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한다.

III.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1.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상황 및 방역조치 등 방역 관련 정보 파악
 - 1.1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등은 언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방역 관계기관 홈페이지, 생산자단체 연락망 등을 활용해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등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인근 지역에서 AI 항원 검출 시 자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2. 가금농장 자체 차단방역 강화 조치
 - 2.1 인근 지역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 AI 사전 예방을 위해 농장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자체 점검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2.1.1 특히, 농장 관계자의 허가없이 농장에 외부인 또는 외부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농장 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이 출입차량 등을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자체 정비하여야 한다.
 - 2.2.2 축사 내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도록 축사 등에 설치된 차단망(그물망)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장 진입로에 소독용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한다.
 - 2.2.3 축사 내 AI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전실을 세척·소독하고, 농장 종사자가 축사 내 진입 시 축사 전용 장화(신발) 착용 및 손·신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검출지점에 대한 조치

I. 기본원칙

- 야생조류에서 유래된 시료(분변·포획·폐사체)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는 경우,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본부에서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검출지점에 대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 해당 시료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해당 검출 지점으로 통하는 통행로 등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여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지자체

1.1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1.1.1 야생조류에서 유래된 시료(분변·포획·폐사체)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검출지점(시료 채취지점)이 소재하는 지자체(시·군·구)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초동방역팀 투입을 요청한다.

1.1.2 검출지점 소재 지자체에서는 해당 야생조류 시료의 고병원성 확진에 대비하여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조치를 위한 현장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1.2.1 야생조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경우, 검출지점 소재 지자체에서는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써 항원 검출지로 통하는 통행로(산책로, 뉘시티 등) 등 사람·차량의 출입에 의한 오염원 확산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띠·안내판·현수막 등으로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 사실을 표시하고, 사람·차량의 출입이 빈번하는 등 필요시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별부

1.2.2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 대해서는 가금 관련 축산차량이 진입을 금지하도록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등에 대해 명령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명령서 발부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1.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2.1.1 야생조류에서 유래된 시료(분변·포획·폐사체)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어 해당 검출지점이 소재하는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초동방역팀 투입을 유선 등으로 요청받은 경우, 즉시 초동방역팀을 구성하여 현장에 투입 조치한다.

2.1.2 초동방역팀은 검출지점으로 통하는 출입로 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며, 검출지점 및 출입로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 농식품부 등 관련 기관의 요청 시 인근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서식 현황 등을 파악하여 결과 보고 실시

2.1.3 최종 바이러스 미분리 또는 저병원성 확인 시 표지판 등을 제거한다.

2.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2.2.1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초동방역팀은 통제 임무를 해당 지점 관할 지자체에 인계한다.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 전이라도 띠·안내판·현수막 등으로 사람·차량에 대한 통제 사실을 표시하고,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조치 완료 시 지자체에 유선통보 후 철수할 수 있다.

5 방역지역 설정·운영

I. 기본원칙

- 야생조류 유래 시료(분변·포획·폐사체)에 대한 검사에서 H5 또는 H7형 AI 항원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방역지역(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 해당 지역 내 가금농장 등에 대한 예찰·검사·소독·이동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방역지역 운영은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 간 유지되며, 해당 및 인근 철새도래지에 대해 설정되는 ‘특별관리지역’ 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등에 대하여 예찰·검사·소독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수류에서 추가로 검출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 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지점으로부터 3km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최초 발생 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한다.
 - 3km~10km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추가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재설정한다.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II. 기관별 조치사항

1. 지자체

1.1 방역지역 설정 및 운영

1.1.1 검출지점을 관할하는 지자체(시·군·구,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에 포함되는 지자체 포함)는 야생조류 유래 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간*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은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 실시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되기 전에 이동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 최종 ‘저병원성’ 및 ‘미분리’로 확인 시에도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간 해당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예찰을 지속

| 예찰지역 내 주요 방역조치 |

| 구분 | | 대상별 방역조치 |
|-----------|-----------|--|
| 가금 | 닭 등 | 출하 7일 전 지자체 신고 및 AI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반입·반출 허용 |
| | 오리·거위·기러기 | 반입·반출 금지 다만, 출하 7일 전 지자체 신고 및 AI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가능 야생조수류 및 분변시료 채취 지점 반경 3~10km에 한하여 출하 7일 전 지자체 신고 및 AI 검사결과가 음성이고, 지자체에서 반입농가에 대한 시설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반입 가능(반입 후 5일 이내 오리에 대한 AI 검사 추가 실시) |
| 알(종란·식용란) | 닭 등 |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이동 허용 |
| | 오리·거위·기러기 | 폐기 다만, 종란은 예찰지역 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에 한하여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 등)하는 경우 해당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하며, 야생조수류 및 분변시료 채취 지점 반경 3~10km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종오리 농장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소독을 완료한 후 지정 부화장으로 종란 반출 허용 식용란은 오리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공용으로만 반출 허용 |
| 농장 분뇨 | 닭 등 | 반출 금지 다만, 닭 분뇨는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군 내 처리장으로 이동 가능하며, 예찰지역 내 처리장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이동 허용 |
| 농장 사료·깔짚 | 닭 등 | 반출 금지, 반입 시 소독 * 이동제한으로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폐기 |
| 도축장 | 닭 등 | 출하 전 검사결과 음성인 가금만 도축 허용 |
| | 오리·거위·기러기 | 출하 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 내 오리만 도축 허용 다만, 검출지점으로부터 3km 내 가금농장 검사결과 AI 음성이고 방역대 외 가금에 대한 검사 후 음성인 경우 도축 허용 |
| 사료공장 | 닭 등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생산·유통 |
| 부화장 | 닭 등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부화·반출 허용 |
| | 오리·거위·기러기 | 이동제한 지역 외에서 반입된 종란 및 예찰지역 내 반출이 허용*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 허용 * ① 예찰지역 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 등)하는 경우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 ② 예찰지역 내 야생조수류 검출지점 반경 3~10km 내에 종오리 농장이 위치한 경우, 종오리 농장에 대한 지자체 점검 및 AI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소독을 완료한 후 이동 허용 |

1.1.2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이 타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

1.1.3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정보 현행화, 이동제한 및 소독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농식품부에 일일 단위로 보고한다.

* 최초 1회는 방역지역 내 전업 규모 가금농가 목록(농가명, 축주명, 연락처, 세부축종, 품종, 두수, 운영상태 등 포함)을 송부

1.1.4 가금 농가에 대해 지정된 자자체 전담 공무원(전담관)이 전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임상 예찰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추진

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방역조치는 “4. 고병원성 확진 시 조치”에 따른다.

1.3 방역지역의 해제

1.3.1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로 인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방역조치는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로 하며,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해 임상검사, 정밀검사(닭은 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항원검사 및 혈청 검사)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한다.

제4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표준행동요령

-
1. 위기 경보 단계(심각) 및 주요 조치사항
 2. 의심축 신고 및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사항
 3. 의심축을 발견한 축산 관련 종사자의 조치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5. 발생확인 시 긴급 방역 조치사항
 6. 역학조사 요령
 7. 발생농장 등 방역지역 방역요령
 8. 이동제한 요령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10. 발생농장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11.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용요령
 12. 축사 외 장소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
 13. 이동제한 해제 요령
 14. 발생농장 등의 재입식 요령
 1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조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4 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표준행동요령

1 위기 경보 단계(심각) 및 주요 조치사항



I.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주요 방역조치

1.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시,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조정*되고, 전국 모든 지자체 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등 가금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한 법정부적 대응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 심각 단계는 유관기관과 협의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라 심각 단계가 발령되어 있는 경우 심각 단계 유지
2.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와 함께 확산 차단을 위해 주변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살처분 과정 중 오염 차단을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차단조치도 병행
3.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3중의 방역대*가 설정되며 방역대 내 사람과 차량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수 있는 매개체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오염원 제거를 위한 소독 강화조치가 시행된다.
* 방역대는 관리지역(반경 500m), 보호지역(500m~3km), 예찰지역(3km~10km)
4.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 및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지며, 긴밀한 역학관계가 확인되는 농장인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5. 전국 또는 지역별로 축산 차량 및 종사자의 이동을 중지시키는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될 수 있으며, 해당기간 중에는 확산 차단을 위한 통제 및 일제 소독 조치와 역학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다.
*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의사환축 단계부터 시행 가능
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국 또는 지역별, 축종별 조치로 가금류 정밀검사 확대, 환경검사 및 점검 강화, 발생 시군 단위 이동제한, 발생 계열화사업자 단위 검사 및 점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시부터 확진, 사후관리 등 세부 조치는 동 긴급행동지침 제4장의 각 조치에 따른다.

8. 농식품부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의사환축) 발생 시부터 고병원성 확진 시까지 발생상황 및 긴급방역조치 등을 관계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에 신속히 알리고, 추가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9. 지자체는 관내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발생상황 및 긴급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알리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더불어 현장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한다.
10. 가금농장 및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는 가금농장 내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의 방역 시설과 소독시설을 정비하고,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 가금 생산자단체 및 가금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농장 및 축산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생상황 및 긴급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알리고, 농장의 방역시설과 소독시설 정비 및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홍보한다.

2

의심축 신고 및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사항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신고

1.1 축주(관리인 포함)나 수의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 등은 닭·오리 등 가금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산란율 저하 또는 벼슬이나 다리에 나타나는 청색증, 사료섭취량 또는 음수량 감소, 녹변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의심축을 발견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신고 전용 전화(☎ 1588-4060, 1588-9060) 또는 다음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군·구 및 읍·면·동, 시·도 가축방역기관(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검역본부(방역감시과),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

1.2 축주(관리인 포함)나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 등으로부터 의심축 신고를 받은 기관은 축주 등에 대해 아래의 조치를 하고, 즉시 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농장 내에 머물도록 지시하고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
- 농장의 가축, 분뇨, 장비, 물품 등의 이동제한 조치
- 모든 차량의 출입 제한
- 농장 내 모든 사람의 외출 금지

* 의심축을 발견한 수의사 등은 “제4장 2. 의심축을 발견한 축산 관련 종사자의 조치”에 따른 방역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가축전염병을 연구·검사하는 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이 감수성동물*로부터 H5 또는 H7형 항원(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전화, 문서 등을 통해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검역본부 및 관할 시·도(시·군·구)에 즉시 신고하고 검역본부에 확인검사를 의뢰한다.

*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돼지·개·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

** 다만,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수류에서 H5 또는 H7형 항원(항체)를 검출할 경우 환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도 신고

2. 의심축 발생 신고 접수 및 초기 조치사항

2.1. 신고(통보)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사환축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이하 “KAHIS”라 한다)에 신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2.1.1. 시·도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의심축 발생농장에 대한 상세 정보*와 초기 역학 정보 등을 파악하여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의심축 발생농장의 사육 축종 및 규모, 임상증상, 최근 검사상황, 방역지역 내 가금 사육 현황, 농장주 또는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족 등이 소유하는 농장현황 등

2.1.2. 검역본부는 의심축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정보를 추가로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출동시켜야 한다. 또한,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KAHIS를 통해 해당 농장에 최근 출입한 축산차량 및 해당 축산차량이 방문한 축산 관계 시설 등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2.2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시·도,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의심축 신고상황 보고 후 해당 농장에 가축방역관을 2명 이상(시료채취반 포함)을 출동시킨다.

2.3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가축방역관이 의심장소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계관으로 하여금 신고농장에 먼저 도착하도록 하여 이동제한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2.4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방역관은 의심장소로 출발할 때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별표1의 “초기검진시 긴급방역용 용구”, 별표2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의심축 신고 농장 도착 후의 조치(시·도 가축방역관)

3.1 현장에 도착한 가축방역관은 타고 온 차량은 농장 밖에 주차시키고, 개인보호구 (보호복, 마스크, 고글, 장갑 및 장화 등)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개인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농장에 들어간다.

3.2 가축방역관 등은 의심축 신고농장 내 모든 동물에 대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다.

- 1명은 의심축이 있는 축사, 나머지 1명은 의심축이 없는 축사의 동물에 대해 임상검사를 한다.

- 임상검사, 검사 및 부검 등을 통하여 의사환축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 시·도, 농식품부, 검역본부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간이항원진단키트 검사는 의사환축 판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의심축 신고 농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농장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세척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의심축 신고농장에 대한 초기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4.1 “의사환축” 또는 “의사환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4.1.1 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결과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다.

4.1.2 보고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조사표에 따라 당해 동물 등에 대한 검진과 가축의 이동상황, 분뇨의 이동, 출입자 현황 등 기본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시·군)에 보고(통보)하고 이를 KAHIS에 등록한다.

-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생산물)·차량·사람·물품 등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을 금지시킨다.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농장 소유자·종사자 동거가족 등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보호복·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한다.
-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여 검역본부에 정밀검사(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자체진단)를 의뢰한다.

4.2 “의사환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1.1 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등에 따라 “의사환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병성감정을 의뢰한다.

4.1.3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농장의 가축(생산물)·차량·사람·물품 등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검사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 시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5. 의심축 신고 또는 의사환축 발생 시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5.1 시·군

5.1.1 해당 농장(해당 농장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가축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생지)에 대한 가축·사람·차량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한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이동제한 조치한다.
 - * 초동방역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6에 따른다.
- 해당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를 설치한다.
 - * 발생농장이 밀집사육단지에 위치하는 경우 인접한 농장 및 농장 분포 현황, 도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축사 내외부·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 해당 농장 주변 등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5.1.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지역 설정 등 아래 방역조치 사항을 준비한다.

- 방역지역(관리, 보호, 예찰) 설정 준비 및 방역지역별 농장 현황 조사
-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군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
- 방역지역별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준비
- 가축의 살처분·사체 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약품·매몰지 등 조달 준비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5.1.3 전국 모든 지자체(시·도, 시·도가축방역기관, 시·군·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아래 방역조치사항을 준비한다.

- 주요 도로·장소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준비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설치 준비
- 일시 이동중지 시행 대비,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

5.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5.2.1 시·군·구로부터 초동방역팀 투입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한다.

- 초동방역팀은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및 소독 등 가축방역관의 임무를 지원한다.

* 초동방역팀의 임무 등에 대하여는 별표 6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을 참고

5.2.2 의사환축 발생농장 방역지역(관리·보호·예찰지역) 및 전국 가금류 대상으로 전화예찰를 실시하고, 차단방역수칙 등 방역 홍보를 강화한다.

* 세부 전화예찰 요령은 별표 10 참고

5.2.3 필요시 해당 농장에 대한 시료채취를 지원한다.

5.2.4 일시 이동중지 시행에 대비하여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

5.3. 시·도 가축방역기관

5.3.1 해당농장에 가축방역관을 파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조사표에 따라 당해 동물 등에 대한 검진과 가축의 이동상황, 분뇨의 이동, 출입자 현황 등 기본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시·군)에 보고(통보)하고 이를 KAHIS에 등록한다.

5.3.2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5.3.3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소독 및 매몰 등 방역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5.3.4 현장 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치(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정밀검사 실시)한다.

- 별표 3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요령에 따라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송부하고 진단업무를 수행한다.

5.4. 시·도

5.4.1 의사환축 또는 의사환축 발생 사실을 자체 없이 농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및 검역본부에 유선으로 우선 보고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KAHIS에 입력한 상황을 확인 등록한 후, 타 시·도에 통보한다.

5.4.2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사항을 시달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5.4.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지역 설정 등 아래의 방역 조치사항을 준비한다.

- 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 준비
- 살처분·사체 처리, 이동통제, 소독, 예찰 등 초동방역을 위한 인력·장비·약품·매몰지 등의 조달 준비
- 발생지역 소재 군부대, 시·도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

-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긴급 방역조치사항 시달 및 점검
- 발생 시·군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준비

5.5. 농림축산검역본부

- 5.5.1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 보고 시 방역대(관리, 보호, 예찰)내 개괄적 농장현황을 포함한다.
- 5.5.2 해당 농장을 방문한 축산차량의 이동 정보와 출입 시설 기록 등을 KAHIS를 통해 수집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5.5.3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조사한 1차 역학조사 내용을 전달받아 추가 역학조사 및 역학분석을 실시하고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여 시도, 농식품부에 보고(통보)
- 5.5.4 채취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KAHIS에 등록 및 농식품부에게 보고하며, 시·도 및 유관기관(질병관리청 등)에게 통보
- 5.5.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실장 : 동물질병관리부장) 설치 준비
- 5.5.6 기동방역기구 파견대비 관계관 출동 준비(초동대응팀 포함)
- 5.5.7 시·군·구,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시·도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 지원

5.6. 농림축산식품부

- 5.6.1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주의”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전파 및 긴급 방역조치 송부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대통령비서실(농해수비서관실), 행정 안전부(가축질병재난대응과) 등 포함
- 5.6.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각종 방역조치사항을 준비하고 필요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방역조치를 심의한다.
- 5.6.3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 설치 및 기동방역기구 파견 준비
- 5.6.4 국방부·경찰청 및 질병관리청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보 및 고병원성 판정 대비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 확인·점검
- 5.6.5 일시 이동중지 시행 대비, 상황 전파체계 준비 및 점검

3

의심축을 발견한 축산 관련 종사자의 조치

1. 기본원칙

1.1 축산관련 종사자^{*}가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축주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분뇨 등의 이동을 못하도록 하고,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한 후 농장 내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방역요원, 가축을 조사·연구하는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수의사 등 축산관련 종사자가 의심축 발견 시 신고 및 대응요령

2.1 검안·진단 수의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이하 수의사 등)

2.1.1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 축주에게 가금이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임을 설명하고, 즉시 관할지 읍·면, 시·군·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반드시 전화 등으로 신고한다.

2.1.2 수의사 등은 시·도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도착할 때까지 농장을 떠나지 말고 축주에게 다음의 긴급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축사 문을 닫는 등 의심축을 격리시키고 모든 사육동물 (개·고양이 등 포함)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 해당 농장에 방역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소독액으로 교체한다.
- 축주와 관리자, 가족에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질병 등)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관리 하에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 농장에 차량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사육시설, 옥외, 농장 밖으로 알, 사료, 퇴비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며, 배수구를 폐쇄한다.

2.1.3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을 설명하여 인계한 후 필요한 경우 시료채취 등에 협조한다.

2.1.4 농장을 떠날 때는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체·의복·신발·안경 및 진료 기구·가방 등 휴대한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타고 온 차량에 대하여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 또는 일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코를 풀고 입을 헹구며, 손 씻기 및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조치 후 진료를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한다.

2.1.5 귀가 후 다시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의복·신발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목욕을 한 다음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는다.

2.1.6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니라는 연락이 있기 전까지 외출을 삼가고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과 만나지 않는다.

2.1.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될 경우 최종 접촉일 부터 7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수성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및 관련 시설에 출입을 금지한다.

2.2 그 외 축산관련 종사자

2.2.1 그 외 축산관련 종사자(동물약품·사료업체 등의 질병 컨설팅 관계자 포함)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을 발견한 경우에는 동 요령을 준용하여 신고 및 현장에서의 방역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도착한 가축방역관의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조치사항

3.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를 대비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가 의심축 발생 농장을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21일 전까지 방문한 가금류 농장 현황을 조사한다.

3.2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축산 관련 종사자가 농장 내에 대기도록 조치한다.

- 부득이 농장을 벗어나야 할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신체, 신발, 의복, 안경, 진료기구, 진료가방 등 휴대한 기구·장비에 대하여 폐기 또는 소독을 실시한다.
- 타고 온 차량 내외부에 대하여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 또는 일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코를 풀고 입을 행구며 손 씻기 및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조치 후 다른 곳을 방문하지 않고 즉시 귀가도록 한다.

3.3 귀가 후 다시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신발, 의복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손, 발을 씻고 목욕한 후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도록 조치한다.

3.4 정밀검사 판정 시 까지 외출을 삼가고 감수성 가축 사육농장 방문 및 관계자와 접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될 경우 7일간 가축 사육농장의 방문을 금지(진료 포함)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축산관련 종사자의 명단(성명, 연락처 등)을 보건소에 인계하여 인체감염 예방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축산 관련 종사자는 가금농장을 방문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야 함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1.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1.1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정의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의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금류 가축·사람·차량·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이동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 시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 또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① 전국 최초 발령 시, ② 전국 단위 또는 3개 이상 시·도 발령 시, ③ 36시간 초과 발령 시에는 중앙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 시·도는 ① 시·도 내 최초 발령 시, ② 시·도 내 전 지역 또는 3개 이상 시·군 발령 시, ③ 36시간 초과 발령 시에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 그 외의 경우에는 역학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중앙 또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3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시점

- 농식품부, 시·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간이항원진단키트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가축방역관의 임상증상 확인 등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이 확인된 경우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국 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방역지역(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이동제한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명령을 발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은 통제초소 및 환적장 운영, 이동제한 상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한다.
- 다만, 시·도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 지방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적용 범위 및 시간 등을 논의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와 협의를 한 후 명령할 수 있다.

|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발령 시점 및 적용 범위 |

| 구분 | 세부 내용 |
|-------|---|
| 발령 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생 시(의사환축 발생 포함) - 신규 시·도 단위에서 발생 시 - 신규 가금 축종에서 발생 시 - 중앙 또는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결정 시 등 |
| 적용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발생 시(의사환축 발생 포함)에는 전국 단위 발령(다만, 사람·차량 등의 이동 범위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축소 가능) - 이후부터는 발생농장이 소재한 시·도와 사람·차량의 역학관련 지역, 철새 도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범위 결정 |

* 상기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현장 이행을 위해 발령 시점과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며,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기간

- 발령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유지하되 필요 시 발생지역 등에 대해 연장 조치할 수 있다.

1.5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적용 대상

1.5.1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의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에 기축·사람·차량의 출입금지

1.5.2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의 모든 가금류 축산 관련 작업장에 사람,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1.5.3 일정 지역의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발령한 지역 외에 있는 적용 대상 축산차량·관계자 등은 발령지역 안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5.4 다만, 아래 상황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아 이동 허용(이동승인서 발급 기관은 차량이 출발하는 지자체 소속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이동 중 발령 시에도 동일하게 출발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하며, SMS, 유선 또는 fax 등을 통해 발급·제출 가능함)

- 도축장 출하를 위해 가축을 실은 차량이 도축장으로 이동 시* 또는 발령 시간에 농장 내 진입하여 상차하고 있는 경우

* 도축장에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을 배치하여 출하 가금에 대한 임상증상을 확인하고 도축장 검사 강화에 따른 AI 검사 실시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급여가 불가피한 경우 사료 운송을 위한 차량
- 부화된 초생추 운반을 위한 차량(사전 입식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일정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발령 시, 발령지역 외에 있는 적용대상 차량 등이
발령 지역(시·도)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 방역지역 이외 지역을 지나는
것은 이동승인서 발급 없이 이동 가능

|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적용 세부 대상(예시) |

| 구분 |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적용 세부대상(예) |
|----------------------|---|
|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가 |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기축 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 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기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 축산 관련 차량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차량, 알운반차량, 동물의약품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가축분뇨운반차량,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차량, 퇴비운반차량, 난좌운반차량, 가금부산물운반차량, 가축사체운반차량, 진료·예방접종차량, 인공수정차량, 농기컨설팅차량,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

* 상기 적용 세부대상(예시) 외에 모든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출입을 금지

1.6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전파

1.6.1 농식품부, 시·도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결정한 즉시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 단체 및 협회에 공문조치 및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다.

1.6.2 검역본부, 시·도, 특별자치시장은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파한다.

1.6.3 시·도 및 시·군·구는 관내 모든 축산농가·축산관련 종사자(업체)에게 SMS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동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한다.

* SMS 예시 : ○○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00월 00일 00시까지 모든 가금류 축산농장·작업장에 가축·사람·차량·물품 등 이동금지 발령. 축산 차량 및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 실시

-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업체)의 기초정보(이름, 핸드폰 등)를 사전에 확보하여 정리한다.

1.6.4 농협·축종별 단체·협회는 자체 연락망을 통해 일시 이동중지 발령 및 준수사항 (세척·소독 등)을 전파

- 특히, 도축·사료·동물약품·분뇨·기자재 등 모든 축산 관련 작업장 경영자는 소속 직원 및 지입차량 기사 등에게 즉시 통보한다.

1.7 일시 이동중지 이행상황 점검

- 시·군·구는 축산차량의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관련차량의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 가금류·축산관련 물품·차량·종사자의 농장 출입 금지 여부를 순회점검한다.
- 시·군·구는 합동 점검반(축산, 재난, 감사 부서 등)을 편성하고 일시 이동 중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도에게 보고한다.

1.8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기간 동안 방역주체별 방역조치사항

1.8.1 축산농장

- 농장에서 사용 중인 축산차량은 농장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소독하며 농장의 내·외부 또한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한다.
- 이동중지 적용 대상자 중에서 부득이 하게 이동을 하여야 하는 경우 (1.4.4.에 따른 예외 대상)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동중지 대상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신청서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8.2 축산관련 종사자 : 축산관련 종사는 소유 차량을 사무실 또는 집에 주차하여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를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1.8.3 축산관련 작업장

- 축산관련 작업장에서 이용하는 축산 관련 차량은 일시 이동중지 발령 전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차량의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작업장 전체에 대해 일제히 소독을 실시한다.
- 분뇨차량, 중간유통(계류 등) 등 기타 축산차량도 이에 준하여 조치한다.

1.8.4 농림축산식품부

- 관계 기관별 행동요령을 총괄 지휘한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후 동 명령기간 동안 이행점검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
-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방역상황실 비상체제를 24시간 운영 및 대응에 따른 각종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한다.
- 명령 발동 이전, 지자체 및 기관, 협회(단체)별 이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운영요령을 안내한다.
- 정부합동점검반 편성, 운영을 계획하고 및 일시 이동중지 이행 사항 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1.8.5 농림축산검역본부

- 합동점검반편성 및 운영 계획에 따라 일시 이동중지 이행사항 실태를 점검한다.
- 주요 도로에 거점소독시설 및 임시 통제초소를 방문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및 명령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구에 관련 차량의 이동중지 및 출입 통제 여부를 점검한다.
- 가금류·축산물품·차량·종사자의 농장의 이동중지 및 출입 통제 여부를 점검한다.
-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의 GPS정보를 통한 축산시설 출입여부를 점검을 할 경우 이동중지 이행점검표(이하 “이행점검표”라 한다)를 참고하여 점검할 수 있다.
- 점검 후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위반 조항에 따라 조치하고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 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한 긴급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역학관련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 등 긴급방역조치를 해당 시·군 등에 KAHIS(또는 공문)를 통해 전달한다.

1.8.6 시·도(시·군)

-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금류 이동을 위한 차량 등의 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 후 결과를 수시로(상황별로)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계획을 마련 하여 농장, 축산관계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시설 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KAHIS의 축산차량 GPS 정보를 활용하여 축산차량이 축산시설에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 조치도록 한다.

- 이동중지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이동중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 점검반에서 동 명령 위반자에 대한 통보 즉시 관련 법에 의거하여 고발 등 조치도록 한다.
- 관할지역의 국방부 및 경찰청에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에 인력을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협조를 요청한다.
- 검역본부 등 점검반 요청 시 각 관할 소재의 축산관계시설, 축산농장, 거점 소독시설(이동통제시설)의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역학 관련 농장을 통보 받은 시·군에서는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KAHIS(또는 공문)를 통해 보고한다.
- 시·도는 긴급방역조치 이행 상황을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장에게 KAHIS(또는 공문)를 통해 보고한다.

1.8.7 시·도 방역가축기관(동물위생연구소 등)

- 농식품부가 이동중지 명령 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예외대상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이동승인 제외를 신청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승인한다.
- 이동승인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대상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소독필증 제출)를 한 후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이동승인서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1.8.8 농협경제지주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이전 및 발동기간 중 축산농장 등에 대해 소독 지원 및 홍보를 실시한다.
- 공동방제단, 축협 방역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요도로 및 방역취약지(소규모 및 기타 가금류 농장 등)에 대해 일제히 소독한다.
- 축산농장, 축산관련시설(사료회사, 분뇨 처리업체 등)에 동 실시내용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 매 6시간별로 소독 실적을 취합하여 농식품부 상황실로 결과를 제출한다.
- 축산관계차량 등의 이동명령 위반에 대해 발견 시 즉시 검역본부(중앙기동

점검반) 또는 관할 지자체(시·군)에 신고한다.

1.8.9 협회 및 계열화사업자

- 소속 농장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준수사항 및 소독조치에 대해 홍보를 실시한다.
 - 소속 회원 농장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고, 명령 기간 중 일시 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자체 지도·점검한다.
- * 이동중지 명령을 준수하고, 소유 차량(GPS 미등록 자가용 포함) 및 농장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

2. 계열사 등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2.1 계열사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조치

- 동일 계열화사업자 계약사육농가 또는 소속 축산시설(도축장, 부화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특정 가금 축종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농식품부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계열화사업자 소속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 등 또는 특정 가금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와 관련된 시설, 종사자 등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다만, 동일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2회 이상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개 이상 시·군에 소재하는 계약사육농가나 축산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릴 수 있다.

2.2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 기간 및 이동중지 전파, 이행상황 점검, 방역조치 등 사항은 “1.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을 준용한다.

5

발생확인 시 긴급 방역 조치사항

I. 기본원칙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경우,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조치가 시행되며, 가축방역기관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살처분, 이동 제한, 소독, 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종사자 등 축산 관계자는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I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1. 농림축산식품부

- 1.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장관)를 설치하고, 상황 진단 회의를 통해 긴급방역대책을 시행한다.
- 1.2 현장 통제 및 상황 관리를 위한 기동방역기구를 운영하고 기동방역기구는 발생 지역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및 살처분 처리 등을 위한 현장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
 - 1.2.1 기동방역기구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별표 5 기동방역기구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운영한다.
- 1.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과 긴급방역대책을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한다.
- 1.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수급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5. 살처분·이동제한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1.6 긴급방역예산을 시·도 등에 지원한다.
- 1.7 국무회의 등에 발생상황 및 대책 등을 보고하고 관련 부처에 협조 요청한다.
 - 1.7.1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축산물수급안정과 관련한 협조사항을 요청한다.
- 1.8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와 관련국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도록 지시한다.

- 1.8.1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검역본부에 지시한다.
- 1.8.2 검역본부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분리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에 대한 병원성여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 1.8.3 주요수출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음을 통보하고,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수출검역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킨다.
- 1.9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 1.9.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방역조치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임상증상 및 이상증상 발견시 신고요령, 인체감염 예방수칙(질병관리청 협조) 등을 홍보한다
- 1.9.2 육류소비 위축방지를 위해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한다.
- 소비자에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 살처분·매몰 장면 등 자극적인 영상·사진(모자이크 포함), 조류독감 용어 사용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체를 요청한다.
- 1.10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지역별, 축종별 조치로 가금류 정밀검사 확대, 입식 전 환경검사 및 점검 강화, 소독자원 동원 지시, 발생 시군 단위 이동제한, 발생 계열화사업자 단위 검사 및 점검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 1.10.1 필요한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시설)과 관련된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 해당 계열화사업자 소속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일제검사, 소속 도축장에 대한 검사 강화 (예시 : 출하농장 중 10% 검사 → 20% 검사), 소속 축산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

2.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치사항

- 2.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상황실에 종합상황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검역대책반 등을 두어 업무를 분장시키되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 2.2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를 KAHIS에 등록되어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및 축산 관계자에 대해 SMS 등을 통해 전파한다.

- 2.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혈청형을 신속히 확인하고 추가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진단체계를 구축하며, 바이러스 특성(부검소견, 임상증상 등)에 대한 사진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자체, 일선 수의사 등에 신속히 전파한다.
- 2.3.1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협조하여 분리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에 대한 병원성여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4 현장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군·구,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시·도의 방역 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방역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 2.5 중앙역학조사반으로 하여금 발생원인, 유입 및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 2.5.1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중앙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는다.
- 2.5.2 국내 최초 유입시기, 유입경로 및 발생농장 밖으로의 전파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생농장의 출입자, 출입차량 및 가축이동 상황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추적을 실시한다.
- 2.5.3 발생농장을 방문한 축산차량의 이동 정보와 출입 시설 기록 등을 KAHIS를 통해 수집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해당 지자체는 역학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를 신속히 이행
- 2.5.4 국내유입경로 조사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에 도래하는 야생철새에 대한 예찰 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진단반과 협조하여 예찰을 실시한다.
- 2.6 검역대책반으로 하여금 유입경로의 추적 등을 위한 해외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 검역기관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신속한 입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 2.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검역강화조치, 밀수방지, 남은 음식물 처리, 해외여행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7.1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수입검역을 강화한다.
- 2.8 수출검역물의 반송 상황 발생에 대비한 검역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2.9 대국민·축산농가 대상 신고 및 방역요령 등 홍보를 강화한다.

2.10 농식품부, 시·도 및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한다.

3. 시·도의 조치사항

3.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 대책반 등을 두어 비상 방역업무를 분장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3.2 발생지역의 시·도는 시·군·구에 방역지역을 설정하여 사람·차량·동물 등의 이동통제 및 살처분, 소독 등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게 방역기술을 지원하도록 지시한다.

3.3 발생지역의 시·도는 해당 시·군·구 또는 관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게 방역지역 내 감수성동물에 대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 관리·보호지역 안의 감수성동물에 대해서는 발생 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 이내, 예찰지역은 3일 이내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한다.
- 임상예찰은 시·군·구가 지정한 가축방역관이 실시하고 의심징후 발견 시 시·도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3.4 사람·차량·가축 및 축산물 등 이동통제를 위한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를 위하여 시·도경찰청 및 발생지 관할 군부대 등에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한다.

3.5 지역방송망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인체감염 예방수칙 및 방역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홍보한다.

3.6 방역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 및 설치류에 대하여는 살처분 또는 구서대책을 수립·시행한다.

3.7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른 사료·가축분뇨·알·식육·부산물 처리대책을 수립·시행한다.

3.8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가축의 출하 도축장을 지정하고 농식품부장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축산물의 수매 등을 실시한다.

- 3.9 보호지역 내 사료공급차량은 고정 배치하여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 3.10 산업적 보존 가치가 높은 순계, 원종계(오리) 등의 농장에 대해 해당 농장 및 관할 시·군·구로 하여금 방역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조치한다.
- 3.11 시·도는 AI의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 시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하여 역학 관련 농가 등의 조기 신고를 유도한다.

4.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조치사항

- 4.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종합상황반, 역학조사반, 정밀진단반, 방역지원반 등을 두어 비상 방역업무를 분장하여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한다.

| 시·도 가축방역기관 방역대책상황실 구성 및 주요 임무 |

| 구 분 | 상황반별 주요 임무 |
|-------|--|
| 종합상황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방역업무 총괄 및 각 반별 업무 조정 - 의심축 발생 신고·접수 - 시·도/시·군의 방역대책본부, 검역본부 방역대책상황실 및 현장통제본부와의 연락 체계 확보 및 상황보고(통보) |
| 역학조사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장소 내 가축 및 생산물의 이동상황, 축주·수의사·관리인 등과의 접촉 여부 등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 인접한 축사 및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 보호지역·예찰지역 내에서의 역학조사 활동 |
| 정밀진단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 정밀검사용 시료의 채취·송부 - 역학관련농장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
| 방역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매몰 등 방역기술 지도 - 발생농가 및 통제초소에서 소독실시 요령 등 지도 |

- 4.2 시·도 역학조사반으로 하여금 중앙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의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을 추적조사 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의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및 방문자 등이 접촉한 감수성 동물을 조사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의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 포함)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을 추적하여 해당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한다.
- 살처분 대상가축 및 방역지역 내 오리에 대하여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를 채취한다.
- 역학조사 과정에서 임상증상 발현일이 환축 발생일보다 이전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일로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을 추적 조사한다.
-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

4.3 추가 발생여부를 조사하고 의심축 발견 즉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4.4 필요한 경우 야생조류(철새, 토끼류 포함)를 포획, 분변·혈액 등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로 송부한다.

4.5 고병원성 AI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도축장의 계류 가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5. 시·군·구의 조치사항

5.1 시·군·구는 소속 공무원이 방역활동에 참여하도록 비상 동원령을 발동한다.

5.1.1 시·군·구는 부시장·부군수·국장·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 보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역대책협의회를 소집하여, 방역지역의 이동통제초소 설치와 살처분에 참여하는 인력·동원장비·물품 등을 점검한다.

5.1.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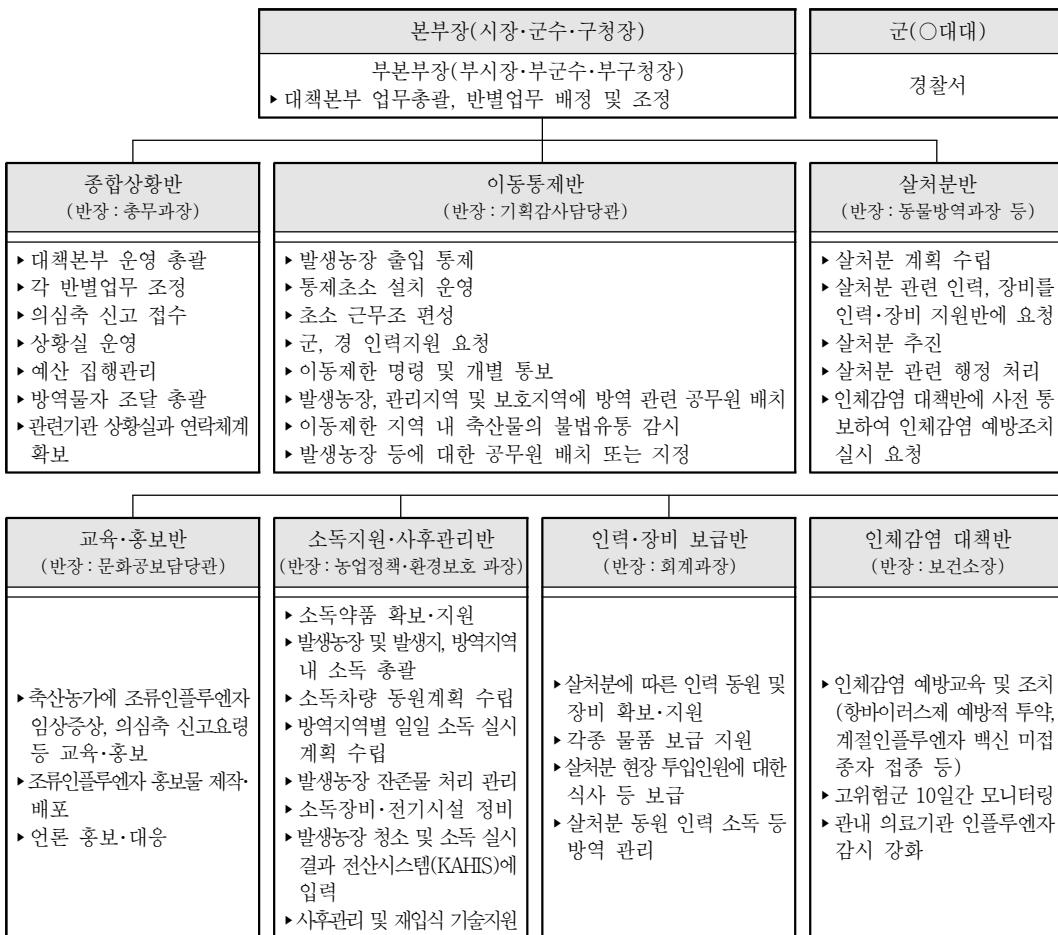
- 방역대책본부에는 본부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종합상황반, 이동통제반, 살처분반, 교육·홍보반, 소독지원·사후관리반, 인력·장비보급반, 인체감염 대책반 등으로 구성하되, 시·군 조직·업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 시·군·구는 원활한 살처분 진행을 위하여 살처분 보상관련 협상 담당관(관할 면장 등 권장)을 지정하여 현지에 파견한다.

| 시·군 가축방역기관 방역대책상황실 구성 및 주요 임무 |

| 구 분 | 상황반별 주요 임무 |
|----------------|---|
| 종합상황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대응 총괄, 각반별 업무 조정 - 의심축 발생신고 접수 - 대책상황실 상황판 정리 및 일일보고, 상황보고 - 예산(예비비) 집행관리 - 방역물자 조달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 시·도 가축방역기관/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상황실 및 현장통제본부와 연락체계 확보 |
| 이동통제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 명령, 개별통보(SMS 문자메시지 병행) 및 공고 - 발생농장,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 방역관련 공무원 배치 및 지정 - 발생농장 출입구 통제 및 외부인 출입 차단(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받지 않은 자의 출입 통제) - 방역지역 내 통제초소 설치 운영관리 및 초소 근무조 편성·운영 - 군인, 경찰 인력지원 요청 - 이동제한지역 내 축산물의 불법유통 감시 - 기계정비반을 구성하여 소독기 정비수리 - 소독장비 전기시설 정비 - 통제초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독장비의 물공급(소방서 협조) |
| 살처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계획수립(보상관련 협상 담당관과의 긴밀 협조체계 유지) - 살처분 실시에 따른 인력, 장비를 인력·장비 지원반에 요청 - 살처분 작업추진(시·도 가축방역관의 기술협조) - 살처분에 따른 행정처리 - 가축방역관, 살처분(소각·매몰·소독을 포함한다) 감독관(시·군 관계관) 및 작업인부로 구성하며 인원은 살처분 및 소독물량에 따라 조정 - 살처분 및 소각·매몰요령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하고 살처분 동물 등에 대한 소각 또는 매몰 실시 -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축사, 기구 및 차량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 - 살처분 실시 계획을 인체감염 대책반에 사전 통보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 실시 요청 |
| 교육·홍보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 의심축 신고요령 등 교육·홍보 - 조류인플루엔자 홍보물 제작·배포 - 언론 홍보 및 대응 |
| 소독지원· 사후관리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약품 확보 및 배포, 사용 시 주의사항 교육 - 발생농장 및 발생지 소독, 청소·세척·소독처리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기술적 자문 - 소독차량의 동원 및 방역지역별 일일 소독 실시 계획 수립 - 『닭·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요령』에 의거 분뇨처리 - 시·군은 발생농장 진준물(분변, 왕겨, 깃털 등) 처리 및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KAHIS)에 입력 - 사후관리 및 재입식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
| 인력·장비 보급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실시에 따른 인력동원 및 필요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 - 각종 물품 보급 지원 - 살처분 현장 투입인원에 대한 식사 등 보급 |

| 구 분 | 상황반별 주요 임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동원인력의 목욕과 농가 출입방지 등 인력관리 - 살처분 투입 명단(성명, 소속[기관, 용역업체 등], 본인 연락처[휴대전화 등],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출생일, 1개월 내 참여 이력 등)을 인체감염 대책반에 사전 통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연번</td><td>성명</td><td>소속</td><td>연락처</td><td>주소</td><td>국적</td><td>주민등록번호</td><td>1개월 내 참여 이력</td><td>...</td></tr> <tr>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 | | | | | | | | 연번 | 성명 | 소속 | 연락처 | 주소 | 국적 | 주민등록번호 | 1개월 내 참여 이력 | ... | | | | | | | | | |
| 연번 | 성명 | 소속 | 연락처 | 주소 | 국적 | 주민등록번호 | 1개월 내 참여 이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체감염 대책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감염 예방교육 및 조치(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등) - 고위험군 10일 간 모니터링 - 관내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감시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구 방역대책상황실 구성 및 주요 임무(예시) |



* 근무시간 : ○○:○○~익일 : ○○:○○까지 (24시간 근무)

5.1.3 시·군·구는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하여 발생농장의 살처분, 소독, 매몰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차량, 장비, 물품 등에 대한 세척, 소독과 탈의실, 샤워장, 소독기구(장비) 설치·운용 등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통제본부는 가축방역관을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발생농장 및 발생지에 대한 살처분·소독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 통제지점과 소독 대상 범위·지역을 설정하고, 발생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장비·기구·물품 등을 통제한다.
 - * 소독 미실시 또는 소독 실시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출 금지
- 발생농장 입구에 전염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표 7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한다.
- 발생농장 및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해 살처분·폐기조치한다. 구체적인 살처분 및 폐기절차는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및 별표 11(살처분 및 사체처리 세부요령)에 의한다.
-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사, 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용이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또는 시설물 등은 매몰 등 폐기 처분한다. 폐기 처분 시에는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 농장 종사자, 방역요원 등 고위험군일 경우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2 발생농장 인근 지역에 대해 관리지역(500m 이내)·보호지역(반경 500m~3km)·예찰지역(반경 3~10km)의 방역지역을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감수성 동물(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포함)의 소유자 등에게 이동제한을 명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명령서는 개별 통보(SMS 문자메시지 병행이용)하고 공고 실시

5.2.1 발생농장 또는 발생지에는 이동통제초소를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생농장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통제 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을 허용한다.

- 발생농장의 살처분, 소독, 매몰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장비, 차량, 물품 등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별도의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출입자·출입차량·관련 장비 등에 대하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 살처분 완료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한다.

5.2.2 방역지역 내의 주요 국도 및 지방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감수성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을 제한한다.

- 발생지 및 방역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출입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 이동통제초소 근무자는 14. 이동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에 따라 이동을 통제한다.

5.2.3 해당 가축 및 축산물 등의 불법이동 및 반출 관련자 적발과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한다.

5.2.4 농장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적을 적용한 지도를 이용하여 방역지역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 지역에 관계된 정보를 명확하게 수집·파악하여야 한다.

5.2.5 방역지역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기구 등을 반드시 소독하도록 지도·감독한다.
- * 축사 출입구의 소독제 희석농도는 유기물이 많은 조건(고농도)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알칼리성인 생석회와 반응할 경우 효과가 저하되는 산성제제(acids)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농장의 출입구와 주변 도로,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살포한다.

5.3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방역조치에 필요한 공무원 등을 말함)을 배치하고, 보호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 시까지 일일 임상관찰, 오염물건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6

역학조사 요령

1. 역학조사 기본체계

- 1.1.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검역본부장은 추가조사(2차) 및 역학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다.
- 1.1.1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역학조사 내용을 해당 시·군·구와 시·도, 검역본부장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빠른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1.1.2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역학관련 농장 포함)에 대한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1.2. 역학조사반은 지역별 생산자단체, 유관 행정기관 등을 통해 역학조사 대상 농장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1.2.1 필요시 지역 경찰관, 지역축협장 등을 대동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3.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 축산 관련 시설 및 사람·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제한 및 소독·검사 등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별표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2.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2.1. 역학조사반 구성

- 2.1.1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시·도 역학조사반을 구성한다.

2.1.2 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2.1.3 필요 시 지역경찰, 축협, 생산자단체장, 읍면동장 등의 협조를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2. 역학조사는 다음 내용에 대해 실시한다.

- 2.2.1 의사환축 또는 환축 발생농장의 가축 현황
- 2.2.2 의사환축 또는 환축 발생농장의 농장 일반현황
- 2.2.3 가축의 사육환경·분포
- 2.2.4 감염원인 및 경로
- 2.2.5 발생농장의 전파확산 가능성부(차량·사람·물품 등)
- 2.2.6 발생농가의 방역수칙 등 준수여부
- 2.2.7 그 밖에 해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된 사항
 - 발생농장에서 공급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
 -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 발생농장 출하가축의 도축장 등
 - 발생농장에서 반출된 분변을 처리한 업체
 - 그 밖에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차량 등

2.3. 중앙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2.3.1 중앙역학조사반은 현장역학조사팀, 추척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근무체제 운영 및 일일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2.3.2 중앙역학조사반 반장은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반원을 구성할 수 있다.

- 검역본부 역학조사과·가축질병방역센터 직원으로 역학조사관으로 지정된 자
- 검역본부 타부서(지역본부 포함) 직원 및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된 자
- 검역본부 역학조사위원, 학계 및 관련부처 전문가
- 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반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 자
- 기타 검역본부 직원

2.4. 시·도 역학조사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2.4.1 시·도 역학조사반은 비상근무체제 운영 및 일일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2.4.2 시·도 역학조사반 반장은 가축방역기관의 역학조사 담당과장(없을 경우 방역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반원을 구성할 수 있다.

- 시·도 가축방역기관 역학조사 및 방역담당부서 직원으로 역학조사관으로 지정된 자
- 시·도별 가축방역기관은 본소·지소별로 역학조사 전담직원을 2인 이상 지정 운영
- 시·도 역학조사위원, 학계 및 관련부처 전문가
-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역학조사반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자
- 기타 가축방역기관 직원

2.4.3 시·도 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별지 1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검역본부, 관할 시·군 및 시·도에 공문조치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5 역학조사반은 가능한 소독 등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기전에 별표 4 AI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시료 채취요령을 참조하여 농장내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채취시 농장 모식도 등을 통해 채취장소를 기록해야 하며,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5.1 시·도역학조사반이 시료(혈액·환경)를 채취한 경우 시료채취 내역서와 검사결과를 중앙역학조사반에 전달하여야 한다.

2.6. 검역본부장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소속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1회의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과 6회의 실무교육(24시간×6회 = 144시간 이상) 과 수료자의 경우 연 2회의 보수교육(16시간 이상)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역학조사반 편성 및 임무 등

3.1. 역학조사반장은 발생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학조사반을 현장역학 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3.2. 현장 역학조사팀

3.2.1 발생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역학조사를 담당

3.2.2 발생 농장의 현장 조사는 발병 원인과 전파경로 파악의 중요한 단서 확보에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전파원인 파악의 기본이 되므로 최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를 실시

3.2.3 현장조사팀 편성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1조로 구성하며, 필요시 개별 임무 분담

3.2.4 현장 역학조사 전 준비사항

| | |
|----------|--|
| 1. 정보수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이용해 발생농장 기본사항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 기본사항(사육규모, 주변농장 현황), 발생농장의 도축장 출하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농장에서 보유한 출하기록 등과 교차 확인 필요 ② 현장 정보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이장, 축산관련 단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발생농장주의 활동사항 등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추적조사팀에서 사전정보를 조사하여 제공 |
| 2. 출동준비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인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역학조사반원증, 특별사법경찰관지명서 등) - 기록장비(디지털카메라, 노트북, 펜, 기록용 용지, 책받침 등) - 지침서(가축전염병 역학조사 지침, 질병별 긴급행동지침, 역학조사서 양식) - 연락장비(이동전화 등), 줄자 등 계측장비 ② 방역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구(보호복, 장화, 마스크 장갑, 보호안경 등), 휴대용소독기(소독약 포함 ; 소독제는 소독 효과가 수 분 이내에 빠르게 발휘되는 것을 선택한다), 투명지퍼백 (대, 소), 비닐봉투, 기타 필요도구 등 |

3.2.5 조사방법 등

- 현장 역학조사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서를 참고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수시 추적조사팀과 상호 협조하여 신속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 현장상황을 고려, 가축이동 등 차단방역을 위한 긴급조치사항을 선정하여 조사
- 농장주를 직접 면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능한 경우 사양관리인 등 관련 종사자 등과 면담. 다만,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농장주의 재확인을 받음
- 면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 즉 역학조사의 중요성, 조사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담자를 안심시켜 최대한의 협조를 구함
- 병원체의 유입 및 전파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료채취(환경시료 채취대상 및 채취요령 참조)

3.3. 추적조사팀

- 3.3.1 현장역학조사팀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생농장을 출입한 가축이동사항, 인공수정사, 수의사, 사료차량, 가축운반차량 등의 인적 및 물적 요인의 타 농장 방문 등 이동사항 등 추적조사를 담당
- 3.3.2 현장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밀검사 결과 등을 현장역학조사팀에 연락 등의 업무 수행

3.3.3 추적조사팀 편성

-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적조사 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개인별 추적조사 대상을 부여(가급적 발생농가별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조사)

3.3.4 조사 방법 등

- 현장조사팀이 조사한 출하·사료운송 차량, 수의사·인공수정사 등의 발생 농장 및 타 농장 방문내역을 차량 기사 또는 관련 사업장 담당자에 유선 등을 통하여 조사
- 유선 조사가 되지 않을 경우 공문 요청 또는 현장조사팀에 연락하여 직접 방문 조사 등을 실시
- 추적 조사하여 확보된 자료를 현장 역학조사서와 교차 확인하여 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KAHIS 또는 전자문서로 등록 후 방역에 활용토록 관련 부서 또는 관할 지자체 등에 알림공문 조치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사환축발생신고서 등을 참고하여 유선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추적조사팀에서 현장조사 실시

3.4. 역학분석팀

3.4.1 가축전염병의 유입 및 전파 경로를 추정하여, 전파 범위 등을 예측하고 확산 상황을 분석

3.4.2 KAHIS 또는 전자문서로 등록된 역학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AI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고 검역본부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 발생농장(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농장 포함)을 방문한 축산차량의 이동 정보와 출입 시설 기록 등을 KAHIS를 통해 수집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3.5. 검역본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는 역학관련농장에 대해 시·도에 방역조치를 요구하고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3.5.1 시·도에서는 역학관련농장에 대해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통보)한다.

4. 역학조사 실시 및 범위

4.1.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동상황 등 조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 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

- 4.1.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 해당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 4.1.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등이 접촉한 적용대상 동물
- 4.1.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사람·차량과 그 사람·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적용대상 동물
- 4.1.4 살처분 대상가축,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 오리 및 역학 관련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 4.1.4.1 발생농장이 계열화사업자의 위탁농장의 경우에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 동일 계열화사업자의 다른 위탁농장으로 전파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계열화 사업자 위탁농가에 대한 전국 또는 지역별 정밀검사(항원 또는 항체)를 검토할 수 있다.
- 4.1.5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 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 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
- 4.1.6. 상기 4.1.1. 부터 4.1.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된 시기 또는 임상증상 발현일이 의사환축 발생일보다 이전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일로부터 21일 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 4.1.7. 발생상황 등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목적으로 환축의 임상증상 등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
5.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세부지침에 따른다.

7

발생농장 등 방역지역 방역요령

1. 발생농장 긴급방역조치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일로부터 시·군 인계 시까지 발생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1.2. 시·군은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설치하여 발생농장의 살처분, 소독, 매몰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차량, 장비, 물품 등에 대한 세척, 소독과 탈의실, 샤워장, 소독기구(장비) 설치·운용 등 방역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발생장소로 출발하기 전 현장통제본부 요원은 별표 8의 긴급방역용 용구를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1 현장통제본부는 가축방역관을 포함해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발생농장 및 발생지에 대한 살처분·소독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 대책본부에 출입하는 자는 출입 시마다 손과 신발을 철저하게 소독하여야 하고, 발생지역 축산농가는 대책본부에 출입금지 조치

1.3.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띠는 장소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7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1.4. 발생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출입하는 사람·차량·장비·기구·물품 등을 통제한다.

1.4.1 발생장소의 입구에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한다

- 세척·소독시설은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사람의 경우, 샤워를 한 후에만 청정지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샤워 및 차량 세척·소독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는 일정한 장소에 모아 소독처리 한다.

- 소독제 회석농도는 유기물이 많은 조건(고농도)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알칼리성인 생석회와 반응할 경우 효과가 저하되는 산성제제(acids)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4.2 발생장소 밖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세척·소독시설을 통과하도록 하고, 이때 사용한 작업복 등은 수거통에 담아두어야 한다.

1.4.3 발생농장 및 발생지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장비는 반드시 세척·소독한 다음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출입자·출입차량·관련 장비 등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 소독 미실시 또는 소독 실시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출 금지

1.5 발생농장 내 감수성 동물에 대한 살처분 등 조치를 신속히 실시한다.

1.5.1 살처분 및 사체처리(소각·매몰·랜더링 등) 방법과 장소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1.5.2 살처분은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살처분 기준 및 절차는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및 별표 11(살처분 및 사체처리 세부 요령)에 의한다.

1.5.3 비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감염동물 또는 오염장소와 접촉되지 않도록 별도의 장소에 계류시킨다.

1.5.4 살처분하여 조성된 매몰지는 최소한 3년 이내에는 발굴할 수 없다.

1.5.5 살처분 장소에는 살처분 종사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안전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설내의 탈의실에서 세척·소독이 용이한 작업복(조치 확인증 부착)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갈아입을 작업복은 새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 배포한다.

1.6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6.1 발생농장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완료하고 보건소장이 발급한 조치확인증을 부착하지 않은 자는 현장출입을 금지하고, 세척·소독 시설을 통과하도록 한다.

1.6.2 발생농장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 완료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통제 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한다.

1.6.3 발생 농장 종사자, 방역요원 등 고위험군일 경우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1.6.4 살처분 완료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조치한다.

1.7 발생농장의 사체 등에 대한 차단방역조치를 실시한다.

1.7.1 사체를 면 곳으로 이동시켜 소각·매몰할 경우에는 혈액·배설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운반 전·후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여야 한다.

1.7.2 살처분 된 사체는 병원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각·매몰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되어야 한다.

1.8 발생농장 내 축사 및 시설·장비·도구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1.8.1 병원체의 전파원인이 될 수 있는 오염장소 및 물품·장비·도구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세척 및 소독은 “제4장 9. 발생농장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1.8.2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있는 축사, 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용이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또는 시설물 등은 매몰 등 폐기 처분한다. 폐기 처분 시에는 병원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8.3 해당 농장 주변 등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1.8.4 농장의 출입구와 주변 도로,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살포한다.

2. 방역지역 설정·운영

2.1. 방역지역 설정

2.1.1 시·도 및 시·군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을 설정한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한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초과하여 3k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한다.
시·군·구 보호지역 설정 시 보호지역 설정대상 경계선(境界線)에 소재한 최소 행정단위 지역(마을 또는 법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곽이 경계(境界)가 되도록 정한다. 다만, 그 최소 행정단위 지역 안에 도로·하천·철도 등이 있어 질병전파의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도로·하천·철도 등의 한쪽만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한다.
- 방역지역(관리·보호지역)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범위를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2.2. 이동제한 명령

2.2.1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은 발생지 및 방역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서 개별통보(SMS 문자 메시지 병행이용) 및 공고를 실시한다.

2.2.2 방역지역별(관리·보호·예찰지역) 이동제한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에 따르며, 세부 이동제한 요령은 “7. 이동제한 요령”을 참고한다.

2.2.3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안의 가금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방역조치에 필요한 공무원 등을 말함)을 배치하고, 보호지역 안의 가금농가에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일일 임상관찰, 오염물건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2.3.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2.3.1 시·군은 방역지역 내의 주요 국도 및 지방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감수성 가축 및 축산물의 이동을 제한한다.

- 발생지 및 방역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출입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2.3.2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및 근무자 근무요령 등 세부사항은 “15.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요령”에 따른다.

2.4. 방역지역 내 예찰·검사 강화조치

2.4.1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추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 지역 순으로 실시하고 동일 방역지역 내에서는 오리농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2.4.2 시·도 또는 시·군은 관리·보호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에 대한 환축의 발생 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 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한다.

2.5. 방역지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시 조치

2.5.1 시·군은 방역지역 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 시 시·도와 협의하여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한다. 다만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2.5.2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최초 발생 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한다.

2.5.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재설정하고,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8

이동제한 요령

I. 기본원칙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관리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이 설정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지역 내에서는 가금 및 가금 생산물, 사료, 분뇨 등 이동이 제한된다.
- 이동제한은 대상 및 방역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발생농장과 가까운 방역지역 일수록 반입 금지, 격리·폐쇄 조치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 이동제한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명령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며,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I. 기관별 조치요령

1. 시·군

- 1.1 시·군은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격리·억류 또는 이동 제한 명령서를 발부하고, 관련 공고를 실시한다.
 * 신속한 전달을 위해 SMS 문자메시지로 이동제한 명령서 일부 내용 송부
- 1.2 시·군은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이 이동제한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 시 즉시 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한다.

2. 시·도

- 2.1 시·도는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축산차량,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내용을 지도·홍보하고, 시·군으로 하여금 이동제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조치한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

- 3.1 검역본부는 중앙기동점검반 등을 활용하여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례 확인 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벌칙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3.2 검역본부는 KAHIS를 활용하여 방역지역 내 축산차량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사례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역을 통보한다.

III. 대상별 이동제한 요령

| 방역지역 및 대상별 이동제한 조치 내용 |

| 구분 | | 관리지역(500m) | 보호지역(500m~3km) | 예찰지역(3~10km) |
|---|-----------|--|--|---|
| 가금 | 닭 등 | 살처분 및 반출입 금지 * 위험도 평가 및 심의회를 통해 필요시 살처분 범위 조정 | 발생농장과 동일축종 살처분 원칙, 반출입 금지 * 위험도 평가 및 심의회를 통해 필요시 살처분 범위 조정 * 다만, 육계(삼계 포함)는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출하 도축장이 소재한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독·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하여 인접 사도의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 출하 7일 전 자체 신고 및 AI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반입·반출 허용 |
| | 오리·거위·기러기 | | 발생농장과 동일축종 살처분 원칙, 반출입 금지 * 위험도 평가 및 심의회를 통해 필요시 살처분 범위 조정 | 반입·반출 금지 * 다만, 출하 7일 전 자체 신고 및 AI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정관이 정하는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요건을 충족하고, 방역 관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며, 항원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반입 허용 |
| 살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 AI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가능 | | | | |
| 알 (종란· 식용란) | 닭 등 | 폐기 | 폐기 다만, AI 검사결과 음성 시, 종란(백세미용 알을 포함한다)은 AI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 소독 후 해당 시도 내 반출 허용, 식용란은 AI 사멸 조건으로 가공되었거나 소독한 경우 반출 허용 |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이동 허용 |
| | 오리·거위·기러기 | | 폐기 | 종란은 예찰지역 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에 한하여 정밀검 |

| 구분 | 관리지역(500m) | 보호지역(500m~3km) | 예찰지역(3~10km) | |
|-----------------------|----------------------------|--|--|---|
| | | | 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 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 식용란은 오리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공용으로만 반출 허용 | |
| 농장 분뇨 | | 반출 금지 * 닭 분뇨는 AI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처리장으로 반출 허용(검역본부 승인) | 반출 금지 * 닭 분뇨는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군 내 처리장으로 이동 가능하며, 예찰지역 내 처리장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동 허용 | |
| 농장 사료·깔짚 | | 반출 금지, 사료반입은 관리·보호지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사료 전용차량으로만 가능 * 이동제한으로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폐기 | 반출 금지, 반입 시 소독 * 이동제한으로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가축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폐기 | |
| 도축장 | 닭 등 | 출하 전 검사결과 AI 음성인 방역대 내 가금만 도축 허용 * 관리+보호지역 전체 가금농장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방역대 외 가금 도축 가능 | 출하 전 검사결과 음성인 가금만 도축 허용 | |
| | 오리· 거위· 기러기 | 폐쇄 | 출하 전 검사결과 AI 음성인 방역대 내 가금만 도축 허용 * 관리+보호지역 전체 가금 농장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방역대 외 가금 도축 가능 | 출하 전 검사결과 음성 인 방역대 내 오리만 도축 허용 다만, 관리+보호지역 가금 농장 검사결과 AI 음성이고 방역대 외 가금에 대한 검사 후 음성인 경우 도축 허용 |
| 사료공장 (원료·사료) | | 이동제한 * AI 검사결과 양성 또는 심의회 결과에 따라 필요시 폐기 | 이동제한 * 검역본부 점검 후 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생산·유통 | 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생산·유통 |
| 비료공장 (유기질비료생 산) | | 닭·오리 분뇨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 * 닭·오리 분뇨차량 통행금지(검역본부로부터 이동 승인받은 산란계 분뇨차량은 허용) | 닭·오리 분뇨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생산 및 유통 | |
| 난좌·왕겨 등 | 원료·제품 이동제한 및 시설·장비·사람 등 소독 | | - | |

| 구분 | 관리지역(500m) | | 보호지역(500m~3km) | 예찰지역(3~10km) |
|-------|-------------------|--------|---|---|
| 칼짚 업체 | | | | |
| 부화장 | 닭 등 | | <p>폐쇄, 폐기</p> <p>* 닭 부화장은 위험도평가 후 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종란의 입고, 부화 및 해당 시도 내 병아리 반출 허용</p> | <p>방역관 지도·감독 하에 부화·반출 허용</p> |
| | 오리· 거위· 기러기 | 폐쇄, 폐기 | <p>폐쇄·폐기</p> <p>* 다만 종오리 농장과 인접하지 않은 부화장의 경우, 방역대 설정 이전에 예찰 지역 또는 이동제한 지역 외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험도 평가 후 해당 시도 내 반출 허용</p> <p>* 위험도 평가 : 정밀검사(유래 농장별), 소독/방역 시설 기준 준수 확인, 방역 관리계획 확인</p> | <p>이동제한 지역 외에서 반입된 종란 및 예찰 지역 내 반출이 허용*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 허용</p> <p>* 예찰지역 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부화장에 타 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 등)하는 경우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p> |

가금 및 도축장

1. 관리지역 내 가금 및 도축장에 대한 이동제한

1.1 모든 가금의 농장 밖 이동금지

* 다만, 관련 절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정밀검사 음성인 가금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1.2 오리 도축장은 폐쇄, 닭 도축장*은 출하 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 내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만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 다만,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 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 후 음성이면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2. 보호지역 내 가금 및 도축장에 대한 이동제한

2.1 모든 가금의 농장 밖 이동금지, 보호지역 밖의 가금은 보호지역 안으로 반입금지

* 다만, 관련 절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정밀검사 음성인 가금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2.2 2.1에도 불구하고 육계(삼계 포함)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출하 도축장이 소재한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독·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 인접 시·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 출하 도축장이 소재한 인접 시·도지사는 출하 농장이 있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도 내 도축장 출하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도축 현황, 출하 규모 등) 요구를 할 수 있음

** 출하 당일 가축방역관이 축사별로 가금을 임상 관찰하여 폐사 등 이상 여부 확인, 24시간 내 AI정밀검사(출하전 검사 음성) 및 전 두수 출하, 공휴일 도축 원칙(당일 출하 마지막 도축), 별도 구획 계류, 출하 도축장·출하차량·어리장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출하차량 및 상하차반 등 역학 관련 인력의 타 가금농장 방문 제한

2.3 닭 및 오리 도축장은 출하 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 내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만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 다만,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 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 후 음성이면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3. 예찰지역 내 가금 및 도축장에 대한 이동제한

3.1 오리의 농장 밖 이동금지 및 예찰지역 밖의 오리는 예찰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 다만, 출하 7일 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요건을 충족하고, 방역 관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며,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반입 허용

3.2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은 강화된 방역시설과 요건을 갖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낮은 오리농가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예찰지역 내 오리를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 세부기준 >

| 기준 | 세부기준 |
|--------|---|
| 시설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건축 신고가 된 농장 · 철재 또는 판넬 형태(비닐하우스 농가 및 무허가 농가 제외) · 왕겨를 사용하지 않는 고상식 축사 / 또는 축사 내 사육기간 동안 사용하는 왕겨 비축장소(왕겨창고 등)가 있고, 왕겨 살포기 및 로터리 장비가 출입하지 않음 · 분동을 하지 않거나, 분동 통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 · 축사 내 장비·기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
| 방역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간 농장주 및 종사자가 교차 근무하거나 교류하지 않음 · 농장 간 기구·장비·차량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음 |
| 방역수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점검 결과(1차 지자체 → 2차 검역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 준수 |
| 지리적 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도래지, 하천, 저수지 등과 연접하지 않음 · 가금 밀집단지 등과 500m 이상 이격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찰지역 내 반복 발생이 없고, 다발(3회 이상) 계열사 소속 농장이 아닐 것 |

3.3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출하 7일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후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입 허용

3.4 닭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 내에 있는 오리에 대하여만 도축을 허용

* 다만, 오리 도축장의 경우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 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 후 음성이면 도축 허용

가금의 지정 도축장 출하 시 세부 방역요령

1.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절차

- 지자체에서 출하하고자 하는 가금농장과 가장 가까운 도축장을 지정하여 해당 도축장으로 출하하도록 안내한다.
- 가축방역관은 출하 전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 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결과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의사환축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라 조치
- 출하 전 가금 운반차량의 내·외부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출하 및 하차시에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한다.
- 운반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농장 출입 시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 가축방역관은 출하 가축이 농장에서 도축장에 인계될 때까지 출발 전 차량 소독, 출하 가축 적재 및 운반 등 과정을 감독하고, 출하 가축이 도축장에 인계된 후에는 지정 도축장의 검사관 등이 생체검사, 하역과정 및 차량 소독 등을 감독한다.
- 운반차량이 출발하여 도축장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하여야 한다.

2. 출하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방역기준

-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비닐로 넓게 덮는 등의 오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 안에는 운반 중 오물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일자별 이동두수 및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알(종란 및 식용란), 부화장

1. 관리지역 내 알(종란 및 식용란) 및 부화장에 대한 이동제한
 - 1.1 닭·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 폐기
 - 1.2 닭·오리 부화장의 폐쇄 및 보관 중인 닭·오리의 부화란 폐기
2. 보호지역 내 알(종란 및 식용란) 및 부화장에 대한 이동제한
 - 2.1 닭·오리의 종란(백세미용 알을 포함한다) 및 식용란은 폐기하되, 보호지역의 닭 종란(백세미용 알을 포함한다)과 식용란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소독 등 아래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반출 허용
 - 닭 종란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 소독 실시 후 해당 시·도 내 반출 허용
 - 닭 식용란은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되었거나 소독한 경우 반출 허용
 - 2.2 닭·오리 부화장의 폐쇄 및 보관중인 닭·오리의 부화란 폐기. 다만, 보호지역 내 닭 부화장의 경우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종란의 입고, 부화 및 병아리 반출 허용
- * 위험도평가는 임상예찰, 정밀검사 및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반출 시 해당 시·도 밖으로는 반출하지 못함
3. 예찰지역 내 알(종란 및 식용란) 및 부화장에 대한 이동제한
 - 3.1 닭의 종란과 식용란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이동을 허용
 - 3.2 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되, 아래 방역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동 허용
 - 오리 식용란은 오리에 대해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공용(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반출 허용
 - 예찰지역 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 허용
 - * 종오리 농장이 부화장을 같이 운영, 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와 차단됨 등
 - 3.3 닭 부화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부화 및 부화 병아리를 방역대 밖으로 반출 허용
 - 3.4 오리 부화장은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3조제5호에 따라 반출이 허용된 예찰지역에서 유래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 병아리를 방역대 밖으로 반출 허용

알의 폐기절차 및 알 운반용기와 운반차량 등 소독요령

1. 알의 폐기 절차

- 폐기대상 알에 대하여는 알의 표면에 소독제를 살포하거나 일정 시간 소독수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소독을 하여야 한다.
- 소독이 끝난 뒤 “9. 살처분 및 사체처리요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난좌 및 부화기 소독 등 처리요령

- 식용란 운반용 파레트 및 판넬 등을 농장에 반입하기 전에 식용란 운반차량과 함께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농장에서 2차 소독을 실시한다.
- 부화에 사용되지 않은 난좌(卵座)는 깨끗이 세척한 다음 소독을 실시한다.
- 부화장의 부화기는 세척하여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소독을 실시한다.
- 부화장에서는 종란을 발육기에 입란하여 온도와 습도가 적정수준으로 작동된 후 12시간 내에, 발생기로 옮긴 다음 부화대상 알의 10%가 부화되기 전에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소독을 각각 20분 간 실시하여야 한다.

3. 방역지역 내 알 운반차량 운행 요령

- 운전자, 기구, 차량 등에 대해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방역지역 및 가금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험경로가 낮은 경로로 선택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농장을 연속해서 운반하여야 하는 경우

4. 산란계 농장 계란 환적장(상차장소) 운영 요령

- 농장 내 AI 유입 방지를 위해 계란 수집차량은 농장 내 출입 하지 말고 농장 밖 특정 장소 또는 농장 입구 주변의 구획된 장소에 계란 환적장(상차장소)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며, 해당 장소는 고압분무기 등으로 소독이 가능한 장소이어야 한다.
- 방역대 내 산란계 농장은 계란 반출 전 시·군에 계란 출하일자 및 출입차량, 상차 방법, 소독 계획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시·군은 알 운반차량의 AI 발생지역·농장 출입 여부 등을 GPS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위반 시 이동제한 및 소독조치 하고 규정 위반에 따라 조치한다.
- 알 운반차량은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 후 계란을 수집·운반토록 관리한다.

사료 및 왕겨

1. 관리지역 내 사료·왕겨 등에 대한 이동제한

- 1.1 사료 · 깔짚 · 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되, 이동제한으로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폐기.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에서만 운행 하는 사료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의 농장 내 반입을 허용
- 1.2 관리지역 내 사료공장의 원료 · 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심의회의의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폐기

2. 보호지역 내 사료·왕겨 등에 대한 이동제한

- 1.1 사료 · 깔짚 · 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되, 이동제한으로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폐기.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에서만 운행 하는 사료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의 농장 내 반입 허용
- 1.2 보호지역 내 사료공장의 원료 · 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되, 위험도 평가 후 가축 방역관의 지도 · 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허용
* 가금용 사료는 검역본부 담당관이 직접 점검 후 생산 및 유통 허용

3. 예찰지역 내 사료·왕겨 등에 대한 이동제한

- 1.1 사료 · 깔짚 · 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및 농장 내 반입시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 · 감독 하에 폐기
- 1.2 사료공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 · 감독 하에 생산 및 유통

사료 및 왕겨 공급 세부요령

1. 사료공급요령

- 1.1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지역(보호지역)
 - 1.1.1 사료공급 전용차량 지정
 - 사료공급에 필요한 적정수의 차량(벌크사료 운반차량, 지대사료 운반차량)을

사료 및 왕겨 공급 세부요령

고정 배치하여 운영하되 가금류 이외의 가축에 대한 사료차량도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한다.

- 사료업체는 업체 간 조정을 통해 발생지 관할 시·군·구에게 사료 지정차량을 신청한다.
- 시·군·구는 이동제한지역 내 사료공급 전용차량에 대해 지정서를 발급한다.
- 이동제한지역 내 사료공급 전용차량 운전자는 지정서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이동제한지역 출입 시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료공급차량과 운전자는 <참고 1> 사료차량 소독관리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1.2 사료공급 체계

- 관리·보호지역에 공급하는 모든 사료차량은 시·군 및 방역대별로 설치된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 관리·보호지역 내에 사료차량을 지정하여 고정 배치하고, 지정된 차량만 이용하여 농장별 공급한다.
- 사료 하차장소에 대하여 매일 수 회 소독실시. 사료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출입 전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한다.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에 하차하여 전달하되 사료를 전달하는 일정장소는 사료공급을 전후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벌크사료는 농장 밖에서 전달하고, 부득이하게 농장 내 진입 시 차량 운전자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농장 관계자와 접촉 금지(악수 등), 차량에 대한 소독 필증은 농장주가 확인한 후 보관하며, 소독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 차량 내·외부 소독여부는 농장주가 확인하고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한다.

1.2 발생농장 반경 3~10km 이내 지역(예찰지역)

1.2.1 사료공급차량 소독

- 공급하는 모든 사료차량은 시·군 및 방역대별로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1.2.2 사료공급 체계

사료 및 왕겨 공급 세부요령

- 지대사료는 농장 밖 일정장소에 하차하여 전달하되 사료를 전달하는 일정장소는 사료 공급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
- 벌크사료는 농장 밖에서 전달하고, 부득이하게 농장 내 진입 시 차량 운전자는 관계자와 접촉을 피할 것(악수 등), 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은 농장주가 확인한 후 보관하며, 소독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 차량 내·외부 소독여부는 농장주가 확인하고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한다.

1.3 공급자와 사료전용차량 간의 사료 전달방법

1.3.1 발생지역 반경 3km 이내에 사료를 공급하여야 하는 자는,

- 반드시 소독설비 설치된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차량에 사료를 인계하여야 하며, 출발 전에 출발장소·시간, 거점소독시설 도착 예정시간 등을 사료운반 형태별 전용 차량 운행자에게 전화 통보하여야 한다.
- 공급 사료에는 공급대상 농가명, 주소지, 전화번호 및 사료거래내용 등을 표시하여 공급차량에 인계한다.
- 사료 전용차량에 사료 인계 시 사용되는 장비·기구 등을 사용 전후 마다 소독하여야 한다.

1.3.2 전용(고정배치) 차량은,

-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인수한 사료에 대하여 농가별 공급현황을 기재(일자별, 공급자명, 수량등)한 후 사료공급자에게 공급 이행상황을 전화 통보

1.4 방역대 외 사료공급은,

- 사료업체는 사료운반차량을 발생지역과 비발생지역으로 구분 운행하고 소독 전담자를 지정하여 소독필증을 발급한다.

1.5. 관리·보호지역 내 사료반출

1.5.1 기본방향

- 관리지역·보호지역 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해당 관리지역·보호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료 및 왕겨 공급 세부요령

- 다만, 시·도 가축방역관은 해당 사료공장 및 사료 운반차량, 사료 등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관리지역 내 사료공장에 있는 사료에 대하여 해당 방역지역 밖으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 * 검사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폐기
- 보호지역 내 사료공장에 있는 가금용 사료는 검역본부에서 직접 점검하여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생산 및 유통 허용

1.5.2 관리·보호지역 안에 있는 사료의 반출 허용 요령

- 관리 및 보호지역 내 위치한 사료공장은 전염병 발생 시 · 군내 예찰지역에 환적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해당 사료공장은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시 · 군·구에게 환적장 지정을 요청
- 환적장 설치장소는 가급적 전염병 발생 시 · 군내에 설치하되, 현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인접 시 · 군과 협의하여 설치 가능
- 환적장 운영 시 반드시 사료공장에 준하는 소독시설 설치·운영
- 환적장을 운행하는 사료차량은 시 · 군 및 방역대 별로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운행

2. 왕겨 공급요령

2.1 왕겨 공급 시 방역관리요령

- 지대사용 및 마대 재활용 금지
- 왕겨 저장고는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고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 왕겨 생산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1회 운영 후 세차 및 소독, 소독실시기록부 기재 등 관리강화
- 방역대 내에 왕겨 공급 시 사료 공급 요령에 준하는 방역관리 실시

2.2. 방역지역 내 왕겨공급 및 차량운행 요령

- 방역지역 내 왕겨를 운반 시에는 운전자, 기구, 차량 등에 대해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방역지역 및 가금밀집지역 등을 고려하여 위험경로가 낮은 운반경로로 선택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농장을 소독하지 않고 연속해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 1

사료차량 소독관리요령

| 단계 | 소독 요령 | |
|---------|--------|---|
| 공장 진입 | 차량 | 공장 진입 시 고압(스팀 권장) 세차로 차량 바퀴 등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한다. |
| | 사람 | 개인 소독기 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한다. |
| 공장 출차 | 차량 |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진 상태를 점검한다. |
| | 사람 | 1) 차량 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비치 상태를 확인한다. 2)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을 한다. |
| 농장 도착 | 차량/ 사람 | 1) 농장 진입 시 차량에서 내리지 말고 부득이하게 내려야 할 경우, 1회용 장갑, 마스크, 방역복, 1회용 덧신 등을 착용한다. 2)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차량 바퀴 등 2차 소독을 실시한다. |
| | 차량/ 사람 | 1) 농장에서 나갈 때 농장에서 사용한 1회용 방역용품 등은 비닐용기 등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서 폐기 처리한다. 2) 개인용 소독기로 손, 의복,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 외부는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
| 기타 준수사항 | 기타 | 1) 1회용 방역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 또는 오염 우려 시 담당자로 부터 즉시 재지급 받는다. 2) 농장 내에서 농장 종사자 등과 접촉하지 않는다. 3) AI 발생 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반경 3km)내 운행을 금지한다. * 지정된 사료운반차량만 운행 가능 4)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통제구간)에 출입하지 않는다. |

분뇨

1. 관리·보호지역 내 가금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1.1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내 매몰 또는 축사내 보관하되,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은 허용하고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

* 다만, 닭의 분뇨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검역본부장 으로부터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이동 허용

1.2 닭·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

2. 예찰지역 내 가금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2.1 닭·오리의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군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 가능
-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인근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할 경우에는 이동 허용

* 시·군·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 설정 시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해 발생 시·군·구내 1개 이상 공동처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닭·오리농장 등 가축분뇨 세부처리요령

1. 기본원칙

1.1 우선 농가에서 보유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매몰 등의 방법으로 자체 처리한 후 보관하고, 외부의 반출은 최대한으로 억제한다.

1.2 농장주는 이동제한 기간이 길어져 농가에서 보유한 처리·보관능력으로 자체 처리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소독 등 조치 후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1.3. 농장주는 농장에서 계분이 이동할 때 가축분뇨법에 따라 관리대장(참고 1)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제한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에서 가축분뇨처리

2.1 발생농장(예방적살처분 등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 포함), H5 및 H7 항체 양성판정 농장, 환경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의 분뇨는 농장 내 매몰 후

닭·오리농장 등 가축분뇨 세부처리요령

당일 농장 내·외부 등이 흠뻑 적셔지도록 철저히 소독한 후, 축사 내부·외부를 21일 간 1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

- 다만, 위 농장들 중 분뇨의 매몰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축사별로 내부에 분변을 한곳으로 모아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 분변의 표면 전체에 생석회가 충분히 도포되도록 하여 보관하고, 이때 생석회와 소독액 및 비닐 등의 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생석회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축사 내 모든 분변에 유효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파복 및 원치커튼 등으로 밀폐·보관한다.

<예시>



2.1.1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28일이 지난 후 환경검사(분뇨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한다.

- 다만, 농장 내 퇴비사가 있어 축사 내 분변을 일정 방역조치 하에 퇴비사에 적재한 후 또는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28일이 지난 후 환경검사(분뇨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음성이며, 농장 내 퇴비장에 발효 후 비닐 도포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식시험의 진행이 가능하다.

2.1.2 농장 밖으로 분뇨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살처분 완료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환경검사(분뇨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때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반출을 허용하되, 반출기록을 유지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다만, 농장에서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가축방역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닭·오리농장 등 가축분뇨 세부처리요령

감독 하에 농장 밖으로 분뇨 반출 가능(이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필요)

2.2 보호지역(3km 이내)의 분뇨는 농장 내에 매몰하거나 이동제한 기간 동안 축사 내에 보관하도록 한다.

- 산란계의 분뇨는 농장 내 이동을 허용하되,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한다.
- 다만, 닭의 분뇨는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이고 검역본부장이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반출이 가능하다.(다만,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완료되고 보호지역 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2.3 예찰지역(3~10km)에서 분뇨는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장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군 내 공동 처리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 다만,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 또는 축분처리시설이 없거나 해당 시설이 분뇨 처리 및 수용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참고 1에 따라 인근 공동처리장 지정·승인을 받은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

2.4 시·군·구는 분뇨운반차량을 지정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찰지역 닭 분뇨운반 전용차량에는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한다.
- 감독관의 입회하에 운반차량에 대한 고압세차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방역차량을 배치하여 분뇨처리장 내·외부를 소독한 후 분뇨를 상차한다.

2.5 시·군·구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소독 및 상·하차 등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분뇨운반 전용차량 운행 시 농·축협직원 등을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반출농장에서 공동처리장까지 동승하여 소독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방역 관리
- 운반차량은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운 후 운행

3. 이동제한지역 외에서 가축분뇨처리

3.1 오리

3.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도 또는 역학 관련 농장의 오리분뇨는 해당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농장 외부로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닭·오리농장 등 가축분뇨 세부처리요령

분뇨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방역조치 후 농장 외부 반출을 허용한다.

- 시·군은 아래 내용이 포함된 오리농장 분뇨처리계획(지역별, 농장별, 처리 시설별 분뇨 운반 및 처리상황 관리 계획을 포함)을 수립하고 시·도에 제출한다.
 - * 분뇨를 반출하고자 농장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 * 가축방역관이 해당 농장의 분뇨 반출 전후 및 분뇨 반출 시 농장 내외부 소독 및 분뇨 운반차량 소독 실태 점검
 - * 분뇨 처리시설은 해당 농장 인근에 위치하고 AI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외에 위치
 - * 가축방역관은 해당 분뇨처리업체 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분뇨 처리업체로 지정
 - * 분뇨운반차량은 1일에 해당 농장만 방문하고, 분뇨 처리 후 고압증기세차 및 소독 후 환경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 운영 허용
 - * 분뇨운반차량은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운 후 운행
- 시·도는 관할 시·군의 계획서를 검토하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반출을 승인한다.

3.2 닭

3.2.1 닭의 분뇨를 해당 방역지역 해제 이전에 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반출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관이 현지 점검하여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반출 여부를 결정하고 반출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3.2.2 육계 및 산란계의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하도록 하되,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 농장에 대한 AI 검사 후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에 반출하거나, 건조시설 등에서 산란계의 분뇨를 건조시킨 경우에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반출을 허용한다.

- 분뇨처리장이 포화되어 농장 내 야적하는 경우에는 비닐을 깔고 분뇨를 쌓은 후 비닐을 덮어 비 또는 눈 등에 의한 유실방지와 해충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3.3 시·군·구는 분뇨운반차량을 지정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

3.2.3 분뇨운반 전용차량이 출하농가를 변경할 경우에는 매번 고압세차 및

닭·오리농장 등 가축분뇨 세부처리요령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3.3.3 방역차량을 배치하여 분뇨처리장 내·외부를 소독한 후 분뇨를 상차한다.
- 3.4 시·군·구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소독 및 상차 등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3.4.1 해당 시·군에서는 분뇨처리 감독관을 지정하고 반출농장의 소독 등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4.2 운반차량은 분뇨가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운 후 운행하여야 한다.

4. 매립 시 방법

- 4.1 이동제한지역 내에 국·공유지의 매립지를 확보하여 소독약품으로 처리한 후 매립
 - 염산(hydrochloric acid), 구연산 등 산제제, 생석회 등

5. 가축분뇨 내의 병원체 오염차단 조치

- 5.1 분뇨처리시설, 분뇨 저장조, 퇴비사 등에 차량통제 및 소독, 야생조류의 접근차단
 - 차량바퀴가 소독조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고 차체는 분무소독 실시
 - 야생조류·설치류 등이 분뇨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 분뇨에 대한 소독
- 5.2 발생농장 또는 이동제한지역 내 분뇨를 처리하려는 축분공동퇴비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업체는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분뇨반입 중단
 - 공동처리장의 내·외부 생석회 도포 및 소독 실시

6. 비료생산업체 준수사항

- 6.1 닭 오리 등 분뇨를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참고2의 가축분뇨 운반차량 세척·소독 요령에 따라 방역관리를 하여야 한다.
- 6.2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참고2에 따라 소독 등 방역관리를 하여야 한다.

참고 1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가축분뇨처리요령

- (기본원칙) 전용운반차량을 지정하여 타 지역 운행 금지, 이동 중 가금류 사육농가 우회(동일 동선유지), 예찰지역 밖 출입차량은 3차례 이상 소독
- (사전준비) 시·군·구는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참고 1-1의 가축분뇨처리계획 (분뇨반출신청서, 현장 사진 포함)을 수립하여 보호지역은 시·도를 경유하여 검역본부에 승인 요청하고, 예찰지역은 시·도에 승인 요청
 - 시·도 또는 검역본부는 가축분뇨처리계획을 검토하여 방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 후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 (가축분뇨 처리) 시·군·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공동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업체로 이동을 허용하고, 감독관을 지정하여 철저히 관리
 - i. 해당 농가에서 시·군에 공동처리장 또는 분뇨처리업체 이동 승인 요청
 - ii. 시·군 가축방역관이 현지 점검하여 반출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공동처리장 또는 축분처리업체에 작업일자 및 처리물량 등 통보
 - iii. 공동처리장 또는 축분처리업체는 전용차량을 지정하고, 감독관 입회 하에 운반차량에 대한 고압세차 및 소독 실시, 소독필증 부착
 - iv. 감독관은 분뇨운반 전용차량에 동승하여 공동처리장 또는 축분처리업체부터 농장까지 이동하고, 분뇨처리장 내·외부를 소독한 후 분뇨 상차 확인
 - v. 운반차량은 분뇨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확실히 씌우고, 감독관은 반출 농장부터 공동처리장까지 동승
 - vi. 감독관은 공동처리장 또는 축분처리업체에 분뇨 하차 후, 운반차량에 대한 고압증기 세차 및 소독 등 적정처리 확인
- (사후관리) 시·군·구는 농장별, 분뇨처리장별 가축분뇨 운반 및 처리상황을 관리하고,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조치
 - 전용차량 운행일자, 분뇨처리장 가축분뇨 처리대장 등 작성 및 비치하고,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관리

[참고 1-1]

□ 가축분뇨처리계획서 (작성 예시)

1. 00차 발생 관련 예찰지역 내 산란계 계분 처리 가능한 퇴비업체가 없음
2. 농가 계분 반출 현황
 - 평시 농장의 계분은 00지역 00비료의 분뇨수거 차량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한번 반출(1회당 약 00t)
 - 분뇨벨트가 연결된 퇴비장에 임시 적재 후 수거업체로 주기적 반출
3. 농가 계분 유지 현황
 - 현재 농장에서는 약 000m² 면적에 높이 00m의 옹벽으로 둘러싸인 퇴비장을 보유
 - 이동제한으로 인해 농가 내 분뇨를 최대한 보관하기 위해 기존 옹벽 위에 가벽을 덧대어 임시로 분뇨를 적재하고 있는 상황이나 그마저도 한계인 상황
 - 벨트에서 떨어지는 계분을 트랙터로 구석으로 몰아가면서 적재 중이나, 현재 트랙터가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분 쌓임
 - 현재 분뇨벨트 아래에 계분이 쌓일 때마다 벨트를 정지하고 트랙터로 치우는 작업을 진행중이나, 더 이상 트랙터 운행이 불가능 해질 정도로 계분이 쌓여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음
4. 앞으로의 상황
 - 현재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계분이 동결되어 가능한 수용량 이상분을 보관하고 있으나, 설 연휴를 기준, 기온 상승으로 동결이 잘되지 않아 축적이 불가능하고, 계분장 밖으로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음
 - 농가 바로 앞 농가 소유의 밭이 있으나 야생 철새가 모여들 우려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외에 적재하기도 어려운 상황
5. 반출하고자 하는 퇴비업체 : 0000퇴비
 - 00시 퇴비 처리장으로, 00농장에서 00km 거리에 위치하며 계분 수거 시 00비료 소유 차량 1대(00나0000)를 활용하여 반출 1일 1농장 출입을 준수할 계획
6. 승인 시 조치사항
 - AI 정밀검사(승인 24시간 이내) ▶ 분뇨 반출시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및 동행
 - 방역차량 지정배치로 이동 시 도로 및 주변환경 소독.
 - 반출 전후 차량방역 소독
7. 종합의견
 - 관내 산란계 계분이 처리 가능한 퇴비업체가 없으며, 00농장은 00군 AI 발생(0.0)이후 철저한 방역으로 추가 발생의 문제는 없었으나, 퇴비 처리 문제로 인해 현재 정상적인 농장 운영이 힘든 상황이기에 분뇨 반출이 시급

분뇨 반출 신청서(분뇨 반출 농장에서 작성, 예시)

| 반출농장 | | 처리장소 | |
|-----------------------|---|----------------|---|
| 농장명 (농장주) | | 장소명 | |
| 주 소 | | 주소 | |
| 연락처 | | 연락처 | |
| 분뇨 종류 | 계분 | 분뇨 종류 | 계분 |
| 사육두수 | | 처리 분량 | 00톤/1일 |
| 분뇨장 저장 면적 (저장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000m² ○ 부피: 000m³ ○ 저장량 : 00톤 | 수거 축산차량 | 예) 00가 0000 (축산차량 등록번호) |
| 분뇨 현재 적재량 | 약 00톤 | 축산 차량 등록 여부 | 여 <input type="checkbox"/> , 부 <input type="checkbox"/> |
| 분뇨 1일 발생량 | 약 0톤 | | |
| 반출 분량 | 00톤/1일 | | |

2000년 0월 00일 ~ 0월 00일 분뇨를 반출할 예정임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월 20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반출조건 | 1.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발생시기 농장에 2주 이상 보관한 분뇨에 한하여 반출 원칙 2. 신고한 축산차량으로 운반되며, 소독 및 이동승인서 발급 염수 3. 반출 후 농장 및 차량 소독 염수 |
| 첨부서류 | 분뇨 적재 한계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

참고 2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가축분뇨차량 소독요령

| 단계 | 소독관리 요령 | |
|------------|---------|---|
| 업체 입차 | 차량 | 공장 진입 시 고압(스팀 권장) 세차로 차량 바퀴 등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출입구에 설치된 터널 소독기를 통과하면서 차량 전체를 충분히 소독한다. |
| | 사람 | 개인 소독기 내에서 개인 소독을 실시한다. |
| 업체 출차 | 차량 |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내 소독약의 충진상태를 점검한다. |
| | 사람 | 1) 차량내 비치된 비닐장화, 방역복, 마스크, 장갑 비치 상태를 확인한다. 2)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독실시대장”에 소독 확인을 한다. |
| 농장 도착 | 차량/사람 | 1) 농장 진입 시 차량에서 내리지 말고 부득이하게 내려야 할 경우, 1회용 장갑, 마스크, 방역복, 1회용 덧신 등을 착용한다. 2) 차량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로 개인소독 및 차량소독을 실시한다. 3)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차량 바퀴 등 2차 소독을 실시한다 |
| 농장 출차 | 차량/사람 | 1) 농장에서 나갈 때 농장에서 사용한 1회용 방역용품 등을 비닐용기 등에 밀봉 처리 한 후 농장 또는 지정된 구역에서 폐기 처리한다. 2) 개인용 소독기로 손, 의복, 신발 및 차량 내부를 소독하고 차량 외부는 농장에 설치된 소독설비를 통해 소독을 실시한다. |
| 기타 준수사항 | 기타 | 1) 1회용 방역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며, 오염 또는 오염 우려 시 담당자로 부터 즉시 재지급 받는다. 2) 농장 내에서 농장 종사자 등과 접촉하지 않는다. 3) AI 발생 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보호지역(반경 3km)내 운행을 금지한다. * 공동처리장으로 이동 승인을 받은 분뇨운반차량만 운행 가능 4)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통제구간)에 출입하지 않는다. |

기타

1. 관리·보호지역 내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1.1 감수성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
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 후 통행허용.

* 다만,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을 금지하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받은 닭 분뇨 운반차량은 소독 후 이동 허용.

1.2 난좌, 왕겨, 깔짚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제품에 대하여 일시 이동제한 및
관련 시설·장비·사람 등에 대한 소독

2. 예찰지역 내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1.1 감수성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
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 다만,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을 금지하되,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검역본부장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소독 후 이동허용

* 돼지농장 등 이외 대상에 대한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다.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1. 기본 원칙

1.1 발생농장 등 살처분 및 사체처리

1.1.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살처분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1.2 살처분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축사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축사 내 살처분이 방역관리상 어려운 경우에는 축사 밖에서 살처분 할 수 있다.

-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개·고양이는 정밀 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은 살처분 명령 후 지체없이 살처분을 시작하여 24시간 이내에 발생농장 내에서 살처분 처리를 완료하고, 살처분한 동물의 사체와 종란·식용란 등 그 생산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되 살처분 완료 후 72시간 이내 폐기처리 한다. 단, 살처분 대상 수수가 많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살처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서 살처분 지연 사유와 완료 예정 일시, 차단방역 조치 등이 포함된 살처분 계획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 농장 내 오염물 및 오염우려물품(사료, 깔짚, 분뇨 등)은 사체 등의 폐기 처리 완료 후 48시간 내 처리한다.
- 발생농장 외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은 살처분 명령 이후 72시간 이내 해당 농장 내에서 살처분 처리하고, 살처분한 적용 대상 동물의 사체와 알 등 그 생산물, 오염우려물품은 최대한 신속히 폐기 처리한다.
- 야간(일몰~일출) 작업 시에는 특히 작업자의 안전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1.1.3 살처분 방법은 사살·전살·약물사용·CO₂가스·N₂가스 등의 방법 가운데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고통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1.4 살처분 작업 전, 축사 내 먼지, 분변, 깃털 등이 축사(농장) 밖으로 비산되어 농장

내·외부 및 인근지역에 바이러스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살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주변 지역에 살서제를 뿌리는 등 구서대책과 까치·까마귀·참새 등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분변, 먼지 등 비산방지를 위한 차단벽을 설치해야 하고, 살처분 과정 중 수시로 소독약을 충분히 살포한다.

1.1.5 살처분된 사체는 농장 내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1.1.6 살처분된 사체는 액비 대형 저장조, FRP 저장조,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소각, 미생물처리 등 친환경적 사체처리를 원칙으로 적용하되, 이를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매몰지 선정기준에 따른 적정한 매몰장소에 매몰한다.

* 살처분 및 사체 처리방법 등 세부요령은 별표 11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1.2 살처분 및 사체처리 인력·장비 등에 대한 방역관리

1.2.1.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사람 등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 시·군·구는 평시에 가금사육 규모를 감안하여 살처분, 사후처리 등을 위한 예비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살처분 요령, 안전 수칙, 인체 감염예방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시·군·구는 AI 발생 우려가 높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전 살처분 인력·자재 등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주관으로 살처분 예비 인력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 가금 밀집사육단지, 대규모 사육 농장 등에 대해서는 발생 대비 구체적 살처분 계획을 마련한다.
- 사체의 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인보호구(마스크·보호복·장화·보호안경·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 시장·군수는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작업 전·후 반드시 방역 수칙 교육(사체처리 관련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 안전사고 예방 등),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교육·조치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하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기관, 치료절차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안내한다.
 - * 별표 20 살처분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요령 참조
- 시·군·구는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동의를

받아(별지 제14호 서식) 개인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시·군 보건부서에서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한다. 이를 위하여 시·군 ·구는 보건부서에서의 감염예방 조치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동물방역부서와 보건부서 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 * 살처분 투입 인원 명단(성명, 소속[기관, 용역업체 등], 본인 연락처[휴대전화 등],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출생일, 1개월 내 참여 이력 등)을 인체감염 대책반에 사전 통보
- 시·군 ·구는 특히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해 반드시 개인 인적사항,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 및 주소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하고,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 외국인 인력의 사전 교육 전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을 확인한 후, 번역 자료(살처분 참여자 주의사항)를 이용하여 방역 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 만 2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임산부, 신분증 미소지자, 신원확인 및 연락처 확인 불가능자, 38°C 이상 고열 등의 감기증상이 있는자,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 신장 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증 및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y) 환자로 진단받은 자는 살처분 등에 참여할 수 없다.

1.2.2.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

-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 시 착용한 모든 의복·신발·모자·장갑 및 기타 보호구(마스크·보호복·장갑 등)는 소각하되, 장화·보호안경 등 부득이하게 재사용할 경우에는 소독수에 넣어 충분히 소독한 후 (1분 이상) 사용한다.
- 기타 시계·지갑·화폐 등을 오염되지 않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반출이 불가피한 물건이 있는 경우 소독 후 가축방역관의 허가를 받고 반출하여야 한다.
-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이 종료된 후 살처분 참여자가 귀가하기 전에 의복, 신발 등을 소독하고, 소독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 환경검사 시료채취는 발생농장에서는 전원, 예방적살처분 농장에서는 50% 이상의 작업자로부터 옷, 양손, 양발(신발)에서 각 1점씩 1인당 5점을 채취한다.
- 귀가 후 즉시 목욕하고 다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며, 살처분 작업 전·후 착용하였던 신발·의복 등을 세척하여야 한다.

- 비누로 3번 이상 목욕을 하여야 하며, 매번 반드시 5회 이상 코를 풀고 가래침을 뱉도록 하여야 한다.
-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을 마친 후 최소 7일 간은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한다.
 - * 다만, 살처분 및 사체처리 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군·구는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이를 다른 시·군·구에 통보한다.

1.2.3.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기구·장비 및 차량 등에 대한 조치사항

- 기구·장비 및 차량 등은 비누·세정제 등으로 철저히 세척하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특히, 타이어, 차량 밑바닥, 운전대·시트·차량 내부 바닥(발판)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소독한다.
-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기구·장비 및 차량 등은 해당 작업을 마친 후 최소 7일간은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한다.
 - * 다만,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독은 해당 작업을 실시한 곳의 출입구에서 실시하며, 세척·소독으로 인해 다량의 물이 다른 장소로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구덩이를 파서 유출을 방지한다.
- 살처분 작업에 사용된 차량·기구 및 도구 등은 소독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 환경검사 시료채취는 발생 및 예방적살처분 구분 없이 투입된 모든 차량·장비에서 채취하며, 장비는 바퀴 또는 지지대(2점), 발판(1점), 사체접촉 부위(2점)에서 장비별 5점을 채취하고, 차량은 바퀴(3점), 운전석 발판(1점), 사체 접촉 부위(바가지, 집게 등, 1점)에서 차량별 5점을 채취한다.
- 살처분 농장 주변 도로는 방역차량 등을 활용해 충분히 소독하여야 한다.

1.3 살처분 농장 등 사후관리

- 살처분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제4장 10. 발생농장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발생농장의 축사 내외, 케이지 등에 대하여 청소한 후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10

발생농장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기본원칙>

- 발생농장의 최초 청소·세척 및 소독은 시·군에서 농장주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 발생농장의 농장주는 재입식 시까지 주 2회 이상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시·군 관계관은 매주 1회 이상 발생농장의 세척 및 소독 실시여부를 점검한다.

1. 기구 및 장비

- 장비·차량 등 : 스키로더, 포크레인, 리어카, 삽, 곡괭이 등
- 세척기구 : 고압세척기나 물 호스, 브러쉬, 수세미
- 소독제, 생석회
- 소독제 살포기구, 소독용구, 소독조, 소독통(드럼통), 바가지 등
- 피복, 장화, 모자,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고글)
- 삽, 곡괭이, 방역표지판

2. 발생농장 청소·세척 및 소독 요령

* 발생농장, 예방적 살처분 농장 중 양성농장, H5·H7형 항체가 검출되어 해당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 및 환경검사 결과 양성판정 농장 포함

2.1 발생농장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되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2.2 발생농장 1단계 소독(살처분 후 즉시 실시)

2.2.1 축사 내 바닥 및 분뇨 소독

- 축사 내 분뇨 등은 축사별로 내부에 한곳으로 모아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생석회수 살포 또는 유효 소독제를 충분히 살포한다(2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소독실시).

2.2.2 훈증소독

-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품목 허가받은 훈증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 내 밀폐가 중요하며, 소독은 12시간 이상 또는 훈증소독제 용법 및 용량에 명시된 시간이상 실시)

[훈증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

- 소독 전 사용설명서(용법·용량, 주의사항 등)를 충분히 숙지
- 훈증 전 축사 내 소독 대상이 아닌 기계·기구는 모두 축사 밖으로 이동
- 훈증소독 시 마스크, 안면보호장비, 호흡기 보호장비 등 착용하여 실시
- 훈증소독 중에는 “소독 중” 풋말 사용으로 소독 중 장소내 출입 금지

[훈증소독제 사용 시 응급조치 요령]

- 눈에 자극이 있을 때 수분간 물로 조심히 씻을 것
- 피부에 접촉했을 때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로 씻고, 의복에 오염됐을 경우 벗고 세탁 후 사용할 것
- 연기를 흡입했을 때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고 호흡기 증상이나 자극 등이 지속되면 의료진의 진찰을 받을 것

2.2.3 환기

- 훈증 소독 후 축사 환기를 축사 내의 소독제 냄새 등을 제거한다.
- 훈증소독을 오전에 실시하고, 훈증 12시간 이상 또는 소독제 용법에 명시된 소독시간 이상 경과 후 다음 날 아침까지 환기를 실시한다.

2.3 발생농장 2단계 청소·소독

2.3.1 청소

- 축사 내 천장 → 벽면 → 케이지 → 바닥의 순서로 세정제 겸용 소독제를 분무한 후 동일한 순서로 청소를 실시한다.
- 축사 내 물품·장비 등을 모두 청소하고, 구석진 곳 등 제거하기 어려운 분뇨 딱지는 토치 또는 램프로 소각하되, 화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축사 내 청소과정에서 나온 분뇨, 텸 등은 소각 또는 매몰, 발효 처리한다.

2.3.2 세척 및 소독

- 소독액으로 천장 → 벽면 → 케이지 → 바닥의 순서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 내로 연결되는 전선을 외부와 차단하여 분무소독에 의한 합선 등 화재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 축사 내 전기 콘센트, 스위치 등은 비닐로 봉하고, 세척·소독 실시후 소독수건으로 문질러 소독을 실시한다(전기 콘센트 등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콤프레셔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하거나 자연 건조시킴).

- 축사 내 기구에 손상을 주지 않는 소독제를 선택하고, 유기물이 끼어 있으므로 소독약 농도를 높여 희석한다.
- 소독제는 축사 내 바닥 및 분뇨 소독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독제를 선택한다.

2.3.3 훈증소독

- 축사 출입문, 환기통을 완전히 닫고, 외부와 통할 수 있는 틈을 막아 밀폐시킨다.
- 12시간 이상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은 동절기에는 소독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높이거나 축사 내 열풍기 사용(이때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함)을 권장한다.

2.4 발생농장 3단계 소독

- 2단계 소독실시에 따른 미흡한 점(청소 등)을 보완한다.
- 2단계의 세척·소독, 훈증소독 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2.5 발생농장 축사 4단계 소독

- 3단계의 소독실시에 따른 미흡한 점(청소 등)을 보완한다.
- 2단계의 세척·소독, 훈증소독 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 추가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 4단계 소독을 완료한 후 입식시험 가능여부를 점검

3. 발생농장 내 사용약품·창고 등과 거주자에 대한 소독 실시요령

3.1 농장 내 사용약품

- 농장 내 사용 후 남아있는 약품에 대하여는 매몰 등으로 폐기하거나 창고 등에 모아 밀폐 훈증소독 또는 소독수건 등으로 닦아 소독을 실시한다.

3.2 농장 내 창고·사택·사무실

- 농장 내 사료창고·축산도구 창고·사택에 대하여는 밀폐시키고,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 농장 내 사무실(휴게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3 농장 내 거주자(작업자)의 의복 등

- 농장내 거주자 및 작업자의 신발(장화 등)·작업복·장갑·모자 등은 소독수에 담구어 소독하고, 세탁하여야 한다(가능하면 매몰 또는 소각을 권장).

3.4 분뇨 처리장비·도구 등 소독 실시 요령

3.4.1 스키로더·차량 등

- 분뇨처리에 사용된 스키로더 등 운반장비에 대하여는 작업완료 즉시 내·외부에 묻어있는 분뇨 찌꺼기를 철저히 제거하고, 소독한 다음 1일 1회 이상 세척·소독과 충분히 건조시키는 과정을 3일간 실시하고 반출을 허용한다.
 - * 다른 발생농장의 분뇨처리에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축방역관의 감독하에 1일 2회 이상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에 투입할 수 있다.
- 분뇨처리에 동원된 장비는 7일 간 다른 축산농장 및 관련 시설에 출입을 금지한다.
- 농장 밖으로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출입 시마다 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운반 시 분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차량 등의 장비의 경우 작업자(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에 대하여도 소독수건 등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소독하여야 한다.
- 축주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도 접촉부위를 철저하게 소독한다.

3.4.2 분뇨처리 도구

- 삽·괭이·리어카 등 농장 내 사용도구에 대하여 충분히 세척하고 수회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4.3 소독장비

- 축사내·외 및 주변 소독에 사용한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에 대하여도 소독액을 이용하여 운반기구·고무호스·손잡이 등을 소독한다.

3.5 농장 주변지역 소독실시요령

- 농장 진입로, 농장 내 주요 통행로, 축사주변, 분뇨처리장 등 오염 가능지역에 대하여 소독액이 흡뻑 젖도록 수 회 반복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3.6 매몰 장소 소독

- 사체 등 매몰 시 매몰이 완료된 후 매몰 장소를 철저히 소독하고 매몰에 사용된 장비와 운반차량 등에 대한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한다. 또한 살처분 장소로부터 매몰 장소에 이르는 운반경로를 철저하게 소독한다.
- 사체를 소각한 경우 소각장은 사체가 완전히 소각된 후 소독을 실시한다.

3. 발생농장 가축이 출하된 도축장의 소독

3.1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은 다음과 같이 소독하여야 한다.

-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모든 도체는 폐기조치
- 계류장 및 가축의 운반에 이용된 모든 차량을 유효한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세척한 다음 다시 소독액으로 최종 소독을 실시한다.
- 도살실·작업실, 식육 또는 장비의 보관 및 취급을 위해 사용된 모든 장소 또는 용기는 식품취급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세척제를 사용하여 고압 세척을 실시한다.
- 탈의실·옷장 등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가능하다면 도축 설비는 고온스팀 등의 방법으로 소독한다.

3.2 시·도는 당해 도축장의 세척·소독이 종료된 후 소독대상의 건조상태 등을 검사하여 소독이 효과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도축장 영업자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4. 예방적 살처분 농장

4.1 예방적 살처분 농장(항원·항체 음성판정 농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은 발생농장의 소독 실시요령중 1, 2단계 소독 방법을 준용한다.

5. 부화장의 소독

5.1 AI 양성이 확인된 부화장은 발생농장의 소독실시요령 4단계 소독실시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6. 소독제의 종류 및 적용

6.1 소독제의 적용범위

- 소독제의 종류별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소독제별 특성 및 사용요령은 별표 15를 참고하여 사용한다.

| 소독제의 적용 범위 |

| 소 독 제 | | 주 요 적 용 대 상 |
|-----------|----------------------------------|--|
| 염기(알칼리)제제 | 가성소다, 탄산소다 | 축사, 시설, 폐수, 분뇨, 기계 및 차량, 의복 사람 및 축체에 사용금지 * 알루미늄 계통에는 사용금지 |
| | 생석회 | 사체, 동물이 없는 축사 바닥 및 토양 사람·차량이 많은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음 |
| 산성제제 | 염산(Hydrochloric acid) | 분뇨 |
| | 구연산(Citric acid) | 분뇨 |
| 알데하이드계 | 글루타알데하이드 | 생체에는 사용금지 |
| | 포르말린 | 생체에는 사용금지 |
| | 포름알데하이드 훈증 (formaldehyde gas) | 밀폐공간(축사, 창고, 사택, 차량 등) |
| 산화제 | 차아염소산 | 축사, 기구, 숙소, 의복 |
| |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 | 축사, 기구, 숙소, 의복 |
| | 기타(복합염류) | 축사, 기구, 숙소, 의복(소독제별로 다름) |
| 비누 및 세정제 | | 축사, 시설, 숙소, 기계, 차량, 의복 |

* 주요 적용대상은 소독제 성분 조성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별 설명서에 따라 선택하여야 함.

6.2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

6.2.1 발판 및 차량소독

- 소독조는 신발이나 차량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소독조의 소독제는 주당 2~3회 교환해 준다. 염기제제, 알데하이드제제 등 비교적 유기물에 강한 소독제를 사용한다.
- 차량소독에는 주로 산성제제나 염기제제, 염류 및 산성복합제를 사용도록 한다.

6.2.2 토양 및 바닥 소독

- 가축이 없는 축사바닥의 소독은 주로 생석회나 가성소다를 이용한다.
- 생석회는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화공약품이며 산도(pH) 11~12의 강염기로서 충분히 뿌려준다.
 - * 물을 바닥에 먼저 뿌린 후 생석회를 뿌려주거나, 물로 5% 생석회 액을 만들어 살포한다. 유제액을 만들 때는 물을 먼저 넣고 생석회를 조금씩 넣어야 하며, 보관 시에는 물기가 닿으면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분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주위에 인화성 물질은 모두 치워야 한다.
 -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C 정도의 열을 내면서 강알칼리와 열에 의해 소독효과를 보이며 사체에 뿌리면 쥐 등 설치류의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사람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절대로 사람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농가에서 생석회를 안전하게 취급·사용하도록 아래의 주의사항을 통보한다.

< 생석회 취급 시 주의사항 >

-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할 것
- 습기나 물과 접촉 시 높은 열이 발생되므로 화상에 주의할 것
- 사용할 때 보안경 및 안전보호구를 필히 착용 후 취급할 것
- 습기나 물이 있는 곳을 피하고 예리한 물건과 혼합 저장을 피할 것
- 보관 중 던지거나 포장을 손상시키지 말고 개봉한 제품은 사용 후 밀폐 (비닐로 덮어 밀봉)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보관할 것
- 산성제재 등 다른 계열의 소독제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생석회는 알칼리성이므로 산성제재와 혼합 사용 시 소독 효과가 없고 안전 문제 발생 가능)

6.2.3 분뇨 소독

- 분뇨는 농장 내에 매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매몰하지 못하는 경우 축사별로 내부에 분변을 한곳으로 모아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한다.
 - 다만, 살처분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한 다음 28일 경과후 병원체 오염 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오리농장 분뇨 재사용시 처리요령은 별표 16를 참고한다.

6.3 소독제 선택 시 주의사항

6.3.1 소독제는 소독목적물에 유효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종류의 소독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3.2 농장 및 축산시설에서 소독제 사용시 소독제별 정해진 희석배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별 희석배수는 아래 참고 1을 참조하여 사용한다

6.3.2 소독약품 안전사용 수칙

-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제를 사용하지 말 것
-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킬 것
- 사용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낼 것
- 차량 소독 시 창문을 완전히 닫은 후 실시할 것
- 농산물 등을 적재한 차량은 비닐 등 사전 조치 후 소독할 것
-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우의를 사용할 것
- 소독약 살포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11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용요령

1. 기본원칙

- 1.1 발생 시·군 및 연접 시·군은 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필요시,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2 발생농장, 발생지 및 밀집지역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 1.3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주요 장소에 축산 차량 전담 소독장소를 설치 운영한다.
- 1.4 모든 축산 관련차량은 방역지역별, 시·군별로 지정되거나 시·도 가축방역 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내·외부 및 운전자에 대해 세척·소독을 받은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차량운전자는 축산시설 방문 시 이를 축산시설 소유자에게 전달한다.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차량 운전자 및 축산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1년 간 보존한다.
- 다만,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검역본부의 평가를 거쳐 관할 시·도에서 지정한 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 민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축산 관련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 민간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요령은 농식품부의 별도 지침에 따름
 -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에 출입하는 소속 또는 계약 관계인 가금 생축 운송차량은 생축을 상차한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농가의 서명을 받은 소독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 지정에 대한 사항은 농식품부의 별도 지침에 따름
 - 전국 모든 시·군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시·군별 3개 이상의 거점별 소독 장소를 미리 선정하여 사전에 축산농가 및 관련 단체에 홍보한다.
- 1.5 통제초소는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 소독필증을 확인 후 통과시켜야 한다.
- 1.6 소독시설을 축산시설로 분류하고, KAHIS에 사전 등록하고, 발생 시에는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기록을 전산화하여 관리한다.
- * 평시 시·군별로 적합한(위치, 공간 등 고려) 거점소독시설 후보지 3개소 이상을 선정하고 KAHIS에 등록·관리

- 1.7 거점소독시설은 겨울철 동결방지 등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 동결방지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1.8 거점소독시설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운영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거점소독시설 내 설비 등에 대한 소독 및 정기적인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 1.9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내 근무자에 대하여 역할·임무 및 소독방법 등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설치장소 선정 및 운영 요령

2.1 통제초소의 설치장소 선정

- 2.1.1 통제초소는 발생농장, 발생지, 발생 시·군의 축산밀집지역, 발생 시·군 및 시·도와 연접한 시·군 및 시·도가 설치한 축산차량 전담 소독장소 인근에 설치하고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 발생농장, 발생지 및 발생 시·군 축산밀집지역의 통제초소는 통제와 소독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2.1.2 도로 옆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곳으로 선정한다.
- 2.1.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 방향으로 200m 이상 시야가 확보 가능한 직선도로여야 하며, 경사진 곳은 제외한다.
- 2.1.4 가급적 인근에 식당이나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로등이 있는 곳에 설치하되 부득이 가로등이 없을 경우 간이 가로등을 설치한다.
- 2.1.5 바람이 많이 불고 사고 위험이 있는 교량 위나 소독으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과수원, 농작물 재배 지역은 제외하고, 대로나 고속도로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 2.1.6 통제초소의 위치와 설치 갯수는 시·군 ·구가 시·도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및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2.2 통제초소 설치요령

- 2.2.1 200m 전방에 서행유도를 위한 경광등 및 서행 안내판을 설치한다.
- 2.2.2 축산차량을 전담소독장소로 유도하기 위한 안내문을 설치한다

2.2.3 축산차량의 원활한 유도를 위해 차단막 및 안전유도로봇(마네킹)을 설치할 수 있다.

2.2.4 컨테이너는 최소 25ft 이상으로 하여 난로, 식수, 침구류, 방역복, 무전기 등을 구비하고, 초소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

2.2.5 발생농장·발생지 및 축산밀집지역의 통제초소는 사람 소독이 가능한 대인소독 장비를 설치하고, 방역복 및 쓰레기 등을 소각할 수 있는 간이 소각로를 인근에 설치한다

2.2.6 발생농장·발생지 및 축산밀집지역의 소독을 병행하는 통제초소는 소독약이 인근 하천이나 농경지 등 외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둔덕이나 저류조를 설치한다.

2.2.7 소독을 병행하는 통제초소는 소독설비의 고장이나 바닥에 유기물이 떨어지는 등 유사시에 세척·소독할 수 있도록 고압세척기 등을 설치한다.

2.2.8 통제초소 설치요령은 별표 18를 참고한다.

2.3 통제초소 운영요령

2.3.1 통제초소는 해당 시·군에서 담당과를 배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3.2 통제초소에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출입이나 접촉을 제한한다.

2.3.3 통제초소는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차량 통행량 등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무인원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1개 조는 최소 2명을 기본으로 구성하며, 초소 근무인원은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관내 주민을 활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2.3.4 통제초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 공무원 : 전체 총괄, 상황보고 및 기록관리
- 군인 등 : 소독실시 여부 확인 등 축산차량 통제 업무(밀폐된 탑차의 경우 내부확인 등)
- 경찰 : 교통통제

2.4 거점소독시설 설치 장소의 선정

2.4.1 거점소독시설은 보호지역 내에 최소한 2개소 이상, 예찰지역 내에는 최소한 1개소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점소독시설의 위치와 설치

갯수는 시·군·구가 시·도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확대 설치한다.

2.4.2 발생 시·군·구 및 시·도와 연접한 시·군·구 및 시·도는 도로 등 지리적 상황에 따라 설치 수량을 정한다.

2.4.3 거점소독시설은 넓은 공간을 확보하거나 차량 통행이 적은 지선도로를 차단하여 확보하거나 과적 화물차량 단속초소 등을 활용하여 소독장소를 설치한다.(단, 통행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은 제외한다.)

2.5 거점소독시설 설치요령

2.5.1 거점소독시설은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장소(주차장, 과적차량단속지 등), 통행량이 적은 지선도로 중 넓은 공간이 있는 곳 등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며, 포장이 되어 있는 곳으로 한다.

2.5.2 소독장소 입구에는 소독실시 관련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2.5.3 소독장소의 입구와 출구는 별도로 설치하며, 소독장소의 입구에는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을 포함한 U자형 소독기를 설치를 권장한다.

2.5.4 소독장소에는 U자형 소독기, 고온·고압동력분무기와 ‘차량멈춤’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이 흠뻑 젖도록 충분히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 내부 소독을 위한 간이 소독기와 대인소독기를 구비한다. 또한, 생축 또는 분뇨 운송 차량을 별도의 장소에서 소독할 수 있도록 차량 하부의 세척·소독을 위한 하부 세척·소독 장비 등을 구비한다.

– 과열 및 고장에 대비하여 교대로 가동할 수 있게 충분한 고압분무기를 확보한다.

2.5.5 겨울철에는 소독시설이 얼지 않게 보온설비(천막, 열풍기, 난로 등)를 한다.

2.5.6 소독장소와 인접한 곳에 세척용 고압분무기(1대 이상)를 설치하고 반드시 유기물 제거 등 세척을 실시한 후 소독을 실시한다

– 소독용(비상용) 고압분무기(2대)는 별도 구비한다.

2.5.7 소독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 오염물질 사용 제한 및 환경위해 방지를 위한 소독수 회수조치와 저장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통행량이 적은 통합 거점소독시설의 경우 소독약을 흡수할 수 있는 매트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교체 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5.8 거점소독시설 설치요령은 별표 18를 참고한다.

2.6 거점소독시설 운영요령

2.6.1 거점소독시설은 해당 시·군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담당과를 배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6.2 거점소독시설에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출입이나 접촉을 제한한다.

2.6.3 발생농장, 발생지, 발생 시·군의 축산밀집지역은 통제초소와 거점소독 시설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6.4 거점소독시설별 근무인원은 3개 조로 24시간 근무한다.

- 1개 조는 4명(공무원 1, 소독인력 3)으로 3개 조 총12명(공무원 3, 소독 인력 3)을 기본으로 구성하며, 소독장소의 근무인원과 운영시간은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2.6.5 소독장소 근무자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 공무원 : 전체 총괄, 상황보고 및 기록관리, 소독필증 발급
- 소독인력 : 차량 내·외부 소독, 대인소독기 운영, 입구 □ 자형 소독기 운영

2.6.6 소독장소에서는 이동이 허용된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한 후 차량번호, 통과일시, 목적 등을 정확히 별지 12호서식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기록부에 기록 후 별지 9호서식의 소독필증을 발급하여 휴대토록 지시한다.

- 공무원이 아닌 근무자가 소독필증을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독필증이 허위로 발급되지 않도록 발급내역 확인, 근무자 교육 및 점검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소독약품 및 장비 사용법, 주의사항, 업무일지 등 인수인계 철저
- 소독약제에 따른 희석비율(유기물 조건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 수행
- 소독약제 및 소독약 희석에 사용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급수 차량의 공급시간, 연락처 등을 사전 파악
- 기온저하로 분무소독 불가 시 소독시설 내부에 온풍기 등을 가동한다.

2.6.7 축산 관련 차량 세척·소독 요령

- 축산 관련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에 도착하면 차량 운전자를 하차시킨 후 이동 목적과 이동지 등을 확인한다.
- 차량 외부의 유기물 제거를 위하여 세차장비 또는 고무호스, 세척용 고압 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 외부(특히, 흙받이·차량바퀴 등) 세척을 먼저 실시한다.

- 소독장소에서 차량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외부를 소독하고, 차량의 내부는 소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되, 운전자가 접촉되는 부위(운전대·발판·좌석 등)는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다.
- 차량 내부 운전석 및 조수석 등에는 간이소독기를 사용하거나 스펜지에 소독제를 묻혀서 닦는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차량운전자는 대인소독기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며, 이때 신발 바닥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의 소독이 완전히 끝난 이후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한다.
- 차량에 축산관련 기구·장비가 적재되어 있을 경우 동시에 소독을 실시한다.
- 살아있는 가금 또는 분뇨를 적재한 차량의 경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에서 비치하고 있는 소독용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별도의 장소에서 차량 하부를 소독하며 가축이나 적재함에는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한다.
-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살아있는 가금 또는 분뇨를 적재한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전용 거점소독시설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다.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차량 세척·소독 후 거점소독시설 바닥에 분변 등 오염물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오염물을 제거한 후 다음 차량을 세척·소독한다.

2.7 거점소독시설의 소독 유효성 평가

2.7.1 각 지자체는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에 대하여 소독약이 적절하게 분사되고 있는지, 소독약 희석배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의 유효성 평가를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2.8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에 대한 방역교육

2.8.1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근무자가 처음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근무자의 역할과 임무 등 다음 내용이 포함된 방역 교육을 1시간 이상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해당 시설이 위치한 방역지역의 종류 및 이동통제 차량의 종류
- 소독제 희석방법 및 차량 내외부, 사람의 의복·신발 등 소독방법
- 소독필증 발급 및 확인 방법
- 겨울철 동결방지시설 점검 방법 및 동결 시 조치사항
- 비상 시 비상연락체계 및 근무자 간 인수인계 기 특이사항 등 전달방법
-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12

축사 외 장소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

1. 기본원칙

- 1.1 시·도 또는 시·군·구는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시설(조류 학습장, 동물원, 일반가정 및 가축시장),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축사 외 장소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해당 도축장등에 대한 이동통제, 조류판매중단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1.2 시·도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 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시설의 가축 계류시설 등의 내부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3 시·도는 해당 시설에 의사환축을 출하한 농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도 의사 환축 발생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1.4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 ·구는 해당 시설을 즉시 폐쇄 조치하고 환축과 접촉한 사람·장비·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환축과 함께 계류된 감수성 가축은 살처분하고 종란·초생추 등 가금 산물을 폐기한다.
- 1.5 의사환축 발생 7일 이내 해당 시설의 가금산물이 출하된 업체가 소재한 지자체는 거래명세서 등을 전달받아 확보한 경우 해당 업체에 지체없이 방문하여 가금산물의 보유 유무를 확인 후, 해당 시설의 가금산물을 회수·폐기 후 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시·도 및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1.6 시·도 또는 시·군 ·구는 의사환축 발생 7일 이내 해당 시설 밖으로 출하된 도체·지육·알(식용란 및 종란) 등 가금산물은 관련 거래명세서 등을 확보하여 출하된 업체(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가 소재한 지자체에 통보하여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한다.

2. 도축장 내 계류된 가금에서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경우

- 2.1 시·도 또는 시·군 ·구는 도축장 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환경시료 등에서 H5 또는 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해당 도축장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1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즉시 시·도에게 보고하고, 시·도 가축방역 기관에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조치한다.
- 2.1.2 시·도는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1.3 사람·차량 등이 의사환축이 있는 장소로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주변 지역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 2.1.4 오염된 운반수단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접촉한 가축의 이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유지 및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 2.1.5 출하한 농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도 추적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와 잔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2 도축장 내 계류중인 가금 또는 환경에 대한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판정 시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당해 도축장 등을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아래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환축 출하 농장(시설)은 추적하여 본 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2.2.1 해당 도축장은 폐쇄조치한다.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가 정하며, 해당 도축장 등의 세척·소독 상태 확인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도가 폐쇄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 도축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시 해당 도축장에 대한 폐쇄조치 해제 절차는 별표 22를 참고하여 조치
- 2.2.2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는 도축장 등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2.2.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 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유지를 하고,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2.2.4 환축과 함께 계류된 도축장 내의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실처분하며, 의사환축 발견 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중인 해당 도체(닭·오리 의사환축 발생 7일 이내)의 폐기 및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 등을 회수·폐기한다.

3.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이하 “역학관련 부화장”)

- 3.1 시·군·구는 역학관련 부화장에 대하여 당해 부화장 폐쇄,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부화·보관중인 종란과 부화병아리 폐기 및 부화장의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한다.
- 3.2 부화장에서 부화·보관중인 전체 종란 및 부화 병아리는 폐기한다.
- 3.2.1 다만, 발생농장이 아닌 타 농장에서 생산되어 부화·보관중인 종란이 있는 역학관련 부화장 시설이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종란은 폐기하지 않고,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병아리 출하를 제한하고,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거쳐 병아리 반출을 실시한다.
- * 발생농장의 종란을 부화·보관하고 있는 시설과 분리되어 출입구및 이동통로를 달리하는 시설에 부화·보관중이며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3 검역본부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역학관련 부화장에 대하여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 전까지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가를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시·도에게 통보 한다.
- 3.4 발생농장으로부터 병아리를 분양받은 대상농가를 통보받은 시·도는 지체없이 가축방역관을 해당 농가에 파견하여 이동제한·소독·임상관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밀검사(닭의 경우 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분변검사, 오리의 경우 혈청검사 필요시 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 한다.
- 3.5 시·군·구는 역학관련 부화장에 대하여 종란 등의 폐기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부화장의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입관하게 할 수 있다.

4.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 대한 방역조치

- 4.1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에 계류된 가금 중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환경시료 등에서 H5 또는 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즉시 해당 전통시장 및 인근 전통시장(방역지역 내 및 해당 시군 내), 역학 관련 전통시장에서의 가축의 유통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한 이동통제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4.1.1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즉시 시·도에게 보고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조치한다.
- 4.1.2 시·도는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 4.1.3 사람·차량 등이 의사환축이 있는 장소로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주변지역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 4.1.4 오염된 운반수단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접촉한 가축의 이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유지 및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 4.1.5 출하한 농장 또는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및 차량에 대하여도 추적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와 잔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4.2 가금판매소 내 계류 중인 가금 또는 환경에 대한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판정 시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당해 가금판매소 등을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아래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환축 출하 농장(시설)은 추적하여 본 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4.2.1 해당 전통시장은 운영 중단한다. 다만, 운영 중단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가 정하며, 해당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의 세척·소독 상태 확인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도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 4.2.2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는 가금판매소 등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며, 특히, 판매소(계류장 포함) 진입로 및 내외부 오염물, 분변 등에 대하여는 이동식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하여 유기물 제거 후 소독 실시한다(판매소 및 운반차량의 케이지 화염소독 포함).
- 4.2.3 가축방역관은 가금판매소 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유지를 하고,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4.2.4 환축과 함께 계류된 가금판매소 내의 감수성 가축 전체는 살처분하며, 의사환축 발견 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중인 해당 도체(닭·오리 의사환축 발생 7일 이내)는 폐기한다.
- 4.3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서는 위험이 높은 기간 동안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의 판매 또는 구입을 금지한다.

5. 대공원, 동물원, 조류자연학습장 등 조류사육시설 방역조치

5.1 시·도 또는 시·군·구는 관상용 조류사육시설에 사육 중인 가금 중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환경시료 등에서 H5 또는 H7형 AI 항원이 검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즉시 가축의 유통을 전면 중단하고 관람객 통제,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5.1.1 의심축을 발견한 가축방역관(동물원 수의사)은 즉시 시·도에게 보고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토록 조치한다.

5.1.2 시·도는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시설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5.1.3 사람·차량 등이 의사환축이 있는 장소로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고 주변지역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5.1.4 오염된 운반수단 등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접촉한 가축의 이동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유지 및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5.1.5 조류를 출하한 농장 또는 차량이 있는 경우, 추적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와 잔존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2 방역지역 설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가 설정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5.2.1 방역지역은 발생 시설에서 여타 가금 사육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검역본부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설정에 맞게 이동통제·소독 등을 실시한다.

5.2.1.1 살처분·폐기 범위 설정 시 발생원인, 유입경로, 주변지역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여부를 정한다.

5.2.1.2 방역지역 안의 애완조류(희귀조류) 판매장, 대학·민간연구소, 대공원·동물원 등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사육중인 조류는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성 등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5.2.1.3 1,000수 이하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매몰 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스 배출관,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매몰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다.

5.2.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5.3 관상용 조류사육시설에 사육 중인 가금 또는 환경에 대한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양성판정 시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당해 시설을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아래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환축 출하 농장(시설)은 추적하여 본 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5.3.1 해당 시설은 폐쇄조치한다.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가 정하며, 해당 도축장 등의 세척·소독 상태 확인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도가 폐쇄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5.3.2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는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5.3.3 가축방역관은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유지를 하고,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3.4 환축과 함께 사육되던 시설 내 감수성 동물 전체에 대한 살처분이 원칙이나, 모든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감수성 동물에 대한 실험실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5.4 이외의 차단방역 조치 및 방역지역 이동제한, 감수성 동물의 재사육 등은 가금 사육농가의 발생 건과 동일하게 조치하되, 도심지 발생의 경우 역학 관련 사항의 파악·조사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6. 가든형 식당, 조류사육시설 등 기타 장소에서 발생 시 조치

6.1 방역지역 설정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가 설정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6.1.1 방역지역은 발생농장(시설)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등을 통해 필요 시 설정하고 지역설정에 맞게 이동통제·소독 등을 실시한다.

6.1.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 6.2 원칙적으로 발생 장소에서 사육 중인 감수성 동물 및 관련 오염물건 등을 살처분·폐기하되, 도심지의 교통·지리·유동인구·가금사육현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살처분·폐기 범위 등을 설정한다.
- 6.2.1 살처분·폐기 범위 설정 시 발생원인, 유입경로, 주변지역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여부를 정한다.
- 6.2.2 방역지역 안의 애완조류(희귀조류) 판매장, 대학·민간연구소, 대공원·동물원 등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사육중인 조류는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성 등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 6.2.3 1,000수 이하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매몰 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스 배출관,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몰 원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매일 매몰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다.
- 6.2.4 일반 가정집, 조류자연학습장, 동물원 등 소규모 비전문 조류 사육농장(시설)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혐오감 등 미관과 주민불편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매몰지 표지판 설치여부를 정한다. 단, 설치하지 않을 경우 매몰지점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매몰지점에 대한 접근방지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6.3 이외의 차단방역 조치 및 방역지역 이동제한, 감수성 동물의 재사육 등은 가금 사육농가의 발생 건과 동일하게 조치하되, 도심지 발생의 경우 역학 관련 사항의 파악·조사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3 이동제한 해제 요령

1. 기본원칙

- 1.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설정된 방역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에 따른 방역지역별 해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
- 1.1.1 관리·보호지역은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1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으로 전환된다.
- 1.1.2 예찰지역은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후, 방역대 내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된다.
- 1.2 보호지역 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발생 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하며, 예찰지역에서 추가 발생 시 추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역을 재설정한다.
- 1.3 자자체는 이동제한 해제 절차 진행 시 발생농장별 사후관리 실태(축사 분변 및 잔존물 등 오염물 처리, 장비 세척·소독 및 농장 소독 실시 여부 등)를 점검하고, 농가별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역 해제 세부 요령

2.1 관리·보호지역

- 2.1.1 시장·군수는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 동물(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 및 발생 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2.1.2 시·군·구는 관리·보호지역에 포함되어 폐쇄된 부화장에 대하여는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후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영업을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

2.2 예찰지역(관리·보호지역에서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을 포함한다.)

2.2.1 예찰지역의 이동제한은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내·외의 감수성 동물까지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살처분 및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조치가 끝난 날부터 28일이 지난 후,

2.2.2 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 시 혈청검사·항원검사)와 오리검사(혈청 검사, 항원검사), 사육하지 않는 빈 축사(발생농장, 예방적 살처분 농장 중 감수성 동물을 입식하지 않은 농장, 출하 후 7일 이상이 경과한 농장)의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 다만, 시·군·구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동제한 해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가. 예찰지역의 이동제한조치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의 실시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추가 혈청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방역대 내 검사 시 가금에서 고병원성 AI 추가 검출 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다.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방역대 내 검사 시 환경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확인 시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간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이 기간 검출된 농장에 대한 청소·소독 조치 후 해당 농장(필요시 시·도 가축방역기관 판단 하에 확대)에 대해 재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방역대를 해제한다.

3. 방역지역 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검출 시 조치

3.1 시장·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도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3.1.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한다.

3.1.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보호지역 및 예찰지역을 재설정한다.

-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4. 발생 종식 후속 대책

4.1 농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4.1.1 농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종식 선언 후 그 결과를 세계 동물보건기구(WOAH)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국제적 청정성 회복에 대한 요건은 ‘WOAH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른다.

4.2 농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예찰·검사, 발생 시·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도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1 시·도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4.2.2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와 검역본부장은 상기의 사후관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대책 시행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발생농장 등의 재입식 요령

1. 입식시험 대상

- 1.1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 중 양성 판정 농장 포함)
- 1.2 H5·H7항체가 검출되어 해당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
- 1.3 출하 등으로 가축 사육이 없는 농장의 환경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2. 입식시험 실시요령

2.1 입식시험의 준비

2.1.1 시·군·구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 별표 7(입식시험실시요령)

및 동 긴급행동지침 별표 18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농장 포함)에 대한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해 소독·시험가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입식 승인 전에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농장의 소유자등은 김수성 기축을 재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왕겨, 사료, 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2.1.2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농장내 관리시설과 축사내외·진입로·축산기자재 등의 분변·왕겨·사료 등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청소)한 후에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1.3 시·군·구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소·세척 및 소독 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과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점검 시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이 모두 보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1.4 시·군·구는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험 승인을 요청(별지 제4호 서식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한다.

2.1.5 검역본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생농장 소유자 등에 대해 가목에 따른 입식 승인 전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2.1.6 검역본부장은 입식시험 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구에게 입식 시험을 승인하여야 한다.

* 점검 시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이 모두 보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2 시험가축의 선정

2.2.1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지역(방역지역 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이어야 한다.

2.2.2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시험가축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음성 및 H5·H7 항체 음성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2.3 시험가축의 종류 및 마리 수는 다음과 같다.

- 가장 감수성이 높은 축종인 닭을 시험가축으로 사용
- 모든 축사당 4~12주 산란계 중추(웅추 포함 가능) 또는 4~5주 육계 최소 5수 이상(단, 축사규모별 시험수수 증가)

* 축사 규모별 시험축 ① 2만 수 이하(5수 이상), ② 2만 수~5만 수(10수 이상), ③ 5만 수~10만 수(20수 이상), ④ 10만 수 이상(30수 이상)

- 재입식 시험가축 배치 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 내 골고루 배치(1 지점 당 5수)

2.3 입식시험의 방법

2.3.1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은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및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검사(분변이 있을 경우 분변 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실시한다.

- 분변검사 시 집적된 분뇨는 생석회를 걷어내고 분뇨더미 중간, 안쪽, 가장자리 모두와 분뇨 표면, 중충부, 심부 등 골고루 채취하며, 집적되지 않은 분뇨는 축사 내부에 균등하게 생석회를 걷어내고 표면에서 3cm 이상 아래에서 채취한다.
- 환경검사는 21개소(축사토양, 축사벽면, 축사바닥, 컨베이어벨트, 케이지,

이동차량, 먹이통, 급수통, 계분벨트, 급수기, 물 급여라인, 니플, 장화, 분뇨 처리 장비, 환풍기날개, 열풍기, 관리사 바닥, 관리사 냉장고, 매몰지 주변, 팔레트, 난좌)에 대해, 청소·세척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외부 퇴비사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 채취(얼어 있는 분변 및 생석회를 걷어내고 분뇨의 표면, 중층부, 심부에 대하여 시료채취)한다.

2.3.2 발생농장의 소유자 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3.3 발생농장의 소유자 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시험축 배치 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 내에 골고루 배치(1 지점 당 5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산란계·종계 등 케이지 내에서 사육하는 축사의 경우 시험가축을 이동식 케이지에 넣은 채로 축사 내를 이동시키면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자주 접촉되도록 하거나 케이지 내에서도 사육시키는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입식시험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

2.3.4 입식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 2주간으로 한다.

2.3.5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 마다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2.3.6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2주 경과 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2.3.7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정밀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농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3.8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하고 이상증상을 보이는 개체(필요 시 전수)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항체)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2.3.9 시·군·구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입식 시험 관련 제반서류(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3.10 검역본부장은 시·군·구가 제출한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의 적정 여부, 방역교육 이수 여부(중복발생 농장에 한함)를 확인한 후 입식 승인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 입식시험 재실시

- 입식시험 개시 기간 중 인근지역 AI 추가 발생으로 입식시험 농가가 방역지역의 관리지역(500m) 내에 위치할 경우 시·군에서는 입식시험 농가가의 시험축을 즉시 살처분하고 방역지역 해제 이후 입식시험을 재차 실시하며, 보호지역(500m~3km)이나 예찰지역(3~10km) 내에 위치할 경우 입식시험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보호지역이나 예찰지역 내의 입식시험 진행은 AI 추가 발생 이전에 이미 입식시험 진행 중인 농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입식시험이 방역지역 해제 이전에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이후 방역조치는 방역지역 내 다른 농장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3. 관리·보호·예찰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사육 조건

3.1 관리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사육 조건은 다음과 같다.

3.1.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 완료

3.1.2 농장 내 환경검사(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3.1.3 가축방역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에 대한 점검은 관리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실시할 수 있다.

3.1.4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 다만,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방살처분 농장이 발생농장을 포함하여 밀집되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등과 협의(필요 시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거쳐 발생농장의 방역상황(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 환경검사 결과, 분뇨 처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최대 21일 범위 내에서 재입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보호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사육 조건은 다음과 같다.

3.2.1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 완료

- * 오리농장의 분뇨 발효 처리 등 재사용요령은 [별표 16] 참조
- * 분뇨처리 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 및 제23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준용

3.2.2 농장 내 환경검사(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3.2.3 해당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3.3 예찰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재사육 조건은 다음과 같다.

3.3.1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 완료

- * 오리농장의 분뇨 발효 처리 등 재사용요령은 [별표 16] 참조
- * 분뇨처리 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제3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준용

3.3.2 농장 내 환경검사(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1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조치

1. 기본원칙

- 1.1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한다.
- 1.1.1 분리된 바이러스가 실험실검사 결과 병원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거나,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유전형인 경우 또는 인체에 감염 위험이 있는 유전형인 경우
- 1.1.2 H5/H7형 항원 또는 항체가 확인된 농장은 농장 내 감수성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시행하며, 역학조사를 통해 사람·차량의 이동사항을 파악하여 역학 관련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및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 1.2 H9형 등 H5·H7형이 아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시 AI 검사 결과 ‘음성’ 시까지 해당 농장 이동제한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2. H5·H7형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2.1 이동제한 지역의 설정

- 발생농장, 발생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농장에 한함

2.2 이동제한대상

- 이동제한 농가의 사육 가금류 및 그 생산물

2.3 살처분 및 폐기대상

- 발생농장에 사육되는 가금류, 그 생산물 및 기타 오염물건
- 발생농장과 울타리나 구획이 없는 인접농장에 사육되는 가금류, 그 생산물 및 기타 오염물건
-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 중 정밀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에서 사육되는 가금류, 그 생산물 및 기타 오염물건

3. H5·H7형의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된 경우

- 3.1 H5, H7형 항체양성 농장은 HI검사법에 의한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을 말한다. 다만,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3.1.1 검역본부장은 비특이 반응에 의한 양성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가축 방역기관에게 동일 계군에 대한 시료를 추가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도록 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닭에서 H5 또는 H7 항체 양성 반응 시 처리 기준

⇒ 최초 양성 반응 확인 후 2주 이상 경과 후 동일 계군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재검사 의뢰

(판정기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비특이 반응에 의한 항체 음성 여부를 최종 판정

- ① 재검사 결과 항체 검출 개체수와 역가가 증가하지 않을 것
- ② H5항체가 검출된 시료에서 저병원성 H9 항체가 검출될 것
- ③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AI 임상 증상이 없어야 할 것
- ④ 해당 농가가 역학 관련 농가가 아닐 것
- ⑤ 항원이 검출되지 않을 것

3.2 H5·H7형 항체가 확인된 농장은 이동제한 후 농장 내 사육 가금류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해 살처분·폐기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모체이행항체로 판단될 경우 가금에 대한 살처분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3.2.1 이동제한 기간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항체 양성 판정된 시점부터 실시한다.

새끼오리(21일령 이하)는 역학사항 등을 고려하여 모체이행항체로 판단*될 경우, 아래 조건에 부합시 살처분 제외 가능

* 필요시, 시·도는 검역본부 기술자문을 받아 최종 판단

- ① 새끼오리를 분양한 부화장에 종란을 공급한 종오리장에서 항체가 검출되고, 항원 검사는 모두 음성일 것*
 - * 종오리장이 여러 곳일 경우, 항원검사에서 모든 종오리장이 음성
- ② 새끼오리가 21~23일령이 되는 시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항원·항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일 것
- ③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은 최소한 항원 및 항체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시점까지 조치

3.3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는 H5·H7형 항체가 확인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사람·차량의 이동사항을 파악하여 역학 관련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및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3.3.1 방역조치 대상 역학 관련 농장·시설의 선별 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 요령」 중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기간을 고려하되,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항체 형성 시점으로 확인된 기간을 산입하여 역학 관련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3.4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 양성농장에서 가축을 재입식 할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기타 오염물에 대한 폐기, 청소·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축사 바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재입식할 수 있다.

4. H9형 등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H7형 이외)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

4.1 해당 농장은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간 이동제한하며,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 내 방문한 축산차량 및 역학 관련 농장(계류장 포함)에 대해 추적조사 및 소독 조치를 실시한다.

* 다만, 과체중 등으로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료 채취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 해제 가능

4.1.1 이동제한 해제를 위하여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시료 채취 및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과체중 등으로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료 채취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정밀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 해제 가능

4.1.2 저병원성 AI 발생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도축장 외 가금 출하는 허용되지 않는다.(가금농장·전통시장·계류장·가든형식당·가금거래상인 등으로 출하 금지)

4.1.3 이동제한 대상 농가 중 알을 반출해야 하는 산란계·메추리·종계·종오리 농장의 경우, 생산된 알은 세척·소독(종란은 훈증 소독 실시) 후 반출할 수 있으며, 알 운반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을 금하며 외부에서 환적하도록 조치한다.

4.1.4 이동제한 대상 농가에 백신접종반이 진입하여야 하는 경우, 진입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농장 진입 전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예방접종의 실시 등

5.1 H9 혈청형의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내 유행주에 효과가 증명되어 검역본부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에 한해 접종할 수 있다.

별 표

1. 초기검진 시 긴급방역용 용구
2.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3.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농장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요령
4. AI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시료 채취요령
5. 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요령
6.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7. 출입금지 표지판
8. 긴급방역용 용구
9.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10. 조류인플루엔자 전화예찰 요령
11. 살처분 및 사체 처리요령
12. 축사 청소·소독 프로그램
13.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등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등)
14.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공고)
15. 소독제별 특성 및 사용요령
16. 오리농장 분뇨 처리요령
17.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요령
18.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요령
19.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20.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요령
21.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22. 도축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시 폐쇄조치 해제절차
23. 가금농장 알 상차장소 방역관리 요령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별표 1]

초기검진 시 긴급방역용 용구

| 용 구·서 식 명 | 수량 | 비고 |
|------------------|------|---|
| 비누 | 1개 | |
| 종이타올 | 1봉지 | |
| 브러쉬(큰솔, 작은솔) | 각1개 | |
| 소독약 | 2리터 | |
| 소독조(40cm×30cm) | 1개 | |
| 물통(20리터) | 1개 | |
| 비닐백(지퍼형) | 3개 | |
| 체온측정기 | 2개 | |
| 1회용 주사기 5ml(19G) | 6개 | |
| 회중전등 및 예비배터리 | 각 2개 | |
| 표식용 스프레이(황색, 적색) | 각 1개 | |
| 일반 검진용 도구 및 가방 | 1조 | |
| 방수모자, 외투 및 바지 | 2조 | |
| 보호복 | 2벌 | Level D급(바이러스 불침투) |
| 고무장화 | 2짝 | |
| 겉장갑 | 2짝 | 미국은 1회용 니트릴(Nitrile)장갑 권장 |
| 속장갑 | 2짝 | 라텍스 재질 |
| 보안경 | 2개 | 안전고글 |
| 마스크 | 2개 | KF94/N95 등 * 벨브가 부착된 마스크는 장시간 작업에 용이 |
|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 1부 | |
| 별지 제2호서식 - 현지조사표 | 2부 | |
| 출입금지 표지판 | 1개 | |
| 이동전화 | | |
| 메모장 | 2권 | |
| 책받침 | 1개 | |
| 나침반 | 1개 | |
| 유성펜 | 3개 | |

[별표 2]

검사시료채취 준비물

| 집 행 용 구 | 수 량 |
|--------------------------------|-----------|
| 프라스틱 백(90 x 90cm), 냉장용 아이스팩 포함 | 6개 |
| 프라스틱 백(50 x 25cm) | 6개 |
| 고무장화 | |
| 고무장갑 | |
| 1회용 장갑 (라텍스 장갑) | |
| 보호복(Level D급) | |
| 보호용 마스크(안면 전면 또는 N95) | |
| 보호용 안경(고글) | |
| 멸균 목재 압저 (tongue depressor) | 축사별 5개 |
| 1회용 주사기 3㎖ | 축사별 20개 |
| 멸균 면봉 | 축사별 40개 |
| 50 ㎖ 코니칼튜브(바이러스 수송배지 포함) | 축사별 12개 |
| 아이스박스(혹은 스티로폼 박스) | 2개 이상 |
| 네임펜 | 3개 |
| [별지 제3호서식] 시료채취내역서 사본 | 1부 |
| 박스테이프 | 1개 |
| 조류인플루엔자 간이항원 진단키트 | 10 Test 분 |

* 준비 항목은 필요시 추가(생략) 가능하며, 각 항목별 적정 수량도 출장인원, 검사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3]

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농장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요령

1. 시·도 가축방역기관 시료채취반 준비 및 주의사항
 - 1.1 시료채취반은 가축방역관이나 진단요원 등 2인 이상을 1조로 한다.
 - 1.2 사육현황 등 농장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별표 2의 검사시료채취 준비물과 소독 장비를 갖추어 현장으로 출발한다.
 - 1.3 차량은 의심장소 밖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 개인보호구(보호복, 마스크, 고글, 장갑과 장화)를 착용한 후 시료채취도구 등을 가지고 농장으로 진입한다.
 - 1.4 농장에서 복귀할 때에는 개인보호장구를 소독하고 탈의 후 폐기하고, 신발바닥 및 차량 바닥, 바퀴 등을 소독한다.
 - 1.5 예방적 살처분농가는 의심축 발생농장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하되 살처분 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더라도 살처분 당일 임상증상, 폐사체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재채취하여야 하며, 가축의 소유자등은 방역관의 시료채취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심장소 내에서의 임상관찰 및 기초 조사
 - 2.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에 의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축주나 관리인을 통해 사육정보와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한다.
 - 2.2 임상관찰은 건강한 개체 또는 계군부터 시작하여 점차 발생 의심동물로 진행한다.
 - 2.3 관찰 중 의심되는 임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상증상을 보이는 개체 또는 계군을 포함하여 축종, 축사, 일령 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를 실시한다.
 - 2.4 의심되는 질병에 대하여 축주에게 설명하고, 방역조치를 취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3. 시료채취 및 송부
 - 3.1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서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요령(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검 및 가검물 채취 후 남은 사체는 소각 또는 매몰 등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철저히 소독한다.

3.2 정밀진단을 위한 시료채취 요령

3.2.1 병리해부검사를 위하여 최소 5수 내지 최대 10수 정도의 폐사축을 확보한다.

다만, 폐사축이 없을 경우에는 확연한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침울한 증상을 보이는 개체를 대상으로 한다.

3.2.2 혈청검사를 위해 축사별로 20수씩 개체 당 혈액 2ml 이상 채혈한다. 혈청 송부용 1회용주사기는 혈청분리용기에 전혈을 끓겨 담아 상온에서 응고 후 냉장 보관한다.

3.2.3 채혈한 동일개체 인후두 및 총배설강 swab을 각각 20개씩 채취한다.

3.2.4 분변은 농가별 축사 당 20개 시료를 채취하며 아래의 3.3 분변 채취요령에 따라 채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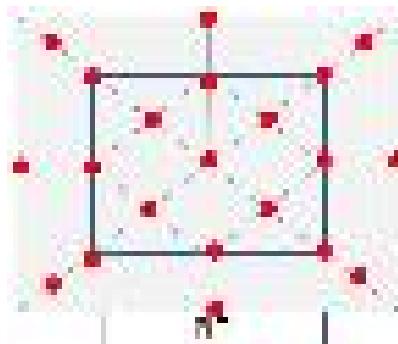
3.2.5 각 swab은 종류별로 5~10점 단위로 현장에서 풀링(동일튜브)할 수 있으나, 면봉이 아닌 전용 swab을 사용해야 하면 항생제가 포함된 수송배지(transport medium)에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료채취의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의 ‘AI 정밀진단매뉴얼’을 참고한다.

3.3 분변 채취요령

3.3.1 분변의 채취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료는 점당 1g 이내로 채취하며, 50ml 코니칼튜브 1개에 5개 지점의 시료를 튜브 5ml 정도까지 신선한 분변을 투입한다. 축사 당 시료 튜브 수는 4개가 되도록 한다.
- 생식회가 살포된 경우에는 생식회를 걷어내고, 표면에서 3cm 이상 깊이에 있는 분변을 은행 씨알 크기로 채취한다.
- 집적된 분변은 생식회를 걷어내고 분뇨 더미 중간, 안쪽, 가장자리(표면, 중충부, 심부) 등에서 골고루 채취한다.
- 집적되지 않은 분변은 축사 내 일부분에 편향되지 않도록 아래 [그림 1]을 참고하여 골고루 채취한다.



[그림 1] 발생농가 축사 등에서의 분변시료 채취 지점

3.4 타 축종(돼지 및 개)에 대한 시료채취 요령

3.4.1 관리지역 내 돼지에 대한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육성사 및 비육사로 구분하여 비강 swab 및 혈액 각 20점 이상씩 채취한다.
- 사육단계별 돈사가 다수일 경우 돈사당 균등 할당하여 채취한다.

3.4.2 발생농장 및 그 외 역학관련으로 개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할 경우 시료채취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비강 swab 및 혈액을 케이지당 1~2두씩 채취하되 농장 당 20두 이상 채혈한다. (20두 미만일 경우 전 두수)

3.5 시료 포장 방법

3.5.1 시료를 용기에 담은 후 뚜껑을 단단히 밀봉한 후 시료용기 외부에 시료번호 또는 시료명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고 포장용기에 담는다.

3.5.2 포장용기 내에 시료와 직접 닿지 않도록 아이스팩을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하고 (시료를 얼리지 말 것), 시료용기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빙 공간을 솜 등으로 채운 후 포장용기의 뚜껑을 닫고 외부를 소독한다.

3.5.3 채취한 시료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내역서를 정확히 기록하여 시료와 함께 동봉한다.

3.5.4 폐사체 시료는 다른 종류의 시료와 구분하여 별도 포장용기에 이중으로 포장하고 아이스팩을 충분히 넣어 포장용기 외면에 폐사체 시료를 표시한다.

3.6 시료의 송부

3.6.1 시료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시·도 가축방역기관)로 송부하여 진단될 수 있도록 수송한다.

- 3.6.2 동물위생시험소에서의 1차 검사 결과, AI로 판정(AI정밀진단기관의 경우, H5/H7/H9 여부까지 판정)되어 최종 확인검사를 위해 검역본부로 시료를 송부할 경우, 가축방역관 또는 관계관(안전수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 직접 인편으로 시료를 수송한다. 필요시 국토교통부·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최우선적으로 수행토록 한다.
- 3.6.3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수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장소를 벗어난 후 포장용기를 별도의 운송상자에 담아 포장용기가 운송 중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파손 시에는 주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3.6.4 포장용기 또는 운송상자 외부에는 위험물품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3.6.5 수송 직전에 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및 방역감시과)에 가검물의 내용·수량, 수송경로, 출발시간, 도착예정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 3.6.6 해당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부검소견 주요 진단결과를 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 연구진단과 및 방역감시과)와 신속히 공유한다.

4. 시료채취반의 철수

- 4.1 발생장소에서 철수할 때는 개인보호장구를 소독하고 털의 후 밀봉하여 별도 폐기 한다.
- 4.2 신발바닥과 차량의 바퀴, 외부 및 내부바닥을 깨끗이 세척·소독한 후 발생장소를 떠난다.
- 4.3 현장에서 활동하였던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경우 최소 7일 동안 감수성 동물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류인플루엔자의 진단

- 5.1 의사환축에 대한 진단은 검역본부에서 병리검사·바이러스 검사(유전자 검출, 혈청아형 동정, 병원성 여부 확인 등)·바이러스 분리·혈청검사 등을 실험실 내(모든 검사 수행은 준차폐시설 이상) 검사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의 경우는 의사환축 발생 농장에 대해서도 해부검사, 바이러스 및 항체 검사를 통해 H5/H7형 여부를 판정 후 그

결과에 따라서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확인검사)를 의뢰한다. 필요시 H9형 여부에 대한 감별진단도 실시하여야 한다.

5.1.1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를 수행한 결과 H5/H7형 양성인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의사환축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5.1.2 의사환축 또는 H5/H7형 양성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축사별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항원·항체)를 수행한 후 검역본부에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확인검사를 요청한다.

5.1.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중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일상적인 병성 감정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한다.

5.1.4 검역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시설·검사장비·검사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2 검사 시료가 담겨 수송된 포장용기 또는 운송상자는 밀봉한 채로 지정된 실험실 내로 운반되어야 하며, 실험실 내에서 개봉하여 진단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3 의사환축 해부검사 시 검체별로 각각 장기별 시료를 채취하며, 최대 5마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한다.

5.3.1 해부검사 시 채취대상 시료

- 바이러스 분리를 위하여 기관지, 맹장편도, 신장 등을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SPF 종란내 접종, 유전자진단(Real-time RT-PCR, RT-PCR)의 재료로 사용한다.
- 병리조직검사용 재료로 뇌, 기관, 폐장, 간, 췌장, 심장, 신장 등을 추가 채취할 수 있다.
- 응고된 혈액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하여 c-ELISA 검사 후 양성혈청에 대해 혈구응집억제반응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유무를 검사한다.
- 실험실에서는 시료접수와 함께 지체없이 진단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는 즉시 보고한다.



5.4 의사환축 정밀진단 시 AI 정밀진단 매뉴얼에 따라 유전자검사법, 항체검사법 등의 정밀검사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별표 4]

AI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시료 채취요령

□ 환경시료채취 목적

- 병원체 유입 및 전파 경로 파악

□ 축종별·품종별 시료채취요령

| 축종별 | | 오리 | | 닭 | | | | | |
|-------|---|------|------|-------|------|-------|------|-------|------|
| 품종별 | | 육용오리 | 종오리 | 산란계 | | 종계 | | 육계 | |
| 사육형태별 | | 평지사육 | 평지사육 | 케이지사육 | 평지사육 | 케이지사육 | 평지사육 | 케이지사육 | 평지사육 |
| 농장 외부 | ①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축사 외부 | ①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 | ○ |
| | ⑥ | ○ | ○ | ○ | ○ | ○ | ○ | ○ | ○ |
| | ⑦ | ○ | ○ | ○ | ○ | ○ | ○ | ○ | ○ |
| | ⑧ | ○ | ○ | ○ | ○ | ○ | ○ | ○ | ○ |
| | ⑨ | ○ | ○ | ○ | ○ | ○ | ○ | ○ | ○ |
| | ⑩ | ○ | ○ | ○ | ○ | ○ | ○ | ○ | ○ |
| | ⑪ | ○ | ○ | ○ | ○ | ○ | ○ | ○ | ○ |
| 축사 내부 | ①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④ | ○ | ○ | ○ | ○ | ○ | ○ | ○ | ○ |
| | ⑤ | | | ○ | | ○ | | ○ | |

* 신고 전 다수의 폐사가 확인될 경우 필요시 폐사체 병성감정의뢰

□ 세부 시료채취대상

○ 농장외부

- ① 발생농장 주변 500m 이내 농경지 토양, 야생조수류 깃털 및 분변 등
- ② 발생농장 주변 철새도래지 또는 인근 소하천의 물, 토양, 야생조수류 깃털 및 분변 등
- ③ 발생농장 외부울타리 훼손부위 표면, 야생조수류 분변 흔적 및 농수로의 물 등

○ 축사외부

- ① 축사 외부에서 사용하는 신발(작업화, 장화 등)
 - ▷ 발목, 발등, 발바닥
- ② 관리실, 숙소내의 물품, 바닥 및 벽면
 - ▷ 의복(작업복, 외출복), 신발(작업화, 장화 등), 장갑
- ③ 집란실의 물품, 바닥 및 벽면
 - ▷ 난좌(플라스틱, 종이), 파레트
 - ▷ 수레, 바구니 등 알 운반작업도구
- ④ 농장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원수), 음수 및 용수
- ⑤ 농장내에서 사용하는 차량 및 장비
 - ▷ 축산차량, 축주차량 등의 표면과 운전석 바닥, 손잡이, 운전대 및 바퀴 등
 - ▷ 스키로더, 왕겨살포기, 트랙터 등의 표면과 운전석 바닥, 손잡이, 운전대, 로더 및 바퀴 등
 - ▷ 표면에 묻은 분뇨 및 왕겨
- ⑥ 농장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등
- ⑦ 농장내 창고 손잡이, 바닥 및 벽면
- ⑧ 차량소독 진입로 전·후
- ⑨ 관리사 냉장고 내 보관중인 백신, 약품, 가검물 표면 등 및 손잡이
- ⑩ 농장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도구
 - ▷ 사다리, 물이망, 청소도구 등
 - ▷ 분뇨 및 폐사체 처리 시 사용한 삽, 수레 등
- ⑪ 기타(오토바이, 자전거, 공구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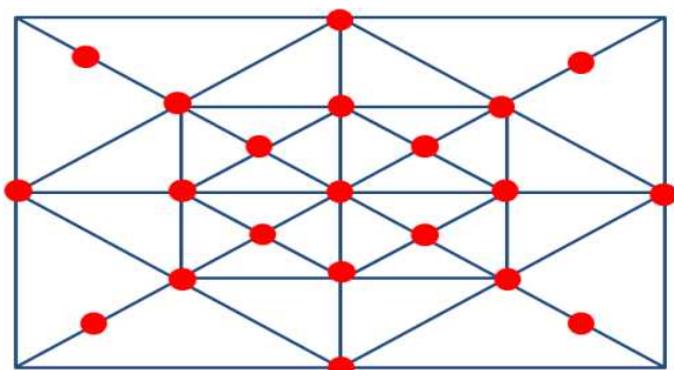
○ 축사내부

- ① 전실 손잡이, 바닥 및 벽면(5곳 이상)

- ② 축사 입구(앞문, 뒷문, 쪽문) 손잡이, 바닥 및 벽면(5곳 이상)
- ③ 전실 및 축사내의 장화(발목, 발등, 발바닥)
- ④ 흡·배기구 공기 유동물질(깃털, 분변, 타액, 혼입 먼지 등)
- ⑤ 환기팬, 밀차, 작업대 등

□ 시료채취요령

- 살처분 작업 시작 전 시료채취 실시
-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시료채취(모식도 참조)
- 시료채취시 오염 방지를 위해 농장 외부부터 시료채취를 시작하여 축사 안으로 진입
- 토양·분변 및 깃털은 집게 또는 스푼을 이용하여 50 ml 원심분리용 튜브 외부와 입구에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여 밀봉
- 물(하천수, 지하수(원수), 음수, 용수) 등은 50 ml 원심분리용 튜브에 담아서 밀봉
- 직접적으로 용기에 담을 수 없는 시료는 표면을 거즈 또는 VTM배지 키트를 이용하여 시료채취(스왑)
 - ▷ 표면 면적이 넓은 곳은 멸균PBS에 적신 거즈를 이용하여 닦아주듯이 시료채취 후 50 ml 원심분리용 튜브에 담아서 밀봉
 - ▷ 표면 면적이 넓지 않은 곳은 VTM 배지키트내 멸균면봉을 멸균PBS에 적신 후 시료채취하여 VTM배지가 들어있는 튜브에 넣고 잘 풀어준 뒤 면봉은 버리고 배지가 흐르지 않도록 밀봉



[축사내 혈액이나 분변시료 채취요령 모식도]

□ 시료 포장 및 운반요령

-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의 환경시료 포장 및 운송은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매뉴얼(최신). II.4 포장 및 운송의 방법”을 따른다.
- 모든 시료는 냉동되지 않도록 냉장상태 유지에 주의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

※ 일반 멸균 면봉을 사용 채취한 시료는 2일(48시간) 이내에 시료가 도착하도록 조치
 ▷ 3일째부터 바이러스 증가 감소
※ VTM배지(수송배지)에 넣어 운반 시 보다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분리 가능

[별표 5]

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요령

1. 기동방역기구의 구성

1.1 구성 : 중앙 초동대응팀과 현장 기동조치팀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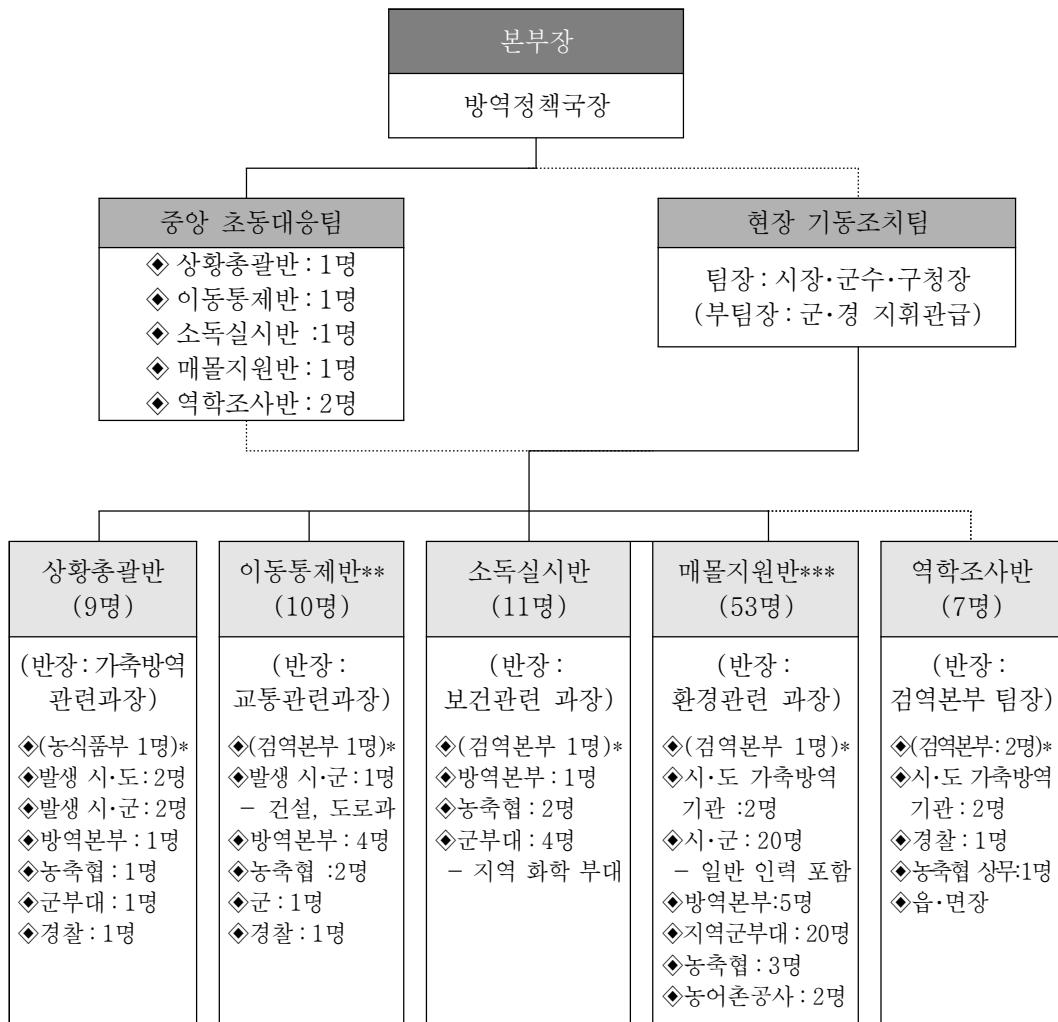
1.1.1 중앙 초동대응팀 : 5개 반, 6명 이내

| 구 분 | 구성 및 주요 임무 |
|---------------|--|
| 상황총괄반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농식품부 서기관·사무관급 1명 ◆ 임무 : 기동방역기구 총괄 및 발생 시·군의 초기 방역조치 총괄 |
| 이동통제반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검역본부 서기관·사무관급 1명 ◆ 임무 : 발생농장 이동통제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에 대한 지도·지원 |
| 소독실시반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검역본부 서기관·사무관급 1명 ◆ 임무 : 발생농장 및 주요 도로 등 소독 지도·지원 |
| 역학조사반 (2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검역본부 역학조사 인원 2명 ◆ 임무 : 역학조사 실시(필요 시 시·도 역학조사팀과 공동조사) |
| 매몰지원반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검역본부 서기관·사무관급 1명 ◆ 임무 : 매몰지 선정 및 매몰요령 등 현장 매몰 지도·지원 |

1.1.2. 현장 기동조치팀 : 5개 반, 78명

| 구 분 | 구성 및 주요 임무 |
|-------------------|--|
| 상황총괄반 (10명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농식품부 1명), 시·도 사무관급 1, 주무관 1, 발생 시·군 2, 군부대 1, 경찰 1, 농협·지역축협 1, 방역본부 1명 ◆ 임무 : 기동방역기구 총괄 및 발생 시·군의 초기 방역 지휘 |
| 이동통제반 (10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검역본부 1명), 시·군 1, 경찰 1, 군 1, 방역본부 4, 농협·지역축협 2 ◆ 임무 : 발생농장 이동통제 및 통제초소 설치·운영 지원 |
| 소독실시반 (11명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검역본부 1명), 농협·지역축협 2, 방역본부 4, 군부대 4 ◆ 임무 : 발생농장 및 주요 도로 등 발생지역 주변 소독 실시 |
| 역학조사반 (7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검역본부 2명), 시·도 가축방역기관 2, 경찰 1, 읍면장, 지역조합장 ◆ 임무 : 역학조사 실시(필요 시 중앙역학조사반과 공동조사) |
| 매몰지원반 (53명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검역본부 1명), 시·도 가축방역관 2, 시·군 20, 군부대 20, 농협·지역축협 3, 농어촌공사 2, 방역본부 5 ◆ 임무 : 매몰지 선정 및 매몰요령 등 현장 매몰 지도·지원 * 보상평가팀, 매몰처분팀(터파기팀, 마취팀, 매립팀), 사후처리팀 구성 |

1.1.3. 기동방역기구 조직도



* 현장기동조치팀 구성은 중앙초동대응팀이 포함된 것이며, 구성인원은 AI 발생상황 등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이동통제반은 통제초소 운영 인원은 별도 구성

*** 매몰지원반은 보상평가팀, 매몰처분팀(터파기팀, 마취팀, 매립팀), 사후처리팀으로 구성

2. 기동방역기구 운영 요령

2.1 평시 기동방역기구 구성 및 운영 요령

2.1.1 기동방역기구는 비 상설기구로 운영한다.

2.1.2 각 기관은 시·군 단위로 1.1.3. 기동방역기구 조직도에 따른 인원으로 매년 방역계획 수립시 편성 및 관리하며, 편성된 인력은 평시 개인별 일상 업무 수행하고, 상황 발생 시 발생현장에 투입한다.

2.1.3 각 기관은 각 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반원을 편성한다.

- 각 시·군은 지역 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반원 명단을 받아 기동방역기구를 편성하고 총괄 관리한다.
- 관계 기관은 기동방역기구 자체 반별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관할 시·군에 명단을 제출한다.
- 각 기관은 인원 편성시 예비로 2개 팀을 추가로 작성한다.

2.2 기동방역기구의 교육 및 훈련

2.2.1 기동방역기구의 특성상 전체 집합 교육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가상 방역훈련(CPX)시 참여하여 전문성 및 경험을 확보한다.

2.2.2 가축위생방역본부는 각 반별 편성된 소속 인원에 대하여 소독·이동통제 및 살처분·사체 처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 방역조치(살처분, 소독약 사용), 인체감염 예방(계절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등

2.3 기동방역기구의 투입

2.3.1 농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즉시 기동방역기구의 소집 및 현장 투입을 명령한다.

2.3.2 기동방역기구는 이동통제, 소독 및 매몰조치 등 현장 방역 조치 지도·지원 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을 준수한다.

2.4 기동방역기구의 철수

2.4.1 기동방역기구는 초동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 시 관할 시·군에 상황 인계 후 철수한다.

2.4.2 그 이후 방역조치는 발생한 시·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기동방역기구의 기관별 업무

3.1 농식품부

- 3.1.1 초동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발생 시·군에서의 초동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한다.
- 3.1.2 시·도의 가상방역훈련에 농식품부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훈련을 평가한다.
 - 대책본부 반별 임무카드 숙지 및 SOP 이해 여부, 실처분 인력·자재 동원 계획의 실행 여부 등을 평가
 - * 평가 미흡 지자체는 가상방역훈련 재실시, 지자체 방역평가 감점

3.2 검역본부

- 3.2.1 기동방역기구 인력을 편성하고 그 인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 교육(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을 실시한다.
 - * 필수교육 과정 : 실처분 방법, AI 소독약품 특성 및 적정 사용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특성, 방역조치에 관한 사항 등
- 3.2.2 방역기술 지원, 소독장비 운영, 이동통제 초소설치·운영 및 사체처리작업 지원 등 기술자문을 실시한다.
- 3.2.3 현장의 소독 실시와 통제초소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
- 3.2.4 중앙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추적조사 및 역학분석을 실시하고, 필요 시 시·도 역학조사반과 협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기간(48시간 내) 동안 역학조사와 역학관련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실시한다.

3.3 시·도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 3.3.1 가축방역관·수의사 등 전문 인력과 방역장비 및 비품 등을 동원하고, 실처분·매몰작업에 기술 지원을 한다.
- 3.3.2 인근 시·군의 통제초소의 설치를 지도하고 지원하며, 장비를 파악한다.
- 3.3.3 인력 및 장비의 동원계획 수립하고 지침을 시달한다.
- 3.3.4. 발생농장 및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필요 시 중앙 역학조사반과 협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3.4 시·군

- 3.4.1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몰대상 농가의 현황 등 관련 축산현황을 파악한다.
- 3.4.2 소독 및 이동통제 인원과 장비를 확보하고, 소속 인력의 업무분담과 배치를 하며, 기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3.4.3 살처분 보상금 평가와 매몰지의 선정 및 살처분·사체처리 조치를 한다.

3.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5.1 검역본부과 협의하여 방역기술을 지도하고 현장 지원을 총괄한다.

3.5.2 시·군의 지시에 따라 신고농장에 대한 초기 이동통제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한다.

3.5.3 소독,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3.6 농협(축협)

3.6.1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소독 및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3.6.2 지역조합장은 역학조사에 협조한다.

3.7 군부대

3.7.1 소독, 이동통제 및 사체처리 조치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필요 시 장비를 지원한다.

3.8 경찰

3.8.1 이동통제 및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3.9 농어촌공사

3.9.1 살처분 및 사체처리를 지원한다.

4. 기동방역기구의 반별 세부업무

4.1 상황총괄반(반장 : 농식품부 과장, 시·군·구: 가축방역관련 과장)

4.1.1 상황실 설치를 지도하고 기관별 업무분장 등 초동조치 업무를 총괄한다.

- 시·군·구청장을 면담하고 상황실 업무분담과 시·군·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매몰대상의 농가 현황과 관할 가축사육 현황 등 주요 동향을 파악한다.
- 중앙정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4.1.2 시·군의 인력·장비의 확보와 행정지원 업무를 협조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 시·군의 통제초소 운영·소독실시·매몰처분 관련 인력 및 장비 확보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협조한다.

* 인력 동원은 시·군 총무과장, 장비 동원 : 시·군 건축 관련 과장

- 시·군의 물품 조달과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 의료구호품 비치 등 일반 행정지원 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한다.

- 군, 경찰, 소방서 등 관련 기관 및 민간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1.3 기동방역기구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방역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 각 반별 방역조치 상황을 확인 및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4.2 이동통제반(반장 : 시·군 교통관련 과장)

4.2.1 발생농장 입구에서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하여 통제한다

- 발생농장 입구는 3명(시·군 직원과 가축방역사 2)의 통제팀을 구성하여 상주하면서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로 하고 발생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4.2.2 방역지역 내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실시한다.

- 소독장비 및 통제초소 장비 및 운영 인력은 시·군에서 확보한다.

- 통제초소는 시·군 공무원 및 방역본부, 군, 경찰 및 농협(지역축협)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관내 주민을 활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기동방역기구는 통제초소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4.3 소독실시반(반장 : 시·군 보건관련 과장)

4.3.1 발생농장 및 발생지 주변 소독을 실시한다.

- 발생농장 이동 통제팀과 협조하여 발생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에 대하여 소독 등을 실시한다.

- 발생농장 인근 발생지(500m 내외)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4.3.2 방역지역 내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시·군 및 농협의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이용하여 주요 도로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 기타 주요 소독실시 대상 시설에 대하여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4.4 역학조사반(반장 : 중앙역학조사반 팀장)

4.4.1 시·도 역학조사반은 관할 지역 발생 농장 등(역학 관련 농장·시설을 포함)에 대하여 1차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은 그 내용을 전달받아 추가

조사 및 역학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 시에는 시·도 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4.4.2 필요한 경우 경찰, 축협조합장 및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4.4.3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요청 등 필요 시 상황총괄반과 협조한다.

4.5 매몰지원반(반장 : 시·군 환경관련 과장)

4.5.1 평시 살처분 인력(수의사 등 공무원, 군인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편성하고 AI 발생 시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방역매뉴얼에 따른 보상·평가방법, 매몰지 선정방법, 매몰요령 등 업무별 사전 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4.5.2 매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은 시·군에서 확보하고 필요 시 군부대의 협조를 통해 장비를 활용한다.

- 현장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몰처분 지휘 및 농가별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상황총괄반에 통보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의 살처분 및 사체처리요령을 준수한다.

[별표 6]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1. 초동방역팀 구성

-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도별로 적정한 시·군별로 1개팀 이상의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 1.2 각 초동방역팀은 1~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훈련

-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 2.2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 3.1 의심축 발생 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 또는 시·군·구는 방역본부장에게 초동 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한다.
 - 또한, 초동방역팀이 투입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는 관할 보건소에 초동방역팀 투입사항을 통보한다.
- 3.2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받은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해당농장에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농식품부장관과 시·도 및 시·군·구 등 투입요청자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3.3 방역본부장은 의심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 만으로 곤란한 때에는 타 도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다.
- 3.4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투입 시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휴대하도록 조치한다.
- 3.5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상시 비축하고 의심축 발생 시 발생지역 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초동방역팀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4. 초동방역팀 임무

- 4.1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지원한다.
- 4.1.1 의심축 발생농장 입구에 의심축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 4.1.2 의심축 발생농장의 진입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 소독장비를 설치·운영한다.
- 4.1.3 의심축 발생농장 진입로에 대해 소독(생석회 살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4.1.4 의심축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 4.1.5 의심축의 소유자, 소유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와 가축·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아 개인위생을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2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기록·관리하고, 질병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 4.3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에 투입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해당 보건소로부터 감염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받아야 한다.

5. 초동방역팀 철수 및 투입연장

- 5.1 초동방역팀은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당해 농장 입구에 상주하여야 하며, 양성 판정 시에는 당해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종료하고 시·군 인계 후 철수한다.
- 5.1.1. 단 검사진행사항, 살처분 상황 등에 따라 초동방역팀의 조기철수 및 투입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5.1.2. 조기 철수 및 투입연장 시 사전에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5.2 초동방역팀은 철수 시 개인위생과 방역차량 등 장비를 소독하고 그간 수집된 정보는 가축방역관에게 제공한다.
- 5.3 철수 후 목욕, 세차, 재 소독을 실시한 다음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격리조치 후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정상업무를 추진하고 양성일 경우 최소 7일 간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관련시설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단, 발생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소독 등 방역조치와 함께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초동방역팀 명단(성명, 연락처 등)을 보건소에 인계하여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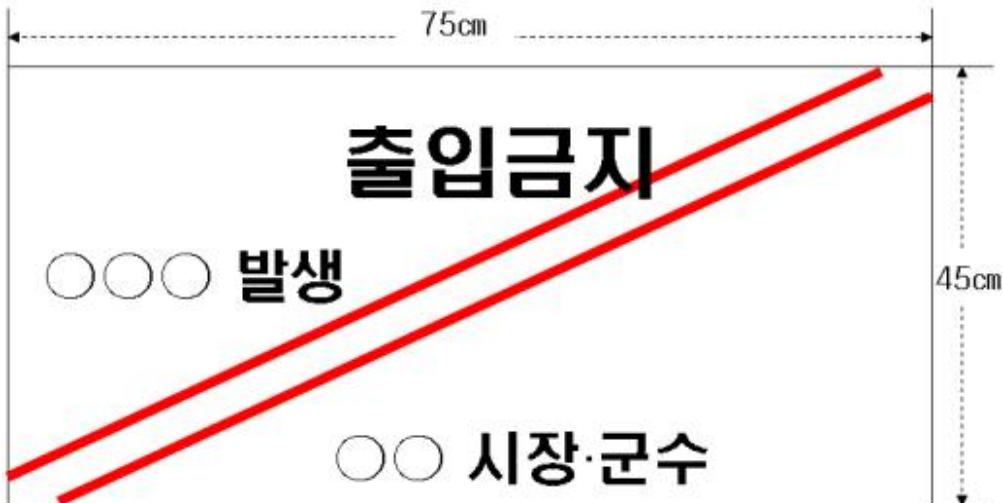
5.4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한다

6.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

6.1 초동방역팀 운영 기자재는 침구류, 취사용품, 소독 및 통제용품 등이며 세부물품은 방역본부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별표 7]

출입금지 표지판



(현생 바탕에 검정글씨, 붉은 사선 2줄)

[별표 8]

긴급방역용 용구

| 용구·서식명 | 수량 | 비고 |
|---|--|------------------------|
| 살처분용 기구(Trigger) 작약 소독약 소독조(40cm×30cm) 생석회 구연산 고압 스프레이어 | 1개 1,000회 용(개) 20리터 2개 100kg 25kg 1조 | |
| 삽,괭이,곡괭이,도끼,톱,망치,해머 마당 빗자루 비누 종이타올 브러시(큰솔, 작은솔) 플라스틱バス켓 비닐백(지퍼형) 야간조명등 회중전등 및 예비배터리 표식용 스프레이 | 각1개 2개 3개 1봉지 각 1개 5개 10개 5개 각4개 2개 | 입구설치용 물비누 1개 포함 |
| 방수모자, 외투 및 바지 작업복 장화 고무장갑 | 6조 8벌 8짝 10조 | |
|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별지 제2호서식 - 현지조사표 출입금지 표지판 | 1부 2부 1개 | |
| 메모장 책받침 웬(물에 번지지 않을 것) 풍향·풍속계 나침반 | 6권 4개 12개 1개 1개 | |
| 구급약품 | 1조 | 응급치료용 |

[별표 9]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

1. 발생농장에 가축·종란을 공급한 농장 또는 부화장 등

- 가. 닭(칠면조, 메추리 등 닭목 포함, 이하 같다)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적용대상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 나. 오리 등 기타 가축(거위, 기러기, 청둥오리 등 오리목 포함, 이하 같다)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 다. 닭·오리 부화장 등

-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 가) 부화장에서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소유주 및 그 가족 등이 동일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에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고
 - 나) 부화장 내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종란, 부화중인 종란(일령별 검사) 및 환경시료(차량 내·외부, 운반용 난좌, 분양 용기, 발육기·발생기, 작업용 장화 등 오염원이 잔존 가능한 시설·기구)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 2)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타 농장으로 분양된 병아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닭 병아리는 입식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닭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오리 병아리는 입식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오리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부화장에 종란을 공급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2.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종란을 부화하는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닭 농장

-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 2) 이동제한 기간 중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지체없이 살처분.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 조치하고,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오리 농장

- 1)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하고,
- 2)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닭·오리 부화장 등

-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생산된 닭·오리의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에 대하여 해당 부화장 폐쇄, 사람·차량 등 출입 통제, 부화·보관중인 종란과 부화병아리 폐기·살처분 및 부화장의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다만, 해당 부화장에 부화·보관 중인 종란은 검역본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해당 부화장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종란을 폐기하지 않고,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외부 반출 및 분양 허용

* 일정 방역요건 : 발생농장의 종란을 부화·보관하고 있는 시설과 분리되어 부화·보관, 부화장(발생농장 관련 보관 중인 종란 포함)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음성, 부화장 내 차량·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등 교차오염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농장별 종란 보관·관리, 부화기 내 농장별 별도 입란 여부, 농장별 작업 도구(이동용

대차, 장갑) 사용 및 소독 실시 여부, 종란 입고 전 포르말린 훈증소독 후 보관시설로 이동·보관 여부 등

- 2)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전까지 해당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소독·임상관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하여야 하며,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닭의 경우 필요시 혈청·분변검사, 오리의 경우 혈청·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 3) 해당 부화장에 대하여 종란 등의 폐기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부화장의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입란 허용

3.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 · 진료수의사 · 인공수정사 · 기축운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발생농장을 방문·출입한 이후 방문·출입한 다른 농장·부화장의 가축(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나. 이동제한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닭은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는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4. 발생농장에서 가축 등을 출하한 도축장 등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류가축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 또는 사람이 방문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출입 또는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닭은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는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하여(동일한 날짜에 도축된 다른 농장의 도축물량 중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 보관·유통중인 물량을 파악하여 소각·매몰하고 소독 조치

- 라. 발생일 기준 과거 7일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살아있는 닭·오리 판매소 등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포함한 판매소 등에 계류된 가금류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하고 보관·유통중인 물량(다른 농장의 가금육도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을 소각·매몰하고 소독 조치
- 마.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 당시의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사용(운행)토록 조치. 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운행토록 조치

5.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알(식용란)의 수집·보관 장소 등

- 가. 발생농장에서 판매된 알(식용란) 중 계란 및 메추리알은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소각·매몰, 이하 동일), 오리알은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 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의 시설·장비·차량 등은 발생농장의 계란(오리알 포함)이 폐기되고 집하장내 모든 장비, 시설, 차량 등의 세척·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다만, 발생농장에서 공급된 알이 아닌 경우 소독수에 소독, 세척, 건조하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시 유통가능

6.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의 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예 종란운반·식용란운반·가축운반 차량, 상하차인원, 백신접종, 진료수의사, 농장종사자 등과 이용된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하고, 접촉 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차량의 경우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후 운행토록 조치

-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

7. 발생농장에서 반출된 분변을 처리한 업체

- 가.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이 있는 경우 분뇨처리업체내 분변 등(생산된 퇴비 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이 있는 모든 것

포함)은 이동제한하고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 처리하여 반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 나. 다만, 21일 이전에 공급받은 분변으로부터 생산된 퇴비가 완제품으로 포장되어 다른 분변과 차단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반출 가능.(21일 이전에 공급받았으나 완제품으로 포장된 경우가 아닌 분변은 이동제한 하되 21일 이내 공급받은 분변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때 같이 이동제한 해제)

- 8.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의 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이 출입한 시설(사료공장·사료하치장·동물병원·왕겨업체·가금 판매소·식용란선별포장업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및 건조 조치하고, 해당 시설 및 차량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운영(운행)토록 조치
 - * 역학관련 농장에서 이동제한 중인 가금(초생추 포함) 및 알(중란, 식용란)에 대하여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도축·출하·반출 허용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출하·반출 금지
 -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농장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부화하는 가금·알
 -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금·알이 사육·부화되는 농장·부화장의 가금·알
 - 가축방역관이 도축·출하·반출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금·알
 - *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거나 방역조치의 기간을 산정할 경우, 기준일(발생일, 방문일 또는 공급일 등)은 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 예시 : 방문일이 2월 10일이고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동제한 기간은 2월 17일까지임

[별표 10]

조류인플루엔자 전화예찰 요령

- 전화예찰 방식
 - 전화, SNS,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예찰
- 전화예찰 대상 및 주기
 - 특별방역대책기간 : 전국 모든 가금농장 월 1회 이상 실시*
 - * 방역 취약축종 또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는 전화예찰 강화
 - 전화 예찰 미응답 시에는 3일 연속으로 전화 예찰을 실시하되 지속적으로 미응답할 경우 관련 내용을 관할 시·군에 통보
 - 해외여행 축산농장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입국일 기준 7일, 14일, 21일째 주기적 전화 예찰 실시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방역지역 내 전화예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리지역·보호지역 내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에게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예찰지역 내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에게 전화예찰 실시(다만,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예찰 업무 조정 가능)
 - 관리·보호지역 안의 가금농장은 발생 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 이내, 예찰지역은 3일 이내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기적인 예찰 실시

전화예찰 내용(예시)

안녕하십니까? ○○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상황실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일일 예찰을 위하여 번거롭더라도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① 오늘 축사에 들어가서 닭(오리) 상태를 관찰하였습니까?
- ② 관찰결과 몇 마리나 죽었습니까? 알을 몇 개나 낳았습니까?
- ③ 평상시보다 죽은 닭(오리)이 많습니까? 알 숫자는 얼마나 적습니까?
⇒ 평상시 죽은 닭의 숫자와 산란수는 얼마인지 확인
- ④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⑤ 닭(오리)이 죽기 전 증상이나 죽은 후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 사료섭취가 줄었다. 벼슬이 파랗다. 머리와 안면에 부종이 있다. 깃털을 세우고 한곳에 모인다.
낳는 알 숫자가 크게 줄었다. 알 껌질이 말랑말랑하다 등
- ⑥ 오늘 축사내부 및 주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까?

전화예찰 결과, 의심축 등 발견 시 조치사항

-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신경 증상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

[별표 11]

살처분 및 사체 처리요령

1. 살처분 절차

1.1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 등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1.1.1 시·군·구는 평시에 가금사육 규모를 감안하여 살처분, 사후처리 등을 위한 예비인력 및 장비를 확보한다. 관내 보건소 등과 협조하여 사전 인체 감염조치(교육, 예방접종, 예방약 복용 등)를 한다. 필요시 군부대 등의 협조를 받는다.

가. 발생 상황별(1개소 발생 시, 1개소 이상 다발 시)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계획 수립

- 지자체 공무원, 지역 농협 및 협회 직원 등을 예비인력으로 지정
- 계열화사업자 위탁농장의 경우 계열화사업자 인력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살처분·매몰 인력은 처리 규모별 단계를 구분하여 계획 수립
 - * (1단계) 10만수 미만 지자체·농협 등 단체
 - ** (2단계) 10만수 이상 지자체·농협 등 단체·군부대(단, 500m 이내 2개 농장 이상이고, 10만 수 이상인 경우 군부대 요청)
- 특전사(여단) 살처분 인력 지원은 시·도에서 시·군·구의 소요를 파악하여 지역 책임부대에 요청·협의(관할 사령부 또는 사단)
- AI 발생 이전에 지역별 살처분·매몰 시나리오 작성
 - * 과거 발생지역 지자체는 지역별 및 축종별 살처분·매몰 시나리오 작성
- 지역별 살처분 및 폐기시 필요한 기구, 장비(FRP 등) 등을 포함하여 작성

나. 특별방역대책기간 전(6~9월)에 시·군 주관으로 살처분 예비 인력 교육·훈련 실시

1.1.2 사체처리팀은 살처분된 사체를 처리하며, 전문가를 포함하여 팀을 구성한다.

1.1.3 사후처리팀은 발생농장의 사료, 벗짚, 분뇨의 처리 등 사후처리업무를 담당한다.

1.1.4 기동방역기구(검역본부)는 살처분이 동물복지규정에 부합하도록 인도적으로 이루어 지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기동방역기구(농식품부·검역본부)는 살처분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장비·차량·기자재 및 참여 인력 등이 소독 등 방역조치 없이 현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분변·먼지 등 비산 방지를 위한 차단벽 운영실태 확인

등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시 보완한다.

1.1.5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

- 가. 사체의 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개인보호구(마스크·보호복·장화·보호안경·장갑 등)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작한다
- 나. 시·군·구는 사체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 별표 20.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 등'에 따라 작업 전·후 반드시 방역수칙 교육(사체처리 관련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 안전사고 예방 등),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교육·조치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하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기관, 치료절차 등 지원 사항에 대하여 안내한다.
- 다. 시·군·구는 사체의 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동의를 받아 개인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시·군 보건부서에서 감염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한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는 보건부서에서의 감염예방 조치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동물방역부서와 보건부서 간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 라. 시·군·구는 사체 처리에 참여하는 외국인 인력은 반드시 개인 인적사항,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포함) 및 주소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록하고, 연락여부를 확인한다.
- 마. 외국인 인력의 사전 교육 전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을 확인한 후, 번역 자료를 이용하여 방역 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1.2 반 구성 및 임무

1.2.1 인적구성

- 가축방역관, 감독관(시·군 관계관) 및 작업인부로 구성하며 인원은 살처분 작업물량에 따라 당일에 살처분이 완료되도록 조정한다.

【살처분 참여 불가능자】

- 만 20세 미만, 만 65세이상
- 임산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미소지자, 신원확인 및 연락처 확인 불가능자(외국인)
- 38℃ 이상 고열 등의 감기증상이 있는 자
-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 신장 질환, 만성간 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증 및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y) 환자로 진단받은 자
- * 질병관리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발췌

1.2.2 가축방역관의 임무

- 살처분 등 준비상황 사전점검
- 살처분 등 절차지시 및 소각 또는 매몰 감독
- 소각·매몰 장소 점검
-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유전자원 확보용 시료 채취
- 살처분 참여인력의 소독 등 방역관련 지도·감독
- 살처분 후 세척·소독 등 사후관리 지도·감독

1.2.3 감독관(시·군 관계관)의 임무

- 살처분 및 소각 또는 매몰 현황파악
- 살처분 등에 필요한 작업인원, 준비물, 소각·매몰 장소, 살처분 방법 등의 제반사항 사전준비
- 구성원에 대한 역할분담
- 살처분 등 집행
- 살처분 후 발생농장 세척·소독 등 사후관리
- 살처분 등 결과보고 및 소각·매몰 장소 사후관리

1.2.4 사체처리반 구성 및 팀별 업무

- 사체 처리는 사체처리팀, 사후처리팀의 순으로 투입하며, 보상금평가가 완료되면 살처분 실시팀과 동시에 투입한다.
 - 사체처리 인력은 작업물량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인원을 투입한다.
- * 소요인력 예시(매몰기준) : 가금 10,000수 기준(40~50명)

| 팀명 | 반원 | 임무 |
|-------|---|--|
| 사체처리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관계관, 축협, 읍면동장 등 • 가축방역관, 포크레인 기사, 사체운반, 작업인력(군인 등), 매몰 시 시·군 환경관련 공무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체 처리장소 선정 • 사체의 처리 |
| 사후처리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관계관, 작업인력(군인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벗짚, 분뇨 등의 사후처리 |

1.3 준비물

- 살처분 기구(CO₂가스, N₂가스, 가스거품발생액, 가스거품발생장치, 전살기 등), 톤백 및 마대 등
- 전신보호복, 마스크, 보안경, 보호덧신, 장갑 등

| 구분 | 규격 기준 |
|--------|--|
| 전신 보호복 | D급(바이러스 불침투) |
| 마스크 | N95/KF94 등 |
| 장갑 | 라텍스 재질, 이중 장갑(속장갑, 겉장갑) * 겉장갑은 작업에 용이한 긴장갑 사용(예.고무장갑) |
| 보안경 | 안전 고글 |
| 보호덧신 | 일회용 덧신, 장화 |

* 구매사양 : (보호복)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혈액 및 체액차단(ISO 16603)/병원균차단(ISO 16604)/건조한 미생물침투 저항성(ISO 22612)이 있을 것, (고글) 김서림 방지 및 극한방지 코팅 처리, 간접통풍구 부착

- 작업자에게 투여할 약물(항바이러스제제, 예방약 등)
- 소독약, 생석회 등(살처분 장소 등 소독용)
- 차단벽, 천막 등(분변·먼지 비산방지)

1.3.1 개인보호구 착·탈의 시 주의사항

- 개인보호구는 적절하게 착·탈의 하였을 때만 감염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입고 벗는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살처분 현장 등 오염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입고, 새로 들어갈 때마다 교체해야 함
- 탈의한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정해진 장소에서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
- 보호복이 열에 약하므로 불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함
- 개인보호구 탈의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함
 - * 알코올 소독제 등 손 소독제를 이용
- 필요시 장화, 방수복 등 추가장비 착용
- 오염된 개인보호구 탈의 시 자신의 신체부위와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1.3.2 마스크 착용 방법

-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되도록 해야 하고 턱수염이 있는 경우 면도 후 착용
- 노즈클립을 구부려 콧등에 밀착되도록 조절
- 마스크를 착용 후 “후”하고 불어 공기가 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새는 경우는 다시 조절 후 밀착되도록 착용
- 마스크에 조류 분변 등 오염물질이 튀거나 젖는 경우는 즉시 교체함

- 1회용 마스크는 4~6시간 후에 교체함

1.4 살처분 방법 결정

- 사살·전살·약물사용·CO₂가스·N₂가스 등의 방법 가운데 현장에서 사용이 용이하고 신속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고통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1.5 살처분 사전조치 및 우선 조치 사항

1.5.1 살처분을 실시하기 전에 주변농가 및 주변지역에 살서제를 뿌리는 등 구서 대책과 까치·까마귀·참새 등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1.5.2 분변, 먼지 등 비산방지를 위한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

1.5.3 농장 출입구, 둘레, 마당, 계사 통로 등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축사 내부(천장, 벽, 바닥, 통로 등) 및 오염우려물품에 소독제를 살포한다.

가. 축사 소독은 천장→벽→바닥 등 순으로 소독하고 축사 외벽도 소독한다.

나. 소독제는 산성제재(acids)를 사용하지 않는다.(알칼리성인 생석회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 저하)

1.5.4 살처분 작업자의 식사·휴식·개인보호구 갈아입기 등이 가능한 ‘안전 구역’ 마련

* 안전구역 설치 기준(예시)

- 살처분 장소에서 충분히 떨어져 환경에 의한 감염이 없는 곳
-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매트, 음용수, 간이화장실 등 설치
- 개인보호구 캠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인체에 안전하면서도 AI 오염물을 확실하게 소독할 수 있는 소독제, 오염물 폐기통 등 구비
- 개인보호구 훠손시 즉각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여분의 개인보호구 마련

1.5.5 살처분하는 때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을 먼저 살처분하여야 한다.

1.6 이산화탄소(CO₂)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

- CO₂는 조류에게 거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신경질적인 행동을 억압하며, 일정량의 CO₂ 흡입시 5분 이내에 안락사 시킬 수 있음
- 단, 안락사 유도시에는 밀폐면적과 CO₂ 노출시간과는 관계가 없으며,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고 농도 CO₂ 주입이 필요함
 - 오리의 경우 밀폐공간에서 60% 이상의 CO₂를 신속하게 주입할 경우 5분 이내에 죽음
 - 닭의 경우 5%, 오리의 경우 산소 2% 이하일 경우 수 분 내에 죽음
- CO₂가스의 주요 특성
 -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워 지면으로 깔림(비중비) 공기 : CO₂ = 1 : 1.5)
 - 사람에게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일산화탄소(CO) 보다는 안전함
 - CO₂ 가스는 만들기 쉽고 가격이 저렴함

1.6.1 오리의 안락사 방법

가. 오리 및 오리사의 특성

- 오리는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으며, 날지 못하므로 0.5~1 m 이상의 높이로 차단벽을 설치할 경우 넘어가지 못한다. 또한 오리는 야간에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다.
- 대부분의 오리사육시설은 비닐하우스(원치커튼 형식의 환기) 형태이다.

나. 준비물(오리 1,000수 기준)

- CO₂ 가스 3통(7 m³)
- 폭 10 m의 를 비닐(시판 비닐은 폭 5 m 2중으로 되어 있음)
 - * 필요한 비닐(1,000수)은 약 폭 10 m 길이 20 m 임
- 마스크가 부착된 산소(O₂) 가스통 1~2통(CO₂ 가스중독에 대비한 응급 조치용으로 소방서, 보건소 등에 협조요청), 산소 모니터(산소량 측정기)

다. 안락사 시키는 방법(주간 및 야간작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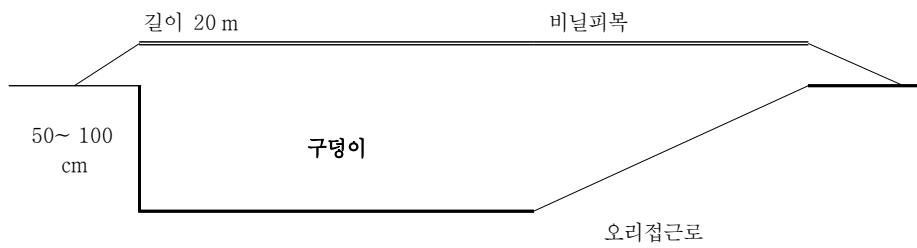
□ 비닐하우스 내 평사에서의 안락사

- ① 길이 2 m × 높이 50 cm의 판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준비된 비닐 폭 넓이에 맞추어 □ 자 형태로 만든다.
- ② 오리를 높이 50~1 m정도의 물이 판을 이용하여 준비된 장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나머지 부분을 막는다.(□)
- ③ 한곳에 모인 오리는 특성상(군집성) 조용히 있게 된다.
- ④ 오리가 놀라지 않게 하면서 준비된 비닐을 덮은 다음 주변의 흙 등을 이용하여 비닐을 덮어 밀폐시킨다.

- ⑤ CO₂ 가스통과 연결된 주입 호스를 3곳에서 비닐하우스 내로 넣는다.
이때 가스통은 주입밸브가 지면과 가까이 되도록 옆으로 누인다(세우면 가스가 잘 주입되지 않음).
- ⑥ CO₂ 가스를 천천히 주입한다(가스 한 통 주입시간 약 20~30분). 급격히 주입하면 오리가 놀라서 요동을 치기 때문임
- ⑦ 오리는 CO₂ 가스 주입 후 약 10분 정도 경과하면 모두 죽게 되는데 가스통을 비울 목적으로 30분 이상 기다린다.
- ⑧ 오리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호흡, 눈동자 움직임, 근육운동 등이 없음) 비닐 덮개를 제거하고 매몰시킨다.
* CO₂ 가스 흡입 후 죽게 되는 과정 : 오리는 바닥에 드러누우며, 항문이 열리고 배설물이 나오며, 머리와 목은 등 쪽으로 꺾임

□ 구덩이를 이용한 안락사

- ① 구덩이 준비 : 길이 20 m, 폭 5~7m, 깊이 50~100 cm의 구덩이를 오리사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포크레인 등으로 준비한다.
○ 구덩이 입구는 오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한다.



- ② 오리를 높이 0.5~1 m 정도의 물이 판을 이용하여 준비된 장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비닐하우스내 평사에서 안락사 시키는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1.6.2 닭의 안락사 방법

가. 닭 및 계사의 특성

- 닭은 매우 잘 놀라고 날개 짓을 통하여 1 m 이상 비상이 가능하며, 빛이 없을 경우 조용해지지만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생산물 목적에 따라 무창계사, 완전계사, 간이계사 등으로 다양하며 사육형태 또한 케이지 사육(주로 산란계)과 평사(주로 육계)로 구분된다.

나. 계사별 살처분 방법

| 구 분 | 무창계사 | 완전계사 | 간이계사 |
|--------------------------|---|---|---|
| 사육형태 | 케이지 사육, 평사 | 케이지 사육, 평사 | 케이지 사육, 평사 |
| 지붕 단열재 | 갈바륨 + 우레탄 100 mm + 골드폼 50 mm | 보온덮개 + 비닐 + 타이론 5mm + 비닐 + 천막 | 보온덮개 + 비닐+천막 |
| 환기시설 | 터널 + 크로스혼합식 강제환기 | 윈치커튼, 자연환기 | 윈치커튼, 자연환기 |
| 급온기 | 가스 육추기 | 열풍기 + 가스 육추기 | 열풍기 |
| 단순질식 | ○ 환기팬의 전기를 차단 - 산소공급 중단 | ○ 열풍기의 산소 공급 파이프 (에어통로)를 계사 내로 방향전환 - 열풍기의 사용으로 인한 산소 고갈 | ○ 열풍기의 산소 공급 파이프 (에어통로)를 계사 내로 방향전환 - 열풍기의 사용으로 인한 산소 고갈 |
| CO ₂ 가스 혼용 | 환기팬의 전기 차단하여 산소공급중단 및 CO ₂ 농도 증가 | 열풍기의 사용으로 인한 산소고갈 및 CO ₂ 농도 증가 | 열풍기의 사용으로 인한 산소고갈 및 CO ₂ 농도 증가 |
| 예상소요 시간 | 단순질식 : 1~2시간 CO ₂ 가스 혼용 : 30분 이내 | 단순질식 : 1시간 이내 CO ₂ 가스 혼용 : 30분 이내 | 단순질식 : 1시간 CO ₂ 가스 혼용 : 30분 이내 |

* 빛이 없는 야간(저녁 7시 경 움직임이 없는 시간대)에 작업 시 효과적임

다. 밀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스 살처분

- 산란계용 계사 등의 밀폐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전용 밀폐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가스를 이용 살처분

라.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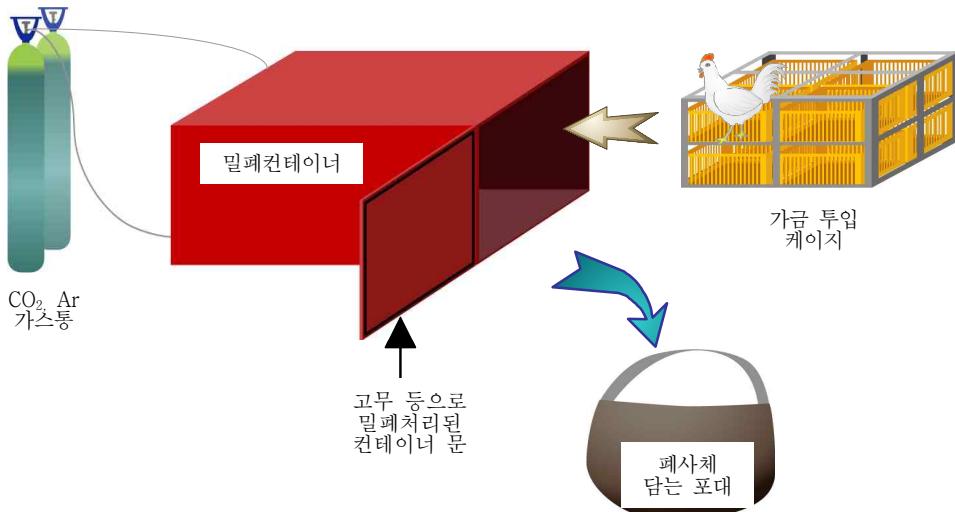
- CO₂ 가스 및 혼합가스 사용시 아르곤(Ar), 가스통, 밀폐형 컨테이너 또는 텐트(가스통과 연결), 가금 투입 케이지, 폐사체 담는 포대

마. 밀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가스 살처분 방법

- 케이지에 살처분 가금을 넣는다.
- 가축을 담은 각 케이지를 밀폐형 컨테이너 또는 텐트에 투입한다.
- 가스주입 밸브를 열어 가스를 주입하고 산소 5% 미만으로 유지 시킨다.
- 일정시간 후 가금의 움직임 없어지면 컨테이너 문을 연다. 이때 방독면을

착용하여 CO₂ 가스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 폐사된 가금이 완전하게 폐사되었는지 재확인한다.(호흡·근육·동공의 움직임)
- 사체를 포대에 담아 소각 또는 매몰 처리 장소로 운반한다.



1.6.3 살처분 완료 후 조치사항

- 운반된 사체는 포대에 담아 소각 또는 매몰한다.
- 살처분 작업에 사용한 기구류 및 장비 등과 발생농장에 대하여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 살처분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축사에 대해 4단계에 걸쳐 소독(청소, 세척·소독,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 축사내 분변은 『18. 닭·오리농장 등 분뇨처리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 조치한다.

1.6.4 살처분 시 주의사항

- CO₂ 가스는 사람에게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복한 비닐을 제거하고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시킨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두통, 피로, 가쁜 호흡(호흡수 증가), 헛구역질, 딸꾹질 등의 “사람에서 CO₂ 가스 중독시 초기 주요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준비된 산소 마스크를 이용, 신선한 공기를 흡입시켜 주어야 한다.

1.7 질소(N_2) 가스거품을 이용한 가금류 살처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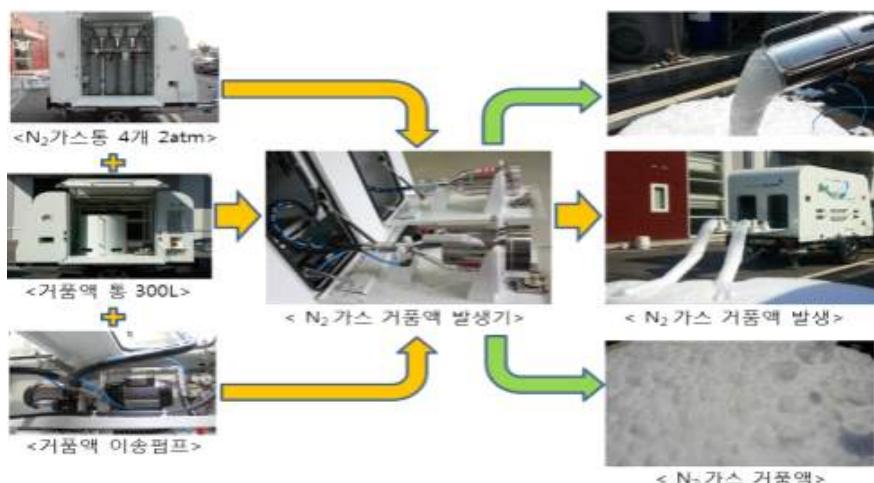
■ N_2 가스는 조류내 반응수용체가 없어 가스 흡입시 고통 없이 흡입이 가능하며, N_2 가스에 의한 마취가 이뤄진 후 무의식중에 안락사를 시키는 것으로 조류의 인도적 안락사 처리가 가능하므로 동물복지 측면에서 최적의 방법임

1.7.1 준비물(오리 1,000수, 비닐하우스 내 평사에서의 안락사 처리시 면적 기준)

- N_2 가스 15통($7 m^3$)
 - * 오리 1,000수를 모을 공간은 약 가로 10m × 세로 20m × 높이 1m ($200m^3$)로 이 중 가스를 채워야 하는 공간은 높이 0.5m 기준으로 $100m^3$ 이며, 1개 용량이 $7m^3$ 인 가스통 15개가 필요하다.
- 가스거품발생액 40리터
- 가스거품발생장치 1개
- 물통(500리터) 1개
- 1m(2중)의 롤비닐(가로 10m × 세로 20m × 높이 1m)

1.7.2 준비물(닭 1,000수, 톤백 및 구덩이 $50m^3$ 면적 기준, 연속투입조건)

- N_2 가스 4통($7 m^3$)
- 가스거품 발생액 10리터
- 가스거품 발생장치 1개
- 물통(500리터) 1개
- 톤백(안락사용) 및 마대(운반용)



[질소 가스거품 발생 장치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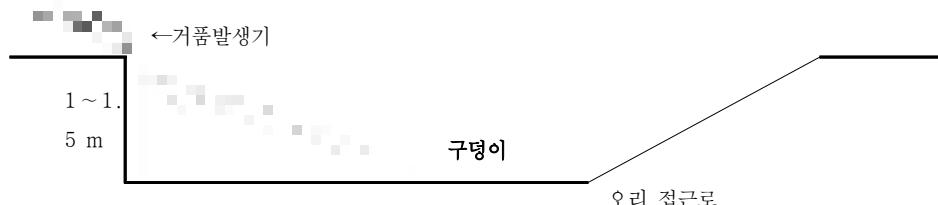
1.7.3 오리의 안락사 방법(주간 및 야간작업 가능)

□ 비닐하우스 내 평사에서의 안락사

- ① 길이 2m × 높이 1m의 판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내에 준비된 비닐 폭 넓이에 맞추어 □ 자 형태로 만든다.
 - ② 오리를 높이 50~1 m정도의 물이 판을 이용하여 준비된 장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나머지 부분을 막는다.(□)
 - ③ 윗부분은 개방 형태를 유지한다.
 - ④ 한곳에 모인 오리는 특성상(군집성) 조용히 있게 된다.
 - ⑤ N₂ 가스통과 연결된 거품발생장비를 활용하여, N₂ 가스거품을 발생시킨다.
 - ⑥ 오리가 모인 찬의 뒷부분부터 N₂ 가스거품을 천천히 분사한다(오리의 머리가 잠길 때 까지 분사).
 - ⑦ 오리는 N₂ 가스거품에 노출 시 크게 동요되지 않으며, 거품으로 인해 오리의 시야가 가려져 개체 간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30초 내 마취상태가 된다.
 - ⑧ 오리는 마취상태에서 약 5분 정도 경과하면 모두 죽게 된다.
 - ⑨ 오리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날개 짓이 멈추는 때를 안락사 완료 시점으로 본다) 사체를 포대에 담아 소각 또는 매몰 처리 장소로 운반한다.
- * N₂ 가스 흡입 후 죽게 되는 과정 : 오리는 초기에 고통 없이 질소가스를 통한 호흡을 하다 산소부족으로 서서히 마취가 되며, 마취 이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산소증으로 죽게된다.

□ 구덩이를 이용한 안락사

- ① 구덩이 준비 : 길이 20 m, 폭 5~7m, 깊이 1~1.5m의 구덩이를 오리사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포크레인 등으로 준비한다.
 - 구덩이 입구는 오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경사지게 한다.



- ② 오리를 높이 0.5~1 m 정도의 물이 판을 이용하여 준비된 장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구덩이에 넣는다.
- ③ N₂ 가스통과 연결된 거품발생장비를 활용하여, N₂ 가스거품을 발생시킨다.
- ④ N₂ 가스거품을 분사한다(맨 위의 오리의 머리가 잠길 때 까지 분사).
- ⑤ 오리는 N₂ 가스 주입 후 약 5분 정도 경과하면 모두 죽게 된다.
- ⑥ 오리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날개 짓이 멈추는 때를 안락사 완료 시점으로 본다) 매몰 처리 장소로 운반하거나 구덩이에서 매몰 처리한다.
- * 오리들이 구덩이 안에서 충충히 쌓여 압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톤백을 이용한 안락사처럼 구덩이에 N₂ 가스거품을 먼저 채운 후 오리들을 구덩이 안에 넣는 방법도 가능하다.

1.7.4. 닭의 안락사 방법(주간 및 야간작업 가능)

■ N₂ 가스는 조류 내 반응수용체가 없어 가스 흡입 시 고통 없이 흡입이 가능하며, N₂ 가스에 의한 마취가 이뤄진 후 무의식중에 안락사를 시키는 것으로 조류의 인도적 안락사 처리가 가능하므로 동물복지 측면에서 최적의 방법임

□ 톤백을 이용한 안락사(산란계, 육계 모두 가능)

- ① 1톤 용량의 톤백을 계사 입구 및 근처에 고정한다.
- ② N₂ 가스통과 연결된 거품발생장비를 활용하여, N₂ 가스거품을 발생시킨다.
- ③ 톤백에 N₂ 가스거품을 분사하여 채운다.
- ④ 톤백 용량의 50% 수준까지(거품에 닭이 잠길 수준) 닭을 잡아 톤백에 넣는다.
- * 닭들이 톤백 안에서 충충히 쌓여 압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들을 톤백에 넣는 것과 동시에 N₂ 가스거품을 분사하여 안락사 처리방법도 가능하다
- ⑤ 닭은 N₂ 가스거품 투입 후 약 5분 정도 경과하면 모두 죽게 된다.
- ⑥ 닭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날개 짓이 멈추는 때를 안락사 완료 시점으로 본다) 사체를 포대에 담아 소각 또는 매몰 처리 장소로 운반한다.

□ 구덩이를 이용한 안락사

- ① 구덩이 준비 : 길이 20 m, 폭 5~7m, 깊이 1~1.5m의 구덩이를 계사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포크레인 등으로 준비한다.

- 구덩이 주변은 닭이 날아올라 넘어오지 못하도록 길이 2m × 높이 1m의 판으로 막는다.



- ② 계사에서 마대에 담은 닭을 구덩이에 넣는다.
 - ③ N₂ 가스통과 연결된 거품발생장비를 활용하여, N₂ 가스거품을 발생시킨다.
 - ④ N₂ 가스거품을 분사한다(맨 위의 닭의 머리가 잡길 때 까지 분사).
 - ⑤ 닦은 N₂ 가스 주입 후 약 5분 정도 경과하면 모두 죽게 된다.
 - ⑥ 닦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날개 짓이 멈추는 때를 안락사 완료 시점으로 본다) 매몰 처리 장소로 운반하거나 구덩이에서 매몰 처리한다.
- * 닦들이 구덩이 안에서 층층히 쌓여 압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톤백을 이용한 안락사처럼 구덩이에 N₂ 가스거품을 먼저 채운 후 닦들을 구덩이 안에 넣는 방법도 가능하다.



[질소 가스거품을 이용한 살처분 예시]

2. 매몰 절차

2.1 매몰 시 준비물

- 포크레인, 트랙터, 수송차량, 사체운반기구, 삽, 빗자루, 고압세척기나 물호스, 소독차량, 소독약, 물통 기타 소독관련 기구,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보호구

- 매몰작업 소요자재[차수재(0.2mm이상 비닐, 비닐커버, 부직포, HDPE 등), 가스 배출관, 침출수 배출 유공관, 톱밥]등
- 경고 표지판, 출입금지용 테이프

※ 매몰처리시 준비물(예시)

| 품 명 | 수 량 | 비 고 |
|------------|-------|----------------------------|
| 포크레인 | 2대 | ○ 대형(6W), 소형(02) 각 1대 |
| 사체운반기 | 1대 | ○ 스키드로더 |
| 수송차량 | 2대 | ○ 덤프트럭 5톤, 15톤 |
| 계근전자저울 | 1대 | |
| 덮개용 비닐 | 3박스 | ○ 15m × 50m, 0.9mm(비닐하우스용) |
| 생석회 | 2톤 | |
| 톱밥 | 400kg | |
| 침출수 배출 유공관 | 1개 | |
| 가스배출관 | 3개 | |
| U자관 | 3개 | |
| 주변관측정 | 1개 | |
| 배수로셀 | 1셀 | |
| 경고표지판 | 1개 | |
| 출입금지띠 | 3롤 | |

<기타>

- 땔나무, 보조연료, 철골 등(소각 시)
- 소독수(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참조), 생석회, 물통 기타 소독관련 기구

2.2 매몰절차

2.2.1 매몰대상

- 살처분한 모든 사체, 사료 및 기타 오염물건
- * 살처분 가축이 소규모인 경우 소각처리하고, 소각 및 매몰 처리 시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간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2.2.2 매몰장소의 선정

가. 매몰지 규모의 산정

- 매몰 축종, 매몰수량, 복토량 등을 감안하여 매몰지 크기를 결정하되, 매몰장소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깊이, 폭, 길이 등 매몰지 크기를 사전 결정한다.
 - 매몰지 깊이는 5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지하수위·관정·하천·주거지 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 및 크기로 설정한다.
 - 매몰수량이 많은 경우에 1개소 당 규모가 500m³(5m×5m×2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매몰지를 조성하며, 한 지점에서 매몰구덩이를 여러개 설치할 때 매몰 구덩이간의 거리는 사람과 장비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6m 이상 간격을 둔다.
- * 매몰지 50m³ 크기의 매몰 두수 : 닭 5,000마리

나. 매몰장소의 선택

- 시·군·구는 농장 내에서 매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장 내에서 매몰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사전에 매몰 후보지를 선정하고 KAHIS에 등록·관리한다.
- 시·군·구는 매몰 후보지 선정 시 매몰 장소로 부적합한 장소가 선정되지 않도록, 환경부서의 의견 조회와 매몰지 특별관리단의 심의 절차를 실시한 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한다.
- 발생농장이 하천 등에 위치하는 경우 액비 저장조, FRP 저장조, 랜더링, 이동식열처리, 이동식 소각시설 등을 활용한다.

[매몰 장소로 적합한 장소]

- Ⓐ 하천·수원지, 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
- Ⓑ 매몰지 굴착과정에서 지하수가 나타나지 않는 곳
(지하수위로부터 1m 이상 이격)
- Ⓒ 음용 지하수 관정과 75m 이상 떨어진 곳
- Ⓓ 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
- Ⓔ 유실,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坦한 곳

④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⑤ 농장부지 등 매몰 대상가축이 발생한 곳으로서 매몰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곳

⑥ 국가 또는 지방단체 소유 공유지로서 매몰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곳

[매몰 장소로 부적합 장소]

⑦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⑧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⑩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염지하수관리구역 및 샘물 집수구역

⑪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

⑫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2.3 매몰방법

2.3.1 구덩이 파기

- 매몰 구덩이는 매몰수량을 고려하여 사체를 넣은 후 당해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m 이상 되도록 파야하며, 바닥면은 침출수 흡입 및 저류가 가능하도록 2% 이상의 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2.3.2 매몰지 바닥 및 측면 비닐 설치

- 매몰 구덩이의 바닥 및 측면에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깔고, 그 위에 부직포·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어서 비닐 훼손을 방지한다. 다만, 비닐이 아닌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고강도 방수재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부직포, 비닐커버 등을 추가로 덮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비닐은 환경 친화성 제품을 권장하며, 매몰지의 부피보다 큰 규격으로 사용 한다.(두께 0.2mm 이상으로 2중 비닐, 고강도 방수재질)
- 바닥의 비닐부터 1m 높이의 흙을 투입하되 흙의 중간 부위에(약 50~60cm 구간)에 생석회(5cm)를 투입하되, 비닐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2.3.3 매몰지 내부 침출수저류조 및 유공관 설치

- 매몰지내 바닥에는 침출수 내부저류조와 침출수 배출관(유공관 : 상부에는 개폐 장치)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출수 배출관 하부(매몰지 바닥)에 침출수를 집수할 수 있는 침출수 집수시설($1m^3$)을 설치하여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소규모 매몰(실처분 가축 10톤 내외)일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침출수 배출용 내부저류조는 PVC 재질의 통($1m^3$ 크기 내외) 등을 설치하며, 내부저류조는 매몰지 벽면과 1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
- 내부저류조는 매몰지 바닥과 평행하게 하단부 유공관(PVC 재질 구경 200mm 이상)을 설치하고, 내부저류조에서 지상으로 상부 유공관(PVC 재질 구경 200mm 이상)에 설치한다. 설치는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유공관 상부에 빗물유입방지를 위한 마개 설치한다.
- 하부 유공관 주위에는 보온덮개 및 자갈 등을 둘러쌓아 유공관의 막힘 방지한다.

2.3.4 사체의 투입

- 매몰지 설치가 완료된 후 2m 높이로 사체를 투입하며, 필요 시 발생농장의 오염물건(사료 등)을 함께 매몰한다.
- 사체 투입 완료 후 사체위에 소독약을 살포하고, 사체위에 지표면까지 1.5m 이상 복토를 한다.(가스배출관 설치 고려)
- 지표면에서 1m 이상 성토하고, 마지막에 생석회 등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2.3.5 가스배출관의 설치

- 가스배출관 바닥은 사체와 접촉하도록 하고, 배출관의 자재는 직경 100mm 이상의 유공연관 또는 유공직관을 사용한다.
- 가스배출관은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홈통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밑면에는 자갈 등을 깔아 막힘을 방지하고 배출구는 지면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돌출시키되,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별도 장치("U"자 형, 정화조 송풍기 등)를 설치한다.
- "U"자로 설치한 가스배출관 끝은 파리 등 곤충 출입 및 번식으로 인한 질병전파 방지를 위해 곤충방지망을 설치한다.

- 설치개수는 매립 당시 $20m^2$ 기준으로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며, 가스 및 용출수 과다, 매몰사체 융기 등이 발생할 경우 숫자를 늘리도록 하며, 매몰지의 안정화에 따라 가스발생이 적거나 미미할 경우 감소 또는 제거한다. 다만 소규모 매몰(살처분 가축 10톤 내외)일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2.3.6 배수로 및 외부 저류조(간이탱크)의 설치

- 침출수 유출로 인한 오염방지 및 우천 시 빗물에 의해 매몰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매몰지 주변여건에 맞게 배수로 및 외부저류조(용량은 $0.5m^3$ 이상)를 설치한다. 다만, 침출수를 수시로 뽑아내어 처리하는 경우는 외부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배수로는 외부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 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 외부 저류조는 경사 아래쪽을 선택하여 만들고, 수시로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한다.

2.3.7 경고요지판 및 울타리 설치

- 시·군·구는 매몰 후 경고요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에는 매몰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매몰작업 책임자 및 매몰지 책임관리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매몰장소에 대한 정보를 KAHIS에 등록한다.
- 시·군·구는 매몰지에 대한 외부인이나 동물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2.3.8 관측정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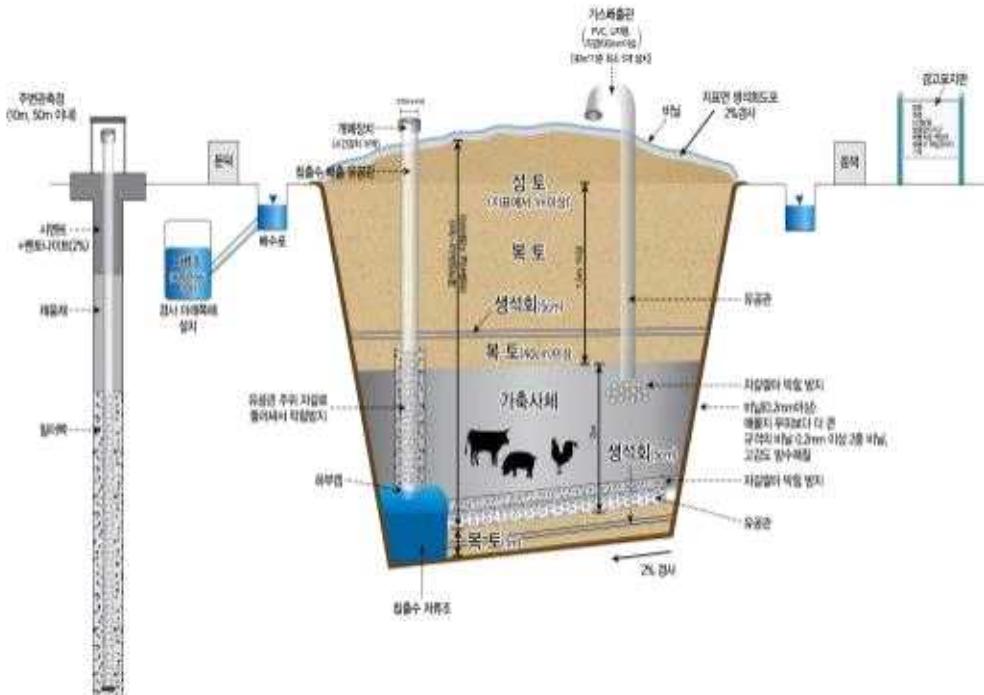
- 지자체장은 매몰지 조성완료 후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매몰지 외부로 침출수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측정을 설치한다.
- 관측정은 지자체장이 가축사체를 매몰한 지점 등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다. 다만, 침출수 유출 우려가 없는 밀폐형 저장조(FRP 저장조·액비저장조 등)를 사용한 매몰인 경우와 소규모 매몰(살처분 가축 10톤 내외)일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관측정은 매몰지 내부는 유공관을 활용하고, 매몰지 경계외부에서 5m이내의 떨어진 지점에 지하수 흐름의 하류방향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정을 설치한다. (직경 75mm,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PVC 재질 등)

※ 관측정 설치지점의 선정 방법

- 매몰지 인근에 기존 사용관정이나 기 설치된 관측정이 있을 경우 기계적 측정방법으로 공내 유향·유속을 측정하여 지하수의 흐름을 파악
 - 주변 관측정이 없을 경우 지하수 흐름방향 예측
 - 매몰지 인근 지형형태에 따라 일반적인 지하수 흐름을 예상하여 지하수 흐름의 상류와 하류를 결정
 - 일반적인 지하수 흐름 : 고지대→저지대, 산→평지, 평지→하천
 - 매몰지의 지형 경사를 참조하여 지형이 높은 곳을 상류, 지형이 낮은 곳을 하류로 선정
 - 필요 시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선정
 - 자문기관 : 한국지하수수질보전협회,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하수 전문가

2.3.9 매몰지 현황카드 작성

- 지자체는 매몰작업의 단계별로 차수막, 침출수 배출 유공관, 가스배출관, 관측정, 매몰작업 완료 등의 작업 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매몰지 현황카드를 작성한다.



[매몰지 설치 모식도]

* 매몰지 상부의 비닐은 비가 오는 경우에만 덮고 비가 갠 후에는 벗긴다.

2.3.10 매몰지 관리요령

- 가축의 사체 매몰지 관할 시·군·구는 당해 매몰지 주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관리자(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KAHIS에 등록·관리한다.
-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주 2~3회, 이후 6개월간은 월 1회, 이후 3년까지는 분기별로 점검 및 기록·관리한다.
- 매몰지 책임관리자는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침출수의 상부 유출기간) 매몰지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사체의 융기여부를 관찰한다. 이상을 발견한 경우 당해 매몰지 책임관리자 등은 매몰지 성토보완 또는 구덩이를 확대하여 융기된 사체는 다시 매몰하고 지면에 톱밥을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매몰지 관리용 톱밥은 매몰지 개소당 $10m^3$ 이상을 확보하며, 천막이나 비닐로 톱밥을 충분히 포장하고 가장자리는 돌과 같은 무거운 물체로 눌러 고정한다.
 - 다만 침출수를 별도처리(하수종말처리장 등)하여 톱밥이 필요치 않은 경우나 소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톱밥 비축량을 축소할 수 있다.
- 매몰지가 안정되기 이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과 배수로에 비닐을 설치
-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오는 경우나 집중호우(6~9월)에 의하여 매립지가 유실되거나 붕괴우려가 있을시 매몰지 표면과 배수로에 비닐 등으로 덮어 관리하고, 비가 그칠 경우 비닐을 벗겨낸다.
- 매몰지 상단으로 침출수가 용출되는 경우에는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수거하여 복토층에 재매몰 또는 침출수 처리요령에 따라 소각·하수처리장 등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 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침출수 배출관 및 가스배출관 주위에 탈취제와 톱밥을 뿌려주며, 매몰지 상단으로 침출수가 용출되는 경우에는 톱밥을 뿌려 흡수한 다음 수거하여 처리하고 소독약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2.3.11 침출수 처리요령

- 저류조내 저류된 침출수 및 유공관을 통해 흡입한 침출수 등은 수시로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수거하여 소각 또는 폐수 처리한다.
- 침출수 수거 후 폐수 처리시 산·알칼리 소독제 사용량과 침출수 수거량을 KAHIS 매몰지자체점검 항목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침출수는 유공관을 통해 수시로 뽑아내어 pH 5.0 이하 또는 pH 10.0 이상으로 처리하고, pH-paper를 이용하여 pH 조건표에 따라 측정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으로 이송 후 처리한다.
- 침출수 수거 후 pH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침출수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한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등으로 이송 후 처리한다.
- 고농도의 침출수 처리시 축산분뇨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관리형매립지 침출수처리장 등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총 질소 및 총 인 오염부하량 10% 이내 범위에서의 처리기준을 준수하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
- 유분 등이 많은 침출수는 텁밥과 섞어 소각시설(폐기물 소각시설 등)에서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침출수의 처리와 동일하게 pH 처리한다.
- 수거된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 및 처리시설이 없거나, 침출수양이 많아 침출수 유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매몰지에 외부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외부 저장탱크에 저장된 침출수는 소독하고 수분제거 (톱밥 등) 후 매몰 처리한다.

2.3.12 매몰지 악취 방지요령

- 악취제거를 위해 사체 매몰시 발효제 및 탈취제 또는 호기성·호열성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악취가 심할 경우 추가적으로 살포한다.
* 최초 15일간은 수시로 살포하고, 이후 6개월 간은 악취가 나타날 경우 살포
- 매몰지 함몰로 인한 균열 부위에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복토를 실시하고 탈취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를 제거한다.
- 가스배출관 및 침출수 배출 유공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고, 이상발견 시 보완 조치를 한다.

- 매몰시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 시 호알카리성 바실러스균, 또는 활성탄 등 냄새제거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2.3.13 매몰지 침출수 확산방지조치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결과 관측정까지 이미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또는 확인되거나 환경부 등 다른기관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통보한 매몰지에 대하여, 시·군·구는 침출수 수거를 강화하여야 한다. 침출수 수거 실적이 없거나 적을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한 후 침출수 유출 우려가 없도록 보완조치하거나 ‘매몰지 이설’ 또는 ‘소각 처리’ 등 매몰지를 변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시·군·구는 매몰지 경계외부(5m 이내)의 조사관정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침출수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침출수 유출 방지, 침출수 정화 등 오염방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매몰지와 40~50m 떨어진 위치에 조사관정을 추가 설치(깊이 10m 내외)하여 침출수 확산 여부를 검사한다.
- 기타 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 세부사항 등을 농식품부의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 기본지침”을 따른다.

2.3.14 발생농장 이외의 장소로 옮겨 매몰하는 경우 방역조치

- 살처분·매몰은 살처분 농장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소가 없어 옮겨 실시할 경우 아래의 조치를 취할 것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감독 하에 적재·운송·매몰을 실시한다.
 - 닭·오리는 축사 내에서 CO₂로 안전하게 질식사시킨다.
 - CO₂ 작업시에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른다.
 - 폐사된 닭·오리를 마대에 담는다.
- 매몰지로 운송하는 경우 가축을 살처분 완료 후 운송한다.
- 닭·오리 운반차량 차량(스티커 부착)만 사용한다.
- 닭·오리 운반차량에 가축방역관이 탑승해 운행하고, 닭·오리 운반차량 뒤에는 소독차량이 소독을 실시하며 운행한다.
-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 타액 등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되고,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운송차량 안에는 운송 중 오물 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적재함 바닥에는 혈액 등이 운송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은 후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한다.
- 사체 적재 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는다.
 - 차량은 사체를 넣은 마대가 보이지 않도록 화물칸을 높게 한다.
- 차량적재함 덮개를 덮고, 적재 완료되면 차량 내·외부를 소독한다.
- 운송 시 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고, 운송차량은 출발하여 매몰지로 이동하는 과정 중 타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지 말고, 이동시에는 가축 사육 지역 등 주변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방역관이 지정하는 경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 운송차량이 매몰지에 도착하면 차량 내·외부 및 운전기사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매몰지에서는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차한다.
- 하차 완료 후 운송차량은 매몰지에서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 작업완료 후에는 소독차량을 이용, 흠뻑 젖도록 차량소독 실시 후 다른 장소로 운행하도록 한다.
 - 살처분 농장에 차량이 출입하기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3.15 매몰지를 이전하는 경우 조치방법

- 시·군·구는 매몰지의 봉괴우려, 심각한 환경영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매몰지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
- 매몰지의 이전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실시하고,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 시·군은 기존 매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AI 정밀검사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이전 한다.
 - 매몰지 유공관을 통해 채취한 침출수(1점, 15ml 코니컬 튜브에 10ml)와 매몰지 상층에서 복토된 2m 하부 지점의 사체 주변 토양의 흙(3점, 50ml 코니컬 튜브에 1/3)을 채취하여 코니컬 튜브에 담아 외부를 소독(채취된 시료를 직접 소독하지 말 것)하고, 검역본부 또는 AI 정밀진단기관에 의뢰한다.

- 침출수 유출 우려가 있어 매몰지를 이설하는 경우 매몰지 경계 외부에 설치된 관측정까지의 주변 토양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 결과 유해미생물이 확인되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매몰지 이전 후 매몰지 경계 외부에 설치된 관측정까지의 주변 토양에 대해서도 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을 실시한다.
- 검역본부 또는 AI 정밀진단기관은 매몰지 이전을 위한 시료가 도착하면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한다.
- 매몰지 이전 작업 시 방역조치는 아래에 따라 실시한다
 - 작업 전에 소독과 분진 방지를 위해 매몰지 및 주변에 충분한 소독을 실시한다.
 - 매몰지 유공관을 통해 침출수를 흡입하고, 매몰지를 개장한 후 액상부분을 별도 수거하여 침출수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pH처리하거나, 침출수에 대한 AI 바이러스를 검사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면 하수종말처리장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등으로 이송 후 처리한다.
 - 사체 등을 운송하는 차량은 적재함 바닥이 침출수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된 차량을 이용하고 침출수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적재함 바닥을 넓게 덮고 소독약을 살포한 후 가축사체 및 오염가능성이 있는 흙 등 전체를 차량에 적재한다.
 - 사체 등을 차량에 적재한 후 차량 상부를 소독약으로 충분히 살포하고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고, 차량덮개로 덮는다.
 - 적재를 완료한 후 기존 매몰지는 소독약 등으로 충분히 소독 후, 매몰지를 복토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독을 실시한다.
 - 기존 매몰지의 이전과 복토가 완료되면 기존 매몰지의 상층 흙(3점 이상)을 채취하여 코니컬 튜브(50ml)에 담아 검역본부 또는 AI 정밀진단기관으로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의뢰하며, 기존 매몰지는 정밀검사 결과 판정 시 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 새로운 매몰지로 사체 등을 운송 시 아래의 요령에 따라 운송한다.
 - 시·군·구는 이전할 새로운 매몰지의 구덩이파기 등 매몰지에 사체를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면 사체를 이송한다.

- 운송 시 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고, 운송차량은 출발하여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 타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지 말고, 이동시에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한다.
- 운송차량은 운송 중 침출수 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 휴대용 소독장비를 비치, 차량 이동시 이동경로에 대하여 소독 실시한다.
- 운송차량이 새로운 매몰지에 도착하면 차량 내·외부 및 운전기사에 대해 소독하고, 매몰지에서는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차한다.
- 시·군·구는 이전된 매몰지를 KAHIS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3.16 미생물 등을 이용한 매몰지 조성

- 시·군·구는 조성된 매몰지에 사체의 분해를 촉진하는 미생물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시·군·구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이용한 가축매몰지를 조성할 수 있다.

* 미생물을 이용한 매몰지 중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이용한 매몰지에 대한 기준은 [참고]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사체 매몰방법 참조

2.4 소각 및 이동식 소각시설

2.4.1 소각방법 및 장소의 선택

-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는 농장 내에서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일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공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 * 이동식 소각시설함은 사체에 직접 열을 가하여 연소하는 방식의 소각시설을 차량 등에 탑재하여 이동식으로 만든 시설을 말하며, 처리용량별로 다양한 제품이 있다.

2.4.2 장비 및 준비물

- 이동식 소각시설, 포크레인 또는 집게차(사체 상차용), 사체운반차량(바닥의 오물이 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차량), 소독차량, 비닐(적재함을 깔고 덮을 수 있는 량),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

2.4.3 이동식 소각시설의 처리요령

- 사체의 소각 시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후 소각 처리한다.
- 이동식 소각시설은 농장 내에서 소각을 실시하고, 해당 이동식 소각시설의 사용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사체를 소각 후 남은 잔존물을 매몰처리한다.

2.4.4 공공 소각시설로 이동하여 소각 시 차량적재 및 운송요령

- 살처분대상 가축을 살처분 완료한 후 사체를 소각장소로 운송한다.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감독 하에 적재·운송·소각 처리·사후처리를 실시한다.
-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 타액 등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되고,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지정하고, 운송차량 안에는 운송 중 오물 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적재함 바닥을 혈액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고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한다.
- 사체 적재 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고, 차량적재함 덮개를 덮고, 차량 내·외부를 소독한다.
- 운송시 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여 운송하며, 운송차량은 출발하여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 통제초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지 않고, 이동시에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경로를 지정하여 운행한다.
- 운송차량이 소독시설 입구에서 차량 내·외부를 소독하고,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차한다.
- 하차 완료 후 운송차량은 소독시설 내에서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 요령에 따라 즉시 세차·소독을 실시한다.

2.4.5 공공 소각시설에서의 소각요령

- 소각시설에 도착한 사체는 지체 없이 처리한다.
- 사체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시설로 운반한다.
- 소각 후 남은 뼈와 재를 소각 장소에서 매몰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사체를 운반한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하는 등 방역상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소각 시설에서는 처리공정에 대한 관리사항을 기록하고, 관계관의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소각 시설에서는 작업 전·후 및 휴식 중에 작업기구, 운송차량, 처리장 내 외부를 소독을 실시한다.
- 공공 소각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의 소각처리 요령에 따라 안전하게 소독한다.

2.4.6 사후 방역조치사항

- 사체 운송자는 마지막 운송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 간 가금류 기축 및 생산물을 운송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각처리 작업자가 처리장을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은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시키고 온 몸을 깨끗이 목욕한 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 7일 간은 기축사육농장, 기축시장 및 도축장 등 가축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각처리를 사용된 차량·기구 및 도구, 장소 등은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2.5. 이동식 열처리

2.5.1 이동식 열처리의 원칙

- 발생농장의 살처분 사체는 농장 내에서 열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할 경우 농장의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한다.
- 처리장소는 농장내 퇴비장 및 분뇨처리장과 근접한 곳으로, 가급적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에서 실시한다.
 - * 이동식 열처리는 사체를 분쇄·교반, 고온·고압 등을 통해 멸균처리한 후 남은 잔재물은 퇴비 또는 매몰하는 것을 말한다.

2.5.2 장비 및 준비물

- 이동식 열처리장비, 포크레인 또는 집게차(사체 상차용), 사체운반차량(바닥의 오물이 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차량), 소독차량, 비닐(적재함을 깔고 덮을 수 있는 양),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

2.5.3 이동식 열처리시 주의사항

237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감독 하에 열처리·사후처리를 실시한다.
- 살처분대상 가축을 살처분 완료 후에 열처리를 실시한다.
- 처리장비의 1회 용량 이상으로 사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열처리를 완료한 후의 잔재물은 처리전의 사체(또는 오염물)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처리 중 방역 상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다.

2.5.4 이동식 열처리장비 처리요령

- 열처리요령은 처리장비에 따른 요령에 따라 실시하며 처리요령은 아래와 같다.
- 장비의 유압 받침대를 활용하여 잔존물의 처리가 용이한 처리장소에 장비를 설치 및 고정한다.
- 장비 내 물을 채우는 등 가동 준비 후 중장비를 이용하여 살처분 가축을 장비 내 적재한다.
- 살처분 가축은 열처리 조건(멸균조건)에 맞춰 장비를 가동한다.
 - * 습열처리(121°C 15~20분 또는 115°C 35분 이상) 또는 건열처리($160\sim170^{\circ}\text{C}$ 1~2시간 이상)
- 열처리 중 잔존물의 퇴비화 등을 위해 장비내 텁밥, 왕겨, 사료 등을 넣어 함께 교반할 수 있다.
- 이동식 열처리 장비 책임자는 열처리 작업 시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은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열처리 후 잔존물 중 액상물은 장비 내 액상물 저장탱크에 수거 후 분뇨 처리장 및 오페수 처리시설에 배출하고, 고형물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농장 내 퇴비장에 이송·적재후 퇴비화를 위해 부숙 처리한다(필요시 농장내 퇴비와 교반처리한다).
- 열처리잔존물 및 분뇨 및 퇴비 등을 교반 처리한 경우에는 분뇨 처리절차에 따르며, 부숙이 완료된 퇴비는 부숙도 검사 및 병원체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반출하여야 한다.

2.5.5 사후 방역조치사항

- 사체 처리에 사용된 장비·차량 등을 마지막 처리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 간 가금류 가축사육농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식 열처리 작업자는 처리장소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은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시키고 온 몸을 깨끗이 목욕한 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 7일 간은 가축사육농장,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가축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열처리에 사용된 기구 및 도구, 장소·차량 등은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2.5.6 이동식 열처리 방식(예시)



2.5.6 이동식 소각장치(예시)



2.6. 랜더링 처리

2.6.1 랜더링 처리장의 선택

- 랜더링 처리장은 발생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시설을 이용하되 처리 가능량 및 이동경로 주변의 축산농가·축산시설의 분포 등 방역여건을 감안하여 최적의 처리장을 선택한다.
 - * 랜더링은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기름 등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 가축방역관(또는 시·군 관계관)은 가금사육 지역 등 주변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랜더링 처리장까지의 차량 이동 경로를 사전에 설정한다.

2.6.2 장비 및 준비물

- 포크레인 또는 집게차(사체 상차용), 사체 운반차량(바닥의 오물이 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차량), 소독차량, 비닐(적재함을 깔고 덮을 수 있는 양),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

2.6.3 차량적재 및 운송요령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 감독 하에 적재·운송·랜더링 처리·사후처리를 실시되어야 한다.
- 랜더링 처리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가축을 살처분 완료 후 운송한다.
- 운반차량은 혈액 등 오염물이 새지 않도록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하고, 적합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혈액 등 오염물이 새지 않도록 사체를 비닐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은 운송과정 중 오염물이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설비되어 있거나, 오염물 비산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 운송차량 안에는 운송 중 오물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적재함 바닥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하여야 하며, 운송 중 혈액등의 오염물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비닐 등을 깔아 보완하여야 한다.
- 사체 적재 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는다.
- 차량적재함 덮개를 덮고, 적재 완료되면 차량 내·외부를 소독한다.
- 운송 시 차량에는 가축방역관(또는 시·군 관계관)이 탑승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후행하면서 운송과정을 감독하도록 하고, 운송차량은 출발하여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 타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지 않아야 하며, 가축방역관이 지정한 경로를 60km 이하의 속도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 운송차량이 랜더링 처리장 입구에 도착하면 차량 내·외부 및 운전기사에 대해 소독하고, 처리장 내에서는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차한다.
- 하차 완료 후 운송차량은 랜더링 처리장에서 차량 내·외부 및 적재함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한다.

* 차량 외부소독 → 사체 하역 → 차량 내부소독 → 차량외부 및 적재함 내·외부 세척·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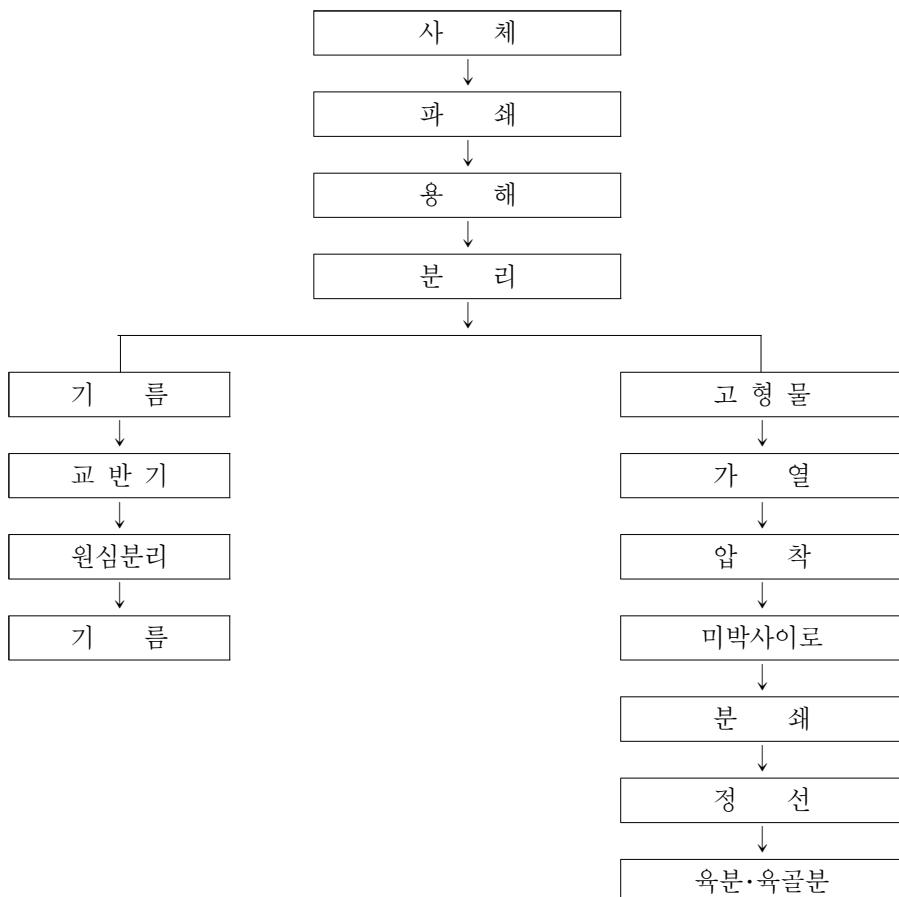
2.6.4 랜더링 처리장에서의 주의사항

- 랜더링 처리장에는 가축방역관(또는 시·군 관계관)이 상주하면서 랜더링 처리 및 소독조치 등 전 과정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가축방역관(또는 시·군 관계관)은 랜더링 처리에 참여하는 인력(사체 운송 차량 운전자 포함)에 대하여 작업 전·후에 반드시 방역수칙 교육(작업시 유의사항, 안전사고 예방, 출입자 통제 등)하고 살처분 사체를 직접 다루는 작업자(운반, 하역 및 원료 투입실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축방역관(또는 시·군 관계관)은 랜더링 처리장의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장의 영업자에게 요구하고 영업자는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차량소독 시설은 운송차량의 앞·뒤 및 상·하부를 충분히 소독할 수 있는 U-자형 소독기 설치·운영하거나 소독시설이 미흡한 곳은 동력분무기 및 전답직원을 고정·배치하여 보강 소독을 실시한다.
- 랜더링 처리장에 도착한 사체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사체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장내의 작업장으로 운반한다.
- 랜더링 처리장 1회 용량 이상으로 사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계 정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 용량 이상의 사체가 반입되는 경우 설치류·고양이 등 야생동물에 의한 사체 유실 및 혈액 등 오염물 누출이 없도록 사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역 상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랜더링 처리를 완료한 후의 잔재물을 처리되지 않은 다른 사체(또는 오염물)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거나

사체를 운반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 랜더링 처리장에서는 사체와 사체처리 후 남은 부산물(기름, 육분, 육골분 등)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처리 공정에 대한 관리사항을 기록하고, 관계관의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록사항 : 작업일시, 내용(축주명, 주소, 처리두수 등), 운송차량 번호·기사명 등
- 랜더링 처리장에서는 작업 전·후 및 휴식 중에 작업기구, 운송차량, 처리장 내외부를 소독을 실시한다.
- 랜더링 처리장의 영업자는 사체운송 차량 통행 후에는 랜더링 처리장 인근 진입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2.6.5 랜더링 처리 공정(예시)



2.6.6 사후 방역조치사항

- 사체 운송자 및 차량 장비 등은 마지막 운송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 간 가금 및 생산물을 운송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랜더링 작업자가 처리장을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은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시키고 온 몸을 깨끗이 목욕한 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 7일 간은 가축사육농장,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가축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하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랜더링 작업에 사용된 차량·기구 및 도구, 장소 등은 제4장 12. 발생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2.7. 액비 대형 저장조 및 FRP 등 저장조를 활용한 사체처리

2.7.1 시·군·구는 발생농장 내에 저장조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 할 경우 농장의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서 저장조를 설치한다.

* 저장조를 활용한 사체처리는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저장조를 설치하여 생석회와 석회수 등을 활용하여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 처리장소는 가급적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 설치한다.

2.7.2. 액비 대형 저장조

2.7.2.1. 장비 및 준비물

- 액비 대형 저장조, 석회수, 생석회, 포크레인(저장조 시설 설치장소 평탄 작업), 집게차(사체 상차용), 사체운반차량(바닥의 오물이 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차량), 소독차량, 비닐(적재함을 깔고 덮을 수 있는 양),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보호구 등

2.7.2.2 액비 대형 저장조를 활용한 사체처리 시 주의사항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감독 하에 처리한다.
- 살처분대상 가축을 살처분 완료 후에 처리한다.

2.7.2.3 액비 대형 저장조 설치 및 사체 처리요령

- ① 저장조 설치 부지에 대한 평탄 작업을 실시한다.

설치준 저장조 시설진 토목평탄작업



- ② 저장조를 설치한다.(외부 강판, 내부 방수 처리된 특수 천막)

외벽체 협판세우기



외벽체와 내벽체의 방수천 작업장로



- ③ 사체를 저장조내에 넣는다.

- ④ 생석회, 소석회를 투입한다. 다만, 사체의 부패를 촉진시키기 위해 미생물을 투입할 경우 생석회는 투입하지 않는다.

저장조 내부에 넣어있는 사체



생석회+를 투입



⑤ 저장조를 지붕으로 밀봉한 후 가스 배출관을 설치한다.

트拉斯를 올린후 지붕설정



⑥ 내용물이 액상으로 변할 때까지 보관한다.

⑦ 액상으로 변한 내용물은 소독 처리 후 매몰지 침출수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2.7.3 FRP(섬유강화 플라스틱) 등 저장조 처리방식

- 처리장소는 지반이 견고한 곳에 설치하여 변형 등을 방지한다.
- 사체처리시, 포크레인(저장조 시설 설치장소 평탄작업), 집게차(사체 상차용), 사체운반차량(바닥의 오물이 새지 않고, 덮개가 있는 차량), 소독차량, 비닐(적재함을 깔고 덮을 수 있는 냥), 작업복·장화·헬멧·장갑·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준비한다.
- 사체처리는 가축방역관의 지시·감독 하에 처리한다.
- 살처분대상 가축을 살처분 완료 후에 처리한다.
- 변형우려가 있는 일반 물탱크용 폴리에틸렌(PE) 저장조는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없어 저장조 방식의 매몰이 최선인 경우로서 FRP 저장조 구입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일시적으로 사체를 저장하였다가 조기에 사체를 재처리하려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 저장조가 변형되거나 파손된 경우는 이설하거나 내용물을 소멸처리(재처리) 한다.
- FRP 저장조가 빗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고, 토압 압력으로 인한 변형 또는 파손방지를 위해 용기 상부가 지상으로 충분히 돌출되도록 설치한다.

- 사체투입량은 FRP 저장조 용량의 70% 내로 투입한다.
- 가스 배출관은 FRP 저장조 내 빈 공간에 설치하여 가스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
- 사체부패를 촉진시키기 위해 미생물을 투입할 경우 생석회는 투입하지 않는다.
- 내용이 액상으로 변할 때까지 보관한다.
- 액상으로 변한 내용물은 매몰지 침출수 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FRP 저장조의 재질기준은 「하수도법」 제55조에 따른 별표 12(개인하수 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의 FRP 정화조 재질 기준을 준용한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2 :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제55조 관련)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기준

나. 재질별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조하는 제품은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가) 제품의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규칙성, 비틀림, 균열, 흠, 변형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나) 유리섬유 함유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 다) 한국산업규격(KS) F 4803(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 라) 다음의 두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다만, 각형의 경우에는 높이와 환산지름 [2×가로×세로/(가로+세로)]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두께를 산정한다.

| | |
|-----------------------------|------------------------------|
| 지름 1,500mm 이하 : 두께 7mm이상 | 지름 2,200~2,700mm : 두께 10mm이상 |
| 지름 1,500~1,700mm : 두께 8mm이상 | 지름 2,700~2,900mm : 두께 11mm이상 |
| 지름 1,700~2,200mm : 두께 9mm이상 | 지름 2,900mm 초과 : 두께 12mm이상 |

※ FRP저장조 용량에 따른 통상적인 활용사례

| | |
|--------------------------------|---------------------------------|
| 지름 1,500mm 이하 두께 7mm이상(5~8톤) | 지름 2,200~2,700mm 두께 10mm이상(20톤) |
| 지름 1,500~1,700mm 두께 8mm이상(10톤) | 지름 2,700~2,900mm 두께 11mm이상(30톤) |
| 지름 1,700~2,200mm 두께 9mm이상(15톤) | 지름 2,900mm 초과 두께 12mm이상(50톤 이상) |

2.7.4 사후 방역조치사항

- 사체 처리에 사용된 장비·차량 등은 마지막 처리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 간 가금류 가축사육농장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업자는 처리장소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 신발, 모자 등은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시키고 온 몸을 깨끗이 목욕한 후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 7일 간은 가축사육농장, 가축시장 및 도축장 등 가축과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AI 살처분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체처리 참여자가 귀가하기 전 소독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사용된 기구 및 도구, 장소·차량 등은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 후,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2.8 매몰방식에 따른 매몰지 분류

2.8.1. 일반매몰, 미생물 매몰, 호기호열 매몰, 기타 매몰

- 2.3 매몰방법에 따라 조성된 매몰지는 ‘일반매몰’로 분류한다.
- 단, [참고]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사체 매몰방법’을 준수하여 조성된 매몰지에 한해 ‘호기호열 매몰’로 분류하고, 매몰지 조성 중 사체의 분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미생물을 단순 첨가 등 활용한 경우에는 ‘미생물 처리 매몰’로 분류한다.
-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한 매몰지는 ‘기타’ 매몰지로 분류한다.

2.8.2. 저장조를 이용한 매몰

- 2.7 액비 대형 저장조 및 FRP저장조 등 저장조를 활용하여 조성된 매몰지의 경우, 저장조의 재질에 따라 ‘액비저장조’, ‘FRP저장조’ 및 ’기타저장조‘ 매몰지로 분류한다.

3. 소각·매몰 또는 랜더링 처리를 위한 가축의 운반요령

3.1 가축방역관은 다음 조치사항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을 운반할 수 있도록 지시, 감독 및 확인하고 최종조치가 완료된 후 신속히 방역조치 사항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1 살처분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은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타액 등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운반차량 안에는 운반 중 오물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3.1.2 소각·매몰 장소 또는 랜더링 처리시설로 살처분 가축(사체)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재함 바닥을 혈액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고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한다.

- 3.1.3 가축의 사체를 적재 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고 작업에 사용한 기구 및 도구, 장소 등을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다.
- 3.1.4 운반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여 살처분 가축이 처리장에 인계될 때까지 전 과정(적재·운반·하역과정, 출발 전·인계 후 차량소독 등) 및 사후처리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 3.1.5 운반차량은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 통제초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여서는 안 되며, 이동 시에는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경로로 운행하여야 한다.
- 3.1.6 가축의 사체로부터 추가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역한 즉시 운반차량에 대하여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마지막 운반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 간 감수성 가축 및 생산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3.1.7 가축사체의 하역작업에 사용된 차량, 장비, 기구 및 도구, 장소 등에 대하여도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 후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3.1.8 살처분한 가축의 운반에 참여한 사람은 제4장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3.2 랜더링 처리 시 방역조치 내용 및 준수사항

- 3.2.1 랜더링 처리시설의 경영자는 살처분한 가축(사체)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3.2.2 랜더링 작업자는 사체를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장내로 이송하여야 한다.
- 3.2.3 랜더링 처리장에서는 처리시설의 1회 용량 이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3.2.4 랜더링 처리를 완료한 후의 잔재물은 처리되지 아니한 다른 사체(또는 사체의 부산물)와 접촉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같은 장소에 보관하거나 사체를 운반한 동일한 차량으로 운반하는 등 방역상 위해가 있는 방법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 3.2.5 사체를 운반하는 자 및 처리장의 경영자는 사체 및 처리 부산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매회 처리온도 및 소독

실시내용 등 위생관리사항을 기록하고 가축방역관의 요구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2.6 처리시설의 경영자(관리자)는 작업 전·후와 휴식 중에 유효 소독제로 작업기구, 운반차량, 처리장 내·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야 하고, 작업자가 처리장을 벗어나고자 할 경우에는 착용한 모든 의복·신발·모자 등을 벗어 소독수에 담가 충분히 소독하며 깨끗이 목욕한 다음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고 최소 7일 간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 및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 3.2.7 가축의 사체로부터 추가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체를 하역한 즉시 운반차량에 대하여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마지막 운반작업이 끝난 후 최소한 7일 간 감수성 가축 및 생산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3.2.8 가축사체의 하역 및 운반 작업에 사용된 차량, 장비, 기구 및 도구, 장소 등에 대하여도 제4장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즉시 소독을 실시한 후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3.2.9 살처분한 가축의 운반 등에 참여한 사람은 제4장 9.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가축 매몰지의 발굴 금지

- 4.1 가축 매몰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에 따라 3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며,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 사육시설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사체 매몰방법(예시)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사체 매몰방법은 호기성 호열미생물·왕겨(혹은 축사 깔짚)등의 혼합물과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물(또는 나노 기포 산소수)을 이용하여 봉분형태로 가축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작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사체 매몰 절차도



* 나노기포산소수는 물로 대체 가능

[그림 1] 호기성호열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사체 처리 절차도

<표 1> 표준크기 매몰지의 사체처리 시 준비물

(사체 100ton 기준: 2kg 묵 50,000마리)

| 품명 | 규격 | 소요량 | 용도 |
|-------|---|--------------|--|
| 포크레인 | 대형(6w), 소형(02) | 2대 (각 1대) | 매몰지 구덩이 파기 및 사체투입 |
| 사체운반기 | 스키로더 | 1대 | 사육동에서 수송차량으로 사체 운반 |
| 수송차량 | 덤프트럭 5톤, 15톤 | 2대 | 사육동에서 매몰지 구덩이 까지 사체 운반 |
| 차수비닐 | 0.1mm × 6.5m × 30m 이중장수비닐 (펼칠 경우 가로 13m), 또는 0.3mm 내재형 PE 직조필름 | 2박스 |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시 매몰지 바닥 및 벽면에 설치 |

| 품명 | 규격 | 소요량 | 용도 |
|--------------------------------|--|------------------------------|--|
| 부직포 | 7mm × 1.8m × 18m/롤 | 12롤 | 차수비닐 훼손방지 |
| 미생물 (호기성 호열미생물) | 8kg/포 | 0.8톤 | 가축사체 분해용 미생물 |
| 왕겨 혼합물 | 왕겨, 축사 깔짚, 톱밥, 낙엽, 건초, 완숙퇴비 등의 혼합물 | 29톤 |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시 미생물의 수분 및 공극 (air gap) 조절 |
| 침출수관찰 유공관 | PVC 유공관 (구경 150mm이상) 상부는 덮개 설치 | 1개 | 매몰지 내부 침출수 유무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 유공관 |
| 저압 분산 고무질 에어호스 (유니바이오헤스) | 외경 26mm, 두께 5.5mm, 50m/1롤 다공성 연질배관 | 4롤 |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시 매몰지 내부 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공기공급 |
| 엑셀파이프 | 외경 20mm, 두께 2mm | 3m × 8개 |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시 매몰구덩이 내부의 유니바이오헤스와 외부의 공기 분배관을 연결 |
| 공기 분배관 | 백관, 이경티 50mm, 단니플 50mm 외 | 8세트 (1세트: 이경티+ 단니플) |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시 블로워를 엘셀파이프를 통해 유니바이오헤스와 연결 |
| 링블로워 | 220V 단상, 60HZ, MaxQ 3.6m³/min 이상 | 1개 |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시 공기분배관을 통해 매몰지 내부에 공기공급 |
| 나노기포 산소수 또는 물 | 기포 크기 150nm 이하, 개체수 3억개/ml 이상 | 1.6톤 |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시 미생물의 초기 활성화를 위한 산소 및 수분 공급 |
| 배수로 및 외부 저류조 | PVC등 방수재질, 용량 0.5m³ 이상 | 1개 | 침출수의 외부유출 대비 및 빗물유입 방지,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시 외부 저류조는 설치 생략 가능 |
| 차광막 | 농자재용 그물형태 차광율 95%. 8m × 25m | 1개 |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시 비바람으로 인한 소취용 봉분층 유실 차단, 동물 및 사람의 침입 차단 |
| 온도계 | T-type, 길이 50cm 이상, 0~100°C | 1개 |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시 사체 정상분해 여부 확인 |

| 품명 | 규격 | 소요량 | 용도 |
|--------|---|-----|---|
| 비가림 시설 | 농업용 강관(외경 25mm, 두께 1.5mm 이상, 길이 9m) 고강도 투명비닐, 두께 0.1mm × 6.5m × 25m | 1식 | 미생물(호기성 호열미생물) 처리 후 우천 시 매몰지 내부로 빗물유입 방지 |
| 경고표지판 | | 1개 | |
| 출입금지띠 | | 3롤 | |
| 개인보호장비 | 작업복, 장화, 장갑, 고글 등 | 개인별 | |

2. 처리 작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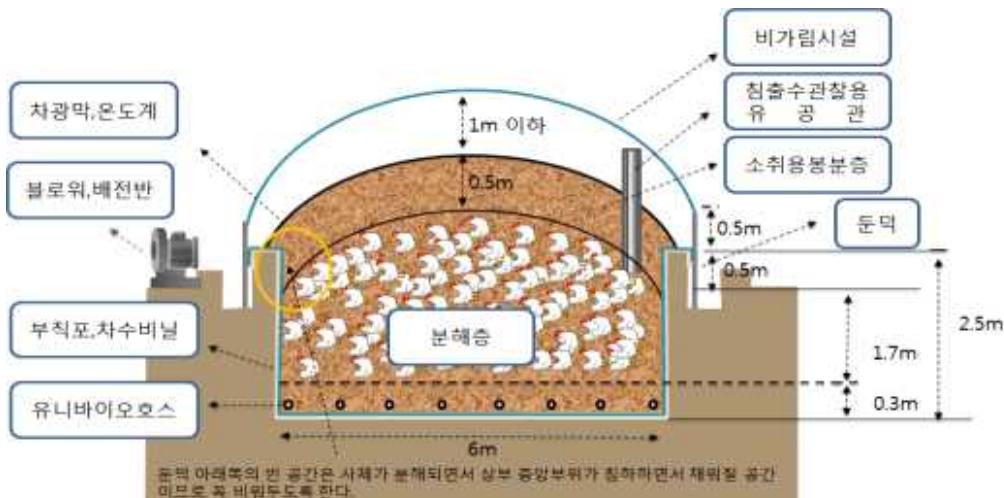
① 구덩이 파기

- 구덩이의 표준크기는 가로 6m × 높이 2.5m × 길이 20m(300m^3)로 하며, 사체의 수량, 알 등 가축의 생산물, 사료·깔짚·왕겨 등 농장 내 오염물건 처리량에 따라 구덩이의 길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구덩이는 지하로 깊이 2m를 파고 지상으로 높이 0.5m, 너비 0.5m 둑을 설치한다.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이용한 가축 사체 처리 표준매몰지 단면도, 부분 단면도 및 터파기 개요도는 그림 2, 3 및 4와 같다.
-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이용하여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을 평평하게 시공하여 나노기포 산소수 또는 물을 바닥면에 골고루 공급되도록 한다.
- 처리량이 많은 경우, 표준크기 매몰지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한 지점에 구덩이를 여러 개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구덩이 간의 거리는 사람과 장비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6m 이상의 간격을 둔다.
- 표준크기 매몰지에 처리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별 처리 두수는 다음의 표2와 같다. 축종별 사체 마리당 평균중량은 소 700kg, 돼지 80kg, 오리알 90g, 계란 60g을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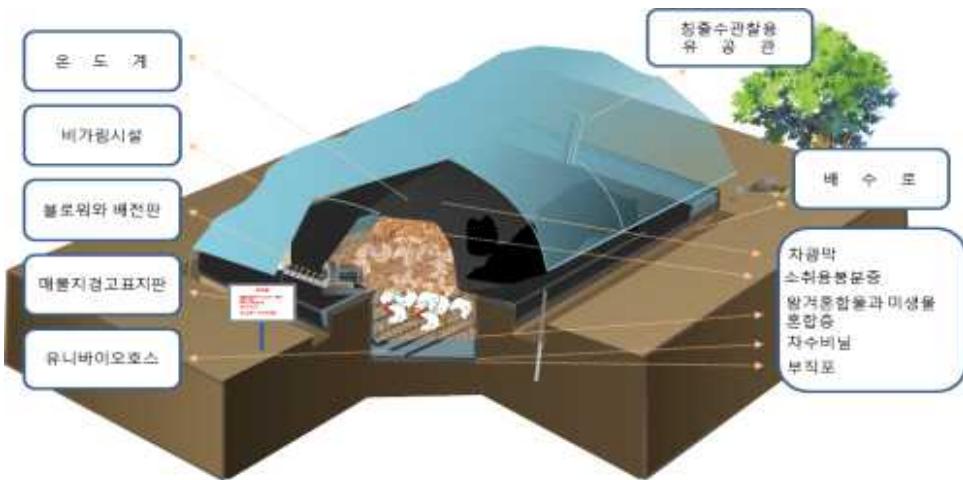
<표 2> 처리중량에 따른 매몰지 크기 및 가축의 종류별 처리 두수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처리 시)

| 처리 중량 | 가로 | 높이 | 길이 | 처리 두수 |
|-------|----|------|-----|--------------------------------|
| 20톤 | 6m | 2.5m | 5m | 2kg 닭 10,000수 / 4kg 오리 5,000수 |
| 40톤 | 6m | 2.5m | 10m | 2kg 닭 20,000수 / 4kg 오리 10,000수 |
| 60톤 | 6m | 2.5m | 14m | 2kg 닭 30,000수 / 4kg 오리 15,000수 |
| 80톤 | 6m | 2.5m | 17m | 2kg 닭 40,000수 / 4kg 오리 20,000수 |
| 90톤 | 6m | 2.5m | 20m | 2kg 닭 45,000수 / 4kg 오리 22,500수 |
| 100톤 | 6m | 2.5m | 23m | 2kg 닭 50,000수 / 4kg 오리 25,000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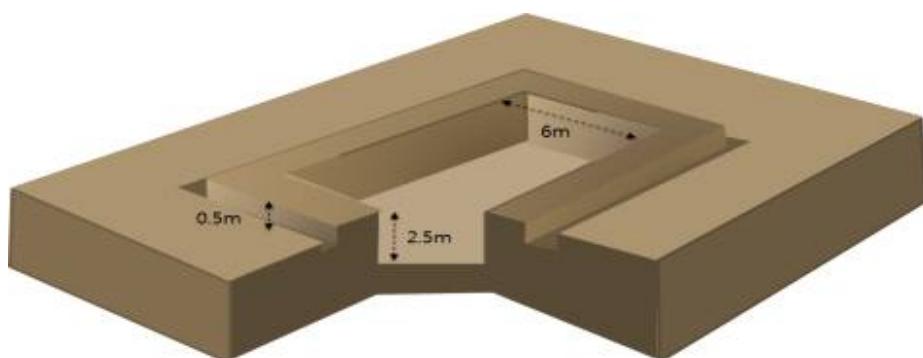
[그림 2]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사체 처리 표준매몰지 부분 단면도



[그림 3]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사체 처리 표준매몰지 부분 단면도

② 구덩이 바닥면 및 벽면 고르기

- 구덩이를 파고 난 후, 매몰지 바닥 또는 벽면에 날카로운 금속이나 암석 등을 미리 제거 하여 수분침투 및 침출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차수비닐의 천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폐사되지 않은 가금이 구덩이로 들어올 경우 차수비닐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 호기성 호열미생물로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 바닥에 설치하는 차수비닐의 손상으로 인한 사체 유출에 대비하여 표준크기 매몰지의 경우 총 14.6kg, 즉 $3.3m^2$ 당 호기성호열미생물 약 400g을 부직포를 깔기 전에 구덩이 바닥 전체에 골고루 뿌린다.



[그림 4]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이용한 가축사체 처리를 위한 터파기 개요도

③ 부직포 및 차수비닐 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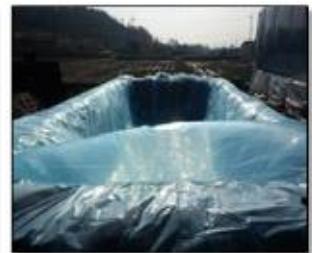
- 차수비닐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매몰지 바닥 및 벽면 전체에 두께 7mm 이상의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두께 0.1mm 이상의 차수비닐을 2겹으로 깐다. 비닐의 폭은 매몰지 바닥 및 양쪽면의 높이를 더한 길이(표준크기 매몰지의 경우 11m)보다 2m 이상 큰 폭의 비닐을 사용하여 매몰지 둔덕까지 덮어지도록 한다. 폭 또는 길이가 작은 비닐을 겹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림 6] 부직포 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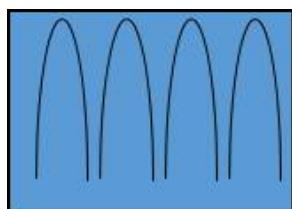
[그림 5] 구덩이 파기



[그림 7] 차수비닐 깔기

④ 매몰지 바닥 저압분산 고무질호스(유니바이오힘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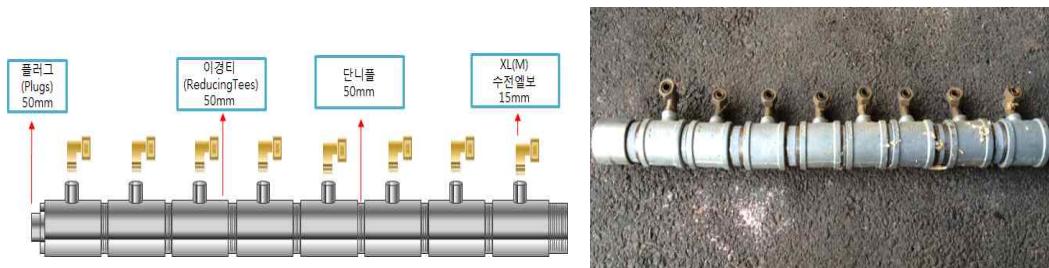
- 저압분산 고무질호스(유니바이오힘스)는 휘어질 수 있는 연질의 에어호스이며, 매몰지 내부에서 호기성 호열미생물의 활성화를 위한 공기공급 역할을 한다.
- 길이가 20m인 표준크기 매몰지의 경우, 유니바이오힘스 50m/1롤을 절단하지 않고 구덩이의 길이 방향으로 차수비닐 위에 U형태 2줄로 설치하되, 인접 유니바이오힘스와의 간격은 약 0.7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공기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서로 꼬이거나 꺽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동일한 요령으로 구덩이의 가로 폭 6m에 4개의 롤, 즉 8가닥의 유니바이오힘스를 구덩이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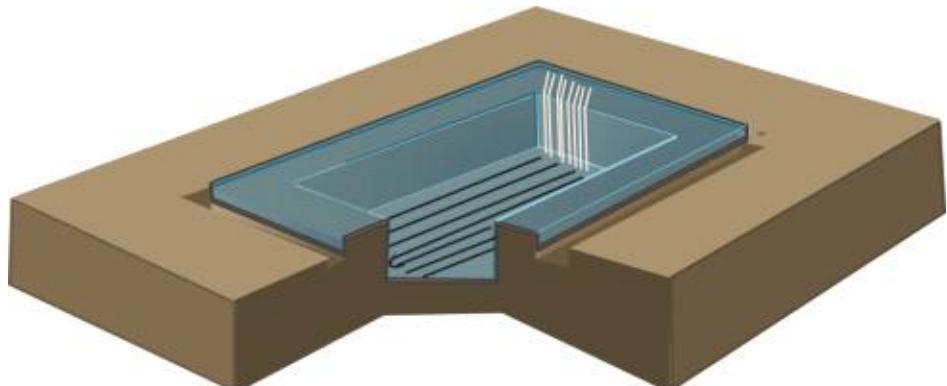
[그림 8] 저압분산 고무질호스(유니바이오힘스) 설치 모식도 및 설치방법

⑤ 엑셀파이프 및 공기분배관 연결

- 엑셀파이프는 PE 재질의 단단한 파이프(외경 20mm, 두께 약 2mm)로 써, 구덩이 바닥에 설치한 저압분산 고무질호스(유니바이오후스)와 지상에 설치한 공기분배관 사이를 연결하는 경질의 배관이다. 구덩이 바닥의 한쪽 끝은 저압분산 고무질호스(유니바이오후스)와 연결하여 구덩이 가로면 내부벽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테이프 등으로 고정시키되 차수비닐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고정핀은 사용하지 않는다.
- 공기분배관은 링블로워에서 공급되는 공기를 8가닥의 엑셀파이프를 통해 저압분산 고무질호스(유니바이오후스)에 분배하는 장치이며, 백관 50mm 이경티, 단니풀, 15mm 엘보를 연결한다.



[그림 9] 공기분배관 모식도 및 조립방법



[그림 10] 저압분산고무질호스(유니바이오후스-바닥) 및 엑셀파이프(벽면) 설치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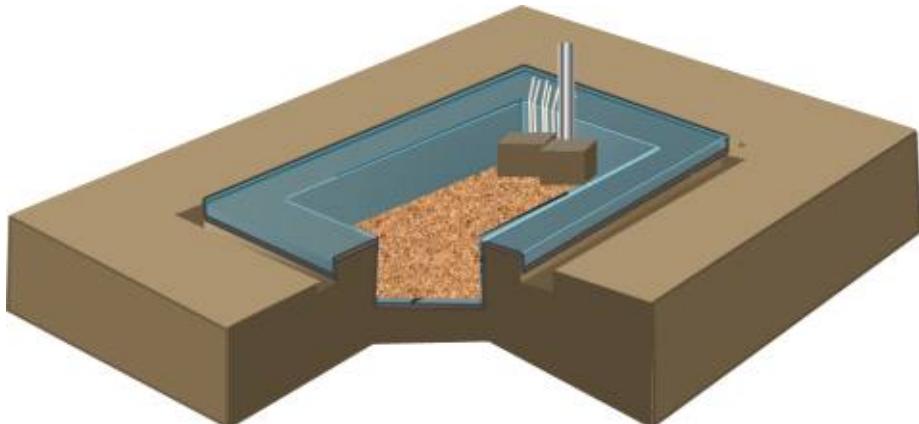
⑥ 호기성 호열미생물 및 왕겨혼합물 바닥 깔기

- 저압분산 고무질호스(유니바이오퍼스) 위에 미리 혼합하여 놓은 호기성 호열미생물과 왕겨혼합물을 약 30cm 두께로 깐다.
- 왕겨혼합물은 왕겨 혹은 축사 깔짚, 텁밥, 낙엽, 건초, 완숙퇴비 등의 혼합물을 말하며 호기성 호열미생물의 활성화에 필요한 수분과 공극유지 역할을 한다.
- 왕겨혼합물의 초기 수분공급은 나노기포 산소수 또는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노 기포 산소수 또는 물의 양은 왕겨혼합물 1톤 당 약 57리터(3.5톤 당 200L)를 혼합한다.

* 왕겨의 밀도는 0.115kg/L이며, 1m³의 중량은 115kg, 5톤 트럭(약 30m³) 1대 분의 중량은 3.45톤.

⑦ 매몰지 내부 침출수 관찰용 유공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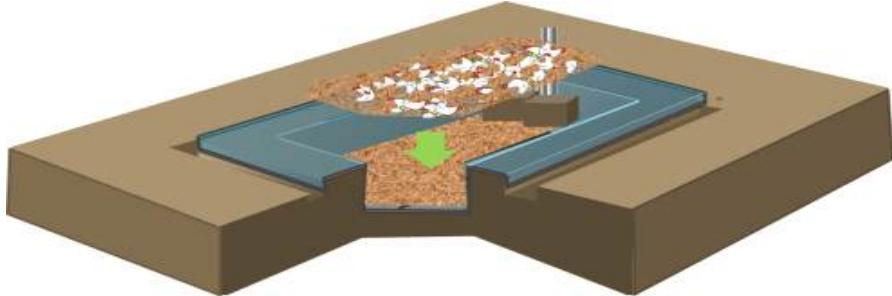
- 매몰지 내에 침출수 관찰용 유공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공관 상부에 빗물 유입방지를 위한 마개 설치한다.(비가림시설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하부 유공관 주위에는 보온덮개 및 자갈 등을 둘러쌓아 유공관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그림 11] 매몰지 내부 침출수 관찰용 유공관 설치 개요도

⑧ 사체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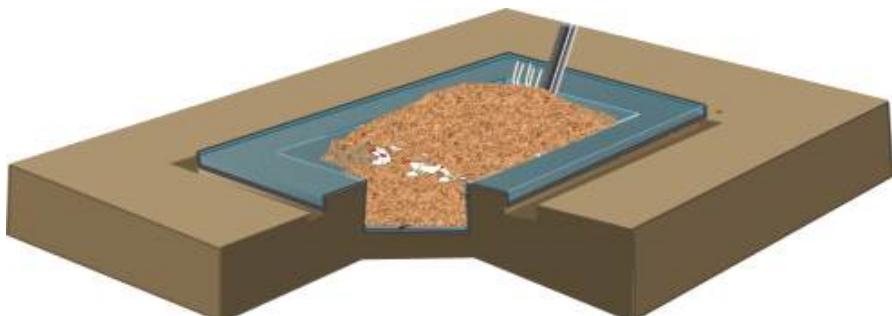
- 가축사체 투입 시 발생농장의 오염물건, 사료 등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미리 혼합하여 놓은 호기성 호열미생물과 왕겨혼합물을 구덩이 밖에서 사체와 잘 섞은 후 구덩이 내에 봉분형태로 쌓는다.
- 가축사체 및 호기성 호열미생물과 왕겨혼합물의 처리형태는 매몰지 길이 방향으로 중앙이 용기된 형태(ʌ)로 하여, 수분 증발이 용이하고, 열을 보존함으로써 호기성 호열미생물의 활성화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체는 구덩이 중앙부분이 지표면 보다 약 0.5m 정도 높게 봉분형태로 쌓아서 통기성을 좋게 하여야 한다.(그림 2참조)



[그림 12] 호기성 호열미생물과 가축사체의 혼합투입 개요도

⑨ 소취용 봉분층 만들기

- 호기성 호열미생물, 왕겨혼합물, 나노기포 산소수 또는 물을 혼합하여, 사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체표면에서 약 0.5m 이상의 두께(지표면에서 약 1m의 높이 까지)로 소취용 봉분층을 만들어 초기에 매몰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한다.(그림 2참조).



[그림 13]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이용한 소취용 봉분층 만들기 개요도

⑩ 구덩이 주변 둑덕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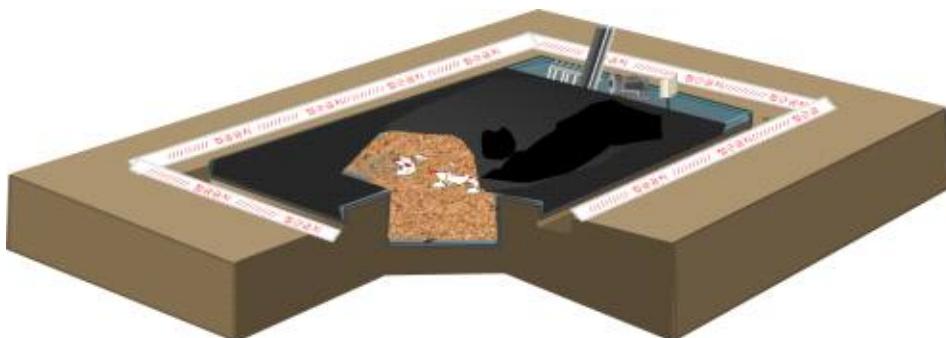
- 구덩이 주변에 사람, 동물 등의 접근, 빗물 유입 등의 방지를 위하여 지면에서 높이 0.5m, 두께 0.5m 이상으로 둑덕을 설치한다(그림 2참조).

⑪ 둑덕 주변 배수로 설치

- 매몰지 내부에서 발생된 침출수의 외부 유출, 우천 시 빗물에 의한 매몰지 유실, 비가림 시설에서 떨어지는 우수가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매몰지 봉분의 둑덕 주변에 0.3m 이상의 깊이로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로의 바깥부분에도 0.3m 이상의 높이로 둑덕을 쌓아 우수의 유입을 방지한다(그림 2참조).

⑫ 공기 분배관과 블로워 연결하기

- 엑셀파이프로 공기 분배관과 블로워와 연결한다.



[그림 14] 공기 분배관과 블로워 연결 개요도

⑬ 차광막 설치

- 소취용 봉분층이 비바람에 유실 되지 않도록, 동물 및 사람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 봉분 표면에 차광을 95% 이상의 차광막으로 덮고, 차광막 가장자리를 고정핀으로 촘촘히 마무리 한다.

⑭ 온도계 및 비가림 시설 설치

- 온도 관찰에 의한 사체의 정상분해 여부를 근접거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덩이 가장자리에 온도계를 설치하되, 소취용 봉분층 아래 사체 분해층의 온도가 측정되도록 50cm 이상의 센서봉을 가진 온도계를 설치한다.

- 매몰지 봉분 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로 비닐하우스 형태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짐승 및 외부인 접근 방지, 우수 유입에 의한 매몰지 손상 및 사체 유래물의 유출이 방지 되도록 한다.
- 비가림 시설의 프레임은 외경 25mm, 두께 1.5mm, 길이 9m의 농업 하우스용 금속강판으로 하되, 소취용 봉분 외부면의 형태 및 간격이 일정하도록 중앙 부분을 유선형(∩형태)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 비가림 시설의 프레임은 매몰지 길이 방향 80cm의 간격으로 둔덕 바깥쪽이나 배수로에 설치하되, 소취용 봉분층과의 내부 간격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프레임의 하부에 구덩이 길이방향으로 직선의 가로 프레임을 유선형 프레임 하단에 용접하여 비가림 시설이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킨다.
- 매몰지 봉분에 빗물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두께 0.1mm 이상의 투명비닐을 비가림시설 프레임 위에 덮고 견고히 고정한다. 단, 투명비닐의 세로방향 길이는 지면에서 30cm 정도의 간격을 두어 통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몰지 주변에는 출입금지를 위한 안전띠를 둘러 사람의 접근을 방지한다.

⑯ 경고표지판 설치

- 눈에 띄기 쉬운 매몰지 주변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에는 매몰사체의 병명, 축종, 매몰 연월일, 빌굴 금지기간, 매몰작업 책임자, 매몰지 관리책임자, 비상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⑯ 호기성호열미생물 활성화를 위한 링블로워 작동

- 링블로워는 3개월 간 24시간 작동시키고, 매 6시간마다 30분 간 작동을 중지시켜 링블로워의 과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3개월 이후 2차 처리 전까지 8시간/1일 작동시킨다. 사체분해가 완료되는 시점인 6개월 이후엔 링블로워 작동을 정지시킨다.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나노기포 산소수를 사용하는 경우 매몰지 조성 후 48시간 동안은 링블로워를 작동시키지 않는다.

⑰ 관측정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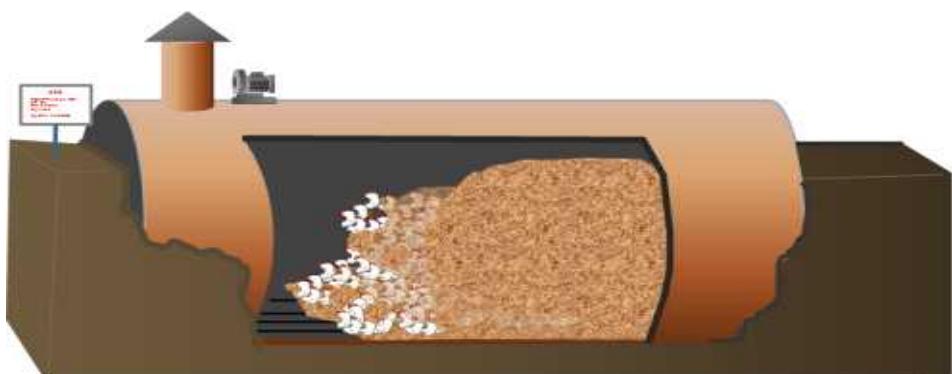
- 관측정은 지자체장이 가축사체를 대규모로 매몰한 지점 등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오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다. 다만, 소규모 매몰(살처분 가축 10톤

내외)일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관측정은 직경 75mm,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PVC 유공관 등을 사용하고, 매몰지 경계 외부에서 5m 이내의 지점에 깊이 10m 내외로 지하수 흐름 하류방향에 설치한다.

⑯ 저장조를 이용한 호기성 호열미생물 가축 매몰처리

-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사용하여 저장조에 가축사체를 처리할 경우 저장조 바닥에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호스나 판을 설치하고, 저장조 내부에 사체와 호기성 호열미생물, 왕겨혼합물, 나노기포 산소수 또는 물을 혼합하여 넣는다.



[그림 15] 저장조를 이용한 호기성 호열미생물 가축 매몰처리 개요도

⑯ 매몰지 조성 후 관리요령

- 매몰지 비가림시설은 매몰지 조성 후 10일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비가림시설 설치 전 비가 오면 비닐을 덮고, 비가 그치면 비늘을 걷어서 매몰지 내부로 빗물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덮은 비닐을 걷지 않을 경우 가축사체 분해시 발생하는 수증기의 증발을 억제하여 매몰지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다.
- 호기성 호열미생물의 활동여부는 온도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매몰지 조성 5일이 지나면 매몰지 내부온도는 60도를 넘는다. 온도계를 확인하여 매몰지 내부온도가 40도 이하인 경우 매몰지 곁면에 수분을 보충한다. 이때 보충하는 수분은 매몰지 조성시 투입한 왕겨혼합물의 양에 비례한다. 왕겨혼합물 30m³ 당 수분 100ml 계산하여 매몰지 곁면에 호스를 이용하여 뿌린다.

- 매몰지 조성 후 3개월 내에 링블로워 작동이 15일 이상 중단된 경우 매몰지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링블로워가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하여 교체하거나 여유분의 링블로워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 호기성 호열미생물을 사용하여 기축을 처리한 경우 매몰지 조성 5개월 후에 AI 및 구제역 균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2차 분해처리를 할 수 있다.
- 시료는 매몰지 상층 약 60cm 하부 지점의 기축사체 분해토양(3점, 50ml 코니컬 튜브 1/3의 양)을 코니컬 튜브에 채취하여 외부를 소독(채취시료는 소독금지)하고, AI 또는 구제역 균 등의 검사를 시·군 담당자가 검역본부 또는 시·도 정밀진단기관에 의뢰한다.

㉚ 매몰지 조성 후 2차 분해처리 방법

- 2차 분해처리는 사체분해 정도에 따라 분해 축진을 위하여 기준의 매몰지를 길이 방향 혹은 가로방향으로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미분해 사체의 분해축진을 위하여 호기성호열미생물, 물 또는 나노기포산소수를 추가하여 매몰지 길이방향 중앙부분이 용기한 봉분(^) 형태로 조성한다.
- 매몰지 조성 후 6개월 이내에 비가림시설이 폭우나 바람에 의해 소실된 경우 재설치하고, 6개월이 지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2차 분해처리한다.(일주일内外 소요)
- 2차 분해 처리 시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레임을 사용한 비가림 시설 대신 비닐을 덮어 대신한다.

[별표 12]

축사 청소·소독 프로그램

* 계사 형태,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농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작업내용 | 사용약품 | 방 법 | 주 의 사 항 |
|---|---|------------------|---|---|
| 청소-1 | 나풀 물 제거 및 보조 물통 물제거 | | | 물 밸브차단 |
| 청소-2 | 계분, 사료제거 기계·기구 분해, 유기물 제거, 천정 쓸기 | | | 계분 칼날 청소 확인 스크래퍼로 유기물 제거, 사료급이기와 계분 벨트의 남은 유기물도 제거 케이지 맨 위 천정의 먼지 쓸어내기 |
| 청소-3 | 콤프레샤 작업 (먼지 청소) | | 천정, 플랩→ 상단→하단→ 바닥 순 | 2명이 에어청소를 하고 1명이 바닥 쓸기 손이 닿지 않는 천정과 플랩의 먼지를 깨끗 하게 청소 |
| 청소-4 | 전기함 및 모터, 스위치 비닐 씌우기 | | | 계사 내 모든 전기 관련 기구 및 시설은 비 닐을 씌운다(습기예방용 밀 트임 필수). 모든 전기 스위치를 OFF(단, 전등만 ON)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체 확산 방지를 위해 먼지 발생 최소화(소독약 우선 저압 분무, 콤프레샤 제한적 사용, 환풍기팬 정지 등), 배수로 차단 및 소독철저 - 이동이 가능한 수동이송기, 급이통 및 도구 등은 축사 외부로 이동하여 세척·소독 실시, 소각·매몰 가능한 물품 처리 철저 - 창틀, 기둥, 틈새 등에 대하여 유기물 제거 등 철저한 청소 실시 | | | | |
| 세척-1 | 세척수 분무 | 계면활성제 | 천정→바닥 순 | 계사 내부가 세척액에 충분하게 적시도록 흡 뻑 분사한 후 다음 날 까지 불리기 |
| 세척-2 | 저압 분무기 세척 및 소독 | 4급 암모늄 | 천정, 플랩→ 상단→하단 순 (급이통, 사일로, 팬, 계분 피트, 리프트 세척, 바닥 세척) | 2명은 세척 청소하고 1명은 분무기 관리 (소독수 적정 비율 회석 확인) 우의, 장화, 고무장갑, 마스크 착용(작업자) 급이통(대차 위, 대차 밀기, 분무기 관리 각 1명 배치) 급이통, 사일로 세척 시 안전사고에 유의 바닥 물 제거 세척하는 동안 수시로 P.P 벨트를 구동시킴. |
| | 저압 분무기 | 4급 암모늄 (팜세이프) | 기구, 기계 | 소독 전 기계, 기구(이동대차 등) 반입하거나 동시에 소독될 수 있도록 조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 및 세정제 사용 시 세척(일반물) 및 건조 철저(세정제 사용 후 소독제사용 시 효과저하, 비건조 시 소독효과 감소 우려) - 세척시 더운물, 브러시 및 수세미 등을 사용하여 유기물, 먼지, 기름 등 제거하여 소독효과 제고 | | | | |

| 구 분 | 작업내용 | 사용약품 | 방 법 | 주 의 사 항 |
|--|---|--|----------------|--|
| 1차 소독 | 저압 분무기 분무 | 글루타알데히드 (라이프라인, 옴니사이드, Th4+) | 천정→벽면→ 바닥 순 | 표면이 젖을 수 있도록 흡뻑 분사 |
| | 건조 | | 팬 가동 | 전기함 비닐 제거 후 팬 가동, 계사 건조 시킴 |
| | 계사 1차 청소/세척/소독 완료 이후 주기적으로 쥐약을 충분히 놓고, 1회/주식 기계 시험가동을 해야 함. | | | |
| 2차 소독 | 저압 분무기 분무 | 글루타알데히드 (라이프라인, 옴니사이드, Th4+) | 천정→벽면→ 바닥 순 | 충분하게 적시도록 흡뻑 분사 |
| | 건조 | | 팬가동 | 건조가 잘 되었는지 확인 |
| - 마지막 훈증 또는 연막 소독 실시 전에 입식 준비(기구·기계 점검, 니플 점검, 전기함 등 비닐이 걷어졌는지 확인) 완료함 | | | | |
| 2차 소독-3 | 훈증 또는 연막소독 | 포르말린 블록 훈증 또는 글루타알데히드 (Th4+) 연막 소독 | 뒤→앞 순 | 계사 밀폐가 잘 되도록 확인하고, 정확한 필요량(계사별 부피) 계산하여 적정블록 사용함 방독면 착용 후 소독 실시. 다음 날 충분히 환기 |

[별표 13]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등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등)

1.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진입제한 행정명령(예시)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시설***의 종사자
 - * 사육시설 50m² 초과 농장
 -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예시)

- 제목 :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00시·도)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행정명령(예시)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 기간 :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회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 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예시)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기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회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 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 적용 대상 | 주요 명령 내용 | 비고 |
|--|---|----|
|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 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 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운송, 사료 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꾹히 재차 소독하여야 하며, 소독시설이 없는 출입구로 진입하거나 소독 시설이 고장 또는 동파 등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농장 내 진입을 금지함 -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 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

| 적용 대상 | 주요 명령 내용 | 비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 -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 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 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
|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영주시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 상차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 -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 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 ** 다만,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 -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 |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 | |

| 적용 대상 | 주요 명령 내용 | 비고 |
|---|---|----|
|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한다. -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 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 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p>*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p> | |
|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 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 <p>**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 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p> | |
| 종계 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 <p>*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p> <p>-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 까지는 출입이 가능</p> | |
|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농장 진입 전 | |

| 적용 대상 | 주요 명령 내용 | 비고 |
|--|---|----|
| | <p>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 (유선·문자·팩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 -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p>○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 -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 -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 | |
|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² 초과 농장) | <p>○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p>*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p> | |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예시)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 기간 :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별표 14]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공고)

□ 제목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m²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C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 안전사고 등 위험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생석회 도포가 어려울 것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
 - * (예시) ① 2m 이상의 차량소독 매트를 깔고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하며, 유기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오염을 최소화(특히, 차량 출입 전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
 - ② 3단계 소독 : 농장 입구에서 고압분무기로 바퀴 등을 소독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추가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실시(다만,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4. 오리 농장의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 농장의 왕겨 살포 등을 위해 왕겨살포기를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왕겨살포기의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왕겨 살포기가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m²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² 이상 1,000m²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 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 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9.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진입을 허용하고, 소독 등 관리할 것

- 가금농장 내로 사람·차량(진입이 허용된 특정 차량에 한함) 등이 진입할 경우,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도록 하며,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
- 소유자등은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된 특정 축산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하게 소독 실시

* 가축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

□ 시행기간 :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소독제별 특성 및 사용요령

1 소독제의 사용요령

1.1 비누 및 세정제

- 비누 및 세정제는 세척하는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소독효과를 반감시키는 유기물질,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함으로써 소독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비누나 세정제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소독효과가 있다. 더운 물, 브러시, 수세미 등을 사용하면 세척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다.

1.2 염기제제(alkalines)

- 가성소다(sodium hydroxide)나 탄산소다(sodium carbonate)가 사용된다. 비용이 저렴하여 대단위 소독에 적절하다. 세척과정에 나오는 지방이나 유기 물질에 대한 비누화작용을 가지고 있어 유기물질이 많은 축사, 가옥, 뜰, 하수구, 쓰레기 등의 소독을 실시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가성소다의 경우 2%, 탄산소다의 경우 4%가 되게 한다. 가성소다는 부식성이 매우 강하고 폐인트를 벗기기도 하므로 사람 및 차량, 기계·기구 소독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생석회는 동물용의약품은 아니지만 사체 및 토양 소독제로 주로 이용되며 토양에서는 pH 11~12의 강한 알칼리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사멸한다.

1.3 산성제제(acids)

- 기구류 등에 폭넓게 적용이 되며 다른 강산에 비하여 독성이 적다.
- 염산용액은 2%로 하여 사용한다. 소독효과는 10분이면 가능하다. 콘크리트나 금속성 기구류에 대해 부식성이 있으며 다른 소독제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1.4 알데하이드제제(aldehydes)

- 글루타알데하이드(glutaraldehyde)는 일반적으로 1~2%의 농도로 사용된다. 이것은 유기물질에 일부 오염되어 있어도 소독에 효과적이다. 금속성 물질에 대해서는 부식효과가 있고 생체에 독성이 있으며 대단위로 적용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포르말린(formalin)용액은 포르말린을 8%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포름알데하이드 훈증소독은 축사내부나 차량내부 등 공간소독에 탁월한 소독효과를 나타낸다. 소독공간은 건조하고, 밀폐되어야 한다. 포름알데하이드 가스는 15~24시간 동안 소독을 요하며 독성이 강하고 소독 후에는 완전히 환기시켜야 한다.

1.5 산화제

- 산화작용에 의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파괴하는 것으로 주로 염소계 또는 산소계 성분으로 구성된다.
- 차아염소산은 중성 pH 6~9일 때 가장 효과적이며, 유기물이 있을 경우 소독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 이염화이소시안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은 차아염소산에 비해 유기물이 있어도 비교적 효과가 있다.
- 베콘 S와 같이 복합염 및 산류의 복합소독제도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 생석회는 사체 및 토양 소독제로 주로 이용되며 토양에서는 pH 11~12의 강한 알칼리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토양 소독시 살포량은 m² 당 300~400g이 적당하다.

1.6 그 밖의 여러 가지 성분의 혼합제제로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효과가 공인된 제품에 한한다.

[별표 16]

오리농장 분뇨 처리요령

1. 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AI 음성 판정 오리농장 분뇨 발효 처리방안

1.1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AI 음성판정 농가에 한해,

- 축사 내 등에서 분뇨를 발효 처리(최소 28일 경과)하고 축사 세척·소독 후 분뇨 발효 평가* 및 농장 환경검사(시설·분뇨 등)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재사용 인정
- * 검역본부 현장 평가시 발효처리 기간이 경과한 농장의 경우에 관능검사 및 부숙도 검사 결과(종자 발아 검사법 제외), 부숙 후기 이상인 경우 발효처리 인정

<오리농장 분뇨 재사용 허용 기준 및 절차>

1) (발효 처리 장소) 축사내 분뇨는 반드시 한곳에 모은다(농장)

* 축사밖(퇴비장 등)으로 반출이 어려울 시 축사내 한켠에 모운다.

2) (발효 처리 방식) 발효처리를 위한 부재료(미생물제제 등) 투입, 비닐도포 및 소독(농장)

* 충분한 발효를 위해 주기적 교반 및 오염원 유출 차단을 위한 비닐 도포

3) (환경검사) 분뇨 등 정밀검사 실시(지자체)

* 입식신청 후 분뇨 발효 현장 평가를 위한 검역본부 현장점검 시 지자체와 공동 시료채취(축사별 20점) 후 지자체에서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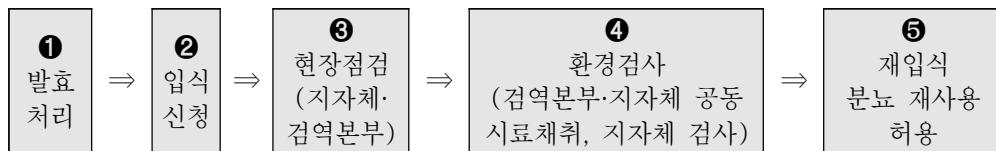
* 이미 발효처리한 농장의 경우, 해당 농장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부숙도 측정 결과를 현장점검 전 관할 지자체에 제출

4) (현장점검) 분뇨 발효 현장평가(관능평가 및 부숙도 측정 결과) 점검(검역본부)

⇒ 지자체는 농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숙도 측정 결과를 검역본부에 점검시 제출

5) (분뇨 재사용) 분뇨 발효 현장평가(붙임) 및 환경검사 음성 판정 후 재입식 가능 (분뇨 재사용 가능)

【재입식 평가 과정】



1.2 관리지역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AI 음성판정 농가에 한해,

- 관리지역내 예실농장(음성농장) 중 지역* 및 농장단위** 위험도가 낮은 농장에 한하여 보호·예찰지역내 예실농장에 대한 분뇨처리 조치 준용

* 고병원성 AI의 가금 농장 발생 및 야생조류 검출로 인한 방역대 내 미포함

**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과 울타리 등이 인접하지 않고, 기계·장비 등을 공동사용, 농장주·관리자 등이 공동 관리(출입) 등 역학 관련이 없는 경우

- 다만, 분뇨를 축사에서 반출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사 내 청소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재사용 인정(지자체 및 검역본부 확인)
* (청소 및 소독 방법) 발효처리된 분뇨를 축사 바닥(흙)이 나오도록 축사 한쪽에 모으고 청소 및 소독(바닥에 생석회 도포), 이후 기존 분뇨가 모여져 있던 곳의 축사 바닥이 나오도록 다른 곳으로 이동 후 청소 및 소독(바닥에 생석회 도포) 실시

[참고] 분뇨 발효 현장평가 시 참고사항

① 관능평가(준용)

| 평가항목 | | 평가내용 | | |
|-------|----|-------------|-------------|-------------------------|
| | | 초기 | 중기 | 후기 |
| 관능 평가 | 색깔 | 축분과 유사한 색 | 축분과 퇴비의 중간색 | 갈색(또는 흑색)이며, 축분의 형상이 소멸 |
| | | | | |
| | 냄새 | 아주 강한 축분 냄새 | 미세한 축분 냄새 | 흙냄새 등 퇴비 냄새 |
| | 수분 | 물기가 많이 나옴 | 물기가 약간 나옴 | 부스러기로 털어짐 |
| | | | | |

② 부속도 평가

-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속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부속도 측정 결과에 따라 부속 후기 또는 완료 판정을 받아야 함

[별표 17]

가금농장 통제초소 근무요령

< 초소 근무 요령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최 후방 근무임을 인지하고 사명감으로 근무』

1. 방역복 착용 후 초소에서(가축운송, 사료, 분뇨, 텁밥(왕겨) 이외 통제) 모든 출입차량과 출입자를 빠짐없이 기록(통제 여부 기록)
2. 차량 소독필증(날짜·출발지·목적지 확인)·차량스티커(농장주 차량) 확인 철저
3. 출입자·출입차량(바퀴 등 차량 하부 및 내부 필히 소독)에 대한 소독 실시
4. 초소 근무자는 농장 소유주 차량(축산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에 스티커가 붙은 경우만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을 허용
5. 시군담당자는 해당 모든 농장 기본정보(ex.역학농가, 농장주 연락처 등)와 출입제한 축산 차량 유형과 소독요령, 소독약 희석방법 등을 근무자에 필히 교육

1. 근무요령

- (복장) 근무자는 반드시 방역복, 덧신, 마스크 등 방역장구를 착용
- (근무) 농장초소의 임무를 충분히 숙지한 뒤, 정위치(초소 외부)에서 정자세로 대기하고 출입기록부를 빠짐없이 작성
 - * 근무 중 해당농가를 출입하거나 초소 내외부에서 장시간 핸드폰, 조는 등 근무 태만 금지
- (기본정보) 농장 정보, 출입제한 대상, 관할 부서(방역팀) 및 읍면 사무소 담당자·전담관 연락처, 거점소독시설 위치 등 기본사항 사전 확인
 - * 농장 기본정보와 출입 제한대상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초소에 배부하고 근무자 숙지도록 교육
- (소독약) 소독약 재고량, 유효기간 파악 및 소독약 희석요령 준수
 - * 소독약 희석 예시 : 1L 소독약 원액을 500L 물통에 투입시 500배 희석

- (임무) 농가에 필수 목적 이외 방문 차량·사람의 출입을 통제
- (출입통제) 필수 목적(사료, 분뇨, 가축운반, 왕겨, 방역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농장주 차량) 차량은 소독필증 꼼꼼히 확인 후 농장 출입을 허용
- * 계란(알) 운반차량은 농장입구까지 출입 가능(GPS를 장착하지 않은 알운반차량은 확인 즉시 지자체에 고발)
- * 주유소, 택배, 우편물, 친척, 인근 주민 방문도 농장 출입 제한
- * 축사·기계 수리, 축산 기자재 운반 등 화물차량의 출입도 필히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출입시 시군 사전 신고 여부 확인

◆ 농장 방문 목적의 차량·사람은 출입기록부에 빠짐없이 기재하고, 농장 출입/미출입 여부를 출입기록부에 기재

※ 추후, GPS 등으로 조사 결과, 고의누락 등의 사유 발생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소독·기록) 농장 출입차량·출입자는 빠짐없이 출입기록부에 기록하고 차량 내·외부, 사람 소독 실시(농장주 등 관계자 내·외부 출입시도 반드시 기록·소독)
- * 농가를 출입하는 농기계도 반드시 소독 실시
- * 기록 내용은 추후 역학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니 금번 배포한 출입기록부 양식에 꼼꼼히 작성
- (인수인계) 다음 근무자 도착 시, 그간 출입차량 방문기록, 소독약 재고량, 소독약 희석량 등 현황을 인수인계하고 복귀

[별표 18]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설치요령

1. 이동통제초소

1.1 이동통제초소 설치 시 규격은 아래를 참고한다(예시)

| 품목 | 규격 | 수량 | 비 고 |
|--------|----------------------------|-----|--|
| 경광등 | ◦ 980mm × 170mm × 160mm | 1대 | ◦ 적색 LED 야간점멸방식 |
| 마네킹 | ◦ 690mm × 470mm × 1820mm | 1대 | ◦ 양면 제작으로 전후방 동시사용이 가능하며 로봇 양팔 끝에 안내신호등 또는 경광등 탈부착이 용이 ◦ 머리 및 몸체는 성형제품이며 몸체에 방수형 우의착용, 이동 시 상체를 접을 수 있음 ◦ 하부에 2개의 바퀴부착 |
| 라바콘 | ◦ 380mm × 380mm × 700mm | 30개 | ◦ PE 재질, 야광지 모래주머니 포함 |
| 안내판 | ◦ 570mm × 60mm × 1000mm | 4개 | ◦ 부식방지를 위한 PE 재질 ◦ 안내글씨 : 「방역작업 중 & 서행운행」 |
| 차단막 | ◦ 2000mm × 75mm × 2700mm | 1조 | ◦ 부식방지를 위한 아연 각파이프로 틀 제작 ◦ 햇볕과 동파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
| 통제초소 | ◦ 6000mm × 3000mm × 2500mm | 1개 | ◦ 재질 및 구성 : 철제콘테이너, 창3개 (방충망 포함), 전기시설, 환풍기 판넬 시공 ※ 초소근무자 및 주변시설 확인을 위한 라이트 설치 |
| 과속 방지턱 | ◦ 1000mm × 500mm × 50mm | 16개 | ◦ 미끄럼방지를 위한 고무 재질, 아스 팔트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칼블록을 통해 고정 |

1.2 이동통제초소 설치(예시)



경광등



서행 안내판



차량통제 안내문



차단막



대인소독장비



간이화장실

1.3 통제초소 구성품(예시)



경광등



마네킹



라바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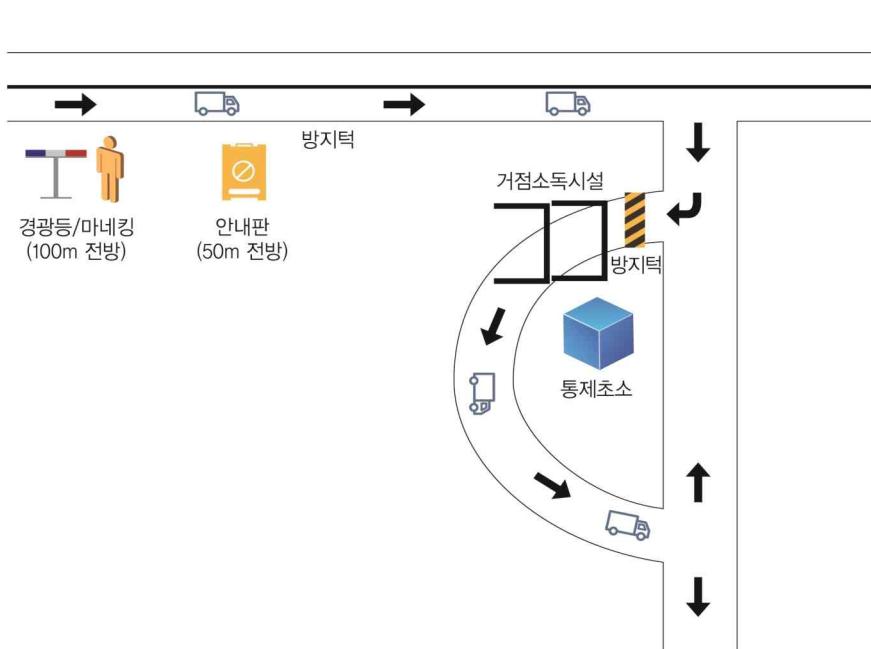


안내판



방지턱

1.4 통제초소 설치 모식도(예시)



2. 거점소독시설

2.1 터널식 거점소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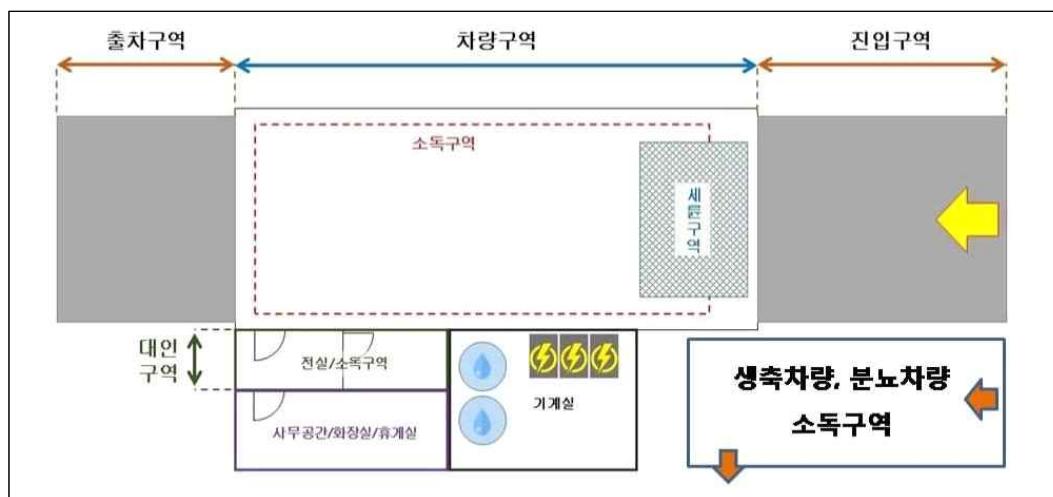
2.1.1. 시설 기본사항(예시)

| 구분 | 전체규격 | 구역 및 구성 | 세부규격 | 요구사항 |
|-------|--|--|--|---|
| 진입 구역 | 길이: 5.5m 이상 | LED 입간판 | – | – |
| | | 차량인식 바닥센서 | – | – |
| | | 차단기 | – | – |
| | | 차량인식기 | – | – |
| | | 스피드도어 | – | – |
| 차량 구역 | 길이: 20.0m 이상 너비: 4.5m 이상 높이: 4.8m 이상 | 세륜구역 (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이: 2.4m 이상 ○ 높이: 1.3m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면 충돌방지시설 ※ 5톤 대형트럭 기준 – 최대하중 60t 이상 |
| | | 세륜구역* | 기타사항 참고 | |
| | | 소독구역 (소독액 분무방식) ※ 자외선, 오존 등 미검증 소독설비 불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하부를 포함한 차량전체가 소독액으로 젖을수 있도록 노즐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증 필수 ○ 노즐배치 및 배율권고 : 상부 1/측면 3/ 하 부 7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소독: 12.0m 이 상 ※ 생축 또는 분뇨 상차시 차량 하부만 소독토록 기 능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즐 간격 0.5m 이하 (차체하부 및 바퀴부근 도포능력 검증) |
| | | | | |
| 출차 구역 | 길이: 5.5m 이상 | 스피드도어 | – | – |
| | | 차량인식 바닥센서 | – | – |
| 대인 구역 | 높이: 2.5m 이상 | 전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입간판 |
| | | 소독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에 무해한 소독액 사용(자외선, 오존 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필증 발급기 |
| 사무실 | 높이: 2.5m 이상 | 사무공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구역 전실과 출입문으로 구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구역 전실을 창문으로 확인 가능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샤워실 ○ 휴게실/탈의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과 출입문 으로 구분 |
| 기계실 | 높이: 2.5m 이상 | 기계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세륜용 물탱크 모터/약재회석장치 컨트롤/열선박스 | |

2.1.2 시설 기타사항(예시)

| 구분 | 구역 및 구성 | 요구사항 |
|------------|---------------|---|
| 일반 차량구역 | 차량 세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외부(바퀴/차체하부) 자동세륜을 실시하여, 다량의 유기물 존재시 상주인력이 수동으로 세척 (특히, 생축·분뇨차량은 일반 차량구역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수동세척 실시) 세륜기기 세척관리 철저 수동세척이 가능하도록 고압 분무 세척기 구비 |
| 생축·분뇨 차량구역 | 생축·분뇨차량 소독·세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축·분뇨차량에 대해 근무자가 고압분무기로 지정 공간에서 수동세척 실시 |
| 기타 | 비품 보관창고 | <p>[약제보관 및 방역비품창고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제종류(염기, 산성, 알데하이드, 산화제, 세정제 등)에 따라 구분 및 별도 보관 기타 방역비품 및 장비 별도보관 |
| | 주차장 및 배수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시설 내 비품 및 물자 전달 공간 시설 상주 인력 및 방문자 자가 차량 주차 활용 시설물 안전을 위한 배수로 확보 |
| 공통 | 진입/차량/대인/출차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선 등 동파방지 시설 필수 전기/화재/화공/기계/일반사고 안전대비 시설 필수 통신(인터넷/전화 등) 시설 필수 |

2.1.3 소독장소 설치 모식도(예시)



2.2 U자형 거점소독시설

2.2.1 시설 기본사항(예시)

※ 노즐설치 방향 기준 : 가로방향은 차량진입 방향, 세로방향은 차량진입 직각
방향 차량 소독구간(소독~출차) 길이는 11m 이상

| 구분 | 전체규격 | 구역 및 구성 | 세부규격 | 요구사항 |
|-------|--|-------------|--|--|
| 진입 구역 | 너비 : 4.5m 이상 | 입간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간판 제원 가로 1,200mm 이상 세로 2,400mm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이식 형태로 이동이 용이 ○ 설치 및 철거 편리 ○ 스틸 제품 사용(파손여부) ○ 높은 시인성 및 반사지 (야간 및 원거리 식별) |
| | | 차량 인식 센서 | | 작업자에 의한 수동조절 방식 또는 도로 면 위 설치에 의한 자동인식 방식 |
| | | 고무 과속 방지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특성 맞춤 규격 ○ 2m 간격 이상 복수라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식 형태로 부분보수 작업 가능 ○ 설치 및 철거 편리 ○ 내구성 고려 |
| | | 첨멸등 및 야간 조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기 상단 및 하단 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시인성 및 반사지 (야간 및 원거리 식별) |
| 세륜 구역 | 너비 : 4.5m 이상 | 세륜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외부(차체하부/바퀴) 세척이 가능 능한 고압분무기 등 수동세척기 구비 |
| 소독 구역 | 길이 : 6m 이상 너비 : 4.5m 이상 높이 : 3m 내외 (생축·분뇨 차량은 1.5m 내외) | 측면 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풍 설비 : 길이 3m 내외 높이 3m(단, 생축분뇨 차량 전용인 경우 1.5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 영향 고려 ○ 생축분뇨차량의 경우 하부소독 고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즐 설비 : 타공 0.3mm (굵기) 분무 65° (각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즐 각도 및 방향 조정 가능 ○ 동절기 동파 대비 열선 구비 |
| | | 하부 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즐 배치 : 가로방향(차량진입 방향) 50cm 간격 노즐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체 측면 95% 이상 도포 가능 요구 ○ 가로방향 3열 이상 설치(단, 생축분뇨 차량 전용(1.5m)인 경우 2열 이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 설비 : 길이 6m 이상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즐 설비 : 타공 0.3mm (굵기) 분무 65° (각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즐 각도 및 방향 조정 가능 ○ 동절기 동파 대비 열선 구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즐 배치 : 가로 또는 세로방향 50cm 간격 노즐 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체 하부 95% 이상 도포 가능 요구 ○ 가로방향 2열 이상 또는 세로방향 3 열 이상 설치(택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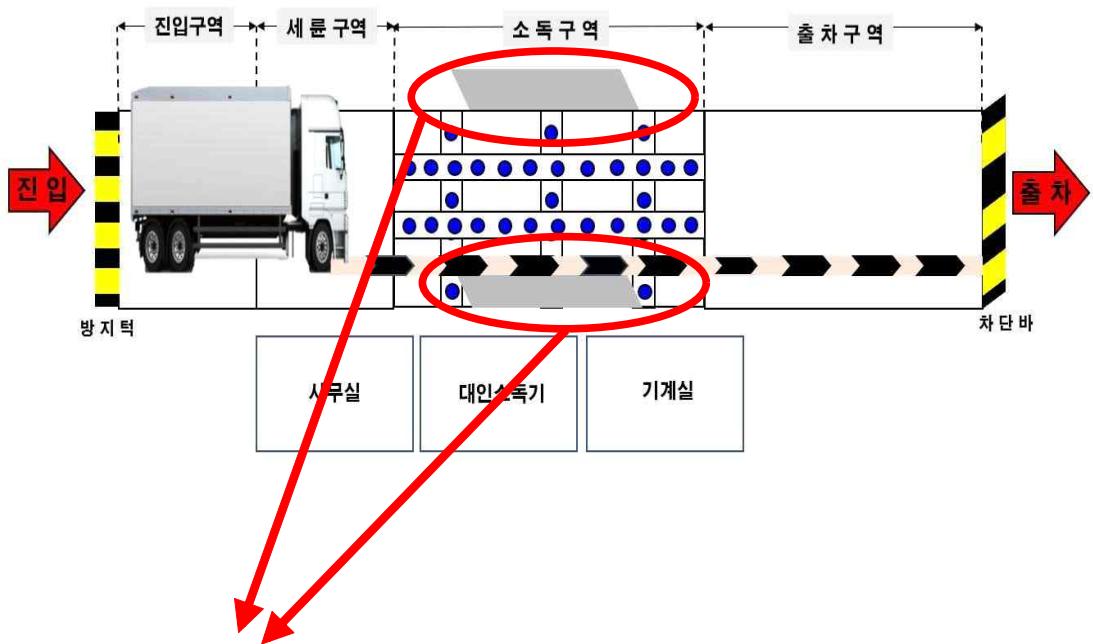
| 구분 | 전체규격 | 구역 및 구성 | 세부규격 | 요구사항 |
|-------|--------------|--------------|---|---|
| 출차 구역 | 너비 : 4.5m 이상 | 고무과속 방지턱 차단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특성 맞춤 규격 ◦ 소독기의 작동과 연계된 차단바 설치, 혹은 작업자에 의한 수동 통제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식 형태로 부분보수 작업 가능 ◦ 설치 및 철거 편리 ◦ 탁월한 내구성 |
| 대인 구역 | 높이 : 2.5m 이상 | 전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간판 및 팻말 부착 |
| | | 소독 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체에 무해한 소독 방법 채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물질 인체 무해 근거 ◦ 호흡기 및 인체 방호장치 ◦ 비상안전장치 등 |
| 사무실 | 높이 : 2.5m 이상 | 사무 공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구역 전실과 출입문 구분 |
| | | 사무 공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구역 전실을 창문으로 확인 가능 |
| | | 화장실/샤워실 | – | |
| | | 휴게실/탈의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공간과 출입문 구분 |
| 기계실 | 높이 : 2.5m 이상 | 기계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탱크 : 5ton 1ea ◦ 분무기 펌프 : 100A, 7.5HP (소독시설 6m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ton 이하 물탱크 2개 이상 구비 ◦ 축종에 맞는 소독제 구비 ◦ 컨트롤 / 열선박스 ◦ 분무기 펌프(소독시설 크기에 따라 상이) ◦ 수동세척 가능한 고압분무기 구비 ◦ 동절기 스텀 고압세척기 구비 |

2.2.2 시설 기타사항(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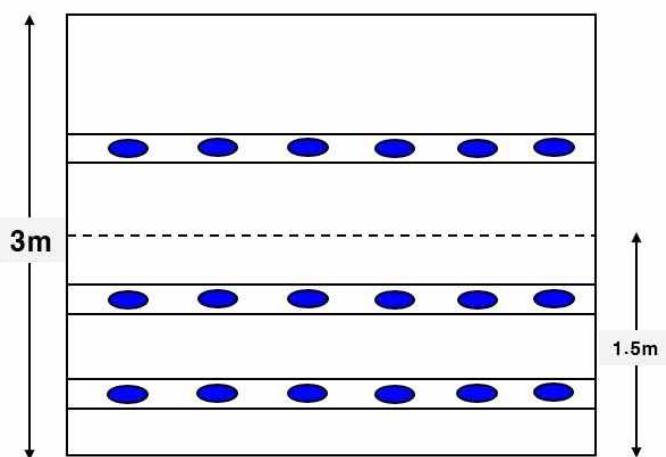
| 구분 | 구역 및 구성 | 요구사항 |
|----|----------------------------|---|
| 기타 | 비품 보관창고 | <p>[약제보관 및 방역비품창고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제 종류(산성, 알데하이드, 산화제, 세정제 등)에 따라 구분 및 별도 보관 ◦ 기타 방역비품 및 장비 별도보관 |
| | 주차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 ◦ 시설 내 비품 및 물자 전달 공간 ◦ 시설 상주 인력 및 방문자 자가 차량 주차 활용 |
| 공통 | 진입 구역, 차량 구역, 대인 구역, 출차 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선 등 동파 방지 시설 필수 ◦ 전기/화재/화공/기계/일반사고 안전대비 시설 필수 ◦ 통신(인터넷/전화 등) 시설 필수 |

2.2.3 소독장소 설치 모식도(예시)

<평면도>



<측면구역(양면설치)>



[별표 19]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 구 분 | 단계별 | 단계별 준비사항 및 조치사항 |
|----------|-------------------------------------|--|
| | 1단계 (이동제한 해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 및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 조치가 끝난 날부터 28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관리·보호지역 포함) 안의 1.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 시 혈청검사·항원검사) 2. 오리 검사(혈청검사 및 항원검사) 3. 사육하지 않는 빈 축사의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 검사 <p style="margin-left: 20px;">※ 1., 2., 3.의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 이동제한 해제</p> |
| 사전 준비 | 2단계 (분뇨(변) 및 오염(의심) 물건 조치) |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살처분 시 농장내 매몰 2. 살처분 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석회 도포 또는 소독약 살포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 후 28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환경검사, 분뇨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 처리 3. 농장 밖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완료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환경검사(분뇨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다만, 농장에서 청소·세척을 완료하고 가축방역관이 확인한 경우 40일이 지난 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분뇨 반출 가능 * 이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필요 ○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생산물(알·깃털 등) : 소각 또는 매몰 2. 배합사료·조사료·깔짚·왕겨 등 : 소각 또는 매몰 3.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4. 가축의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 : 소각 또는 매몰 |
| | 3단계 |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의 소독실시 요령 |

| 구 분 | 단계별 | 단계별 준비사항 및 조치사항 |
|-------|-------------------|---|
| | (청소·세척 및 소독) | <p>1단계 : 축사 내 바닥 및 분뇨 소독(2일 간격 3회 이상), 훈증소독(12시간 이상 또는 소독제 용법에 명시된 시간) 및 환기 2단계 : 청소(천장→벽면→케이지→바닥 순서, 분뇨·털·각종 물품 청소, 구석진 곳은 토치·램프 소각[*]), 세척·소독(천장→벽면→케이지→바닥), 훈증소독(12시간 이상 또는 소독제 용법에 명시된 시간) * 화재 등 안전사고에 유의 3단계 : 2단계 미흡사항 보완, 2단계의 세척·소독, 훈증소독 요령에 따라 소독 4단계 : 3단계 미흡사항 보완, 2단계의 세척·소독, 훈증소독 요령에 따라 소독 ○ 농장 내 사용약품·창고 등과 거주자, 분뇨 처리장비·도구 등(스키로더·차량, 분뇨처리도구, 소독장비, 농장 주변지역, 살처분·매몰 장소 등) ※ 농장주는 재입식 시까지 주 2회 이상 세척·소독하고 시·군 관계관은 매주 1회 이상 점검 실시(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참조) </p> |
| 입식 절차 | 1단계 (농장 점검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준비 완료 후 농장주가 해당 시·군으로 입식시험 전 점검 신청 ※ 농장의 소유자등은 감수성 가축을 재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왕겨, 사료, 깔짚 등의 농장내 반입 금지 |
| | 2단계 (농장 1차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군에서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전 점검(1차) 실시 (별지 제4호 서식) |
| | 3단계 (확인 점검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식시험 전 점검(1차) 결과 적합일 경우 검역본부로 확인 점검 요청 ※ 부적합일 경우 농장 보완 조치 및 재점검 실시 |
| | 4단계 (농장 2차 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본부에서 해당 시·군에서 요청한 농장 확인 점검(2차) |
| | 5단계 (입식시험 승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확인 점검(2차) 결과 적합일 경우 검역본부 입식시험 승인 ※ 부적합일 경우 해당 시·군에 농장 보완 조치 통보 및 재점검 실시 |
| | 6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환경검사(정밀검사) 실시 |

| 구 분 | 단계별 | 단계별 준비사항 및 조치사항 |
|-----------------------|-----|--|
| (입식시험 진행)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인 경우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에 보고 ○ 시험가축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비발생지역(방역지역 외)의 4~12주령의 산란계 중추(응추 포함 가능) 또는 4~5주 육계 최소 모든 축사당 최소 5수 이상 -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음성(별지 제5호 서식) ○ 입식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또는 시·도 가축방역관 : 입식시험 개시 후 14일까지 2일마다 임상검사 실시, 축사별 임상검사 내역기록(별지 제6호 서식) - 시·도 가축방역기관 : 입식시험 개시 2주 경과 후 정밀검사 (혈청검사) 실시 ○ 입식시험 중 H9형 등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H7형 이외) 항체가 검출될 경우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식시험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시험가축을 공급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도축장 등으로 사육 중인 가금을 출하하여 농장 내 가금이 없을 경우 환경검사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
| 7단계 (재입식 승인 요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군에서는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고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 첨부(시험가축 선정 서류,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 입식시험 임상검사표, 혈청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 등) |
| 8단계 (재입식 승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본부는 해당 시·군에서 제출한 입식시험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적합일 경우 최근 5년간 2번 이상 발생한 농가의 경우에는 차단방역 교육(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4시간)을 실시 후 재입식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일 경우 해당 시·군에 보완 조치 |

* 관련규정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가축의 재사육), [별표 7] 입식시험 실시요령 참조

** 관련서식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참조

[별표 20]

살처분 등 참여자 예방교육 및 심리지원요령

1. 목적

살처분 및 사체처리 현장에 동원된 자에 대한 트라우마 예방 및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2. 살처분 및 사체처리 참여자의 트라우마 예방 및 안전 교육

2.1 시군구에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전 살처분 및 사체처리 예비인력을 편성한 후 살처분 작업 전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상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예방교육은 살처분에 참여하는 대상자(감독관, 가축방역담당 및 일반 작업자)에게 실시하며, 심리적 예방법 등 심리지원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심리지원기관(중앙재난심리회복협의회,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등)에 교육 지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1.1 감독관(시군 관계관)

- 축종별 살처분 및 매몰 시나리오에 따른 구성원에 대한 역할분담
- 살처분 등에 필요한 규모별 작업인원, 준비물, 소각·매몰 장소 위치 등 사전준비사항
- 살처분 후 발생농장 세척·소독 등 사후관리

2.1.2 가축방역관 등 방역담당자

- 살처분 등 준비상황 사전점검 및 소각·매몰 장소 점검
- 살처분 등 절차 및 소각·매몰 지시 및 감독
- 살처분 참여인력의 소독 등 방역관련 지도·감독
- 살처분 후 세척·소독 등 사후관리 지도·감독
-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유전자원 확보용 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 살처분 등 참여자에 대한 심리지원 안내 등

2.1.3 일반 작업자(감독관 및 방역담당자 포함)

- 질병의 특성, 발생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가축 살처분의 필요성
- 대상 축종별 살처분 방법

- 소각, 매몰 등 사체처리 및 소독 등 사후처리 방법
- 개인보호장구 착용방법, 소독 등 개인방역 수칙 및 작업 안전 수칙(인체 감염예방 수칙 포함)
-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참여할 수 없는 자
- 재난심리지원체계,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지원내용(전담기관, 비용지원 등)
- 살처분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처법 등 심리적 예방법

3. 살처분 및 사체처리 참여자 등의 심리적·정신적 상담 등 지원

3.1 심리지원 대상

-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 자원봉사자 등 그 밖에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한 사람

3.2 전담심리지원기관

- 행정안전부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적·정신적 상담 등 지원

3.3 살처분 및 사체처리 참여자 등의 작업 전·후 심리지원 조치

- 3.3.1 시군구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실시하기 전에 심리지원 대상자에게 살처분 작업환경,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심리적·신체적 사전 체크리스트(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외국인에게는 번역자료를 제공)를 제공하여 문답도록 한다.
- 이용 가능한 전담심리지원기관 현황(기관명, 위치, 연락처 등)
 - 전담심리지원기관에서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
 - 만약 전담지원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
 -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심리지원 대상자가 별도로 심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전담기관 및 지원 사항에 대한 안내

3.3.2 시군구는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실시할 당시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심리지원 대상자에게 살처분이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3.3.1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3.3.3 시군구는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실시한 후에 심리지원 대상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사후 체크리스트(별지 제15호 서식 참조, 외국인에게는 번역자료를 제공)를 제공하여 문답토록 하고 참여자가 귀가 전 자가검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심리적·신체적 사전·사후 체크리스트, 심리지원기관 안내서 활용 가능)하여 귀가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3.4 시군구는 살처분 및 소각·매몰을 실시한 후에 심리지원 대상자의 인적사항(대상구분, 이름, 연락처 등), 참여사항(살처분참여 시기, 대상구분 등) 및 심리적·신체적 사전·사후 체크리스트 문답결과를 전담심리지원기관에 제공(서면, 전자문서 등)하여 심리지원기관에서 적절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4 심리지원 안내 및 전담심리지원 심리 결과 보고

3.4.1 시군구에서는 살처분 및 사체처리 참여자에 대한 심리지원사항에 대하여 안내한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취합 후 농식품부에 보고한다.

3.4.2 전담심리지원기관에서는 살처분 및 사체처리 참여자에 대한 심리지원사항에 대하여 심리지원 결과를 매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취합 후 농식품부, 행안부에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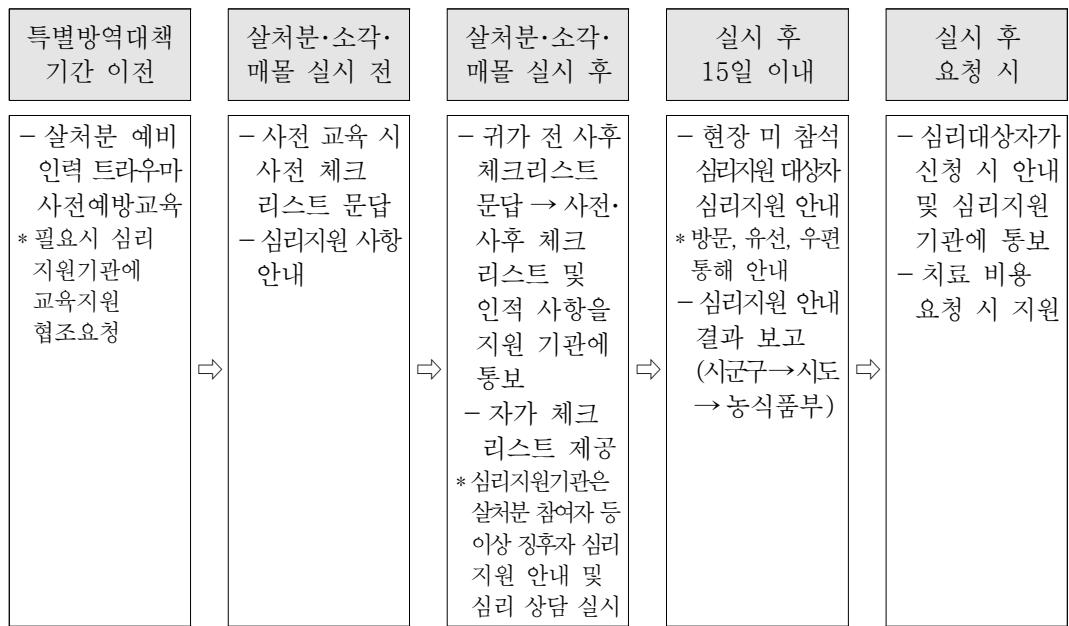
[보고 양식] 심리상담 실적 보고 양식

❖ (심리상담) 상담사 투입: 00명, 심리상담: 00명, 치료연계: 0건, 심리안내 : 0건

| 구 분 | 금일(0월 0일) | | | | 누계(0월 0일~) | | | |
|------------|--------------|-------------|-------------|-------------|--------------|-------------|-------------|-------------|
| | 상담사 투입(명) | 상담실적 (명) | 치료연계 (건) | 심리안내 (건) | 상담사 투입(명) | 상담실적 (명) | 치료연계 (건) | 심리안내 (건) |
| 합 계 | | | | | | | | |
| 국가트라우마센터 | | | | | | | | |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 | | | | | | |

※ 특이사항

<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 심리지원 절차도 >



[별표 21]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 ☞ 본인(팀장)을 포함한 _____원들은 _____시도 _____시군구 소재 _____농장을
을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_____목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아래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만약,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상기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확인 사항(해당란에 ○ 표시) –

1. 오늘 다른 가금농장을 방문하지 않았음 : 예 / 아니오
2. 농장 진입 전 방역교육을 받았음 : 예 / 아니오
3. 등록된 축산차량(GPS 장착)을 통해 농장으로 이동하였고,
농장 외부에 차량을 주차함 : 예 / 아니오
4. 농장 출입 시 새 방역복과 신발(덧신) 등을 착용하였고,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손과 신발 소독을 실시하였음 : 예 / 아니오
5. 붙임 출입자 명단(다음페이지)를 작성하였음 : 예 / 아니오
6. 농장에서 사용한 방역복과 덧신 등은 폐기하였고
의복과 순, 신발, 사용도구를 소독하였음 : 예 / 아니오

팀장 성명 : 연락처 : 서명

확인서(농장주 또는 관리자 서명)

- ☞ 본인은 농장 출입자들이 상기의 방역수칙(3~6)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농장주(관리자) 성명 : 연락처 : 서명

[별표 22]

도축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시 폐쇄조치 해제절차

□ 도축장 폐쇄기간 및 해제 절차

- (폐쇄기간) 방역 시설·운영 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과 환경검사 결과 음성 판정 결과 등 검역본부장의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 (도축장 세척·소독) 해당 도축장의 경영자는 발생일로부터 폐쇄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이상(도축장 내외 시설·장비, 차량, 진입로 등) 청소·세척 및 소독 실시
- (도축장 시설 및 운영 점검) 방역·소독시설 구비 및 운영실태 점검
 - (시설점검) 외부 차단 및 출입통제, 차량 소독시설, 대인 소독, 도축 작업소독시설, 가금류 수송용기 세척 및 소독시설, 폐기물 및 부산물 처리시설, 도축장 환경 등
 - (운영실태) 차량 GPS 장착·자동, 계류장 내외부 소독, 구서 및 방충 조치, 출입 차량 소독 적정 여부(기록부, 소독필증, 소독제 등), AI 검사 적정 여부, 이동승인서 확인, 어리장 적정 소독 여부 등

⇒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도축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환경검사 실시

* 미흡사항이 발견된 경우 환경검사 요청 전에 보완조치 후 현장점검 재실시
- (도축장 환경검사) 도축장에 대해 환경시료 채취 및 검사
 - (시기) 청소·세척 및 소독 완료, 시설 및 운영실태 점검 후 관할 지자체에서 환경시료 검사요청시
 -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 시도 가축방역기관
 - (시료채취 내역) 도축장 실내 및 실외 오염 우려 지점별 각 5점씩 채취, 가축 운송차량은 바퀴, 어리장, 운전석발판 등에서 각 2점씩 채취
 - * 도축장 실내 : ① 생계투입구, ② 현수실, ③ 컨베어벨트, ④ 방혈대, ⑤ 내장적출기, ⑥ 칠러실, ⑦ 냉장 보관실, ⑧ 작업자 의복 및 장화 등
 - ** 도축장 실외 : ① 정문출입구, ② 계류장, ③ 어리장, ④ 생체운송차량 ⑤ 작업자 의복 및 장화 등
 - *** 도축장 내·외부 청소·세척·소독 상태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 가감
 - (검사방법) 유전자검사(rRT-PCR) 또는 종란접종법

□ 해제 판정

○ (해제판정) 관할 지자체의 현장점검 결과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환경검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 해당 도축장에 해제 통보

- 환경검사 결과 양성 시 조치사항

- (도축장) 시설 내외부을 충분히 청소·세척 및 소독, 환경검사 실시
- (검출보고) 농식품부(검역본부 방역감시과)에 환경검사 결과 보고

□ 도축장 폐쇄 해제 후 방역조치 사항

○ (가축방역관 지정·운영) 관할 지자체 소독전담관 1명 지정 및 관리(10일 이상)

○ (서류관리 계획) 모든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발급 여부 확인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 출입기록 관리 확인

- 생체운반 차량은 농장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 소독 실시, 3단계(업소/거점/농장) 소독 확인 철저
* ‘도축장→거점소독시설→농장→거점소독시설→도축장’

- 도축장 주변 및 도로에 방역차량(소독차량)을 배치하여 소독 실시
* ① 축산 차량 이동 동선 소독, ② 도축장 주변 등에 대하여 주기적 소독 실시

○ (도축계획 확인 등) 업체의 도축 계획(출하 농장, 두수 등) 사전 확인을 통해, 방역상 소홀함이 없도록 도축 관리 철저

- 출하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기간 준수 확인

⇒ (도축장 폐쇄해제 검토결과) 상기 폐쇄해제 절차 준수와 폐쇄 해제 후 방역조치 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해제

[별표 23]

가금농장 알 상차장소 방역관리 요령

□ 알 상차 장소 방역관리 요령

- (위치)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농장 출입구 밖 또는 출입구 인근의 구획된 장소이어야 함(예시 1, 2 참조)

* 농장과 멀리 떨어진 장소(예 : 50m 이상)에서 상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 고압분무기 등 소독시설을 구비·운영하여야 함

- (외부 차량)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사람, 파레트 등 포함)에 대해 진출입 시마다 소독 실시

* U자형 고정식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압분무기를 활용하여 차량 바퀴 및 차량 하부 등을 추가로 꼼꼼히 소독

- (내부 차량·장비) 알 운반에 사용되는 농장 내부 차량·장비(지게차·손수레 등 포함) 등과 외부 알 운반차량은 상차 장소를 기준으로 교차되지 않도록 엄격히 분리하고 농장 내부 차량·장비도 농장 출입 시마다 소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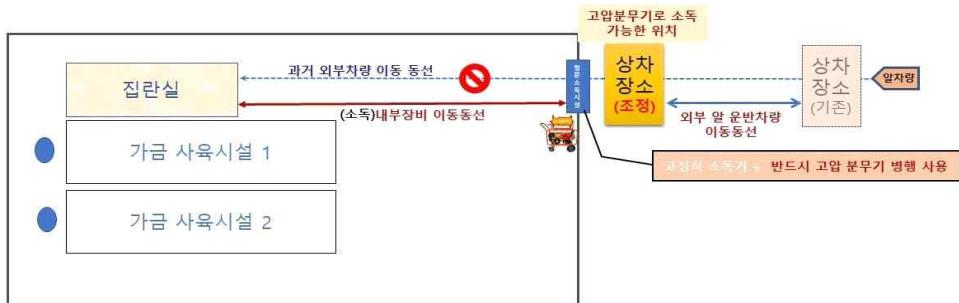
* 농장 내부 차량·장비는 상차 장소 밖으로 진출입 금지

- (상차 장소 및 이동 동선) 알 상차 전후로 상차 장소를 수시 청소·소독하고 이동 동선(농장 마당, 길, 도로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

- (차량등록 확인) 외부 알 운반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등록 여부 및 GPS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농장 종사자 또는 환적장 관리자는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차량이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GPS 고장 등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출입을 금지시키고 방역기관에 신고

산란계 농장 알 상차 장소 운영요령(예시1)



산란계 농장 알 상차 장소 운영요령(예시2)



별 지

1.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2. 현지조사표
3. 시료채취내역서
 - 3의1. 시료채취내역서(야생조류)
4.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전 청소·소독 등 점검표
5.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
6.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임상검사표(축사별)
7.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8. 가축거래기록대장 (가금공급농가 및 판매소)
 - 8의2. 가축거래기록대장 (가금 거래상인)
 - 8의3. 식용란거래기록대장 (식용란수집판매업자)
9. 소독필증
 - 9의1. 가금농장 통제초소 출입기록부
10.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
11. 역학조사서 서식
12.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기록부
 - 12의1. 가금농장 통제초소 출입기록부
13.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14.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살처분·사체처리 참여자 등)
15.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체크리스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별지 제1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 발생신고서

접수시간 : 오전

1. 신고접수일 : _____ 오후 _____

2. 신고자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성명 : _____ (직업) _____

3. 발생농가의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성명 : _____ (휴대전화) : _____

4. 신고사항

축종 : 닭(종계·산란계·육계·토종닭·삼계), 오리(종오리·육용오리), 기타

사육수수 : 주령 :

발생수수 : 폐사수수(최근 5일간) :

산란율 감소여부 :

5. 증상 및 병력개요

6. 기취한 응급조치

7. 신고자에 대한 지시사항

8. 신고수리자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9. 조치사항

[별지 제2호서식]

현지조사표

[별지 제3호서식]

시료채취내역서

※ 검사의뢰서는 의뢰대상 동물·시료 특성 등을 감안 필요시 변경 가능하나, 폐사여부·기타 임상증상·폐사체 사항을 반드시 기록

* 검사의뢰시 의뢰자는 반드시 상기 시료채취내역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의뢰

[별지 제3의1호서식]

시료채취내역서(야생조류)

| <input type="checkbox"/> 시료채취일 : <input type="checkbox"/> 시료채취자 : (소속) (성명)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시료채취장소 <input type="radio"/> 주 소 : <input type="checkbox"/> 시료채취 내역 | | | | | | | |
|--|---------|--------|---------|----|----|-------------|----|
| 연번 | 시료채취 장소 | | 시료채취 내역 | | | | 비고 |
| | 주 소 | 위경도 좌표 | 폐사체 | 분변 | 깃털 | 기타 (물)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시료에 대한 AI 검사(항체 및 항원)를 의뢰합니다.

의뢰 기관 :
의뢰 일자 :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전 청소·소독 등 점검표 농장현황

| | | | |
|-------------|--|-------|---------|
| 축산업등록(허가)번호 | | 농 가 명 | 축 주 명 |
| 전화번호 | | 소재지 | 이동제한해제일 |
| 사육축종 | | 사육동수 | 사육두수 |

 입식전 점검사항

가. 청소 · 소독

| 점검내역 | 점 검 결 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
|----------|--|
| 주택·관리사창고 | 신발소독조□, 내부□, 외부□, 거주시 사용물품□, 화장실□ |
| 축사 | 외부□, 신발소독조□, 바닥□, 울타리□, 벽□, 원치커턴□, 기둥□, 천장□, 기구보관 등 창고□, 냉장고□, 분뇨처리□, 축사 내부 소독□, 배수로 정비□ |
| 운동장 | 바닥□, 울타리□, 분뇨처리□ |
| 방역실 | 신발소독조□, 내부□, 외부□ |
| 전실 | 신발소독조□, 장화비치□, 손소독제□, 축사전용작업복□,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 |
| 작업도구 | 트랙터□, 차량□, 손수레□, 삽□, 청소도구□,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도구□ |

나. 소각·매몰

| |
|-------------------------------------|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급여중이던 사료□, 보관사료□, 보관왕겨□ |
| 음식물찌꺼기□, 의복□, 신발□, 장화□, 소각가능한 물품□ |
| 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작업도구(빗자루□, 기타□) |

다. 강화된 방역시설 상태 및 요건

| |
|--|
| 농장 출입구 및 농장 내 소독시설(대인, 차량) 유무□, CCTV 설치 및 작동 상태□ |
| 농장 주변 울타리 및 출입 통제문 유무□, 구서 여부(구서제, 쥐덫 등)□, 구충 여부□ |
|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설치 유무(축사·벽면·환풍구·배수로·집란용 컨베이어벨트·분변 제거 개구부·분뇨처리장)□ |
| 매몰지 부지 확보 여부□, 왕겨 보관 및 차단상태□ |
| ※ 관할 시·군은 농장 내·외 농경지, 시유지 등 매몰부지 확인 |
|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보완 여부□ |
| 행정명령 및 강화된 방역기준, 방역수칙 등 숙지 여부□ |

※ 점검과정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미흡사항을 보완 조치한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실시

[별지 제5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 구분 | 점검내역 | 점검결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표시) | | |
|--------------------------|---|---|----------------------|--------------|
| 시험축 입식전 사 전 점 검 | 구입처 | 구입처() | 구입일자() | 운송방법() |
| | 구입축 | 축종(닭 수), 품종() | 나이(주령) | 성별(♂ 수, ♀ 수) |
| | 임상관찰 | 사료섭취감소□, 침울□, 설사□, 기침등 호흡기 증상□, 안면부종□, 벼슬·육수의 청색증□, 기타 특이사항□ | | |
| | 혈청검사 | 시험축 사육농장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확인여부□ | | |
| | 예방접종 | 뉴캣슬병□, 전염성F낭병□, | □ | □ |
| |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방역지역)에서 생산된 가축은 시험가축으로 입식 불가 | | | |
| 사 양 관 리 | 시험관리 | – 시험가축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방책설치□ – 계사형태·상황을 고려하여 계사내에서 이동사육□ :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오염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분에 접촉 가능하도록 사육 (케이지 사육형태인 경우 이동식 케이지 이용가능) | | |
| | 사료급여 | – 사료회사 : – 사료운송 방법 : – 사료급여 방법 : | 왕겨구입처 : 왕겨 운송방법 : | |
| | 점검자 : 소속 | 직(위)급 | 성명 | 점검일시 |

- ※ 축주 주의사항 1. 외부인, 타 축산인 등 농가 출입금지
 2. 축주의 친인척, 관혼상제 및 타농가 방문자제 협조
 3. 농장 출입구 소독조 설치 및 농장주위 소독철저 등

[별지 제6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임상검사표(축사별)

○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 시험일자 | | 주요 임상증상 | | | | | | | 점검자 (소속 성명) |
|---------------------------------------|---------------|----------|--------|--------|---------------|----------|----------------|--------|----------------|
| | | 식욕 감소 | 침 울 | 설 사 | 기침 등 호흡기증상 | 안면 부종 | 벼슬·육수 의 청색증 | 폐 사 | |
| 1주 ~ 2주 | 입식일 (월 일) | | | | | | | | |
| | 2일 (월 일) | | | | | | | | |
| | 4일 (월 일) | | | | | | | | |
| | 6일 (월 일) | | | | | | | | |
| | 8일 (월 일) | | | | | | | | |
| | 10일 (월 일) | | | | | | | | |
| | 12일 (월 일) | | | | | | | | |
| | 14일 (월 일)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특이증상 및 병변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종합소견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제 호 | | | | | |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 | |
|---|---|---|------------|-----|------------|------------------|-----------------|----------|
| 출발지 농장현황 | 농장명 대표자 | | 주소 생년월일 | | | 사육두수 | 개동 수 전화번호 | |
| 임상 검사 | <input type="checkbox"/> 사료섭취감소 <input type="checkbox"/> 침울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기침 등 호흡기 증상 <input type="checkbox"/> 안면부종 <input type="checkbox"/> 벼슬·육수의 청색증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이내 폐사 수수 (수) <input type="checkbox"/> 산란율(%) | | | | | | | |
| 임상관찰결과 | | | 시료채취일(시간) | | | 정밀검사결과 | | |
| 이동 기간 | 년 월 일 | 시부터 | 년 월 일 | 시까지 | | | | |
| 도착지 | 업체(농장)명 또는 전통시장 | | 주소 | | | 연락처 | | |
| 출하 및 운송 | 출 하 수수(개수) | | | | | | 운송차량 번 호 | |
| | 축 종 | | 품종 | | 일령 (주령) | | 운송인 성명 (구매자) | 전화 번호 |
| | 운 반 차 량 | <input type="checkbox"/> 출하 및 하차시 : 차량 내·외부 철저한 세척 및 소독실시 <input type="checkbox"/> 차량적재함 바닥 :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오염방지 <input type="checkbox"/> 운반차량 준비물 : 소독약품, 휴대용 소독장비 동일 농장에서 동일 도착지로 이동 시 다수의 운송차량이 필요한 경우,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을 뒤쪽에 별도 기재할 수 있음 | | | | | | |
|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인 또는 서명) | |
| 확인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 | | | | | | | |

간 인 ————— 절 취 선 ————— 간 인 —————

| 제 호 | | | | | |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 | |
|---|---|---|------------|-----|------------|------------------|-----------------|----------|
| 출발지 농장현황 | 농장명 대표자 | | 주소 생년월일 | | | 사육두수 | 개동 수 전화번호 | |
| 임상 검사 | <input type="checkbox"/> 사료섭취감소 <input type="checkbox"/> 침울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기침 등 호흡기 증상 <input type="checkbox"/> 안면부종 <input type="checkbox"/> 벼슬·육수의 청색증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이내 폐사 수수 (수) <input type="checkbox"/> 산란율(%) | | | | | | | |
| 임상관찰결과 | | | 시료채취일(시간) | | | 정밀검사결과 | | |
| 이동 기간 | 년 월 일 | 시부터 | 년 월 일 | 시까지 | | | | |
| 도착지 | 업체(농장)명 또는 전통시장 | | 주소 | | | 연락처 | | |
| 출하 및 운송 | 출 하 수수(개수) | | | | | | 운송차량 번 호 | |
| | 축 종 | | 품종 | | 일령 (주령) | | 운송인 성명 (구매자) | 전화 번호 |
| | 운 반 차 량 | <input type="checkbox"/> 출하 및 하차시 : 차량 내·외부 철저한 세척 및 소독실시 <input type="checkbox"/> 차량적재함 바닥 :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오염방지 <input type="checkbox"/> 운반차량 준비물 : 소독약품, 휴대용 소독장비 동일 농장에서 동일 도착지로 이동 시 다수의 운송차량이 필요한 경우,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을 뒤쪽에 별도 기재할 수 있음 | | | | | | |
|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인 또는 서명) | |
| 확인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 | | | | | | | |

별지

(뒤쪽)

제 호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추가 내역

○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

| 구분 | 출하 수수 | 운송차량 번호 | 운송인 성명 | 축종 | 품종 | 일령 (주령) | 전화 번호 | 확인사항 | | | 비고 |
|----|-------|---------|--------|----|----|---------|-------|--------------------------|--------------------------|--------------------------|----|
| | | | | | | | | 출하·하차시 세척·소독 | 차량 적재함 바닥에 오물 등 오염방지 | 차량 준비물: 소독약품, 휴대소독장비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인 또는 서명)

간인——— 절취선 —————— 간인—————

○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

| 구분 | 출하 수수 | 운송차량 번호 | 운송인 성명 | 축종 | 품종 | 일령 (주령) | 전화 번호 | 확인사항 | | | 비고 |
|----|-------|---------|--------|----|----|---------|-------|--------------------------|--------------------------|--------------------------|----|
| | | | | | | | | 출하·하차시 세척·소독 | 차량 적재함 바닥에 오물 등 오염방지 | 차량 준비물: 소독약품, 휴대소독장비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8호서식]

가축거래기록대장 (가금공급농가 및 판매소)

* 거점소독장소에 발행한 소독 필증을 참고로 작성

[별지 제8호의2서식]

가축거래기록대장 (가금 거래상인)

| 차량번호 | | | | | 주소 | 거주지 | | | | | | | |
|---------|----------|----|----------------|--------|-----|-----|-----|----|------------|-----|----|----|--|
| 성명·전화번호 | | | | | | 계류장 | | | | | | | |
| 거래일자 | 거래 가축 | 수량 | 구입 또는 판매 | 구입·판매처 | | | | | 차량청소 및 소독* | | | 비고 | |
| | | | | 상호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기타 | 소독장소 | 소독일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점소독장소에 발행한 소독 필증을 참고로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의7서식]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제출 시, 거래 기록은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식용란거래기록대장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거점소독장소에 발행한 소독 필증을 참고로 작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제출 시, 거래 기록은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소독필증

| 일련번호 : | | 소 독 필 증 | | | | |
|--|-------|---|------|--|----|--|
| 운전자 | 성명 | | 차량번호 | | | |
| | 주소 | (연락처 :) | | | | |
| 소독내역 | 소독일시 | | 이동경로 | | → | |
| | 이동목적 | | | | | |
| 소독 실시자 | 소독지역 | <input type="checkbox"/> 발생지, <input type="checkbox"/> 보호지역, <input type="checkbox"/> 예찰지역, <input type="checkbox"/>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input type="checkbox"/> ○○ 시·군, <input type="checkbox"/> ○○ 시·도 | | | | |
| | 소독장소명 | | | | | |
|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 | | | | | |

——— 절취선 ———

| 일련번호 : | | 소 독 필 증 | | | | |
|--|-------|---|------|--|----|--|
| 운전자 | 성명 | | 차량번호 | | | |
| | 주소 | (연락처 :) | | | | |
| 소독내역 | 소독일시 | | 이동경로 | | → | |
| | 이동목적 | | | | | |
| 소독 실시자 | 소독지역 | <input type="checkbox"/> 발생지, <input type="checkbox"/> 보호지역, <input type="checkbox"/> 예찰지역, <input type="checkbox"/>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input type="checkbox"/> ○○ 시·군, <input type="checkbox"/> ○○ 시·도 | | | | |
| | 소독장소명 | | | | | |
|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 | | | | | |

——— 절취선 ———

| 일련번호 : | | 소 독 필 증 | | | | |
|--|-------|---|------|--|----|--|
| 운전자 | 성명 | | 차량번호 | | | |
| | 주소 | (연락처 :) | | | | |
| 소독내역 | 소독일시 | | 이동경로 | | → | |
| | 이동목적 | | | | | |
| 소독 실시자 | 소독지역 | <input type="checkbox"/> 발생지, <input type="checkbox"/> 보호지역, <input type="checkbox"/> 예찰지역, <input type="checkbox"/>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input type="checkbox"/> ○○ 시·군, <input type="checkbox"/> ○○ 시·도 | | | | |
| | 소독장소명 | | | | | |
|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독실시 확인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 | | | | | |

[별지 제9의1호 서식] 가금 생축 운송차량 소독 확인증

※ 소독확인증 양식은 축산차량 운전자가 소지, 농장에서 소독 실시 후 확인증을 작성하여 농장주 등의 서명을 받아 축산관계시설 출입 시 1부를 질취하여 제출(1부는 본인 보관)

| | | | | |
|--|----------------|---|-------------|----|
| 일련번호 : | | | | |
| 가금 생축 운송차량 소독 확인증 | | | | |
| 운전자 | 성명 | | 차량번호 | |
| | 주소 | (연락처 :) | | |
| 소독 내역 | 소독일시 | | 이동경로 | → |
| | 소독내용 | 소독부위(차량 전 부위), 소독약(XXX), 소독방법(고압분무기 등) 등 기재 | | |
| 소독 실시자 | 소독지역 | <input type="checkbox"/> 농장 <input type="checkbox"/> 도축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소독장소 (농장주소) | | | |
| | 소속 (농장명) | | 농장주와의 관계 | 성명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
| 소독실시자 소속 : | | 성명 : (서명) | | |
| 운 전 자 소속 : | | 성명 : (서명) | | |
| ----- 절 층 선 ----- | | | | |

| | | | | |
|--|----------------|---|-------------|----|
| 일련번호 : | | | | |
| 가금 생축 운송차량 소독 확인증 | | | | |
| 운전자 | 성명 | | 차량번호 | |
| | 주소 | (연락처 :) | | |
| 소독 내역 | 소독일시 | | 이동경로 | → |
| | 소독내용 | 소독부위(차량 전 부위), 소독약(XXX), 소독방법(고압분무기 등) 등 기재 | | |
| 소독 실시자 | 소독지역 | <input type="checkbox"/> 농장 <input type="checkbox"/> 도축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소독장소 (농장주소) | | | |
| | 소속 (농장명) | | 농장주와의 관계 | 성명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
| 소독실시자 소속 : | | 성명 : (서명) | | |
| 운 전 자 소속 : | | 성명 : (서명) | | |

[별지 제10호서식]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

○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 산란수와 산란율은 산란용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에 한하여 작성

*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록으로 축사별 폐사율 및 산란율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

확인자 농장주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역학조사서 서식

조류인플루엔자 역학조사서 ○ 차

(시·도/시·군/농장명)

조사자 소속 :

조사자 성명 :

조사일시 :

- ※ 방역조치 필요 항목은 노란색 배경 글자로
추가·수정된 사항은 파란색 글자로
발생·병성감정·가족 소유 농장 등은 빨간색 글자로 표시합니다.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 및 GPS 미수신 차량은 파란밑줄로 표시합니다.
[본 역학조사서는 역학조사 수행 과정에서 수정·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행정조치가 필요한 항목은 빨간색 배경으로 표시
(관련: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7140, 2020.12.15.)

| | |
|------------------------|---|
| 농장주명 (핸드폰번호) | |
| 농장명 (계열사) | |
| 농장주소 | |
| 농장장 (핸드폰번호) | |
| 사육현황 (축종, 마리수, 축사수) | |
| 시료채취일 | |
| 검출경위 | <input type="checkbox"/> 신고 <input type="checkbox"/> 역학 <input type="checkbox"/> 예방적 살처분 <input type="checkbox"/> 병성감정 <input type="checkbox"/> 예찰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세부경위 | 예) 00발생농장 00방역대 예방적 살처분 농가로 정밀검사 양성 |

I

농장현황

1. 일반현황

가. 농장

농장명 : (계열사 :)

- 농장이 여러개인 경우 제1농장, 제2농장 등 표기

* 농장장(핸드폰번호) :

주소 :

가금 사육현황 :

- 일령

기타 축종 사육현황

- 축종, 마리수(개·고양이 등 묶여 있는지 여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사항 :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신고(휴업, 폐업, 휴업 후 개업 등) 여부

인증사항(해당란에 표기)

동물복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HACCP 해당없음

제2농장 소유·운영 여부(해당란에 표기) : 여 부

| 구분 | 농장주 | 농장명 | 농장주소 | 핸드폰번호 | 품종 | 사육두수 | 비고 |
|-----|-----|-----|------|-------|----|------|----|
| 2농장 | | | | | | | |
| 3농장 | | | | | | | |
| 4농장 | | | | | | | |

기타 가족 농장 여부(해당란에 표기) : 여 부

| 관계 | 농장주 | 농장명 | 농장주소 | 핸드폰번호 | 품종 | 사육두수 | 비고 |
|----|-----|-----|------|-------|----|------|----|
| | | | | | | | |

계열 담당자(계열농장일 경우)

| 계열사명 | 담당자명 | 계열사 주소 | 핸드폰번호 | 비고 |
|------|------|--------|-------|----|
| | | | | |

나. 농장주

- 성명(나이, ○○년생) :
- 축산경력 :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이수(해당란에 표기)

| 구분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 축산농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수 (이수일 : , 교육기관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수 (이수일 : , 교육기관 :) |
| 축산차량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수 (이수일 : , 교육기관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수 (이수일 : , 교육기관 :) |

- 축산관련 단체(협회) 활동(임원 등) :
- 부업 :
 - 논, 밭 등 경작 여부(소재지 주소, 면적 등) :
 - 거주지
 - 주소 (농장과의 거리) :
 - 출퇴근 방법 :
 - 가족사항

| 관계 | 이름 | 나이 | 직업 | 핸드폰번호 | 상시출입여부 | 최종방문일 |
|----|----|----|----|-------|--------|-------|
| | | | | | | |
| | | | | | | |

- 농장주 차량정보

| 소유자 | 차량번호 | 축산차량 등록번호 | 차량종류 | 차량용도 |
|-----|------|-----------|------|------|
| | | | | |

2. 사육현황

가. 가금 사육현황

- 사육축종(품종) :
- 사육규모 : (□전업농가 □소규모농가)

○ 축사(동)별 현황(세부적으로 확인)

| 사육동 | 1동 | 2동 | 3동 | 4동 | 5동 |
|--------------------------|----|----|----|----|----|
| 현재 사육수수 | | | | | |
| 일령/주령(입식일) | | | | | |
| 폐사수수(신고) | | | | | |
| 임상증상 발현일 | | | | | |
| 일령(주령) ※ 발생일(시료채취일)기준 | | | | | |
| 임상증상 발현수수 | | | | | |

○ 인접 가금농장 사육현황

| 축주명 | 사육현황 | 주 소 | 발생농가와의 관계 | | |
|-----|------|-----|-----------|------|-------------|
| | | | 거리 | 교류여부 | 진입로 공동사용 여부 |
| | | | | | |
| | | | | | |

※ 인접농장과 장비 공동사용, 교류 등 가능한 자세히 기재하고, 반경 500m 이내 농장 존재여부를 기록(KAHIS 기준)

○ 방사사육 여부 (해당란에 표기) : 여 부

| 축종 | 사육두수 | 장소 | 비고 |
|----|------|----|----|
| | | | |
| | | | |

나. 과거 질병 발생 내역

○ 과거 농장내 질병 발생 내역 기술(발생일자, 질병명, 폐사수, 조치사항)

| 질병명 | 발생일자 | 임상증상 | 조치내역 | 진단기관 |
|-----|------|------|------|------|
| | | | | |
| | | | | |

다. 농장시설현황 (해당란에 표기)

○ 농장 입구에 출입문 등 차단시설이 있는가? (TEXT)

※ 차단막, 그물망, 안내판 설치 등 기술

- 출입문이 일상적으로 적정하게 잠겨있는가? (예/아니오)(TEXT)

- 농장으로 들어오는 별도의 출입로가 있는가? 있음 없음
- 별도의 출입로는 몇 개인가요?(개)
 - 차량용(개) 사람용(개) 차량·사람용(개)
- 별도 출입로에 대한 차단 방역조치는? 출입금지 표지 차단바 기타(TEXT)
- 농장 출입구(정문, 후문, 쪽문(옆문)) 개수 :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주차구역이 농장외부에 있는가? 농장내부 농장외부
- 농장 입구에 출입차량 세척시설이 있는가? 예 아니오(TEXT)
- 농장 입구에 출입차량 소독시설이 있는가? 예 아니오(TEXT)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소독시설인가요? 고정식 이동식 고압분무기
- 대인소독시설(설치 미설치)
 - 대인소독시설은 정상작동 되는가? 예 아니오(TEXT)
- 물품반입창고(설치 미설치)
 - 물품 반입시 물품반입창고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하나요?
 - 예 아니오(TEXT)
- 텃밭이 어디 있나요? 농장내부 농장외부 없음
 - * 텃밭 경작 시 작물 종류 기재
- 관리사 발판소독조 (비치 미비치)
- 관리사 발판소독조 소독액 교체 여부 (교체 미교체)

라. 축사현황

- 축사형태(해당란에 표기)
- 축사 출입구 개수 :
- 축사별 발판소독조 비치 여부(있음 없음)
- 축사 뒷문·옆문 여부 (있음(뒷문 개/옆문 개) 없음)
 - ※ 축사 뒷문·옆문이 있는 경우 각각 사용여부, 잠금상태, 발판소독조 비치 등 소독사항 등 기술
- 축사입구 생석회 도포 (있음 없음)

| | |
|------|--|
| 축사형태 | <input type="checkbox"/> 무창축사()개 <input type="checkbox"/> 유창축사()개 <input type="checkbox"/> 기타()개 |
| | <input type="checkbox"/> 판넬식()개 <input type="checkbox"/> 비닐하우스()개 <input type="checkbox"/> 보온덮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사육형태 | <input type="checkbox"/> 케이지(<input type="checkbox"/> A형 <input type="checkbox"/> 직립 <input type="checkbox"/> A+직립혼합 <input type="checkbox"/> 복지형) (열) x (단) <input type="checkbox"/> 평사(깔짚 : <input type="checkbox"/> 왕겨 <input type="checkbox"/> 톱밥 <input type="checkbox"/> 기타(종류))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종계·종오리·산란계의 경우 난상 위치 :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고상식(깔짚, 슬랏) <input type="checkbox"/> 기타(TEXT) |
| 환기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기 (<input type="checkbox"/> 환기팬 없음 <input type="checkbox"/> 환기팬 있음(<input type="checkbox"/> 축사 앞쪽 <input type="checkbox"/> 중간 <input type="checkbox"/> 뒤쪽 <input type="checkbox"/> 천장)) <input type="checkbox"/> 무창 강제환기(<input type="checkbox"/> 터널식 <input type="checkbox"/> 크로스 <input type="checkbox"/> 지붕 배기) <input type="radio"/> 환기팬 위치 (<input type="checkbox"/> 축사 앞쪽 <input type="checkbox"/> 중간 <input type="checkbox"/> 뒤쪽 <input type="checkbox"/> 천장) <input type="checkbox"/> 기타(TEXT) <p>※ 환기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p> |
| 사료별 보관장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대사료(보관장소 <input type="checkbox"/> 축사내부(전실 등) <input type="checkbox"/> 별도 창고) <input type="checkbox"/> 별크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사료빈 개수 (대) 및 위치 (농장 모식도 참조) <input type="radio"/> 급이기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체인 <input type="checkbox"/> 호퍼 <input type="checkbox"/> 피드카 <input type="checkbox"/> 원통형 <input type="checkbox"/> 팬형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잔반급이(보관용기 <input type="checkbox"/> 플라스틱 통 <input type="checkbox"/> 기타(종류) 보관장소 <input type="checkbox"/> 축사내부(전실 등) <input type="checkbox"/> 별도 창고) |
| 급수관 | <input type="checkbox"/> 니플 <input type="checkbox"/> 종형 <input type="checkbox"/> 일자형(육추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음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상수도 <input type="checkbox"/> 지하수 <input type="checkbox"/> 하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음수 전 처리 : <input type="checkbox"/> 소독(약제: ()) <input type="checkbox"/> 전처리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TEXT) <input type="radio"/> 음수 전처리 작업 : <input type="checkbox"/> 음수관리실 <input type="checkbox"/> 계사 내 물탱크 |

○ 전실

- 축사에 소독 등 준비작업을 위한 전실이 있나요? 있음 없음
- 전실이 몇 개가 있나요?
- 모든 축사에 있나요?
- 전실에 발판소독조는 비치되어 있나요? : 비치 미비치,
- 방역복 (비치 미비치), 장화(비치 미비치), 손소독제(비치 미비치)

| | |
|----------|----------|
| | |
| 전실 내부 사진 | 전실 외부 사진 |

○ 축사 내부 구조 모식도



3. 농장에서 운영하는 장비

가. CCTV(해당란에 □표기)

- 설치대수 :
- CCTV 위치 :
- 운영사항 : 저장사항(30일 이상 저장여부), 고장사항, 농장출입구, 축사내 미설치 등
- CCTV 설치장소 및 주요 영상(예시)



나.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농장내 사용장비 추가 표기 및 내용 기술)

| 장비명 | 보유대수 | 사용자 | 사용목적 | 축사내 사용여부 |
|--|------|-----|------|----------|
|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압력분사기(소독·세척기 등) | | | | |
| <input type="checkbox"/> 고정형 소독기 | | | | |
| <input type="checkbox"/> 등침 소독기 | | | | |
| <input type="checkbox"/> 터널식 소독기 | | | | |
| <input type="checkbox"/> 계란 포장기 | | | | |
| <input type="checkbox"/> 외발 손수레 | | | | |
| <input type="checkbox"/> 알 수송용 지게차/전동 차량 | | | | |
| <input type="checkbox"/> 포크레인 | | | | |
| <input type="checkbox"/> 오토바이 | | | | |
| <input type="checkbox"/> 자전거 | |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펜치, 드라이버 등 공구류 TEXT) | | | | |
| ※ 추가 농장 사용 장비 조사 | | | | |

※ 인근 농장과 장비 공동사용 여부(여 , 부)

| 축종 | 농장주 (농장명) | 사육수수 | 핸드폰번호 | 주소 | 공동사용장비 | 비고 |
|----|--------------|------|-------|----|--------|----|
| | | | | | | |

다. 농장 운행 차량

○ 농장 운행 차량(KAHIS 확인)

| 차량번호 | 축산차량 등록번호 | 차량유형 | 차량종류 | 운전자 | 차량용도(주차장소) |
|------|-----------|------|------|-----|------------|
| | | | | | |

4. 농장 종사자

○ 농장에서 매일 일하는 사람(상시 출입자) : 명

- 농장주 외 한국인 종사자 고용 : 명

| 순번 | 이름 | 주소 | 핸드폰번호 | 담당업무 | 부업사항 | 비고 |
|----|----|----|-------|------|------|----|
| | | | | | |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 명

| 이름 | 성별 | 핸드폰번호 | 거주지 | | | 국적 | 전근무지 |
|----|----|---------------|-----|-----------|-----------|-----|---------|
| | 나이 | 담당업무 (관리동) | 입사일 | 출퇴근 여부 | 출퇴근 방법 | 입국일 | 입국 전 직업 |
| | | | | | | | |

- 종사자 출퇴근 차량

| 운전자 | 차량번호 | 축산차량 등록번호 | 차량용도 | 차량종류 | 주차장소 |
|-----|------|-----------|------|------|------|
| | | | | | |

- 종사자의 최근 외부인 접촉

| 일자 | 이름 | 방문자(접촉자) | 방문(접촉)자 전화 | 방문(접촉자)자 소재지 |
|----|----|----------|------------|--------------|
| | | | | |

* 축주외 종사자로 내·외국인이 있는지, 국적과 근로기간(입국날짜), 출퇴근 여부(출퇴근 수단, 차량이용시 차량번호) 및 거주지를 기록

* 종사자 별로 담당업무(담당 사육동)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 구별하여 기재

가. 농장주

○ 최근 1년간 해외여행

| 이름 | 국가명 | 출국일 | 입국일 | 방문목적 | 입국시 소독·교육여부 |
|----|-----|-----|-----|---------------|-------------|
| | | | | 가금류 등 농장방문 여부 | |
| | | | | | |

○ 1개월내 우편, 택배 현황 : 보관장소 및 반입절차 설명

○ (농장 진입시) 출퇴근 또는 외출 후 농장으로 복귀할 때 방역조치(해당되는 경우만 표기)

| 대인소독기를 통과하는 경우 | 대인소독기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
|--|--|
|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
| <input type="checkbox"/> 대인소독 실시(자외선 소독 등) | <input type="checkbox"/> 대인소독 실시(분무 소독 등) |
|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
|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장화로 교환 |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장화로 교환 |
|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작업복, 방역복으로 환복 |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작업복, 방역복으로 환복 |

○ (축사 진입시) 방역조치(방역준비실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 전실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
구분 작성)

| 방역준비실 | 전실 |
|--|--|
| <input type="checkbox"/> 샤워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작업복, 방역복 환복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장화 착용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작업복, 방역복 환복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장화 착용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

○ 사육 관련 일과(시간별 주요 일과 작성, 예시)

- (07:30 ~ 08:00)
- (08:00 ~ 10:00)
- (11:00 ~ 11:30)
- (11:30 ~ 15:00)
- (15:00 ~ 17:30)
- (17:30 ~ 18:00)
- (18:00 ~ 18:30)
- (18:30 ~ 19:00)

* 추가 일과가 있는 경우 시간을 기재하고 작성

○ 외부 출입·활동 : 취미활동, 이웃과의 교류 활동 등 개재

나. 종사자 및 외국인근로자 :

○ 최근 1년간 해외여행

| 이름 | 국가명 | 출국일 | 입국일 | 방문목적 | 입국시 소독·교육여부 |
|----|-----|-----|-----|---------------|-------------|
| | | | | 가금류 등 농장방문 여부 | |
| | | | | | |

○ 1개월내 우편, 택배 현황 : 보관장소 및 반입절차 설명

○ (농장 진입시) 출퇴근 또는 외출 후 농장으로 복귀할 때 방역조치(해당되는 경우만 표기)

| 대인소독기를 통과하는 경우 | 대인소독기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
|---|--|
|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input type="checkbox"/> 대인소독 실시(자외선 소독 등)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장화로 교환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작업복, 방역복으로 환복 |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input type="checkbox"/> 대인소독 실시(분무 소독 등)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장화로 교환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작업복, 방역복으로 환복 |

○ (축사 진입시) 방역조치 (방역준비실 또는 전실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 구분 작성)

| 방역준비실 | 전실 |
|---|--|
| <input type="checkbox"/> 샤워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작업복, 방역복 환복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장화 착용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작업복, 방역복 환복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장화 착용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

○ 사육 관련 일과(시간별 주요 일과 작성, 예시)

- (07:30 ~ 08:00)
- (08:00 ~ 10:00)
- (11:00 ~ 11:30)
- (11:30 ~ 15:00)
- (15:00 ~ 17:30)
- (17:30 ~ 18:00)
- (18:00 ~ 18:30)
- (18:30 ~ 19:00)

* 추가 일과가 있는 경우 시간을 기재하고 작성

○ 외부 출입·활동 : 취미활동, 이웃과의 교류 활동 등 개재

다. 농장 출입자

○ (농장 진입시) 농장내 방문하는 출입자에 대한 방역조치(해당되는 경우만 표기)

| 대인소독기를 통과하는 경우 | 대인소독기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 |
|---|--|
|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input type="checkbox"/> 대인소독 실시(자외선 소독 등)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장화로 교환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작업복, 방역복으로 환복 |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input type="checkbox"/> 대인소독 실시(분무 소독 등)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장화로 교환 <input type="checkbox"/> “농장” 전용 작업복, 방역복으로 환복 |

○ (축사 진입시) 방역조치 (방역준비실 또는 전실을 통해 들어가는 경우 구분 작성)

| 방역준비실 | 전실 |
|---|--|
| <input type="checkbox"/> 샤워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작업복, 방역복 환복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장화 착용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작업복, 방역복 환복 <input type="checkbox"/> 축사전용장화 착용 <input type="checkbox"/> 발판소독조 통과 <input type="checkbox"/> 손 소독 |

- 축사전용 작업복의 세척·소독은 실시하는가? 예(TEXT 회/주) 아니오 기타(TEXT)

5. 농장 주변 환경

가. 주변 가금농장 사육현황(KAHIS)

| 가금농장 | 500m 이내(발생농가 포함) | | 500m~3km | | 3km~10km | |
|---------|------------------|----|----------|----|----------|----|
| | 농가수 | 두수 | 농가수 | 두수 | 농가수 | 두수 |
| 닭(전업농) | | | | | | |
| 오리(전업농) | | | | | | |
| 메추리 | | | | | | |
| 칠면조 | | | | | | |
| 거위 | | | | | | |
| 관상조 | | | | | | |
| 꿩 | | | | | | |
| 타조 | | | | | | |
| 계 | | | | | | |

나. 농장주변 야생조수류 출현(해당란에 □ 표기)

| | |
|---|--|
| 농장 주변 야생조수류 출몰 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농장 주변 4면이 농경지이며, 야생조수류 출몰) - 목격시기와 목격한 철새의 종류 및 마리수 작성 |
| 농장주변 출몰 야생조수류 종류 | <input type="checkbox"/> 철새류(오리, 기러기 등) <input type="checkbox"/> 토끼류(까치, 참새, 비둘기 등) <input type="checkbox"/> 고양이, 너구리, 족제비, 쥐 등 |
| 최근 많이 관찰되는 야생조수류 종류 | <input type="checkbox"/> 관찰 야생조수류 종류, 마리수, 관찰된 장소 작성 |
| 야생조수류 발견장소 | <input type="checkbox"/> 농장 주변 논 및 농수로 <input type="checkbox"/> 퇴비장(계분장) <input type="checkbox"/> 축사 환기팬 주변 <input type="checkbox"/> 농장 마당 <input type="checkbox"/> 창고(왕겨창고, 참새) <input type="checkbox"/> 창고(왕겨) <input type="checkbox"/> 창고(지대사료) <input type="checkbox"/> 농장 주변 및 구역 내에서 새 등지를 확인 |
|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왕겨 살포기, 삽, 대차 등)에서 야생조수류 흔적(분변, 깃털) 발견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농장 내 분변 등 흔적 발견 장소 기재 |
| 야생조수류 퇴치방법 | 야생조류퇴치기, 쥐덫, 구서제, 그물망 |

| | |
|--------------------|--|
| 구서방법 및 주기 | (구서방법) 구서제(취약) 도포(수시), 취몇 또는 취끈끈이 이용 (상시) 등 - 구서제 빈도, 외부용역사항 작성 |
| 축사에 야생동물 차단시설 | <input type="checkbox"/> 전축사 그물망 <input type="checkbox"/> 일부 그물망(출입구, 환기구) <input type="checkbox"/> 일부 그물망 |
| 축사 내부, 야생조수류 흔적 발견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류, 빈도 작성 |
| 농장주변 울타리 설치 | <input type="checkbox"/> 예(전체 설치, 부분설치, 미설치, 그물망 설치, 자연경계 등 상세 기술)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다. 인근 철새도래지 등

| 구분 | 명칭 | 농장과의 거리 | 비고 |
|-------|----|---------|---------------------------|
| 철새도래지 | | | 예) 야생조수류 고병원성AI 검출(일자) |
| 소하천 | | | |
| 저수지 | | | |
| 수로 | | | |

*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 야생조수류 고병원성 AI 검출 사항 등 작성 및 인근 소하천 등 철새 출몰 기술

라. 교통지역(도로)과의 거리(km) : 지방도(00번) 00km 거리

6. 농장모식도



II | 임상증상

1. 임상증상 진행경과 및 신고경위

- 임상증상 확인 시점, 장소, 개체수 등 자세히 기술, 조치사항 등

| 일시 | 시간 | 발생동 | 임상증상 | 신고경위 |
|----|----|-----|------|---|
| | | | | * 신고시간, 신고자, 신고기관, 신고이후 시도 가축방역 기관 도착시간, 시료채취자 기록 |

* 임상증상을 사육동별로 임상증상을 나타낸 개체수, 날짜 및 시간 등 구체적으로 기록

- 임상증상 조사시 주요 AI 증상(폐사, 사료섭취 저하, 산란율 저하, 활력저하, 침울, 모여있는 증상, 부리의 청색증, 안면발적, 벼슬부위 발적/변색), 신경증상(선회, 마비증상), 뉴색변 등) 하나씩 물어보며 임상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

2. 임상증상(폐사·산란율) 관련 기록

- 폐사 기록(농장주 작성 폐사일지)

| 일자 | 1동 | 2동 | 3동 | 4동 | 5동 | 계 |
|----|----|----|----|----|----|---|
| | | | | | | |

- 산란율 기록

| 구분 | 1동 | 2동 | 3동 | 4동 | 5동 | 계 |
|----|----|----|----|----|----|---|
| | | | | | | |

3. 임상증상 확인 사항

가. 임상관찰

- 축사 내 생축에 대한 임상관찰은 누가, 언제(몇 시경)에 했습니까?
- 생축에 대한 임상관찰은 축사별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생축에 대한 관찰 시 무엇을 확인하십니까?

나. 사료섭취량

- 발생축사 과거 1주간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변했나요?
 예 아니오
-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변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 AI 의심 증상

- 최근 3주 내에 호흡기, 설사, 침울, 졸음 등 특이한 증상이 있었나요?
 예 아니오
- 특이한 증상이 있었다면 어떤 증상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특이한 증상 외에 평소와 다른 점(산란율 저하, 폐사율 증가 등)이 있다면 설명

라. 폐사율 증가

- 폐사율 : 동일축사 과거 1주간 일평균 대비 2배 이상 폐사 여부
 예 아니오
- 축주에게 질문 : 폐사가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마. 의심축에 대한 조치 :

4. 정밀검사 내역

가. 최근 고병원성 AI 검사내역 :

나. 검출 경위 :

다. 신고(해당될 경우만 작성) :

라. 정밀검사

- H5항원 양성보고(질병진단과-0000, 일자)
- 최종결과 보고(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0000, 일자)

III

사양관리

1. 사양관리 일지

- 사양관리일지(사진붙임)

| | | | | | |
|--|--|--|--|--|--|
| | | | | | |
|--|--|--|--|--|--|

2. All-in All-out 여부, 휴지기간(Down time) 유무 (육계, 육용오리)

-

3. 가금 이동 사항

| 구분 | | 내용(입식품종, 입식동 등 상세 설명) | | | | |
|------------|-----------------------------------|-----------------------|-------|-------|-------|-------|
| 입식 | 입식동 | 1동 | 2동 | 3동 | 4동 | 5동 |
| | 입식일자 | 주(일령) | 주(일령) | 주(일령) | 주(일령) | 주(일령) |
| | 입식부화장 (주소, 성명) | | | | | |
| | 입식차량 (번호, 운전자성명, 전화번호) | | | | | |
| | 입식동 및 방법설명 (하차반 포함) | | | | | |
| 분동 (이동) | 분동(이동)일자 | | | | | |
| | 분동(이동) 내역 마리수 및 동별 이동 등 구체적 작성 | | | | | |
| 출하 | 출하일 | | | | | |
| | 출하수수 | | | | | |
| | 상차반 | | | | | |
| | 출하차량 | | | | | |
| | 출하방법 설명 (계열사인 경우 해당내용 포함) | | | | | |
| | 도축장 | | | | | |
| | 생축 체증측정 | | | | | |

| |
|----------|
| |
| 분동(이동)동선 |

[분동 체크 리스트(오리)]

- ① 분동여부 여 부(분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항목으로)
- ② 분동 방법에 대한 기술(분동인력, 분동통로, 분동도구, 바닥소독 등)
 - 차단된 분동통로 이용 여부 여 부
 - 이동통로와 분동축사 소독 여부 여 부
 - 분동 도구(비닐막 등) 및 장비 소독 여부 여 부

[이동 체크 리스트(닭)]

- ① 이동여부 여 부(이동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항목으로)
- ② 이동 방법에 대한 기술(이동인력, 분동통로, 분동도구, 바닥소독 등)
 - 차단된 이동통로 이용 여부 여 부
 - 이동통로와 이동축사 소독 여부 여 부
 - 이동 도구(수레 등) 및 장비 소독 여부 여 부

[출하 체크 리스트]

- ① 생축을 출하 및 판매할 때 누구와 연락하여 진행하나요?
- 계열사() 도계(압)장()
- ② 생축 체중측정은 누가 하나요? 계열사() 농장주
- ③ 언제쯤 어떻게 체중을 측정하나요?(출하시 측정)
- ③ 출하 관련 사항은 누가 결정하나요? 계열사() 농장주
- ④ 출하할 때 누가 상차하려 오나요? 외국인근로자가 있나요?
- 계열사() 도계(압)장()
- ⑤ 출하차량 배차 :
- 계열사() 도계(압)장()

3-1 집란 및 알 반출

- 집란 방법 :
- 집란기자재(난좌, 깔판(간지), 파레트, 랩) 반입 및 반출 :
 - 난좌 : 구매회사, 일자, 회수여부, 농장진입방법 등
 - 깔판(간지) : 구매회사, 일자, 회수여부, 농장진입방법 등
 - 파레트 : 구매회사, 일자, 회수여부, 농장진입방법 등
 - 랩 : 구매회사, 일자, 회수여부, 농장진입방법 등
- 알반출 방법 : 운반차량(지입차량)의 농장내 진입, 알반출 장비를 이용한 환적장 이동, 지정반출일 등 알반출 사항 등 기술
 - 최근 반출일 및 물량

| 일자 | 운전자명 | 차량번호 | 축산차량번호 | 출하처 | 소재지 | 연락처 | 수량(판/30개) |
|----|------|------|--------|-----|-----|-----|-----------|
| | | | | | | | |

○ 지게차 이용여부(□ 여 □ 부)

※ 집란실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작업 장소(환적장) 이동동선 및 소독사항 등 기술

○ 알반출 도구 : 파레트, 합판 공동사용 및 소독여부, 반출 후 기자재 실외 보관 등 기술

○ 환적장 운영

| 환적장 위치 | 소독시설 유무 (소독방법) | 이용차량대수(일평균) | 비고 |
|--------|-------------------|-------------|----|
| | | | |

4. 사료

○ 사료업체 : 회사명(주소)

○ 사료운반자 :

- 공급내역 : 주당 횟수, 공급량 기록

○ 농장 배송내역

- 운전자(차량번호)

| 방문일자 | 운전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기록 | |
|------|------|------|--------|-------|-------|-------|
| | | | | | KAHIS | 출입기록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벌크사료 운반자 방역조치 사항(농장주 진술 및 CCTV 일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

- 방역복(□ 착용□ 미착용), 장화/덧신(□ 착용□ 미착용), 차량소독여부(□ 여 □ 부)

대인소독여부(□ 여 □ 부), 방역복 및 장화 착용장소 :

※ 기타 특이사항 기록

○ 사료빈 주변은 청결한가? 떨어진 사료(□ 여 □ 부), 청소 상태(□ 여 □ 부)

| | |
|--------------|-------------|
| | |
| 사료빈(육추사, 1동) | 사료빈(2동, 3동) |
| | |
| 사료빈(4동, 5동) | 사료빈(6동, 7동) |

5. 깔짚 (해당란에 표시)

| | | | |
|---------------|--|-----------|-----------|
| 깔짚 종류 | <input type="checkbox"/> 왕겨 <input type="checkbox"/> 톱밥 <input type="checkbox"/> 기타(TEXT) | | |
| 반입 형태 | <input type="checkbox"/> 벌크 <input type="checkbox"/> 포대 <input type="checkbox"/> 기타(TEXT) | | |
| 공급자/공급원 | <input type="checkbox"/> (왕겨) 회사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 공급정미소(RPC) : | | |
| 최종 구입 내역 | <input type="checkbox"/> (왕겨) 공급일자, 00톤/1회 | | |
| 깔짚을 부분교체하는가? | <input type="checkbox"/> 예, 1농장만 부분교체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부분교체 주기 및 일자 | | |
| 최근 깔짚 전체 교체 | <input type="checkbox"/> 교체일자 | | |
| 깔짚 살포방식 | <input type="checkbox"/> 기계식(제1농장) <input type="checkbox"/> 직접살포(이용도구 :) | | |
| 깔짚 살포기 공동사용여부 | <input type="checkbox"/> 공동사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
| 축사내 진입시 소독조치 | <input type="checkbox"/> 소독 <input type="checkbox"/> 없음(사유 : 축사내에 두고 살포용도로만 사용) | | |
| 깔짚 살포/교체 작업자 | <input type="checkbox"/> 농장주 내외 <input type="checkbox"/> 하청업자(이름·상호명/소재 /전화 TEXT) <input type="checkbox"/> 기타(TEXT) | | |
| | <input type="checkbox"/> 농장 내에 보관(보관창고, 그물망, 출입문, 야생조류 침입 등 사진) <input type="checkbox"/> 다른 장소(농장밖 창고) | | |
| 깔짚 보관 | | | |
| | 왕겨창고(전경) | 왕겨창고(출입문) | 왕겨창고(그물망) |

6. 가축분뇨

- 축사 바닥은 언제/어떻게 처리하나요? 해당란에 표시
 - 계분처리장으로 이송 출하 후 반출(방법: 스크래퍼로 처리) 미반출
- 퇴비장 출입문 설치 여부 및 닫혀 있는지 구체적 기술:
 - 출입문, 벽면 그물망 설치 여부 및 외부에 야적시 비닐 도포 여부 등
- 퇴비장 야생조수류 출몰 여부:
- 분뇨처리 후 스키로더나 삽의 관리 방법(소독 등) 기술
- 최근 분뇨 반출일자(회사명, 주소, 핸드폰번호)

| 방문일자 | 유형 (액비, 고형분) | 회사명 (주소) | 운전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
| | | | | | | |

7. 폐사축 처리

| | |
|------------------------|--|
| 대량적인 일일 폐사량 | <input checked="" type="radio"/> 평균 00수 |
| 폐사체 처리 방법 | <input type="checkbox"/> 컴포스트 <input type="checkbox"/> 랜더링 <input type="checkbox"/> 매몰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동물급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폐사체 처리 장소 | <input type="checkbox"/> 농장 내 <input type="checkbox"/> 농장 외부 |
| 폐사체 처리 장소까지 운반방법 | <input type="checkbox"/> 농장주가 직접 손으로 들고 소각기에서 소각 <input type="checkbox"/> 수레 등을 이용 폐사체 운반 <input type="checkbox"/> 농장차량을 이용 폐사체 운반 |
| 폐사체 운반장비 소독여부 | <input type="checkbox"/> 소독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
| 폐사체 보관 장소 및 시설 | <input type="checkbox"/> 퇴비장 <input type="checkbox"/> 냉장고 <input type="checkbox"/> 냉동고 <input type="checkbox"/> 밀폐용기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 – 별도 퇴비장을 만들어 분변등과 섞는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 – 퇴비와 폐사체를 섞어 덮어두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 농장내 폐사체 랜더링 기기 보유 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 개먹이용으로 폐사체수거여부 |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

소각기

* 폐사축처리에 대한 사항 기술(약추, 폐사기록 등)

8. 백신접종/동물약품

○ 업체명 :

- 주소 : (전화)

※ 백신접종 종류, 구입시기, 구입처(주소, 연락처), 배송자(연락처, 차량정보) 및 방법을 기록

○ 백신접종 인력

| 일자 | 접종자 | 차량번호 | 방역복착용여부 | 가금사육여부 |
|----|-------|--------|---------|---------|
| | 핸드폰번호 | 차량등록번호 | 축사진입여부 | 접종순서(동) |
| | | | | |
| | | | | |

○ 운반자 타농장 방문 세부내역

[운전자명, 차량번호, 가금관련 축산시설 방문현황, 기간, KAHIS여부]

| 방문일시 | 시설명 | 시설주 | 소재지 | 축종 |
|------|-----|-----|-----|----|
| | | | | |

9. 동물약품/사료첨가제

○ 업체명 :

- 주소 : (전화)

○ 발생농장 방문내역

| 방문일자 | 방문목적 | 운전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
| | | | | | |

※ 동물병원명, 가축약품업체명(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과 방문/운반자의 경우 방문/운반 날짜, 성명, 소속, 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

10. 수의사/컨설팅

○ 업체명 :

- 주소 : (전화)

○ 발생농장 방문내역

| 방문일자 | 방문목적 | 운전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
| | | | | | |

※ 동물병원명, 가축약품업체명(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과 방문/운반자의 경우 방문/운반 날짜, 성명, 소속, 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

11. 기타

- 농장내 사용 기름(가스) 배달 차량, 농장내 공사차량 등 구체적 기재
 - * 주요 기타 농장 출입사항(식료품 구입, 택배, 기름(가스), 설비, 공사차량 등)

IV

농장출입자 현황

출입 허용 축산차량 진입 여부 여 부

* 가축, 사료, 분뇨, 퇴비, 깔짚운송, 방역차량 등 가금농장 내 진입 허용차량

[최근 21일간 농장 출입자, 출입기록부 및 KAHIS기준]

농장 출입자 현황

(역학기간 : , 방역조치기간 : , KAHIS 기준)

| 연번 | 방문일자 | 차량유형 | 방문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농장 출입자 현황(방명록)

| 방문일자 | 출입목적 | 방문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1. 가축사료 운반(별크)

- 농장 방문내역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차량유형 | 방문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
| | | | | | |
| | | | | | |

- 발생농장 배송내역(출입기록부 기준) : KAHIS 기록, 출입기록부 순으로 작성
 - 사료 운반 차량 타 축산시설 방문내역
- <1> 운전자, 차량번호(축산차량등록번호,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시설구분 | 시설명 | 시설주명 | 주소 | 축종 |
|------|------|-----|------|----|----|
| | | | | | |

2. 가축 운반

- 농장 방문내역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차량유형 | 방문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
| | | | | | |
| | | | | | |

- 발생농장 배송내역(출입기록부 기준) : KAHIS 기록, 출입기록부 순으로 작성
 - 가축 운반 차량 타 축산시설 방문내역
- <1> 운전자, 차량번호(축산차량등록번호,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시설구분 | 시설명 | 시설주명 | 주소 | 축종 |
|------|------|-----|------|----|----|
| | | | | | |

3. 가축분뇨 운반

- 농장 방문내역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차량유형 | 방문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
| | | | | | |

- 발생농장 배송내역(출입기록부 기준) : KAHIS 기록, 출입기록부 순으로 작성

○ 분뇨 운반 차량 타 축산시설 방문내역

<1> 운전자, 차량번호(축산차량등록번호,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시설구분 | 시설명 | 시설주명 | 주소 | 축종 |
|------|------|-----|------|----|----|
| | | | | | |

4. 왕겨, 텁밥 운반차량

○ 농장 방문내역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차량유형 | 방문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
| | | | | | |

○ 발생농장 배송내역(출입기록부 기준) : KAHIS 기록, 출입기록부 순으로 작성

○ 왕겨, 텁밥 운반 차량 타 축산시설 방문내역

<1> 운전자, 차량번호(축산차량등록번호,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시설구분 | 시설명 | 시설주명 | 주소 | 축종 |
|------|------|-----|------|----|----|
| | | | | | |

5. 수의사 컨설팅/동물약품 운반

○ 농장 방문내역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차량유형 | 방문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
| | | | | | |
| | | | | | |

○ 발생농장 배송내역(출입기록부 기준) : KAHIS 기록, 출입기록부 순으로 작성

○ 수의사컨설팅/동물약품 운반 차량 타 축산시설 방문내역

<1> 운전자, 차량번호(축산차량등록번호,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시설구분 | 시설명 | 시설주명 | 주소 | 축종 |
|------|------|-----|------|----|----|
| | | | | | |

6. 알/난좌 운반

- 농장 방문내역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차량유형 | 방문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
| | | | | | |
| | | | | | |

○ 발생농장 배송내역(출입기록부 기준) : KAHIS 기록, 출입기록부 순으로 작성

○ 알/난좌 운반 차량 타 축산시설 방문내역

<1> 운전자, 차량번호(축산차량등록번호,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시설구분 | 시설명 | 시설주명 | 주소 | 축종 |
|------|------|-----|------|----|----|
| | | | | | |

7. 기타 출입차량

- 농장 방문내역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차량유형 | 방문자명 | 차량번호 | 차량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
| | | | | | |
| | | | | | |

○ 발생농장 배송내역(출입기록부 기준) : KAHIS 기록, 출입기록부 순으로 작성

○ 기타 운반 차량 타 축산시설 방문내역

<1> 운전자, 차량번호(축산차량등록번호, 기간(21일), KAHIS)

| 방문일자 | 시설구분 | 시설명 | 시설주명 | 주소 | 축종 |
|------|------|-----|------|----|----|
| | | | | | |

V

소독 및 방역조치

1. 농장 부지 내에 사람이 사는 집이 있는가? (예/아니오)

2. 관련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비치하고 있는가?

출입자 농장 주변 축사 내외부 전체 미기록 일부 미기록 (TEXT) 기타(TEXT)

* 필요시 소독실시기록부 사진 첨부

3. 농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에 대한 사항

3-1 농장 주변 또는 축사 내외부 소독제는?

산화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산성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염기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알데하이드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기타(제품명/희석배율 TEXT)

3-2 소독형태는? 분무 고체(분말 또는 입자) 기타(TEXT)

3-3 차량소독시설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반드시 약품명과 희석배수를 기재

산화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산성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염기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알데하이드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기타(제품명/희석배율 TEXT)

3-4 소독형태는? 분무 액체침지 고체(분말 또는 입자) 기타(TEXT)

3-5 소독 후 일정시간 정차 후 농장 내로 진입하는가? 예(정차 시간 TEXT 분) 아니오

3-6 축사 진입전 사용하는 소독제의 종류는?

산화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산성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염기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알데하이드제(제품명/희석배율 TEXT)

기타(제품명/희석배율 TEXT)

3-7 소독형태는? 분무 액체침지 고체(분말 또는 입자) 기타(TEXT)

3-8 소독 후 일정시간 경과 후 축사 내로 진입하는가? 예(시간 TEXT 분) 아니오

3-9 소독제는 유통기간 내의 제품인가요? 예 아니오

4. 농장부지 및 경계의 초목은 제거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5. 농장 부지에 쓰레기 더미와 잡동사니가 있는가? 예 아니오

6. 축사 입구(전실 등)에 오물 등 청소가 잘 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7. 축사 간 이동로의 정리·정돈·청소 등을 잘 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8. 농장의 차단방역 상황에 대한 제3자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가요?

예(상호·이름 /최근) 아니오

불임 1**농장 주요 방역 미흡사항****□ 차단 방역 미흡사항(예시)**

| 순번 | 주요 방역 미흡사항(예시) | 비고 |
|----|---------------------------------------|--------|
| 1 | 울타리 일부 미설치 | 확인서 청구 |
| 2 | 농장 뒤편 쪽문사용 및 신발소독조 미비치 | |
| 3 | 농장 출입자 방역복 미착용 | |
| 4 | 축사(1농장 육추동) 그물망 훠손 및 축사(1농장 5동 측면) 구멍 | |
| 5 | 농장 왕겨창고(퇴비장 겸용) 야생조류(참새) 출몰 | |
| 6 | 사육도구 외부보관(사료통) 및 분동시 오리 초생추 외부 노출 | |
| 7 | CCTV 고장 방치 | |
| 8 | 사료빈 주변 사료잔존물 처리 미흡 | |

□ 주요 방역 미흡사항(사진예시)

| | |
|---------------|-------------------|
| | |
| 울타리 일부 미설치 | 쪽문 출입문(신발소독조 미설치) |
| | |
| 농장출입자 방역복 미착용 | 축사 구멍(찢어진 부위) |



불임 2

확인서 1부

확인서

농장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 2021년 월 일 " **농장 AI 역학조사**" 과정 중
방역 준수사항 첨검에서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래 -

- 1.
- 2.
- 3.

2021년 월 일

확인자

성명 : (성명 또는 인)

첨검자

| | | | |
|------|------|------|-----------|
| 소속 : | 직급 : | 성명 : | (성명 또는 인) |
| 소속 : | 직급 : | 성명 : | (성명 또는 인) |

[별지 제12호 서식]

거점소독시설 소독실시기록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의1호 서식]

가금농장 통제초소 출입기록부

<출입기록부 작성요령>

- 근무자는 근무일자, 소속, 연락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하고 반드시 서명
- 농장초소가 2개 이상 농장을 관리하는 경우, 농장별 별도 기재
- 차량소독은 통제초소의 소독기(고압분무기, 손소독제 등)를 사용하여 차량 외부(하부 집중소독)와 차량 내부(운전석 발판, 운전자 손·신발 등)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기록부에 기재
- 출입기록은 농장주를 포함한 모든 사람·차량의 출입을 기록하고 출입목적, 목적지, 출입 여부 등 모든 항목을 기재
(출입목적 예 : 사료·분뇨·가축운반·알운반·컨설팅·약품운반·택배·주유소·공사·자재운반·농장주·농장근로자·친척·주민·방역·점검 등)
※ 농장주·근로자가 외출하는 경우에도 목적지, 차량번호 등 세부항목을 꼭 모두 작성

근무일 : 20 년 월 일 / 근무자 : (소속) 00시 (성명) 김00 (전화번호) 010-0000-0000 (서명)
 근무자 : (소속) 00시 (성명) 이00 (전화번호) 010-0000-0000 (서명)

초소현황

| | | | | |
|------|------------------------|----|-------|--|
| 초소명 | ABC 초소 | 농가 | 농장명 | |
| 초소주소 | 00도 00시 00면 00리 123-45 | | 축주 성명 | |

지자체 담당자 초소 점검·지도사항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 |
|------------------|--|------|-------------|---------------|-------------|
| 소독제 | XXX | 유효기간 | 2000.00.00. | 적정희석배수/실제희석배수 | 500배 / 500배 |
| 소독요령 교육·지도사항(일시) | 소독제 희석배수 숙지 여부 확인 및 희석방법 재교육 (2021.12.31. 15:00) | | | | |

출입기록(농장 소유자 차량 스티커 부착 여부: 0, X)

| 연번 | 시간 | 차량번호 | 운전자 (방문자) | 연락처 (전화번호) | 출발지 | 목적지 | 출입목적 | 소독필증 | | 소독실시 여부(O/X) | | 죽산 차량 등록 (O/X) | | GPS 작동 여부 (O/X) | 농장출입 허용여부 (O/X) | 차량 농장 진입 위치 (농장내/외) | 비고 |
|----|-------|---------|--------------|---------------|------|------|------|----------|----------|-----------------|----------|-------------------------|---|--------------------------|-----------------------|---------------------------------|----|
| | | | | | | | | 소독 장소 | 소독 일시 | 차량 외부 | 차량 내부 | | | | | | |
| 1 | 10:15 | 01가1234 | 홍길동 | 010-1234-5678 | 00사료 | 00농장 | 사료운반 | A거점 | 10:00 | 0 | 0 | 0 | 0 | X | 농장외 | | |
| 2 | 16:00 | 02나7890 | 임꺽정 | 010-9876-5432 | XX유통 | 00농장 | 알 운반 | B거점 | 15:30 | 0 | 0 | 0 | 0 | X | 농장외 | | |
| 3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 |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등 외부인 가금농장 진입 전 신고접수 대장

※ 접수를 받은 시군구에서 작성·보관(아래 항목을 포함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추가 가능하며, 전산파일로 관리 가능)

[별지 제14호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살처분·사체처리 참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성명·소속·연락처(휴대전화 등)·주소·국적·성별·생년월일(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예방접종 이력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명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살처분 및 사체처리 등 참여자에 대한 방역조치 및 환경검사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치료 목적의 관련 정보 전달, 현황 파악 또는 통계분석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살처분 및 사체처리 등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 농식품부(방역정책국)
- 각 시·도(시·군·구) 가축방역 및 보건, 환경 관련 부서
- 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기타(정보, 통계, 연구) 기관(부서)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살처분·사체처리 등에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제공받는자 외에 가축방역조치 및 연구목적 등으로 위해 제3의 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15호서식]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체크리스트

◎ 간단한 척도를 활용하여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살펴보는 것으로 각 문항마다 해당하는 정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설문의 결과가 진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1. 스트레스 | | | | |
|--|------------|--------|---------|--|
| 외상 후 스트레스: PC-PTSD | | | | |
| ※ 살면서 두려웠던 경험, 끔찍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u>지난 한 달 동안</u>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아니요 | 예 | | |
| 1 그 경험에 관한 악몽을 꾸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 경험이 떠오른 적이 있었다. | 0 | 1 | | |
| 2 그 경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 | 0 | 1 | | |
| 3 늘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거나, 쉽게 놀라게 되었다. | 0 | 1 | | |
| 4 다른 사람, 일상 활동,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 가졌던 느낌이 없어지거나 그것에 대해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 | 0 | 1 | | |
| 5 그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문제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을 멈출 수가 없었다. | 0 | 1 | | |
| 2. 신체증상 | | | | |
| 신체증상: PHQ-15 | | | | |
| ※ 지난 한 달 동안, 다음 나열되는 증상들이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 전혀 시달리지 않음 | 약간 시달림 | 대단히 시달림 | |
| 1 위통 | 0 | 1 | 2 | |
| 2 허리 통증 | 0 | 1 | 2 | |
| 3 팔, 다리, 관절(무릎, 고관절 등)의 통증 | 0 | 1 | 2 | |
| 4 생리기간 동안 생리통 등의 문제[여성만 해당] | 0 | 1 | 2 | |
| 5 두통 | 0 | 1 | 2 | |
| 6 가슴 통증, 흉통 | 0 | 1 | 2 | |
| 7 어지러움 | 0 | 1 | 2 | |
| 8 기절할 것 같음 | 0 | 1 | 2 | |
| 9 심장이 빨리 뛰 | 0 | 1 | 2 | |
| 10 숨이 차 | 0 | 1 | 2 | |
| 11 성교 중 통증 등의 문제 | 0 | 1 | 2 | |
| 12 변비, 묽은 변이나 설사 | 0 | 1 | 2 | |
| 13 메슥거림, 방귀, 소화불량 | 0 | 1 | 2 | |
| 14 피로감, 기운없음 | 0 | 1 | 2 | |
| 15 수면의 어려움 | 0 | 1 | 2 | |

| 3. 정서 | | | | |
|---|---|---------------------------------|---------------------------------|---------------------------------|
| 자살: P4 | | | | |
| ※ 당신 자신을 정말 해치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 | <input type="checkbox"/> 있다 | <input type="checkbox"/> 없다 | |
| ‘있다’에 체크한 경우면 아래 문항(1번~4-1번까지)에 답변하세요. ‘없다’에 체크한 분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 | |
| 1 | 이전에 당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input type="checkbox"/> 있다 | <input type="checkbox"/> 없다 | |
| 2 | 당신 자신을 정말 해칠 방법에 대해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input type="checkbox"/> 있다 | <input type="checkbox"/> 없다 | |
| 2-1 | 있다면, 어떤 식으로? | | | |
| 3 |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내 어느 때라도 당시 자신을 해치거나 당신의 삶을 끝내겠다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것 같습니까? | <input type="checkbox"/> 전혀 아니다 | <input type="checkbox"/> 약간 그렇다 |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
| 4 | 당신 자신을 해치려는 당신의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습니까? | <input type="checkbox"/> 있다 | <input type="checkbox"/> 없다 | |
| 4-1 | 있다면, 무엇입니까? | | | |

◎ 응답한 점수의 합계를 구해 해당하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 결과 요약 | | | | |
|-------------------|--|--|---|---|
| 스트레스 영역 | | | | |
| 외상 (PC-PTSD) | <input type="checkbox"/> 정상 (총점 0~1점) | <input type="checkbox"/> 주의 요망 (총점 2점) | <input type="checkbox"/> 심한 수준 (총점 3~5점) | |
| 신체 증상 | | | | |
| 신체 증상 (PHQ-15) | <input type="checkbox"/> 정상 (총점 0~4점) | <input type="checkbox"/> 경미한 수준 (총점 5~9점) | <input type="checkbox"/> 중간 수준 (총점 10~14점) | <input type="checkbox"/> 심한 수준 (총점 15~30점) |
| 정서 영역 | | | | |
| 자살(P4) | <input type="checkbox"/> 자살 위험성 거의 없음 | <input type="checkbox"/> 자살 위험성 낮음 | <input type="checkbox"/> 자살 위험성 높음 | |
| | ※ ‘당신 자신을 정말 해치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 없다’고 응답 | 1, 2번 문항 중에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 3번 문항 ‘전혀 아니다’ 4번 문항 ‘있다’고 응답 | 3번 문항에 약간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 4번 문항에 ‘없다’라고 응답 | |

출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마음건강 안내서

| |
|---|
| << 검사결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수준 : 스트레스를 관리 필요 ○ 주의 요망/중간 수준 : 추가적인 평가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 권유 및 작업참여 선택권 부여 ○ 심한 수준/자살 위험성 높음 : 추가적인 평가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 권유 및 작업 참여 불가능 고려대상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고 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SOP)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5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03호, 2022. 9.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살처분·이동제한·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의 사전예방 및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조류인플루엔자"란 조류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축전염병을 말하며, 조류인플루엔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저병원성으로 구분한다.
- "환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축"이란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가축을 말하며, "의심축"이란 축주 또는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되어 신고한 가축으로 가축방역관이 확인하기 전의 가축을 말한다.
- "발생농장"이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가축의 사육시설이 있는 농장을

말하며, "발생지"란 발생농장이 소재하는 마을을 말한다.

4. "관리지역"이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 9)를 감안하여 관리지역의 범위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관계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지 파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5. "보호지역"이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백미터를 초과하여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보호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6. "예찰지역"이란 보호지역으로부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예찰지역의 범위를 시·도지사 소속 지방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7. "방역지역"이란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발생권역을 말한다.
8. "발생일"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을 말하며,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검역본부 또는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환축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9. "감수성동물"이란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타조·꿩·기러기·돼지·개·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을 말한다.

10. "권역"이란 평상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단위로 지역화한 것을 말한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권역을 "발생권역"이라 한다.
11. "운송"이란 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축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가축의 상차, 운전, 휴식 및 하차 등 출발에서 도착까지 작업 과정을 말한다.
12. "가축운송자등"이란 가축운송에 관련된 축주, 동물취급자, 동물운송자 및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13. "방역강화관리대상"이란 살아있는 닭과 오리 판매소, 가든형식당, 가축거래상인 및 상기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가금농장(임시사육하는 계류장 포함)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를 말한다.
14. "방역관리 책임자"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10만 마리 이상의 닭 또는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에 선임되어 가축방역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역 전문가 또는 업체를 말한다.
15. "이동제한"이란 전염병의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오염되었거나 역학적으로 관련되어진 시설·물건·차량·사람 등에 정해진 기간동안 이동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역학조사"란 전염병의 원인과 전파와 관련된 요인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조사를 말한다.
17. "거점소독시설"이란 축산관련차량(운전자)의 방역지역별 이동시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긴급 백신접종"이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 또는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지역의 가금류 가축에 접종하는 것을 말한다.
19. "백신주"란 백신제조용 바이러스로, 실험동물에 접종실험을 거쳐서 질병에 방어할 수 있는지 능력평가를 마친 바이러스를 말한다.
20. "항원뱅크"란 백신 완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로, 백신주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냉동 비축해 놓은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돼지는 발생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돼지는 관리지역 내 농장 포함)에서 사육하고 있을 경우 적용된다.

1. 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타조·꿩·기러기·돼지·개·고양이 등 가축
2.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3. 감수성동물중 현장방역관이 임상증상 등 의심소견을 관찰한 동물
4.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동물(이하 "적용대상 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물
5. 조류인플루엔자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시설·물건·차량·사람

제2장 예방활동

제4조(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에는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계하는 정부기관·축산관련단체·축산농가 등의 역할분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집합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추진) ① 검역본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대상물품, 해외여행자, 수송수단 등에 대한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외국의 조류인플

루엔자 발생동향,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유입경로별 및 검역대상물품별 위험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경검역대책에는 수입되는 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병원체의 정밀검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조류인플루엔자 예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다음 연도의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닭과 오리 판매소·가든형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방역관리(이하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방역강화관리대상(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및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계획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하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 결과 양성인 경우 해당 농장에 대하여는 의사환축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하고, 검역본부장에게 정밀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가축방역기관 중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형까지 판정 후 검역본부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항원, 항체)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제4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를 위하여 제2조에 따른 방역 강화관리대상(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 및 예찰 등 방역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 제7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 닭·오리 등의 가축관련 축산단체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축산업 허가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교육 및 점검 결과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점검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등, 가축운송자등이 오리, 산란계 또는 종계의 노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와 가축거래상인이 가금을 운송·거래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이동승인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국내 사육 가금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등 긴급한 때에는 이동승인서 적용 대상 가금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역강화관리대상은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및 제8호의3서식에 따라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⑥ 방역강화관리대상은 제5항에 따른 거래기록에 대해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6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금류에 대하여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

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하여 축사별로 폐사 및 산란(산란하는 가금에 한한다) 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사별로 사육 중인 가금의 수와 대비하여 당일 폐사한 가금의 수가 최근 7일 간의 평균 폐사 수 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최근 7일 간의 평균 산란율 보다 3 퍼센트 이상 저하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5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의5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는 선임된 농장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한 소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업무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이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백신 수급·비축 등)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 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최근 국내 및 주변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형(혈청형)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백신제조용 항원을 비축·보관하여야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비축항원으로 백신을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항원뱅크 구축상황을 점검하여 긴급백신 접종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긴급백신 완제품을 긴급하게 수입할 수 있는 수입경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9조(백신주 등 선정) ① 검역본부장은 긴급백신 접종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백신주 및 비축물량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백신주 사용을 위해 제1항의 보고를 토대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등을 통해 비축물량 조정 및 백신주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의사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0조(의심축 및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등) ① 의심축을 발견한 소유자등, 수의사,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법 11조 규정에 따라 당해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읍장·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 의심축을 발견한 자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신고한 경우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 동일한 신고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지체없이 소속 가축방역관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임상진단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임상검사 등의 결과 의사환축으로 판단한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 검역본부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는 소독조·소독장비의 설치. 이 경우 통제초소의 설치장소는 적용대상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인접축사·발생농장 출입구·도로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축사내외·차량·축산기자재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및 사람에 대한 소독 실시
 3.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의 이동 금지
 4.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사환축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하여 외출을 자제토록 조치하고, 방역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
 5. 의사환축과 관련된 물품의 농장 밖으로의 반출 금지
 6. 검사시료를 채취한 후 검사시료 포장지·포장상자 외부를 철저하게 소독하여 정밀검사 의뢰
 7.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역본부 및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농장내 상주
- ④ 가축방역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조류인플루엔자에 적용대상 동물의 축사가

인접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발생지에 대하여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가축방역관은 제3호의 조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군수,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도지사의 조치)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검역본부장 및 타 시·도지사에게 의사환축 발생사실 통보
2. 검역본부장에게 검역본부 소속 관계관의 현지파견 협조요청
3.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설치
4.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및 가축의 이동사항·출입자·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역 지원 지시
5. 시·도경찰청의 방역통제 인력 지원체계 확인
6.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독 등 방역조치 지시 및 현장통제본부·이동제한 지역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초소 설치 준비 지시
7. 발생지 및 방역지역내 적용대상 동물의 농가별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제12조(시장·군수의 조치) 의사환축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의 출입제한 조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설정에 대비하여 의사환축이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적용대상 동물의 사육현황 조사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3.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발생지에 현장통제본부를, 해당 시·군에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
4.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현장방역조치를 위한 인력·장비·약품 등의 조달계획 수립

5.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및 예방조치 계획 수립
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차량·가축등의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초기 방역 조치와 기초적인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 등을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초동방역팀을 자체 없이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파견하고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시·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임상관찰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파견
2. 현장파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별표 3의 검사시료 채취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고 출장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내역서를 작성하여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3.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사항, 출입자, 출입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 및 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을 포함한 다양한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본부에 제공
4. 발생지의 소독, 통제초소 운영 및 살처분 등의 방역 기술지원을 위한 소속 가축방역관의 상주
5. 의사환축의 환축판정을 대비하여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제14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와 검역본부장의 관계관 현지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의 발생상황·발생지의 축산업 형태·지형적 여건·야생조류 서식실태·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살처분·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긴급방역조치에 관하여 가축방역심의회에 부의
2.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설치
3. 국방부·경찰청 및 질병관리청 등에 의사환축 발생사실의 통지와 환축판정시를 대비한 방역인력 지원체계 점검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협조체계 점검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시·도 이외의 타 시·도의 시·도지사에게 관할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임상관찰 등 예찰을 지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검역본부장의 조치) 검역본부장은 의사환축 발생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도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환축 발생시 시·도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 실시
 2.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유관기관(질병관리본부 등) 등에 보고 및 통보
 3.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의 설치
 4. 시장·군수,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 제16조(병성감정 등) ① 가축방역관은 일상적인 방역업무와 관련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실험실 진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축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의사환축에 대한 정밀검사는 검역본부 또는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에서 실시한다.
- ③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기간 중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일상적인 병성감정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수행한다.
- ④ 검역본부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시·도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며, 그 지정을 위한 시설·검사장비·검사 인력 등의 기준, 지정절차 및 사후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환축 발생시 방역요령

제17조(발생사실의 공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제15조 제2호에 따른 환축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언론매체를 통해 발생사실, 발생장소, 발생경위, 방역조치 개요 등을 알려야 하며, 기획재정부·외교부·국방부·행정안

전부·환경부·질병관리청·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생지 현장통제본부에 중앙통제관 및 민간전문가를 파견하여 이 요령에 의한 방역지도 및 방역기관·단체간의 업무조정을 하게 하거나 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을 발생지에 파견하여 방역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게 방역추진상황·정부 방역대책·농가의 방역수칙 및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제3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요령, 축산물의 안전성, 소독약품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현장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장·군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제3의 홍보실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 등 홍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검역본부장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Animal Health code)에 따라 환축 발생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이동제한 등의 조치) ①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방역지역의 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장의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적을 적용한 지도를 사용한다.

② 발생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의 운영,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 방역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및 군부대의 장에게 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농장 입구의 눈에 잘 띠는 장소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별표 4의 출입금지 표지판의 설치

2. 발생지 및 방역지역 안에서 사육되는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명령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서 개별통보 및 공고
 3. 발생지 및 방역지역이 구분되는 각 도로망에 이동제한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람·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출입통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시
 4. 발생농장의 관리자, 관리자의 동거가족 및 발생농장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통제하에 세척·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외출 허용
 5. 발생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출을 자제토록 하고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외출을 허용
 6.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 차량, 적용대상 동물과 그 생산물 및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조치는 제20조에 따른다.
- ④ 시장·군수는 방역지역안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

1. 보호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최초 발생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예찰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 추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 ⑤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무원을 배치하고, 보호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시까지 일일 임상관찰, 오염물건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제19조(살처분 등) ①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지체없이 살처분 및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관계관, 시·군 관계관 등과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발생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돼지·개·고양이)은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
 2.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개·고양이 제외, 관리지역 내 돼지는 정밀검사 실시 후 항원 양성인 경우) 및 그 생산물로서 별표 10의 절차에 따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정한 것. 다만,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살처분 제외 대상으로 방역분류기준을 부여받은 농장 중 살처분의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
 4. 그 밖에 발생농장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진입로 사용, 동일한 분변 처리장 이용 등 역학적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적용대상 동물 및 그 생산물(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살처분 제외가 결정된 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과 사람·장비·차량·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어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살처분 및 폐기 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 ②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살처분 또는 폐기 여부 결정시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시·군 관계관 및 검역본부 담당관과 보호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 폐기의 범위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실시하거나 제외시키기로 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고 현지 실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의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확산이 우려되는 긴급한 때에는 현지실사단 파견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가축의 살처분·매몰 또는 소각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살처분 관련규정·작업요령·주의사항·인체감염예방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구 착용 및 필요한 약제를 투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이 가축의 살처분·매몰 등으로 환축과 접촉우려가 있는 방역조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1. 만 20세 미만, 만 65세 이상
2. 임신부
3.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미소지자, 신원확인 및 연락처 확인 불가능자(외국인)
4. 38°C 이상의 고열 등 감기증상이 있는 자
5. 폐질환, 심장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증 및 혈색소병증(hemoglobinopathy) 환자로 진단받은 자

⑤ 발생농장의 죽은 가축과 살처분한 가축의 처리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발생지 또는 발생지 인접지역에서 매몰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대상가축을 매몰·소각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덮개가 있고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반차량은 운반 전·후에 차량의 내·외부를 적정한 소독약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의 가축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사용된 장비에 대하여 발생지에서 목욕(세척)·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을 마친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적용대상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살처분 및 매몰작업을 위하여 발생지역의 다른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군수는 가축의 소유자·관리자, 가축방역, 살처분 및 매몰작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역학조사 및 추적관찰이 가능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역학조사) ① 의사환축 및 발생농장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하고, 발생농장에 대한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며,

긴급한 경우 검역본부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차 역학조사반은 농가 내부 및 차량 등의 다양한 오염원 시료를 확보하여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분석 및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1차 역학조사내용을 검역본부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전달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동상황 등 조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고, 정밀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2.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해당 가축과 직접 접촉한 가축의 소유자·축사관리인·수의사 등이 접촉한 적용대상 동물
3. 의사환축이 발생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발생농장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포함한다)을 출입한 사람·차량과 그 사람·차량이 방문한 농장의 적용 대상 동물
4.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량
5. 살처분 대상가축, 관리지역·보호지역·예찰지역 오리 및 역학 관련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역학분석을 위한 채혈 등 검사시료의 채취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추정시기 또는 임상증상 발현일이 의사환축 발생일보다 이전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되었을 경우 추정일로부터 21일전까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이동상황 추적조사
7. 발생상황 등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 목적으로 환축의 임상증상 등에 대한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
8. 발생원인 규명을 위해 발생농장 내·외부 및 차량, 장비·도구 등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검사시료의 채취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3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농장 등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소독 등 조치) ①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적정한 소독약을 이용하여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

고, 그 밖의 소독방법은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한다.

1.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발생농장의 출입구 통제초소
2. 환축 또는 의사환축과 접촉되었거나 접촉되었다고 의심되는 기구, 피복류 등
(이 경우 소독약을 이용한 소독을 열처리 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 발생농장의 축사·관리사·창고·숙소·분뇨처리시설·하수구, 발생지 안의 축사, 주변도로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장소
4. 살처분, 소각 또는 매몰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장비
5. 발생지 밖으로 외출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 발생농장·발생지 가축의 소유자등은 발생지의 설치류·야생조류 등 조류인플루엔자 매개체에 대하여 구제·접근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생농장 가축의 생산물(알·깃털 등) : 소각 또는 매몰
2. 가축의 분뇨 : 농장내 매몰하되, 살처분 시 분뇨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밀폐·보관한 다음 28일 경과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매몰 또는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장의 경우 위험도 평가, 청소·소독 상황, 부숙 정도 등을 평가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3. 배합사료·조사료·깔짚·왕겨 등 : 소각 또는 매몰(단, 지대사료 등 포장되어 소독 조치가 가능한 경우 제외)
4. 차량·축산기자재·장비 등 : 세척 및 소독
5. 가축의 치료에 사용한 약품류 : 소각 또는 매몰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야생조류에서 검출을 포함한다)하여 모든 방역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법 제17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 각 호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독필증을 발급받고, 시설출입차량 운전자는 축산 관련 시설 또는 가금농장 방문 시 이를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소유자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경우 거점소독시설 관리자, 시설출입차량 운전자 및 축산 관련 시설 소유자는 소독필증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22조(관리지역·보호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및 시·군 관계관과 협의를 거쳐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본부장은 방역지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의 적용대상 동물의 소유자에게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2일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관리지역·보호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보호지역 밖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보호지역 안으로의 반입금지. 다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가금과 돼지에 대하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되, 육계의 경우 가장 가까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출하 도축장이 소재한 인접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독·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여 인접 시·도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당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2. 닭·오리 부화장의 폐쇄 및 보관중인 닭·오리의 부화란 폐기. 다만, 보호지역 내 닭 부화장의 경우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종란의 입고,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보호지역 내 오리 부화장(종오리 농장과 인접한 부화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방역지역 설정 이전에 예찰지역 또는 이동제한 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험도평가 후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종란의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

※ 위험도평가는 임상예찰, 정밀검사(종란을 공급한 농장별 시료를 구분하여 검사),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방역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반출 시 해당 시·도 밖으로는 반출하지 못함

3. 관리지역 내 오리 도축장은 폐쇄. 닭 도축장과 보호지역 내 오리 도축장은 출하

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만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다만,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 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도축 및 그 생산물 반출 허용

4.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내 매몰 또는 축사내 보관하되, 산란계의 경우 농장내 이동은 허용하고 농장 밖으로의 반출은 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 또는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이동 허용
5. 닭·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폐기하되, 보호지역의 닭 종란과 식용란은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닭 종란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로 소독 실시 후 해당 시·도 내 반출 허용, 식용란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가공되었거나 소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반출 허용
6. 사료·깔짚·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안에서만 운행하는 사료전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료를 농장내 반입하되,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료의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사료 폐기
7. 축사 내·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8. 감수성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오리 등 감수성 가축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을 금지하되, 검역본부장으로부터 보호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 받은 닭 분뇨 운반차량은 허용
9. 사람에 대하여는 이동통제초소 및 가금류 사육농장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후 통행허용
10. 관리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가축방역심의회의의 협의 결과 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폐기
11. 보호지역내 사료공장의 원료·사료는 이동제한 조치하되, 위험도 평가 후 가축

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허용

※ 가금용 사료는 검역본부 담당관이 직접 점검 후 생산 및 유통 허용

12. 닭·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폐쇄

13. 발생지 또는 관리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발생농장의 적용대상 동물 또는 오염된 생산물을 급여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적용대상 동물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는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하여 항원 양성인 동물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실시하고, 항체만 검출되는 경우에는 방역대 해제와 함께 이동제한 해제, 조사·연구 필요시에는 검역본부로 이송 조치

14. 난좌, 왕겨, 깔짚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원료·제품에 대하여 일시 이동제한 및 관련 시설·장비·사람 등에 대한 소독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3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

2.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 조치

제23조(예찰지역의 방역) ① 시장·군수는 예찰지역을 설정하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축산업 형태,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또는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별표9)를 감안하여 시·도 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관계관 및 시·군 관계관과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예찰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의 소유자에게 환축의 발생사실이 공표된 날부터 3일 내에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완료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예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예찰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리는 농장 밖으로의 이동금지 및 예찰지역 밖의 오리에 대해 예찰지역 안으

로의 반입을 금지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다.

가. 출하 7일 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및 방역요건을 충족하고, 방역 관련 점검 결과 이상이 없으며,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오리에 한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입 허용

다. 닭 등 그 밖의 가금류는 출하 7일 전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입 허용

2. 닭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도축 허용, 오리 도축장은 출하전 검사결과 음성인 방역대내에 있는 오리에 대하여만 도축을 허용. 다만, 오리도축장의 경우 관리지역과 보호지역의 가금농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방역대외에 있는 가금에 대하여도 검사실시 후 음성이면 도축 허용

3. 닭 부화장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오리 부화장은 이동제한지역 밖에서 반입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와 제5호에 따라 반출이 허용된 예찰지역에서 유래된 종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화 및 부화 병아리를 방역대 밖으로 반출 허용

4.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예찰지역 또는 발생 시·군 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시장·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역지역 설정 시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 발생 시·군 내 1개 이상 공동처리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겸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인근 공동처리장으로 이동을 승인할 경우 이동 허용

5. 오리의 종란 및 식용란은 원칙적으로 폐기를 하되, 오리 식용란은 오리에 대해 임상·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공용(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반출을 허용토록 하고, 예찰지역내 부화장을 같이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의 경우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종오리 농장이 부화장을 같이 운영, 부화장에 타농장으로부터 종란 유입 없음, 부화장이 외부

와 차단됨 등) 하는 경우 종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장을 이용하여 부화 및 병아리 반출을 허용토록 하며, 닭의 종란과 식용란은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이동을 허용

6. 사료·깻잎·왕겨는 농장 밖으로 반출금지 및 농장 내 반입시 소독을 실시하고,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워진 경우 등 가축방역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폐기
7. 축사 내·외부, 출입구, 농장주변 도로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실시
8. 적용대상 동물·생산물·사료·동물약품·왕겨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외부·바닥·바퀴·운전석 등 소독후 통행허용. 다만, 닭·오리 등 적용대상 동물의 분뇨 운반차량은 통행금지 하되, 예찰지역 내 공동처리장(시·도지사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은 공동처리장)으로 닭의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소독 후 이동 허용
9. 사료공장 및 닭·오리의 분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시설은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생산 및 유통

④ 예찰지역(관리지역·보호지역을 포함한다) 안의 적용대상 동물에 대한 이동제한은 다음 각 호가 끝난 날부터 28일이 지난 후 예찰지역 안의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항원검사)와 오리 검사(혈청검사 및 항원 검사), 사육하지 않는 빈 축사(발생농장, 예방설치분농장, 출하 후 7일이 경과한 농장)의 환경시료에 대한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사육형태, 발생상황, 교통·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대한 살처분(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
2.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소독·소각 또는 매몰 조치

제24조(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시설(조류학습장, 동물원, 일반가정 및 가축시장),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축사외 장소(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 안에서 의사환축이 발견된 때에는 그 즉시 가축의 도축을 전면 중단하거나 해당 도축장등

에 대한 이동통제, 조류판매중단 등의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 및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된 가축에 대하여는 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도축장등의 가축 계류시설 안에 계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의사환축을 출하한 농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의사환축이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 당해 도축장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도축장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축의 출하 농장(시설)에 대하여도 이 요령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축장등은 폐쇄조치. 다만, 폐쇄기간은 검역본부장의 기술적 자문을 받아 시·도지사가 정함
2. 환축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오염이 의심되는 도축장등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3. 가축방역관은 도축장등에서 환축과 접촉한 사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역학조사가 가능하도록 인적사항의 기록·유지 및 질병관리청장에 제공
4. 환축과 함께 계류된 도축장내의 감수성 가축 전체에 대한 살처분
5. 부화장에서 부화·보관중인 전체 종란 및 부화 병아리의 폐기
6. 의사환축 발견이전에 의사환축과 같이 계류되었던 상태에서 이미 도축되어 보관중인 해당 도체(닭·오리 의사환축 발생 7일 이내)의 폐기 및 도축장 밖으로 출하된 지육 등의 회수·폐기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의 항원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요령에 의한 예찰지역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은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 실시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형적 여건,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되기 전에 이동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야생조수류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검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역지역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방역지역 간 경계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지점으로부터 3km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최초 발생 당시의 방역지역을 유지
2. 3km~10km 안에서 추가 발생 시 : 추가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 재설정. 이 경우 당초의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을 적용한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 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3~10km에 한하여 오리 및 그 알(식용란·종란)은 점검·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역조치를 총족한 경우 가축 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반입과 반출을 허용할 수 있으며, 도심지에서 야생조수류 감염 확인시에는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탄력적으로 지정 및 방역조치를 취한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른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기간은 시료채취일을 기준으로 21일로 하며,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 정밀검사(닭은 필요시 정밀 검사, 오리 등 기타 가금은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정된 날 까지로 한다. 다만,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에서 확인된 H5형 또는 H7형 항원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내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 시설에서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6의 도심지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 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의 장과 검역본부,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장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공동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본부(검역본부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은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상황실)에는 상황반·행정지원반·유통감시반·수급대책반·역학조사반·정밀진단반 등을 두어 운영하되, 기관별 업무역할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장 긴급백신접종

제26조(고려조건) ① 현행의 조류인플루엔자백신은 조류인플루엔자의 증상발현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을 완전히 방어할 수는 없어, 방역조치와 병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백신접종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는 예찰을 통한 조기검출과 환축 또는 의사환축의 신속한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에 예방적 백신접종은 실시하지 않는다.

③ 제29조에 따른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할 경우, 동 질병의 발생 또는 유행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체검사로는 백신접종축과 동 질병 감염축을 구분하기 어려워 청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제27조(긴급백신접종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이동제한, 살처분 등 방역조치만으로 통제가 어려워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검역본부장의 긴급백신접종 건의 등 긴급백신접종이 필요한 상황 발생시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긴급 백신접종 건의시 환축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비축중인 백신제조용 항원간의 유전자 상동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 전파차단을 위한 긴급백신 결정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법을 정하여 공포한다.

1. 접종 시기
2. 접종 지역
3. 접종 대상가금

4. 기타 필요한 사항(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

제29조(긴급백신접종 실시) ① 긴급백신 접종은 가축의 소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긴급 백신접종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제30조(사후관리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긴급 백신접종축과 미접종축이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를 실시하며, 기록 관리는 도축 또는 폐사 등 해당가축이 없어질 때까지 실시한다.

제6장 종식후속대책 추진

제31조(종식 선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모든 방역지역에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때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32조(종식후속대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한 후 시행하여야 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축의 정밀검사, 발생 시·군 특별관리방안 등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 월간 이동제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3조(가축의 재사육) ① 제19조에 따라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의 축사 안에 감수성 동물을 다시 사육할 목적으로 입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생농장(예방살처분 농장중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환경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 및 H5·H7 항체 양성판정 농장을 포함한다) :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로서 별표 7의 입식시험실시요령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입식시험전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며 14일간의 입식시험 결과에 이상이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입식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가축방역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고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된 경우. 다만, 돼지의 경우는 발생농장의 분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방살처분 농장이 발생농장과 인접하여 있거나 발생농장을 포함하여 밀집되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위원, 시·도 및 시·군 관계관 등과 협의(필요 시 검역본부 관계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를 거쳐 발생농장의 방역상황(청소·세척 및 소독 상황, 환경검사 결과, 분뇨 처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최대 21일 범위 내에서 재입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보호지역 및 예찰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 :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다만, 보호지역 내 예방살처분 농장은 해당 보호지역이 제22조제4항에 따라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장의 소유자등은 감수성 가축을 재사육할 수 있을 때까지 임의로 축사 등 농장 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왕겨, 사료, 깔짚 등을 농장에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제34조(부화장의 영업재개) 시장·군수는 제22조에 따라 폐쇄된 부화장에 대하여 보호지역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된 후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영업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혈청형 H5 또는 H7형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밀검사 결과 H5형 또는 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출되었거나 그 밖의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높은 폐사율 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조류인플루엔자의 분류기준(제2조제1호 관련)

1.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부 판정은 다음과 같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 규정에 따른다.
 - 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판정시험기준에 따라 분리 바이러스를 6주령의 닭에 감염시켰을때 정맥내 병원성 지수가 1.2보다 높거나 4~8주령 감수성 닭 8수에 접종하여 10일내에 6수(75%) 이상 폐사할 경우
 - 나. 분리된 H5나 H7 혈청형 바이러스가 가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HA 유전자의 유전자분절부위 아미노산 염기서열이 기존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유사한 경우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제12조제6호 관련)

1. 초동방역팀 구성

-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은 도별로 적정한 초동방역팀을 구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 1.2 각 초동방역팀은 1~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훈련

-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 2.2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 3.1 의심축 발생 시 시·도 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장·군수는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 농식품부 장관은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지시할 수 있다.
- 3.2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받은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해당농장에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장·군수 등 투입요청기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3.3 방역본부장은 AI 의심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만으로 곤란한 때에는 타 도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다.
- 3.4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투입시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휴대하도록 조치한다.
- 3.5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상시 비축하고 AI 의심축 발생시 발생지역 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초동방역팀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4. 초동방역팀 임무

4.1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지원한다.

4.1.1 AI 의심축 발생농장 입구에 의심축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표 4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4.1.2 의심축 발생농장의 진입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 소독장비를 운영한다.

4.1.3 의심축 발생농장 진입로에 대해 소독(생석회 살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1.4 의심축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4.1.5 의심축의 소유자, 소유자의 동거가족 및 의심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와 가축·사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시를 받아 개인 방역조치를 실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2 초동방역팀은 의심축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기록·관리하고, 질병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5. 초동방역팀 철수

5.1 초동방역팀은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당해 농장 입구에 상주하여야 하며, 양성판정시에는 당해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종료하고 시·군 인계 후 철수한다.

5.2 초동방역팀은 철수전에 수집된 정보를 가축방역관에게 인계·인수하고 개인 방역조치 및 방역차량 등 장비소독 후 철수한다.

5.3 철수 후 목욕, 세차, 재 소독을 실시한 다음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격리조치 후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정상업무를 추진하고 양성일 경우 최소 7일간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단, 초동방역 및 사후관리 인력으로 투입 가능)

6.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

6.1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 침구류, 축사용품, 소독 및 통제용품 등이며 세부물품은 방역본부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별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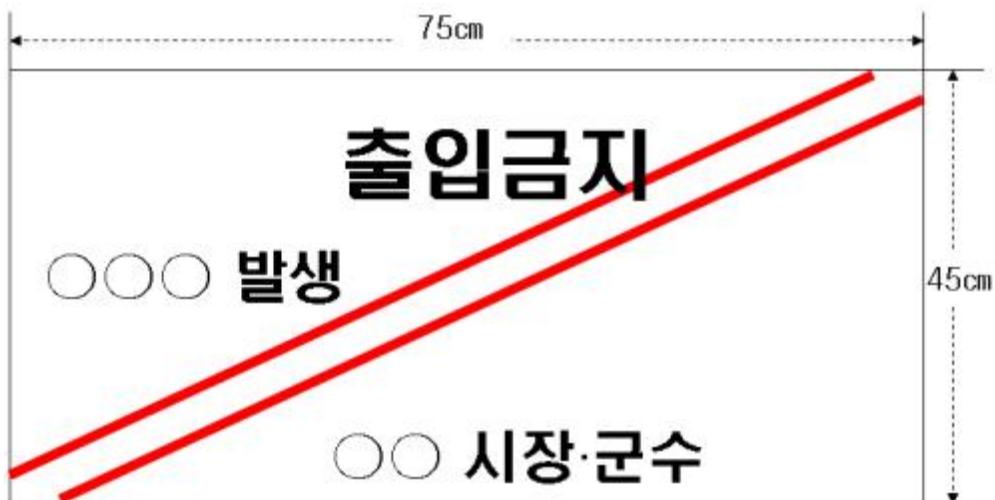
검사시료채취 준비물(제13조 관련)

| 집 행 용 구 | 수 량 |
|--------------------------------|----------|
| 프라스틱 백(90 x 90cm), 냉장용 아이스팩 포함 | 6개 |
| 프라스틱 백(50 x 25cm) | 6개 |
| 고무장화 | |
| 고무장갑 | |
| 1회용 장갑 (라텍스 장갑) | |
| 보호복(LEVEL D급) | |
| 보호용 마스크(안면 전면 또는 N95) | |
| 보호용 안경(고글) | |
| 멸균 목재 압저 (tongue depressor) | 축사별 5개 |
| 1회용 주사기 3ml | 축사별 20개 |
| 멸균 면봉 | 축사별 40개 |
| 50 ml 코니칼튜브(바이러스 수송배지 포함) | 축사별 12개 |
| 아이스박스(혹은 스티로폼 박스) | 2개 이상 |
| 네임펜 | 3개 |
| [별지 제3호서식] 시료채취내역서 사본 | 1부 |
| 박스테이프 | 1개 |
| 조류인플루엔자 간이항원 진단키트 | 10 Test분 |

* 준비물은 출장 인원, 검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4]

출입금지 표지판(제18조 관련)



(흰색 바탕에 검정글씨, 붉은 사선 2줄)

[별표 5]

역학조사 관련농장 등의 방역조치(제20조제4항 관련)

1. 발생농장에 가축·종란을 공급한 농장 또는 부화장 등

- 가. 닭(칠면조, 메추리 등 닭목 포함, 이하 같다)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적용대상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증상 발견 시 정밀검사 실시
- 나. 오리 등 기타 가축(거위, 기러기, 청둥오리 등 오리목 포함, 이하 같다)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내에 가축을 공급한 경우에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 다. 닭·오리 부화장 등
-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병아리를 공급한 부화장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 가) 부화장에서 운영하는 종오리 농장(소유주 및 그 가족 등이 동일 지역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에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고
 - 나) 부화장 내 감수성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종란, 부화중인 종란(일령별 검사) 및 환경시료(차량 내·외부, 운반용 난좌, 분양 용기, 발육기·발생기, 작업용 장화 등 오염원이 잔존 가능한 시설·기구)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 2)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타 농장으로 분양된 병아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타농장으로 분양된 닭 병아리는 입식일부터 7일 이상 이동제한 및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닭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타 농장으로 분양된 오리 병아리는 입식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하고, 다른 일령의 오리에 대하여도 임상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3)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부화장에 종란을 공급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공급일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사육 중인 감수성 가축, 종란, 환경시료 등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2.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을 사육하거나, 종란을 부화하는 농장 또는 부화장
가. 닭 농장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2) 이동제한 기간 중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필요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자체 없이 살처분. 오염물건은 소독 또는 소각·매몰 조치하고, 마지막 입식일로부터 14일 이상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나. 오리 농장

1)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내에 발생농장에서 공급받은 가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하고,

2)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 항체)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다. 닭·오리 부화장 등

1)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생산된 닭·오리의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에 대하여 해당 부화장 폐쇄, 사람·차량 등 출입 통제, 부화·보관 중인 종란과 부화병아리 폐기·살처분 및 부화장의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다만, 해당 부화장에 부화·보관 중인 종란은 검역본부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가 해당 부화장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일정한 방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종란을 폐기하지 않고,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외부 반출 및 분양 허용

* 일정 방역요건 : 발생농장의 종란을 부화·보관하고 있는 시설과 분리되어 부화·보관, 부화장(발생농장 관련 보관 중인 종란 포함)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음성, 부화장 내 차량·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부화장 내 종란

관리 인력 등에 대한 교차오염 여부를 평가하여 가축방역관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전까지 해당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분양받은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소독·임상관찰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역관리를 하여야 하며,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닭의 경우 필요시 혈청·분변검사, 오리의 경우 혈청·분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 3) 해당 부화장에 대하여 종란 등의 폐기가 완료된 날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부화장의 세척·소독상태를 점검하여 병원체의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입란 허용
3. 발생농장 환축과 접촉한 사람(소유자등·진료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운반차량 운전자 등)이 방문하였거나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차량이 출입한 농장 또는 부화장
- 가.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내에 발생농장을 방문·출입한 이후 방문·출입한 다른 농장·부화장의 가축(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방문·출입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 나. 이동제한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닭은 임상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는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4. 발생농장에서 가축 등을 출하한 도축장 등
- 가.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내에 출하된 가축이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류가축 전 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 나.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 또는 사람이 방문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출입 또는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 감수성 가축에 대하여 닭은 임상검사(필요 시 정밀검사), 오리는 항원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의 우려가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 다.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을 도축하여(동일한 날짜에 도축된 다른 농장의 도축물량 중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

보관·유통중인 물량을 파악하여 소각·매몰하고 소독 조치

- 라. 발생일 기준 과거 7일 내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살아있는 닭·오리 판매소 등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포함한 판매소 등에 계류된 가금류 전두수를 지체 없이 살처분하고 보관·유통중인 물량(다른 농장의 가금육도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포함)을 소각·매몰하고 소독 조치
- 마.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출하가축을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는 방문 당시의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 후 사용(운행)토록 조치. 다만,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운행토록 조치

5.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알(식용란)의 수집·보관 장소 등

- 가. 발생농장에서 판매된 알(식용란) 중 계란 및 메추리알은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소각·매몰, 이하 동일), 오리알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생산된 경우 폐기하고,
- 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의 시설·장비·차량 등은 발생농장의 계란(오리알 포함)이 폐기되고 집하장 내 모든 장비, 시설, 차량 등의 세척·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제한. 다만, 발생농장에서 공급된 알이 아닌 경우 소독수에 소독, 세척, 건조하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시 유통 가능

6.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의 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예 종란운반·식용란운반·가축운반 차량, 상하차인원, 백신접종, 진료수의사, 농장종사자 등과 이용된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하고, 접촉 당시 의복·신발,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 및 건조(차량의 경우 차량의 바퀴 및 운전석 발판 등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후 운행토록 조치.

-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연락

7. 발생농장에서 반출된 분변을 처리한 업체

- 가. 발생일 기준으로 과거 21일 이내에 발생농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변이 있는 경우 분뇨처리업체내 분변 등(생산된 퇴비 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이

있는 모든 것 포함)은 이동제한하고 생석회를 도포하거나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덮어 발효 처리하여 반입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병원체 오염여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제한 해제.

- 나. 다만, 21일 이전에 공급받은 분변으로부터 생산된 퇴비가 완제품으로 포장되어 다른 분변과 차단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후 반출 가능(21일 이전에 공급받았으나 완제품으로 포장된 경우가 아닌 분변은 이동제한 하되 21일 이내 공급받은 분변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때 같이 이동제한 해제)

8. 발생일 기준 과거 14일 이내에 발생농장의 환축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및 차량이 출입한 시설(사료공장·사료하치장·동물병원·왕겨업체·가금판매소·식용란선별포장업 등)에 대하여 세척·소독 및 건조 조치하고, 해당 시설 및 차량에 대한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운영(운행)토록 조치

- ※ 역학관련 농장에서 이동제한 중인 가금(초생추 포함) 및 알(종란, 식용란)에 대하여는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시 도축·출하·반출 허용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동제한 기간 중 도축·출하·반출 금지
 -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발생농장 이외의 지역에서 사육·부화하는 가금·알
 - 발생농장에서 공급한 가금·알이 사육·부화되는 농장·부화장의 가금·알
 - 가축방역관이 도축·출하·반출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금·알

- ※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거나 방역조치의 기간을 산정할 경우, 기준일(발생일, 방문일 또는 공급일 등)은 기간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 예시 : 방문일이 2월 10일이고 방문한 날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동제한 기간은 2월 17일까지임

[별표 6]

도심지 방역실시요령(제24조제7항 관련)**1. 공통사항**

1.1 「AI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2. 방역지역 설정

2.1 방역지역은 발생농장(시설)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검역본부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설정에 맞게 이동통제·소독 등을 실시한다.

2.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수성 동물 및 관련 오염물건 등 살처분·폐기

3.1 도심지의 교통·지리·유동인구·가금사육현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살처분·폐기 범위 등을 설정한다.

3.2 발생원인, 유입경로, 주변지역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관리지역 안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여부를 정한다.

3.3 방역지역 안의 애완조류(희귀조류) 판매장, 대학·민간연구소, 대공원·동물원 등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사육중인 조류는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성 등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3.4 1,000수 이하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매몰 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스 배출관, 저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매몰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다.

3.5 일반 가정집, 조류자연학습장, 동물원 등 소규모 비전문 조류 사육농장(시설)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협오감 등 미관과 주민불편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매몰지 표지판 설치여부를 정한다.

4.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및 방역조치

4.1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살처분·폐기하고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발생지 안의 분변(분변이 없는 경우 바닥의 흙 또는 사육장 우리 등 swab)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날로부터 한다.

4.2 방역지역에서의 감수성 동물의 재사육은 [별표7] 입식시험요령에 따른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5. 대공원, 동물원, 조류자연학습장 등 조류사육시설 방역조치

5.1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에 따른 AI 전파위험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발생지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 까지 외부 개방 중단. 다만, 대공원, 동물원 등 자체적으로 방역담당 수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개방 중단여부 결정
- 사육 조류에 대한 일일 AI 임상검사 등 예찰 실시
-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 제한 및 출입시 소독 실시
-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실시
- 사육 오리류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별표 7]

입식시험실시요령(제33조 관련)

1. 입식시험의 준비

- 가.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농장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독·시험
기축선정·검사 등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이 실시
하는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입식 승인 전에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나. 해당 농장의 소유자등은 농장내 관리시설과 축사내외·진입로·축산기자재 등의
분변·왕겨·사료 등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청소)한 후에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소·세척 및 소독상태,
오염물건 처리상황 등과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라.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입식시험 승인을 요청(별지 제4호서식 및 증빙자료 첨부)
하여야 한다.
- 마. 검역본부장은 해당 농장에 대한 입식시험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발견
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시장·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발생농장 소유자 등에
대해 가목에 따른 입식 승인 전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 바. 검역본부장은 입식시험전 점검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시장·군수에 입식시험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시험가축의 선정

- 가. 입식시험에 사용되는 가축(이하 “시험가축”이라 한다)은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
(방역지역 외)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닭이어야 한다.
- 나. 시험가축은 입식시험을 개시하기 전에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다만,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시험가축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음성 및 H5·H7 항체 음성일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 시험가축의 종류 및 마리수는 다음과 같다.

- 1) 가장 감수성이 높은 축종인 닭을 시험가축으로 사용
- 2) 모든 축사당 4~12주 산란계 중추(옹추 포함 가능) 또는 4~5주 육계 최소 5수 이상(단, 축사규모별 시험수수 증가)

※ 축사 규모별 시험축 ① 2만 수 이하(5수 이상), ② 2만 수~5만 수(10수 이상), ③ 5만 수~10만 수(20수 이상), ④ 10만 수 이상(30수 이상)
- 3) 재입식 시험가축 배치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내 골고루 배치(1 지점 당 5수)

3. 입식시험의 방법

가. 발생농장의 입식시험은 예찰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및 발생농장에 대한 환경검사(분변이 있을 경우 분변 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실시한다.

나.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시험가축의 구입장소·구입일자·운송방법 및 사육일지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생농장의 소유자등은 사료를 축사바닥에 두어 급여하는 등 시험가축이 발생농장 안의 오염 가능성 있는 모든 장소 또는 부위에 접촉할 수 있도록 시험축 배치시 반드시 발생한 지점을 포함하여 축사 내에 골고루 배치(1 지점 당 5수)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산란계·종계 등 케이지 내에서 사육하는 축사의 경우 시험가축을 이동식 케이지에 넣은 채로 축사내를 이동시키면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자주 접촉되도록 하거나 케이지 내에서도 사육시키는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입식시험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

라. 입식시험기간은 최대 잠복기를 감안, 2주간으로 한다.

마. 가축방역관은 입식시험을 개시한 후 14일까지 매 2일마다 시험가축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상검사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 개시일부터 2주 경과 후 혈청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정밀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검역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아.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제한 조치하고 이상증상을 보이는 개체(필요시 전수)에 대하여 정밀검사(항원·항체)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KA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자. 시장·군수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입식 시험관련 제반서류(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식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차. 검역본부장은 시장·군수가 제출한 입식시험 관련 제반서류의 적정 여부, 방역교육 이수 여부(중복발생 농장에 한함)를 확인한 후 입식 승인 여부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입식시험 재실시

가. 입식시험 기간 중 인근지역의 AI 추가 발생으로 입식시험 농가가 방역지역의 관리지역(500m) 내에 위치할 경우 시·군에서는 입식시험 농가의 시험축을 즉시 살처분하고 방역지역 해제 이후 입식시험을 재차 실시하며, 보호지역(500m~3km)이나 예찰지역(3~10km) 내에 위치할 경우 입식시험을 계속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보호지역이나 예찰지역 내의 입식시험 진행은 AI 추가 발생 이전에 이미 입식시험이 진행 중인 농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입식시험 이 방역지역 해제 이전에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이후 방역조치는 방역지역내 다른 농장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별표 8]

검사시료 채취 및 송부요령(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1.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위한 농장의 검사시료 채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병리해부검사의 경우 5~10수 정도의 폐사축
 - 나. 혈청검사의 경우 축사별로 혈액 20수(개체당 2ml 이상)
 - 다. 항원검사의 경우 채혈한 동일 개체의 인후두 및 총배설강 swab을 20개씩 채취하며, 분변은 축사 내 일부분에 편향되지 않도록 20점씩 채취한다.
2. 검사시료 채취대상은 가능한 개방 사육사에서 사양되는 것을 우선 선발하고 주령에 편중됨이 없도록 한다.
3. 시료 송부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료채취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료가 운송 중 누출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히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 농장명, 축주명, 농장주소, 연락처, 가금종류, 시료채취 연월일, 시료채취시 주령, 사양형태(무창, 개방, 평사, 케이지)
 - ※ 가금종류 : 닭(종계·산란계·육계·토종닭·삼계), 오리(종오리·육용오리), 기타 가금류(메추리 등)
4. 송부처 : 농림축산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별표 9]

조류인플루엔자 지역별 위험도(제2조제4호 관련)

1. 위험도는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축산업 형태,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계절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가. 지형적 여건 : 지형을 구분시키는 산, 강 등의 자연적 요소와 고속도로 등 인위적 요소에 따른 분리 가능성 분석
 - 나. 역학적 특성 : 기존 발생농장과의 관계 및 농장들 간, 계열사와의 관계, 사료회사 및 분뇨처리업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역학적 관계 분석
 - * 발생한 질병 원인체의 특성에 대한 분석 포함
 - 다. 축산업 형태 : 가금산업의 밀집도(단위 면적당 농가수, 단위면적당 사육 가금수, 단위면적당 축산종사자 수)에 대하여 방역대내 지역과 방역대 외 지역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상대적 밀집도 분석
 - 라.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 인근의 철새도래지(강, 호수, 저수지 등)의 존재 여부와 철새 및 야생동물의 출현 빈도에 따른 위험도 분석
 - 마. 계절적 요인 : 주변지역과의 평균 기온, 강수, 강설량에 따른 바이러스 생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 바. 기타 고려사항 : 해당 농장 또는 지역적(마을단위 등) 특성 반영

[별표 10]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 살처분 범위 결정 절차(제19조제1항 관련)

1.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 및 보호지역에서의 살처분 및 폐기 범위는 관리지역 내 전체 적용대상 동물 및 보호지역 내 발생농장과 동일한 축종의 적용대상 동물을 원칙으로 하되, 제2호의 절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호에 따른 살처분 및 폐기 범위 결정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처분 및 폐기 범위를 정하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해외 야생조류 및 가금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 나. 해외 발생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병원성, 임상증상 등 특성
 - 다. 국내 유입되는 철새의 이동경로
 - 라. 철새의 행동반경
 - 마. 국내 가금농장 등 방역관리 상황 및 과거 국내 발생사례에 대한 역학분석 결과
 - 바. 기타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호에 따라 살처분 및 폐기 범위가 정해진 이후부터 2주 간격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살처분 및 폐기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부터 2주 간격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철새 도래 및 분포 현황
 - 나. 야생조류 H5/H7 항원·항체 검출 현황
 - 다. 가금농장 AI 항원·항체 검출 현황
 - 라. 방역대/역학농장(시설) 검사현황
 - 마. 기타 살처분 범위 조정 검토에 필요한 사항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보고한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살처분 및 폐기 범위를 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발생신고서

접수시간 : 오전

1. 신고접수일 : _____ 오후 _____

2. 신고자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성명 : _____ (직 업) _____

3. 발생농가의 주소 : _____ 전화번호 : _____

성명 _____ (휴대전화) : _____

4. 신고사항

축종 : 닭(종계·산란계·육계·토종닭·삼계), 오리(종오리·육용오리), 기타

사육수수 : 주령 :

발생수수 : 폐사수수(최근 5일간) :

산란율 감소여부 :

5. 증상 및 병력개요

6. 기 취한 응급조치

7. 신고자에 대한 지시사항

8. 신고수리자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9. 조치사항

[별지 제2호서식]

현 지 조 사 표

| | | |
|---|----|----|
| 1. 출장자 성명 | 시간 | 월일 |
| 2. 축 주 주소 | | |
| 성명 _____ | | |
| 축사 소재지(축주의 주소와 상이한 경우): | | |
| 3. 현지 조사일 : | 시간 | |
| 4. 축종별 사육수수 : 닭 | 오리 | 기타 |
| 5. 의사환축(축종, 사육형태, 주령, 발생수수, 일자별 폐사수수) | | |
| 6. 병력, 증상, 병변의 개요(산란율 감소여부 등) | | |
| 7. 진단 소견 | | |
| 8. 병성감정 시료 채취 : 폐사체(수), 의사환축(수), 혈액(수), 기타 () | | |
| 9. 조치사항 | | |
| 출입구의 폐쇄, 가축의 계류, 소독조의 설치 | | |
| 10. 과거 21일간의 가축의 이동상황 : 판매(분양, 출하) 구입(입식, 입란) | | |
| 11. 과거 21일간에 접촉한자 : 출입한적이 있는 수의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당해관리자, 다른 축사에의 방문 여부 | | |
| 12. 축주의 관리하는 다른 축사(수수) | | |
| 13. 인근 축산농가의 유무(반경 500m내) | | |
| 14. 집란 : 부화장의 소재지 | | |
| 15. 살처분 예정수수 : 닭_____ 오리_____ 기타_____ | | |
| 사체처분방법, 소각, 매몰, 기타() | | |
| 16. 관계인의 해외여행 유무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부? 인근 야생조류 출몰현황? | | |
| 17. 기타 역학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항 | | |

[별지 제3호서식]

시료채취내역서

| <input type="checkbox"/> 시료채취일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시료채취자 : (소속) | (성명) | | (연락처)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농장명(시료채취지명) : | | | | | | | | | | |
| <input type="radio"/> 소재지 : | 연락처 : | | | | | | | | | |
| <input type="radio"/> 축주명 : | 관리자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사육현황 | | | | | | | | | | |
| <input type="radio"/> 사육규모 : | 사육동수 : | | | | | | | | | |
| <input type="radio"/> 축종 및 품종 : | 사육형태(무창, 개방, 평사, 케이지 등)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입처 : | | | | | | | | | | |
| <input type="radio"/> 최근 입식일자 및 관련 부화장(농장), 입식수수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가금류 또는 종란 판매처 : | | | | | | | | | | |
| <input type="radio"/> 최근 출하일자 및 도축장 (또는 부화장), 출하수수(공급수수)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사육사별(동별) 시료채취 내역 | | | | | | | | | | |
| 사육사 (동, 품종) | 사육수수 | 일령 (주령) | 폐사 수수 | 기타 임상증상* | 시료채취 내역 | | | | | 비고 |
| | | | | | 혈액 | 인후두 | 총배설강 | 분변 | 폐사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임상증상 : 폐사 이외의 모든 임상증상을 기록

** 폐사체 : 폐사체는 폐사가 있는 동에 한하여 동별 5수 이하

상기 시료에 대한 AI 검사(항체 및 항원)를 의뢰합니다.

의뢰 기관 :

의뢰 일자 : 년 월 일

※ 검사의뢰서는 의뢰대상 동물·시료 특성 등을 감안 필요시 변경 가능하나, 폐사 여부·기타
의상증상·폐사체 사항을 반드시 기록

※ 검사의뢰시 의뢰자는 반드시 상기 시료채취내역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의뢰

[별지 제3의1호서식]

시료채취내역서(야생조류)

- 시료채취일 :
- 시료채취자 : (소속) (성명) (연락처)
- 시료채취장소
- 주 소 :
- 시료채취 내역

| 연 번 | 시료채취 장소 | | 시료채취 내역 | | | | 비고 |
|--------|---------|--------|---------|----|----|-------------|----|
| | 주 소 | 위경도 좌표 | 폐사체 | 분변 | 깃털 | 기타 (물)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시료에 대한 AI 검사(항체 및 항원)를 의뢰합니다.

의뢰 기관 :

의뢰 일자 :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전 청소·소독 등 점검표

□ 농장현황

| | | |
|-------------|-------|---------|
| 축산업등록(허가)번호 | 농 가 명 | 축 주 명 |
| 전화번호 | 소재지 | 이동제한해제일 |
| 사육축종 | 사육동수 | 사육두수 |

□ 입식전 점검사항

가. 청소·소독

| 점검내역 | 점 검 결 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
|---------|--|
| 주택관리사창고 | 신발소독조□, 내부□, 외부□, 거주시 사용물품□, 화장실□ |
| 축사 | 외부□, 신발소독조□, 바닥□, 울타리□, 벽□, 원치커던□, 기둥□, 천장□, 기구보관 등 창고□, 냉장고□, 분뇨처리□, 축사 내부 소독□, 배수로 정비□ |
| 운동장 | 바닥□, 울타리□, 분뇨처리□ |
| 방역실 | 신발소독조□, 내부□, 외부□ |
| 전실 | 신발소독조□, 장화비치□, 손소독제□, 축사전용작업복□, 고정된 구조물 또는 발판 등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차단시설 |
| 작업도구 | 트랙터□, 차량□, 손수레□, 삽□, 청소도구□, 기타 농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도구□ |

나. 소각·매몰

| |
|-------------------------------------|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급여중이던 사료□, 보관사료□, 보관왕겨□ |
| 음식물찌꺼기□, 의복□, 신발□, 장화□, 소각가능한 물품□ |
| 빗자루 등 소각 가능한 작업도구(빗자루□, 기타□) |

다. 강화된 방역시설 상태 및 요건

| |
|--|
| 농장 출입구 및 농장 내 소독시설(대인, 차량) 유무□, CCTV 설치 및 작동 상태□ |
| 농장 주변 울타리 및 출입 통제문 유무□, 구서 여부(구서체, 쥐덫 등)□, 구충 여부□ |
|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설치 유무(축사·벽면·환풍구·배수로·집란용 컨베이어벨트·분변 제거 개구부·분뇨처리장)□ |
| 매몰지 부지 확보 여부□, 왕겨 보관 및 차단상태□ |
| ※ 관할 시·군은 농장 내·외 농경지, 시유지 등 매몰부지 확인 |
|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보완 여부□ |
| 행정명령 및 강화된 방역기준, 방역수칙 등 숙지 여부□ |

※ 점검과정에서 미흡사항이 확인될 경우, 미흡사항을 보완 조치한 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실시

[별지 제5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시험축 등 점검표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 구분 | 점검내역 | 점검결과(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면 □에 ✓ 표시) | |
|--------------------------|---|---|--|
| 시험축 입식전 사 전 점 검 | 구입처 | 구입처(), 구입일자(), 운송방법() | |
| | 구입축 | 축종(닭 수), 품종(), 나이(주령), 성별(♂ 수, ♀ 수) | |
| | 임상관찰 | 사료섭취감소□, 침울□, 설사□, 기침등 호흡기 증상□, 안면부종□, 벼슬·육수의 청색증□, 기타 특이사항□ | |
| | 혈청검사 | 시험축 사육농장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확인여부□ | |
| | 예방접종 | 뉴캐슬병□, 전염성F낭병□, □, □ | |
| |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방역지역)에서 생산된 가축은 시험가축으로 입식 불가 | | |
| 사 양 관 리 | 시험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가축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방책설치□ - 계사형태·상황을 고려하여 계사내에서 이동사육□ :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오염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분에 접촉 가능하도록 사육 (케이지 사육형태인 경우 이동식 케이지 이용가능) | |
| | 사료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회사 : - 사료운송 방법 : - 사료급여 방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겨구입처 : 왕겨 운송방법 : |
| 점검자 : 소속 | | 직(위)급 | 성명 |
| | | | 점검일시 |

- ※ 축주 주의사항
1. 외부인, 타 축산인 등 농가 출입금지
 2. 축주의 친인척, 관혼상제 및 타농가 방문자제 협조
 3. 농장 출입구 소독조 설치 및 농장주위 소독철저 등

[별지 제6호서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입식시험 임상검사표(축사별)

○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 시험일자 | 주요 임상증상 | | | | | | | 점검자 (소속 성명) |
|--|---------------|----|----|---------------|----------|---------------|----|----------------|
| | 식욕감소 | 침울 | 설사 | 기침 등 호흡기증상 | 안면 부종 | 벼슬·육수의 청색증 | 폐사 | |
| 1주 ~ 2주 | 입식일 (월 일) | | | | | | | |
| | 2일 (월 일) | | | | | | | |
| | 4일 (월 일) | | | | | | | |
| | 6일 (월 일) | | | | | | | |
| | 8일 (월 일) | | | | | | | |
| | 10일 (월 일) | | | | | | | |
| | 12일 (월 일) | | | | | | | |
| | 14일 (월 일)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 특이증상 및 병변 <input type="checkbox"/> 종합소견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제 호 | | | | | | |
|---|---|--|------------|-----------------|------------|----------|
|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 | | | | | |
| 출발지 농장 현황 | 농장명 | | 주소 | | 사육두수 | 개동 수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임상 검사 | <input type="checkbox"/> 사료섭취감소 <input type="checkbox"/> 침울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기침 등 호흡기 증상 <input type="checkbox"/> 안면부종 <input type="checkbox"/> 벼슬·육수의 청색증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이내 폐사 수수 (수) <input type="checkbox"/> 산란율(%) | | | | | |
| 임상관찰결과 | 시료채취일(시간) | | | 정밀검사결과 | | |
| 이동 기간 | 년 월 일 | 시부터 | 년 월 일 | 시까지 | | |
| 도착지 | 업체(농장)명 또는 전통시장 | | 주소 | | 연락처 | |
| 출하 및 운송 | 출하 수수(개수) | | | | 운송차량 번호 | |
| | 축 종 | 품종 | 일령 (주령) | 운송인 성명 (구매자) | | 전화 번호 |
| | 운반차량 | <input type="checkbox"/> 출하 및 하차시 : 차량 내·외부 철저한 세척 및 소독실시 <input type="checkbox"/> 차량적재함 바닥 :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오염방지 <input type="checkbox"/> 운반차량 준비물 : 소독약품, 휴대용 소독장비 동일 농장에서 동일 도착지로 이동 시 다수의 운송차량이 필요한 경우,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을 뒤쪽에 별도 기재할 수 있음 | | | | |
| 상기 가축은 기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확인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 | | | | | |

간 인

절 취 선

간 인

| 제 호 | | | | | | |
|---|---|--|------------|-----------------|------------|----------|
|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 | | | | | |
| 출발지 농장 현황 | 농장명 | | 주소 | | 사육두수 | 개동 수 |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임상 검사 | <input type="checkbox"/> 사료섭취감소 <input type="checkbox"/> 침울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기침 등 호흡기 증상 <input type="checkbox"/> 안면부종 <input type="checkbox"/> 벼슬·육수의 청색증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이내 폐사 수수 (수) <input type="checkbox"/> 산란율(%) | | | | | |
| 임상관찰결과 | 시료채취일(시간) | | | 정밀검사결과 | | |
| 이동 기간 | 년 월 일 | 시부터 | 년 월 일 | 시까지 | | |
| 도착지 | 업체(농장)명 또는 전통시장 | | 주소 | | 연락처 | |
| 출하 및 운송 | 출하 수수(개수) | | | | 운송차량 번호 | |
| | 축 종 | 품종 | 일령 (주령) | 운송인 성명 (구매자) | | 전화 번호 |
| | 운반차량 | <input type="checkbox"/> 출하 및 하차시 : 차량 내·외부 철저한 세척 및 소독실시 <input type="checkbox"/> 차량적재함 바닥 :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오염방지 <input type="checkbox"/> 운반차량 준비물 : 소독약품, 휴대용 소독장비 동일 농장에서 동일 도착지로 이동 시 다수의 운송차량이 필요한 경우,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을 뒤쪽에 별도 기재할 수 있음 | | | | |
| 상기 가축은 기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확인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 | | | | | |

(뒤쪽)

제 호

검사증명서(가금류 이동승인서) 추가 내역

○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

| 구분 | 출하 수수 | 운송차량 번호 | 운송인 성명 | 축종 | 품종 | 일령 (주령) | 전화 번호 | 확인사항 | | | 비고 |
|----|----------|------------|-----------|----|----|------------|----------|--------------------------|----------------------------|----------------------------|----|
| | | | | | | | | 출하·하차시 세척·소독 | 차량 적재함 바닥에 오물 등 오염방지 | 차량 준비물: 소독약품, 휴대소독장비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 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간 인

절취선

간 인

○ 출하 및 운송 세부내역

| 구분 | 출하 수수 | 운송차량 번호 | 운송인 성명 | 축종 | 품종 | 일령 (주령) | 전화 번호 | 확인사항 | | | 비고 |
|----|----------|------------|-----------|----|----|------------|----------|--------------------------|----------------------------|----------------------------|----|
| | | | | | | | | 출하·하차시 세척·소독 | 차량 적재함 바닥에 오물 등 오염방지 | 차량 준비물: 소독약품, 휴대소독장비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상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임상관찰, 정밀검사 결과 특이 증상이 없고, 운반차량이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청소·소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가축방역관 소속 및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가축거래기록대장(가금공급농가 및 판매소)

* 거점소독장소에 발행한 소독 필증을 참고로 작성

가축거래기록대장 (가금 거래상인)

* 거점소독장소에 발행한 소독 필증을 참고로 작성

* 출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의7서식] 가출거래내역 관리대장 제출 시, 거래 기록은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식용란거래기록대장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거점소독장소에 발행한 소독 필증을 참고로 작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제출 시, 거래 기록은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 | | | | | |
|--|-------|--|------|------|------|
| 일련번호 : | | 소독필증 | | | |
| 운전자 | 성명 | | 차량번호 | | |
| | 주소 | (연락처 :) | | | |
| 소독내역 | 소독일시 | | 이동경로 | → | |
| | 이동목적 | | | | |
| 소독 실시자 | 소독지역 | <input type="checkbox"/> 빌생지, <input type="checkbox"/> 보호지역, <input type="checkbox"/> 예찰지역, <input type="checkbox"/>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시·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시·도 | | | |
| | 소독장소명 | | | | |
| | 소속 | 직급 | | 성명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년 | | 월 | 일 | | |
| 소독실시 확인자 | | 소속 : | 직 : | 성명 : | (서명) |

절취서-

| | | | | | |
|---|-------|---|------|------|------|
| 일련번호 : | | 소독필증 | | | |
| 운전자 | 성명 | | 차량번호 | | |
| | 주소 | (연락처 :) | | | |
| 소독내역 | 소독일시 | | 이동경로 | → | |
| | 이동목적 | | | | |
| 소독 실시자 | 소독지역 | <input type="checkbox"/> 발생지, <input type="checkbox"/> 보호지역, <input type="checkbox"/> 예찰지역, <input type="checkbox"/> 약생조수류 예찰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시·군, <input type="checkbox"/> ○○ 시·도 | | | |
| | 소독장소명 | | | | |
| | 소속 | 직급 | | 성명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 | |
| 소독실시 확인자 | | 소속 : | 직 : | 성명 : | (서명) |

절취선-

| | | | | | | |
|--|-------|--|------|------|------|--|
| 일련번호 : | | 소독필증 | | | | |
| 운전자 | 성명 | | 차량번호 | | | |
| | 주소 | (연락처 :) | | | | |
| 소독내역 | 소독일시 | | 이동경로 | | → | |
| | 이동목적 | | | | | |
| 소독 실시자 | 소독지역 | <input type="checkbox"/> 발생지, <input type="checkbox"/> 보호지역, <input type="checkbox"/> 예찰지역, <input type="checkbox"/>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input checked="" type="radio"/> ○○ 시·군, <input type="checkbox"/> ○○ 시·도 | | | | |
| | 소독장소명 | | | | | |
| | 소속 | | 직급 | | 성명 |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 | 월 | 일 | | | |
| 소독실시 | 확인자 | 소속 : | 직 : | 성명 : | (서명) | |

[별지 제10호서식]

폐사율 및 산란율 기록 대장

○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 산란수와 산란율은 산란용 가금을 사육하는 농가에 한하여 작성

*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기록으로 축사별 폐사율 및 산란율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

확인자 농장주 (서명)